

1964년도



주재관(국방무관) 파견-구주

| 64-001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인사과
MF번호	A-2 / 7 / 1-62(62p)

1. 국방부는 윤성중 육군대령의 주프랑스대사관 주재 무관 임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는 공한을 1964.8.1 외무부에 송부해 옴.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에게 윤성중 육군대령의 무관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프랑스 외무성은 1964.9.16. 프랑스 정부가 동 인의 무관 임명에 동의함을 통보해 왔음.
2. 외무부는 국방부의 주이탈리아대사관 무관 교체 결정에 따라 왕규익 육군대령을 신입 무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이탈리아 정부에 요청하도록 주이탈리아대사에게 1962.6.11. 지시함. 그러나 국방부는 1962.8.7. 사정상 왕 대령의 부임이 불가능하니 동 인에 대한 아그레망 신청을 취소하고 장봉천 육군대령의 아그레망을 신청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하였고, 주이탈리아대사는 8.9. 이탈리아 외무성에 왕 대령에 대한 아그레망의 취소 및 장 대령에 대한 아그레망을 이탈리아 정부에 요청함. 이탈리아 정부는 1962.10.6. 장봉천 대령에 대한 무관 임명에 동의하였으며, 동 인은 10.14. 주이탈리아대사관 무관으로 부임함.
3. 노르웨이 정부는 1964.12.2. 김중보 대령의 주노르웨이대사관 무관 임명에 동의함.

2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이준열사 유해봉환

| 64-002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B-4 / 4 / 1~121(121p)

이준 열사 유해는 다음과 같이 네덜란드 헤이그로부터 봉환되어 1963.9.30. 수유리 묘소에 안장됨.

1. 사단법인 일성회, 문교부 후원으로 이준 열사 유해 본국 봉환 추진

2. 네덜란드에서의 유해 봉환식에는 네덜란드 외무장관, 한국전 참전용사 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의장병 의경호를 받음.

26

3. 일본 도착 및 출발

- ✧ 도착: 9.28.
- ✧ 추도식: 9.29.(교포 유지 200~300명 참석)
- ✧ 한국향발: 9.30.

4. 김포공항 도착: 9.30.

- ✧ 시가행진 후 수유리 안장

대사파견-일본

| 64-003 |

생산년도	1951-64
생산과	의전과
MF번호	2007-4 / 23 / 1~46(46p)

우리 정부의 주일대사 및 공사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김용식 공사 임명(1951.11.)

- ✿ 변영태 외무장관의 신성모 주일대사 앞 대사교체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요망 통지(1951.11.22.)
- ✿ 변영태 외무장관의 Muccio 주한미국대사 및 Ridgway 연합군사령관 앞 주일대사 교체 내용 통지(1951.11.26.)

2. 김유택 대사 임명(1957.5.16.)

- ✿ 임명장

3. 이동환 공사 임명(1961.7.15.)

- ✿ 신임장 수여식 및 선서식에 관한 절차
- ✿ 신임 공사 이력서

4. 배의환 대사 임명(1962.12.22.)

- ✿ 배의환 주일대사 취임 선서식 및 이에 관한 절차

5. 김동조 대사 임명(1964.10.7.)

- ✿ 주일공사의 일본 외상 앞 신임대사 임명사실 통고
- ✿ 신임대사 이력서 등

대사파견-다호메이

| 64-004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4 / 14 / 1~38(38p)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는 다음과 같이 아프리카의 베냉 주재 초대 겸임대사로 파견됨.

1. 1964.8.12. 아그레망 접수
2. 1964.11.5.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콩고

| 64-005 |

생산년도	1963-64
생산과	의전과
MF번호	B-4 / 15 / 1~55(55p)

우리 정부의 주콩고공화국 대사대리 및 대사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홍일 대사대리

- ✿ 외무장관 명의 임명장(1963.4.)
- ✿ 홍일 대사대리의 Lettres de Cabinet 제정(1963.5.8.)보고
 - 홍일 대사대리와 콩고 외무장관과의 회담 내용
 - Letters de Cabinet 제정 기념사진

2. 이창희 대사대리

- ✿ 외무장관 명의 임명장(1963.6.14.)
- ✿ 이창희 대사대리의 Lettres de Cabinet 제정(1963.8.12.)보고
 - 이창희 대사대리와 콩고 외무장관과의 회담 내용

3. 최문경 대사(초대 상주 대사)

- ✿ 주콩고대사관의 신임대사 아그레망 신청(1964.1.28.) 및 접수(1964.3.9.)
- ✿ 신임장 발급
- ✿ 최문경 대사의 신임장 제정(1964.5.11.)보고
 - 콩고 대통령의 답사
 - 콩고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

대사파견-차드

| 64-006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4 / 16 / 1~28(28p)

1. 우리나라와 차드는 1963.9.7.자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63.10.14.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를 주차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차드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차드 정부는 1963.10.15. 겸임대사 임명에 동의함.
2. 백선엽 대사는 1964.4.2. Tombalbaye 차드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함. Tombalbaye 대통령은 신임장 접수시 백선엽 대사에게 한국이 차드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함. 이에 대해 백 대사는 한국의 차드에 대한 굳은 우의를 약속하면서 다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경제원조를 약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함.

대사파견-콜롬비아

| 64-007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의전과/미주과
MF번호	B-4 / 19 / 1~82(82p)

정부는 주콜롬비아 겸임대사를 다음과 같이 파견함.

1. 정일권 주미대사(주콜롬비아 초대 겸임대사)

- ✿ 1962.4.4. 아그레망 접수
- ✿ 1962.7.10. 신임장 제정

2. 박동진 주브라질대사

- ✿ 1964.2.15. 아그레망 접수
- ✿ 1964.6.11. 신임장 제정

3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캐나다

| 64-008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의전과/미주과
MF번호	B-4 / 21 / 1~111(111p)

우리 정부의 주캐나다대사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이수영 주유엔대사(초대 겸임대사)

- ※ 우리 정부의 주캐나다 겸임대사 아그레망 정식 요청 사유
 - 캐나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비상주 대사 파견 환영입장 표명(1962.11.5.)
 - 각의는 캐나다와의 외교관계수립 의결(1962.11.19.) 및 주캐나다 겸임대사 파견동의(1962.12.12.)
- ※ 주유엔대사를 주캐나다 겸임대사로의 임명 배경
- ※ 신임장 발급(1963.1.14.)
- ※ 신임장 제정 보고서(외무부 정무국)
 - 주유엔 캐나다대표부를 통하여 아그레망 신청(1962.12.26.) 및 접수(1963.1.14.)
 - 한국과 캐나다 간 국교수립에 관한 합의 성명서 동시 발표(1963.1.14, 서울 및 오타와)
 - 신임장 제정(1963.1.22.)
 - 이수영 대사의 재캐나다 학생 및 교포와의 접촉
 - 이수영 대사와 캐나다 정부 요인과의 회담 내용
 - 주한 캐나다 겸임대사 임명에 관한 캐나다 정부측의 입장 및 동향
 - 의견 및 건의사항 등

2. 김용식 주유엔대사(겸임대사)

- ※ 주유엔 캐나다대표부를 통하여 아그레망 신청(1964.6.10.)
- ※ 신임장 발급(1964.7.8.)
- ※ 신임장 제정사(국·영문)
- ※ 신임장 제정(1964.7.28.)

3. 김정렬 주캐나다대사(초대 상주대사)

- ※ 우리 정부의 김정렬 주미대사의 주캐나다대사(상주)로의 전임발령 내정에 따라 주유엔대사에 신임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 지시(1964.10.)

대사파견-덴마크

| 64-009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의전과/북구과
MF번호	B-4 / 23 / 1~102(102p)

1. 주일덴마크대사관은 덴마크 정부가 1961.7.27. 김용식 주영국대사의 주덴마크 겸임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정식으로 인가하였다고 주일대표부에 통보해 옴. 이에 따라 김용식 대사는 1961.12.1. 프레데릭 9세 덴마크 국왕에게 윤보선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함.
2. 우리 정부는 1962.11.22. 덴마크 정부에 이형근 주영국대사의 주덴마크 겸임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며, 덴마크 정부는 1961.2.9. 이형근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에 동의함. 이에 따라 이형근 대사는 1963.4.25. 프레데릭 9세 덴마크 국왕에게 박정희 대통령권한대행의 신임장을 제정함.
3. 종전에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아이슬란드를 주영국대사가 겸임하고 있었으나 1963.7.18.자로 공포된 각령 1387호에 의하여 동 4개국이 주스웨덴대사의 관할 구역으로 이관됨.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63.9.9. 유재흥 주스웨덴 초대 상주대사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3개국의 겸임대사직을 주영국대사로부터 교체 겸임토록 결정하고 동 해당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 ✪ 덴마크 정부 및 노르웨이 정부는 1964.2.24. 및 2.27. 각각 유재흥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에 동의하였고, 유재흥 대사는 1964.4.30. 프레데릭 9세 덴마크 국왕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함.

3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EEC

| 64-010 |

생산년도	1963-64
생산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4 / 26 / 1~64(64p)

우리 정부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구주 경제공동체)대사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대한민국과 EEC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각의 의결안(의결: 1963.8.27.)

※ 제안이유

- 경위: EEC 가맹 6개국(프랑스, 독일(구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은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수립 동의(1963.7.24.)
- 목적: 경제적(무역확대 등) 및 정치적(EEC가맹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EEC가맹국과 미·영양국간의 관계 및 EEC 가맹국과 공산 Bloc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보입수 가능 등)

※ EEC에 관한 설명

- 개요, 목적, 기능, EEC기구의 준 국가적 성격, EEC의 업적과 세계적 지위, EEC와의 외교관계 수립절차

2. 우리 정부는 이한빈 주스위스대사를 EEC가입대사로 내정하고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아그레망 요청(1963.9.24.) 및 접수(1963.11.22.)

3. 주프랑스대사관의 EEC와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과 아그레망 요청 및 교섭경위 경위 등에 관한 보고

- ※ 외교관계 수립 교섭: EEC 각료회의에 회부함이 없이 직접 6개국 정부 당국에게 동의 요청으로 약 3개월의 시일 소요(각료회의 회부시 장구한 시일 요함)
- ※ 아그레망 교섭: EEC 가맹국 6개국 각국의 동意的 필요함에 따라 시일 소요 등

4. 신임장 제정 보고

- ※ 신임장 제정: 1964.3.17.
- ※ 활동상황
- ※ 신임장 제정사 등

대사파견-제네바

| 64-011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4 / 33 / 1~27(27p)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다음과 같이 대표를 파견함.

1. 김성용 공사: 1961.1.5.
2. 이한빈 공사: 1961.12.22.
3. 진필식 공사: 1963.9.17.
4. 정일영 대사: 1964.11.19. 이동원 외무장관의 임명장을 유럽주재 UN사무소를 통하여 UN사무총장에게 전달

3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바티칸

| 64-012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의전과/남구과
MF번호	B-4 / 35 / 1~40(40p)

1. 우리나라와 교황청은 1963.12.24. 국교수립에 합의하였음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함.
2. 외무부는 1963.9.11. 이한빈 주스위스대사를 주로마교황청 겸임공사로 임명하기 위한 내각수반 및 최고회의 의장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64.2.1. 주한교황사절공사관에 이한빈 대사의 겸임공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3. 교황청은 1964.2.13. 이한빈 대사의 겸임공사 아그레망에 동의하였으며, 동 대사는 1964.4.20. 폴 6 세 교황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아이티

| 64-013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의전과/중미과
MF번호	B-4 / 36 / 1~13(13p)

1. 우리나라는 아이티 및 파나마와 1962.9.22. 및 1962.9.30.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함.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성이 주멕시코대사를 동 국가들에 대한 겸임대사로 임명키로 내정하고 1962.10.5. 멕시코 주재 아이티 및 파나마대사관을 통하여 이성이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요청함.
2. 주멕시코대사는 1963.8.20. 외무부에 송부한 전문에서, 아이티에 대한 겸임 아그레망 요청에 대해 아이티측이 아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동의 지연 사유는 불명임을 보고함.

3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아이슬란드

| 64-014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구아과
MF번호	B-4 / 37 / 1~57(57p)

1962.8.29 한·아이슬란드 외교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아이슬란드 겸임 대사를 파견함.

1. 이형근 주영국대사(주아이슬란드 초대 겸임대사)

- ✿ 1962.11.30. 아그레망 접수
- ✿ 1963.2.19. 신임장 제정

38

2. 유재홍 주스웨덴대사

- ✿ 1964.3.6. 아그레망 접수
- ✿ 1964.5.11.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코트디보르

| 64-015 |

생산년도	1961-64
생산과	의전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B-4 / 39 / 1~46(46p)

우리 정부의 주코트디보르대사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최영희 대사

- ☼ 우리 정부는 최영희 중장을 주코트디보르대사로 임명하기 위하여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아그레망을 요청(1961.10.18.)하였으나 접수하지 못함.

2. 이성가 대사

- ☼ 우리 정부는 최영희 중장의 아그레망 요청을 동인의 개인사정으로 철회하고 이성가 소장으로 교체토록 주프랑스대사관에 지시(1962.2.26.)

3. 백선엽 대사(주프랑스대사)

- ☼ 정부는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를 초대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주프랑스대사에 아그레망 요청 지시(1964.1.) 및 아그레망 접수(1964.6.15.)

☼ 신임장 제정 보고

- 신임장 제정: 1964.10.29.
- 주재국 외무장관과 주코트디보르 상주 공관 설치 여부 및 시기에 관해 의견 교환

대사파견-일본

| 64-016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4 / 40 / 1~22(22p)

1. 외무부는 1961.7.20. 주일대표부에 이동환 전 내무부차관이 동 대표부 공사에 임명되었음을 일본 외무성에 통고할 것을 지시함. 이에 따라 주일공사대리는 7.21. 일본 외무성 이세기 아시아국장을 방문, 이동환 특명전권공사가 주일대표부 공관장에 임명되었음을 통고하였고 일측은 동 임명을 양해함.
2. 외무부는 1961.12.26. 배의환이 주일본대사로 임명되었음을 일본 외무성에 통고할 것을 지시함.
- 40 3. 외무부는 1964.10.8. 배의환 주일본대사를 주아르헨티나대사로 전보 발령하고, 김동조 대사를 주일본대사로 임명키로 하였음을 일측에 통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주일대사관은 동 발령 내용을 일본 외무성에 통고함.

대사파견-케냐

| 64-017 |

생산년도 | 1963-64

생 산 과 | 의전과/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 B-5 / 3 / 1~29(29p)

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케냐대사관에 대사대리를 파견함.

1. 안광호 대사대리: 1964.2.7.

2. 정규섭 대사대리: 1964.12.12.

대사파견-라이베리아

| 64-018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의전과/서부아프리카과
MF번호	B-5 / 4 / 1~54(54p)

우리 정부의 주라이베리아대사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라이베리아공화국과의 정식 국교수립 각의 의결안(의결: 1964.5.13)

※ 교섭 경위

- 주이탈리아 라이베리아대사는 주이탈리아공사에게 외교관계 수립 제의(1959.8.30.)
-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우리나라 경축사절단장(정일권 주프랑스대사)과 라이베리아 국무장관 간에 외교관계 수립 비공식 합의(1960.1.)
- 우리 정부는 라이베리아 정부에게(주프랑스대사 경유)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제의를 전하고 서울과 몬로비아에서 각각 공동성명서 발표 제의(1960.2.23.)
- 아프리카 친선사절단장(백선엽 주프랑스대사)의 외교관계 수립 제의에 라이베리아 정부는 겸임 사절 교환에 찬의 표명(1961.7.21.)
-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우리나라 경축사절단장(신현준 주모로코대사)은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 국의 의향을 타진한바, 동 국은 찬의 표명(1964.1.)
- 신현준 주모로코대사는 비공식 서한(1964.2.17.)을 통하여 동 인의 라이베리아 겸임대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바, 라이베리아 정부는 공한(1964.3.18.)을 통하여 동 제의에 반대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 음.

2. 신현준 주모로코대사에 대한 라이베리아 겸임대사 아그레망 요청(1964.6.9) 및 접수(1964.6.19)

3. 신임장 제정 보고

※ 신임장 제정: 1964.11.4.

- 신임장 제정사
- 대통령 답사

※ 신임장 제정 전·후 활동사항

※ 종합 소감

※ 라이베리아 방송국 기장과의 회견 시사 및 동 국 주재 외교단 명단 등

대사파견-말레이시아

| 64-019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과/인사과
MF번호	B-5 / 7 / 1~138(138p)

1. 정부는 1961.3.30. 유재홍 주태국대사를 말레이시아 주재 겸임대사로 임명할 것을 내정하고 주일대사관에 동 겸임대사 임명에 따른 말레이시아 정부의 아그레망을 주일말레이시아대사관을 통하여 요청토록 지시한바, 말레이시아측은 겸임대사의 접수에 문제가 없다는 구두회신을 함.
2. 외무부는 유재홍 주태국대사의 말레이시아 주재 겸임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하는 정식 공한을 1961.8.1. 주일말레이시아대사관을 통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말레이시아측은 1961.11.22. 아그레망 요청에 동의함. 주태국대사관은 유재홍 대사의 신임장 제정 일정을 말레이시아측과 협의하였으나, 말레이시아측은 국왕의 사정 및 모슬렘 관례상 1962.2월까지 외국 손님을 접수할 수 없어 1962.3월 중순 경 신임장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3. 정부는 1962.2.21. 말레이시아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키로 결정하고 초대 상주 대사로 최흥희 소장을 임명키로 함. 이에 따라 외무부는 유재홍 대사의 말레이시아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계획을 중지하고 최흥희 소장의 말레이시아 상주 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할 것을 1962.3.2. 주태국대사에게 지시함. 말레이시아 정부는 1962.4.18. 최흥희 대사의 상주 대사 임명에 동의함.
4. 외무부는 최흥희 대사가 5·16군사혁명 1주년 기념일 이전에 신임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측과 교섭할 것을 주태국대사에게 지시하였으나 말레이시아측 사정으로 신임장 제정은 1962.6.1. 거행됨.
5. 외무부는 1964.10.7.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을 통하여 신임 최규하 주말레이시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말레이시아 정부는 신임대사의 아그레망 요청은 말레이시아 주재 공관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다시 아그레망 요청 공한을 발송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아그레망은 상대국의 외교공관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현행 국제관례이며 외무부가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을 통하여 이미 아그레망을 요청하였는데 또 다시 같은 내용의 공한을 주재국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 외무부의 공한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설득하여 말레이시아측이 우리측 제안을 받아들임. 말레이시아 정부는 1964.11.9. 최규하 대사의



임명에 동의하였으며, 최규하 대사는 1964.12.7. The Yang di-Pertuan Agong, Tuanku Syed ibni Al-Marhum Syed Hassan Jamaluliall 말레이시아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모리타니

| 64-020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5 / 10 / 1~25(25p)

정부는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를 다음과 같이 주모리타니 겸임대사로 파견함.

✱ 1963.10.26. 아그레망 접수

✱ 1964.4.9. 신임장 제정

4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멕시코

| 64-021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의전1과/중미과
MF번호	B-5 / 11 / 1~85(85p)

우리 정부의 주멕시코대사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정일권 대사(주미대사)

- ※ 정부는 주미대사를 주멕시코 겸임대사로 하는 아그레망을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요청(1962.2.9.) 및 접수(1962.3.6.)
- 정부는 멕시코에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상주 대사 임명 계획에 따라, 주미대사의 주멕시코 겸임 대사로서의 아그레망을 취소토록 주미대사에 지시(1964.3.28.)

46

2. 이성가 대사(초대 상주대사)

- ※ 주멕시코 상주대사관 설치에 관한 각의 의결(1962.3.31.)에 따라, 정부는 이성가 소장을 주멕시코대사로 내정하고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아그레망 요청(1962.4.5.) 및 접수(1962.5.7.)
- ※ 신임장 수여식 및 신임장 제정사(국·영문)

3. 오천석 대사(2대 상주대사)

- ※ 정부는 오천석 박사를 제2대 주멕시코대사로 내정하고, 주멕시코대사관을 통하여 아그레망 요청(1964.10.12.) 및 접수(1964.10.15.)
- ※ 신임장 제정: 1964.11.27.

대사파견-노르웨이

| 64-022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의전과/복구과
MF번호	B-5 / 12 / 1~122(122p)

정부는 주노르웨이 겸임대사를 다음과 같이 파견함.

1. 김용식 주영국대사

✿ 1961.7.21. 아그레망 접수

✿ 1962.2.27. 신임장 제정

2. 이형근 주영국대사

✿ 1963.1.21. 아그레망 접수

✿ 1963.6.11. 신임장 제정

3. 유재홍 주스웨덴대사

✿ 1964.2.27. 아그레망 접수

✿ 1964.5.28.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페루

| 64-023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5 / 20 / 1~86(86p)

우리 정부의 주페루대사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박동진 공사(초대 겸임공사)

※ 우리나라와 페루공화국은 정식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사급 외교사절을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1963.4.1.)

48

※ 정부는 주브라질대사를 주페루 겸임공사로 내정하고 주브라질대사관을 통하여 아그레망 요청(1963.5.9.) 및 접수(1963.5.24.)

※ 신임장 제정 보고

- 신임장 제정: 1963.8.29.
- 신임장 제정 전·후 활동사항
- 대 페루 훈령 사항
- 건의 등

2. 박동진 대사(초대 겸임대사)

※ 우리나라와 페루는 외교공관 대사관급 승격 합의(1964.3.1.)

※ 정부는 박동진 주브라질대사를 주페루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주브라질대사관을 통하여 아그레망 요청(1964.3.31.) 및 접수(1964.4.4.)

※ 신임장 제정 보고

- 신임장 제정: 1964.7.21.
- 신임장 제정 전·후 활동사항 등

대사파견-토고

| 64-024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5 / 28 / 1~46(46p)

1. 외무부 정무국 김창훈 1등서기관은 토고와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의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명시하는 외무부장관 명의의 공한을 수교 받은 후, 1963.7.19. 동 국의 수도인 로메로 향발하여 토고 정부와 외교관계 수립을 교섭한 결과, 우리나라와 토고가 1963.7.26.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동 공동성명에는 “본 합의에 따라 아주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 대사가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의 사절로서 토고에 파견(인준)되는 신임장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포함됨.

2. 정부는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를 토고주재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1963.8.14.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파리주재 토고대사관에 백선엽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하는 공한을 전달함. 토고 정부는 1963.10.9. 백선엽 대사의 겸임대사 임명에 동의하였으며, 백 대사는 1964.2.21. Grunitzky 토고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권한대행의 신임장을 제정함.

4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태국

| 64-025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5 / 29 / 1~80(80p)

1. 정부는 1960.7.22. 주태국대사로 내정된 유재홍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태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태국 정부는 1960.8.6. 유재홍 대사의 임명에 동의함. 유재홍 대사는 1960.9.19. 윤보선 대통령의 신임장을 Bhumibol Adulyadej 태국 국왕의 접정에게 제정함.

※ 태국 국왕은 해외 체류 중인바, 국왕의 부재 시는 국왕의 모친이 접정(Regent)으로서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것이 태국의 관례임.

50

2. 정부는 스웨덴에 상주 공관을 설치함에 따라 1963.6.27. 유재홍 주태국대사를 주스웨덴대사로 내정하고, 이동원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태국대사에 내정함. 태국 정부는 1963.8.19. 이동원 대사의 아그레망 요청에 동의하였으며, 이동원 대사는 1964.1.30.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Bhumibol Adulyadej 태국 국왕에게 제정함.

※ 주태국대사관 노신영 참사관이 1963.7.11. 태국 외무성 정무국장 방문 시, 동 국장은 이동원 대사의 주캄보디아 겸임 가능성을 문의하면서, 태국은 1961년 캄보디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한 이래 태국에 아그레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 사절에 대하여 캄보디아 겸임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태국-캄보디아간의 외교관계가 재수립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대해 노신영 참사관은 한국은 현재 캄보디아에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총영사관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동원 대사의 겸임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함.

3. 정부는 장성환 예비역 중장을 주태국대사로 내정하고, 동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1964.9.16. 태국 정부에 요청함. 장성환 대사는 1964.11.20.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Bhumibol Adulyadej 태국 국왕에게 제정함.

4. 이수영 제3대 주유엔대사는 1961.7.7. 임명되었고, 김용식 제4대 주유엔대사는 1964.5.15. 임명되어 부임함.

※ 주유엔대사는 부임에 앞서 청와대에서 거행되는 부임 선서식에 참석하며, 현지 부임 후 유엔사무총장에게 외무부장관의 주유엔대사(Permanent Observe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nited Nations) 임명 공한을 제출함.

대사파견-우간다

| 64-026 |

생산년도 | 1963-64

생 산 과 | 의전과/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 B-5 / 31 / 1~22(22p)

정부는 주우간다대사관에 다음과 같이 대사대리를 파견함.

1. 김종한 대사대리: 1963.5.12.
2. 김영주 대사대리: 1964.6.10.

대사파견-유엔

| 64-027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의전과/인사과
MF번호	B-5 / 33 / 1~19(19p)

우리 정부의 주유엔대사(상임 옵서버)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이수영 대사

- ✿ 외무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앞 이수영 주유엔대사의 임명에 대한 서한(1961.7.7.)
- ✿ 신임 주유엔대사 선서식(1961.7.13.) 및 이에 관한 절차

52

2. 김용식 대사

- ✿ 외무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앞 김용식 주유엔대사의 임명에 대한 서한(1964.5.15.)

대사파견-미국

| 64-028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5 / 34 / 1~132(132p)

1. 정부는 정일권 대사를 주미대사(3대)로 내정하고, 동 인의 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1960.5.20. 미국 정부에 요청함. 미국 정부는 1960.5.31. 정일권 대사의 임명에 동의하였으며, 정일권 대사는 1960.6.8. 허정 대통령권한대행의 신임장을 Dwight D. Eisenhower 미국 대통령에게 제정함.
2. 정부는 장리욱 대사를 주미대사(4대)로 내정하였는바, 미국 정부는 1960.12.5. 동 인의 대사 임명에 동의함. 장리욱 대사는 1960.12.5. 윤보선 대통령의 신임장을 Dwight D. Eisenhower 미국 대통령에게 제정함.
3. 정부는 정일권 대사를 주미대사(5대)로 내정하였는바, 미국 정부는 1961.6.7. 동 인의 대사 임명에 동의함. 정일권 대사는 1961.6.30. 윤보선 대통령의 신임장을 John F. Kennedy 미국 대통령에게 제정함.
4. 정부는 김정열 대사를 주미대사(6대)로 내정하였는바, 미국 정부는 1963.4.20. 동 인의 대사 임명에 동의함. 김정열 대사는 1963.6.14. 박정희 대통령권한대행의 신임장을 John F. Kennedy 미국 대통령에게 제정함.
5. 정부는 김현철 대사를 주미대사(7대)로 내정하였는바, 미국 정부는 1964.10.16. 동 인의 대사 임명에 동의함. 김현철 대사는 1964.12.15.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Lynden B. Johnson 미국 대통령에게 제정함.

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1965

1964

대사부임-호주

| 64-029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5 / 37 / 1~34(34p)

Roy Albert Peachey 초대 주한 상주 호주대사가 다음과 같이 부임함.

1. 1962.1.23. 한 · 호주 외교관계 수립
2. 1962.6.5. 주한 호주 대사관 설치, 대사대리 부임
3. 1963.12.4. Peachey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
4. 1964.2.21. 신임장 제정

대사부임-대만(구 자유중국)

| 64-030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5 / 41 / 1~47(47p)

주한대만(구 자유중국)대사의 부임에 관한 내용임.

1. Liu, Yu-Wan 대사(초대 상주대사)

- ✿ 대만 정부의 아그레망 요청(1961.1.4.) 및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 부여(1961.1.9.)
- 신임대사 약력서
- ✿ 신임장 제정(1961.2.25.)
- 윤보선 대통령의 답사(국·영문)

2. Liang, Hsu-Chao 대사

- ✿ 대만 정부의 아그레망 요청(1964.2.20.) 및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 부여(1964.3.5.)
- 신임대사 약력서
- ✿ 신임장 제정(1964.5.6.)
- 신임장 제정사(국·중문)
- 박정희 대통령의 답사(국·영문)

5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부임-콜롬비아

| 64-031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의전과/중남미과
MF번호	B-5 / 43 / 1~62(62p)

주한콜롬비아대사(비상주) 부임에 관한 내용임.

1. Rafael Navas Prado 대사(주일콜롬비아대사)

- ※ 콜롬비아 정부의 아그레망 요청(1962.3.10.) 및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 부여(1962.3.20.)
- 신임대사 약력서

56

2. Henrique Molano Campuzano 대사(주일콜롬비아대사)

- ※ 콜롬비아 정부의 아그레망 요청(1963.2.27.) 및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 부여(1963.3.12.)
- 신임대사 약력서
- ※ 신임장 제정 일시 및 의전 절차 협의
- ※ 신임장 제정(1964.6.11.)
- 신임장 제정사(국·영·서문)
- 대통령 답사(국·영문)

대사부임-캐나다

| 64-032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의전과/북미과
MF번호	B-5 / 44 / 1~42(42p)

1. 주유엔캐나다대표부는 1964.10.6. 주유엔 우리 대표부를 통하여 주일캐나다대사인 Richard Plant Bower를 주한캐나다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우리 정부는 1964.10.13. Bower 대사의 주한캐나다 겸임대사 임명에 동의하였으며, 동 대사는 1964.11.11. 박정희 대통령에게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신임장을 제정함.

57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부임-독일

| 64-033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의전과/서구1과
MF번호	B-6 / 3 / 1~59(59p)

제2대, 3대 주한독일대사가 다음과 같이 부임함.

1. Karl Buenger 대사(2대)

✧ 1960.7.19. 아그레망 부여

✧ 1960.11.16. 신임장 제정

58

2. Franz Ferring 대사(3대)

✧ 1964.9.10. 아그레망 부여

✧ 1964.11.10. 신임장 제정

대사부임-바티칸

| 64-034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의전과/서구2과
MF번호	B-6 / 5 / 1~32(32p)

1. 로마교황청은 1960.11.5. John XXIII 교황이 Saverio Zupi 사제를 주한교황사절공사관의 공사로 임명 하였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음.
2. 우리나라와 로마교황청은 1963.12.11.자로 국교를 수립하고 공사관을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함. 로마 교황청은 국교 수립과 관련하여 공사급 외교관으로 Antonio del Giudice 대주교를 임명하기 위한 아 그레망을 1963.12.13. 우리 정부에 요청해 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63.12.28. 동 대주교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였으며, Giudice 공사는 1964.2.21. 박정희 대통령에게 폴6세 교황의 신임장을 제 정함.

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부임-이스라엘

| 64-035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의전과/아중동과
MF번호	B-6 / 6 / 1~88(88p)

주한이스라엘대사는 다음과 같이 부임함.

1. Daniel Lewin 대사(초대, 일본 상주)

✽ 1962.4.24. 아그레망 부여

✽ 1962.5.22. 신임장 제정

60

2. Mordekhai Shneerson 대사(2대, 일본 상주)

✽ 1963.4.1. 아그레망 부여

✽ 1964.1.17. 신임장 제정

3. Zvi Kedar 초대 상주 대사대리 부임

✽ 1964.8.28. 주한 상주 대사관 개설

대사부임-말레이시아

| 64-036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B-6 / 9 / 1~91(91p)

주한말레이시아대사 부임에 관한 내용임.

1. Lee Tiang Keng 주일말레이시아대사의 주한 겸임대사 아그레망 요청 경위 및 결과

- ✿ Tengku Abdul Rahman 말레이시아 수상은 한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제의(1958.6.13.)
- ✿ 우리 정부는 주영 말레이시아 고등판무관을 통하여 상호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겸임대사 교환 제의(1960.2.16.)
- ✿ 김동조 대통령 특사는 말레이시아 방문시 양국간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대사급 외교사절 교환합의를 정식 확인(1960.2.23.)
- ✿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주일말레이시아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결정하고 아그레망을 송부(1960.3.2.)
- 4·19혁명 후 국내사정으로 아그레망을 보내지 못함.
- ✿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영국대사관을 통하여 말레이시아에 주재할 겸임대사 결정을 재촉하는 동시에 주말레이시아 임시 대리대사의 이력서 요청(1960.3.30.)
- ✿ 우리 정부는 Lee Tiang Keng 대사 임명에 동의하고 주태국 유재흥 대사를 주말레이시아 겸임대사로 임명할 예정임을 주일대사관을 통하여 통보(1961.3.15.)하였으나 시행은 일시 보류

2. Henrique Molano Campuzano 대사(주일콜롬비아대사)

- ✿ 주일대사로 전임 예정인 Tuan Syed Shen 주태국 말레이시아대사의 주한 겸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향 타진과 동 건에 관한 국무회의 상정안(1961.7.)
- ✿ 주일말레이시아대사의 주한 겸임에 이의 없으며, 동 대사의 아그레망 접수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현 주태국대사를 주말레이시아 겸임대사로 임명 예정임을 주일대사관을 통하여 통보(1961.7.)

3. Mohd Ismail Bin Mohd Yusof 대사(초대 상주대사)

- ✿ 말레이시아 정부의 아그레망 요청(1963.12.14.) 및 우리 정부의 부여(1963.12.27.)



- 양국 정부는 주한말레이시아대사 임명에 관한 공동발표를 서울과 쿠알라룸푸르에서 동시 발표
(1964.3.14.)

✿ 말레이시아 정부의 주한 임시 대리대사 임명(1964.3.4.)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동의
(1964.4.6.)

✿ 신임장 제정(1964.5.20.)

대사부임-필리핀

| 64-037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의전1과/동남아과
MF번호	B-6 / 13 / 1~102(102p)

1. 필리핀 정부는 1960.2.4. Juan M. Arreglado를 주한 상주대사(제2대)로 임명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여 왔는바, 우리 정부는 1960.2.20. 동 인의 대사 임명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함. Arreglado 대사는 1960.4.12.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Carlos P. Garcia 필리핀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함.
2. 필리핀 정부는 1962.1.30. Maximino G. Bueno 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필리핀대표의 주한대사(제3대)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우리 정부에 요청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1962.2.6. 동 인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함. Bueno 대사는 1962.4.2.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권한대행에게 Diosdado Macafacal 필리핀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함.
3. 필리핀 정부는 1964.3.14. Pederio G. Lopez의 주한대사(제4대)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우리 정부에 요청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1964.3.30. 동 인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함. Lopez 대사는 1964.7.9.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Diosdado Macafacal 필리핀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함.

※ 주한필리핀대사직은 Bueno 전 주한필리핀대사가 1963.11.15. 사망 이래 공석이었음.

6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부임-미국

| 64-038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의전1과
MF번호	B-6 / 20 / 1~97(97p)

제6대, 7대 주한미국대사는 다음과 같이 부임함.

1. Samuel D. Berger 대사(6대)

- ※ 1961.4.4. 아그레망 부여
- ※ 1961.6.27. 신임장 제정

64

2. Winthrop G. Brown 대사(7대)

- ※ 1964.6.23. 아그레망 부여
- ※ 1964.8.14. 신임장 제정

3. 참고 자료

- ※ 외국대사의 신임장 제정에 관한 의식 절차(1961.6월)

구주지역 주한공관 건축대지 구득에 관한 건

| 64-039 |

생산년도	1958-64
생산과	구주과/의전과/구미과
MF번호	B-6 / 30 / 1~28(28p)

주한터키대사관의 공관건축 대지 구득에 관한 내용임.

1. 주한터키대사관은 공관으로 공관부지용으로 물색한 대지(외무부 의전관 소개)에 관해 외무부에 의견문의(1958.8.8.)

- ※ 한· 터키 양국의 공관부지 상호교환 협정에 따라 주터키 한국대사관은 공관부지용으로 터키 수도 앙카라 Paris Boulevard 인근 대지 2,309평방미터(개인소유)를 물색하고 터키 외무성과 협의 중에 있음.
- ※ 당관은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4번지 대지를 공관건축용 대지로 희망함.

2. 외무부는 동 대지는 구 황실 재산에 속하여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지를 물색토록 권유하는 회신을 함(1958.9.11.)

- ※ 주한터키대사관이 희망하는 대지에 관하여 구 황실 재산 사무총국, 재무부 및 국방부에 의견 문의
 - 구 황실 재산 사무총국은 동 대지가 효자동 4번지가 아니고 세종로 1번지이며 고적 보존상(경복궁 구내 일부) 처분할 수 없음(1958.8.27.)
 - 구 황실 재산 사무총국은 효자동 4번지 대지는 총국 소관대지가 아니고 개인소유 대지임을 통보(1958.9.28.)
 - 국방부는 주한미8군사령부에 문의한바, 동 사령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1959.3.10.)

3. 주터키대사관은 터키 정부가 관저용 대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우리 정부도 주한터키대사관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를 외무부에 문의(1964.7.18.)

- ※ 외무부는 법무부에 의견 문의 결과, 귀속재산처리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귀속재산 또는 국유재산인 대지를 주한터키대사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으나 별도의 조약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가능함을 회보(1964.9.21.)

주재관(국방무관) 부임-이탈리아

| 64-040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의전과/구주과
MF번호	B-7 / 33 / 1~9(9p)

1.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은 동 대사관의 무관인 Mario Magnanini 공군준장의 임기 만료로 인한 교체에 따라 후임 무관으로 Mario Bellagambi 공군대령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옴.
2. 외무부는 Bellagambi 공군중령의 무관 임명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국방부는 1964.8.22.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회보해 옴.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64.8.25.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 Bellagambi 무관 임명에 동의한다고 통보함.

한국의 대캄보디아정책 및 정무일반

| 64-041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 / 1 / 1~306(306p)

1. 이택근 주프놈펜총영사는 시하누크 캄보디아 원수가 1963.1.23.부터 인도 및 중국 방문 후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하면서, 시하누크 원수가 금번 해외여행에서 평양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이미 2년 전부터 초청한 경위로 보아 하시라도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방한 초청장을 보낼 것을 1963.1.29. 건의함.

※ 북한측은 시하누크 원수의 북경 방문 중 방북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나 동 인은 1964년도에 방북 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후 2.28. 귀국함.

2. 외무부는 1963.3.7. 이택근 총영사에게 시하누크 원수가 1964년도에 방북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회에 방한 초청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제시하되, 동 초청은 어디까지나 방북을 저지하는 수단임을 유의하고 그 반응을 주시할 것을 지시함.

3. 캄보디아 외무성 의전국장은 1963.5.21. 및 6.12. 두 차례에 걸쳐 주재국 외상의 비공식 친선방한을 희망하면서, 한국측의 공식초청장 송부를 요청함. 외무부는 주재국 외상이 방한 초청을 받고도 이를 실현하지 않을 경우 양측이 어색하게 되며 북한의 시하누크 원수 초청이 아직 유효한 현실에 비추어 주재국측과 좀 더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할 것을 1963.6.21. 이택근 총영사에게 지시함.

4. 캄보디아 정부는 1963.9.9. 개최되는 북한 정부 수립 18주년 기념식전에 Men Chum 종교부 차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동 인은 8.28. 방북함. 이택근 총영사는 주재국 외무차관을 방문, 항의서를 전달함. 이에 대해 캄보디아 외무성은 1963.9.7. 한국측의 항의서 제출은 주재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서 한국의 영사관 설치에 대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경고각서를 보내음.

5. 이택근 총영사의 후임으로 부임한 홍성욱 주프놈펜총영사는 적극적인 대중립국 외교의 시행을 위하여 시하누크 원수에 대한 방한 초청을 재검토해 줄 것을 1964.1.31. 외무부에 건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64.2.17. 극히 유동적인 캄보디아의 정세와 최근 동남아의 미묘한 국제정세는 시하누크 원수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치 못하고 있으므로 사태 발전을 관망할 것을 지시함.



6. 본 문건에는 주프놈펜총영사관이 작성한 '대캄보디아정책의 재검토'에 관한 보고서와 외무부 정무국이 외교정책자료로서 작성한 '외교대표부의 법적성격'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관련 제문제

| 64-042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국제연합과
MF번호	C-10 / 1 / 1-28(28p)

1. 주유엔대표부는 1964.3.2. 유엔사무총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1963.12.4.자 결의문(5/5471)에 의거 남아프리카가 무기과 탄약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자료를 동국이 판매하거나 수송함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고 동 실시 상황을 통고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접수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남아프리카 정부에 대하여 군수장비 또는 자재를 판매 또는 수송한 바 없음을 통고하는 회한을 송부해도 좋은지 외무부에 청훈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주유엔대표부의 청훈대로 유엔사무총장에게 통고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는 유엔사무총장이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유엔안보리의 1964.6.9.자 결의문 제2항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내용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유엔대표부에 지시함.

- ☼ 우리 정부로서도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는 반대하는 바임.
- ☼ 우리 정부는 유엔 참전국의 일원으로서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에 있어 우리를 지지하여 온 남아공이 한국과의 국교수립에 적극적인 데 반해 우리가 아프리카 제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이를 보류하고 있고, 각종 국제회의에서 제기되는 남아공 대표 축출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측이 소극적인 기권태도를 취하여 남아공과의 관계가 미묘함에 비추어 동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입장임.
- ☼ 따라서 유엔사무총장의 공한에 대한 회한은 보류하고 현지 사정에 비추어 회한을 필히 보내야 할 경우 추후 청훈하기 바람.

6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국의 대아중동 외교정책

| 64-043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3 / 3 / 1~59(59p)

한국의 대 아중동 외교정책 관련 다음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대 중립국 외교정책(1964.6.3.)

- ※ 대 중립국 외교의 과거
- ※ 우리나라의 대 중립국 외교정책과 기타 분단국가의 대 중립국 외교정책

70

2. 아중동지역 공관장의 종합적 건의

- ※ 정책목표의 수정
- ※ 외교망의 재조정
- ※ 방문 초청 외교의 강화
- ※ 경제 기술 문화교류의 증진
- ※ 기타 행정지원 문제

3. 구아지역 공관장 회의 보고(1964.12.12.)

4. 아중동지역 공관장 회의 보고(1964.12.16.)

한 · 인도 정무일반

| 64-044 |

생산년도	1963-64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C-24 / 5 / 1~33(33p)

1963~64년 한국과 인도 간의 정무관계 관련 다음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음.

1. 주일대표부 방 공사, 일본 방문 중인 Desai 인도 외무차관 면담(1963.7.2. 인도 대사관저)

- ※ 인도의 주한 총영사관 개설문제는 예산 및 인원 부족으로 당분간 어려움.
- ※ 금번 유엔총회 한국문제에 관한 인도의 태도는 작년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금후 매 3개월마다 주일인도대사관 상무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관계부처와 접촉하게 할 계획임.
- ※ 한국의 식량부족에 대하여 동정을 표시하면서, 북한의 미곡 증여 제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및 앞으로의 선거에 관하여 우리측에 질문

2. 주일인도대사관 Jerath 1등서기관 방한(1963.7.15.~20.)

- ※ 한 · 인도간의 통상 가능성 타진 위해 외무부, 상공부,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방문

3. 주한 인도 총영사관 개설

- ※ 1964.12.3. H.K. Banerji 총영사 부임

7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 · 이스라엘 정무일반

| 64-045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3 / 5 / 1~42(42p)

한 · 이스라엘 관계 관련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한 · 이스라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요르단측 입장

- ※ 아랍국가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한국도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여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함(1963.10.4. 주유엔 요르단 공사)

72

2. 한 · 이스라엘 경협 문제

- ※ 주터키 이스라엘공사는 이스라엘 정부가 기술 및 자본협력에 관하여 한국측과 교섭할 의향이 있다고 말함(1964.3.18.)

3. 75그룹 가입 지원 요청

- ※ 이스라엘 외상은 75 저개발국 그룹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옴(1964.9.18.)

4. 이스라엘 개황 자료

한 · 뉴질랜드 정무일반

| 64-046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3 / 8 / 1~20(20p)

주호주대사관의 한 · 뉴질랜드 정무관계 보고 내용임.

1. 유엔 한국문제 토의와 뉴질랜드 정부 견해

- ※ 주호주 뉴질랜드 고등판무관을 통한 뉴질랜드 정부의 대 유엔 한국문제토의에 대한 입장
 - 현재 방식대로의 한국문제 토의는 공산국들에 선전기회 제공
 - 신생국가들이 회원국이 됨으로써 변질하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향후 한국문제에 대한 투표결과가 어찌될지 낙관 불허
 - 상기 이유로서 연례적이고 자동적인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토의는 한국 정부와 자유세계에 이익이 되지 못함.
 - 따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자동적인 한국문제의 유엔토의에 반대하며 금차 총회는 이러한 새로운 입장을 실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조건부로 14개국 공동제안국이 되었음.
 - 새로운 방법은 언커크 보고서 제출 양식에 대한 간단한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내년 유엔총회 대책에 있어서는 상기 뉴질랜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 바람.

2. 주호주 뉴질랜드 고등판무관의 간호학 과정 한국 기술훈련생 뉴질랜드 연수 동의 통보 공한

- ※ 선발된 2명의 한국 연수생은 10월 20일까지 뉴질랜드 도착 요망 및 한국 고아 동반 가능 등의 내용

3. 한국 수해 피해에 대한 뉴질랜드 총리의 위로전 보고

4. 뉴질랜드 피견 콜롬보플랜 한국 훈련생의 연수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 허가 요망 보고 등

7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귀속재산 소유권에 관한 건

| 64-047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구미과
MF번호	C-3 / 11 / 1~181(181p)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귀속재산 소유권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남·북미 희랍정교회 대주교의 Dowling 주한미국대사 앞 표제건에 관한 진정서(1957.7.30)

- ※ 정동 소재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건물의 설립, 러시아 혁명 후 일본 정교회 재단에 기부(소유권 이전), 미 군정시 소유권 회복, 한국전쟁시 터키 참전부대의 건물 복구 등 동 건물의 연혁을 설명(관계서류 첨부)하고, 한국 정부가 동 건물을 몰수(일본 적산건물)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74

2. 주한미국대사의 외무장관 앞 공한(1957.10.16)

- ※ 상기 희랍정교회의 협조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선처 요망

3. 외무장관의 주한미국대사 앞 회한(1958.2.12)

- ※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건물이 동 교회 소유라는 1946년 미군정시의 인증서를 법무부에서 찾을 수가 없어 결국 동 건물은 미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 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의 귀속재산으로 처리하고 재무부에서 청산 절차를 취하고 있음.

4. 이종찬 주이탈리아대사의 표제건 처리에 관한 건의(1962.5)

- ※ 1962.4.3.자 우리 법원의 판결(희랍정교회 한국교구에서 3개월 이내에 10만불 매입하든지 불연 이면 공매 처분 판결)에 희랍 여론이 비등하므로, 피로 맺은 양국간 우호관계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요망

5. 남·북미 희랍정교회 대주교의 대통령 앞 서한(1962.5.31)

- ※ 한·희간의 유대를 고려하여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및 동 재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 요망
- 대통령 비서실의 재무부 및 외무부에 적절한 조치 및 결과 보고 지시(1962.6.20.)

6. 외무부, 재무부에 협조 요청(1962.7.2)

- ※ 동 교회 재산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공매처분 기타 행정처분 보류

7. 외무부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앞 표제관련사항 보고(1962.10.4)

- ※ 사건의 역사적 배경 및 해결 필요성



✿ 건의사항

- 재무장관에게 현 공소재판에 있어서 동 재산에 대한 정부의 귀속재산권 주장을 포기토록 지시
-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서울 고등법원장에게 동 공소사건의 조속 심의 지시

8.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재산 소유권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

- ✿ 교회측이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 기각내용의 서울 지방법원 판결(1962.4.3.)
- ✿ 서울 고등법원 판결(1962.12.27.)
 - 교회측이 제기한 공소심에서 원심 판결 취소(원고 승소) 및 서울 지방법원에 환송조치
- ✿ 서울 지방법원의 교회측의 소유권 인정에 관한 결심 판결(1963.5.1.)
- ✿ 정부측의 서울고등법원 공소제기(1963.5.23.) 및 판결(1963.11.27.)
- ✿ 피고인 정부측의 상고 기각 및 교회측의 소유권 인정 내용의 대법원 판결(1964.9.23.)

노신영 주태국참사관 라오스 출장

| 64-048 |

생산년도	1963-64
생산과	교민과/동남아과
MF번호	C-3 / 13 / 1~29(29p)

노신영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의 1963.9.18.~22.간 라오스 출장 보고 내용임.

1. 주요인사 면담 결과

- ※ 하권도(현지 교포의사)
 - 지난 6개월간 라오스 경제상태는 악화되고 내전으로 일반국민의 생활난은 가중됨.
 - 대만(구 자유중국) 및 베트남(구 월남)대사관은 철수하였으며 중국(구 중공) 및 베트남(구 월맹) 대사관의 인기는 저조
- ※ 라오스 Ouday 의전국장 및 Pha 부국장
 - 지난 5월 4~5명으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이 내방
 - 좌파계인 공보상의 알선으로 수상과의 면담이 요청되었으나 의전국에 의해 거절됨. 그들의 명단 등 상세는 미상
 - 현 정세하에서는 북한 외교사절의 진출은 있을 수 없고 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발급은 어려울 듯 생각됨.
- ※ Unger 미국 대사, Chadbourn 참사관 및 Hamilton 1등서기관
 - 라오스 경제상태의 꺾박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정은 1년 전보다 호전
 - 미국은 현 연정을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좌파를 가장 많이 원조하는 것은 베트남(구 월맹)이며 그 다음이 중국(구 중공)임. 그들은 전면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공공연하고 대대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며 미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들의 메콩강 유역 지배를 불허할 것임.
 -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는 한 한국은 당분간 라오스에 대한 현상 유지책을 지속함이 현명하다고 봄.
- ※ Nith Singharaj 외무차관
 - 현 사태 하에서는 한국사절 접수는 어려울 것이나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장차 사절이 교환될 때에는 자신이 주한 사절로 가고 싶음.
- ※ 푸미 노사반 장군
 - 자기가 있는 한 북한의 진출기도는 저지할 것이며, 한국과는 조속히 사절을 교환하고 싶지만 좀 더 기다려 주기 바람. 수상이 귀국하면 정국에 변동이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좌파는 현 정부와 결별할 것임.



2. 특기할 경제사정

- ※ 미불 1불 대 라오스 40키트의 공정환율이 과거 1년간 1:400으로 암거래되고 있음.

3. 분석 및 건의사항

- ※ 우파는 우리에게 동정적이고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현 연정 하에서 우리와 외교사절 교환의 실현성은 희박함. 설혹 교환되더라도 그에 이을 북한의 진출기도와 우리의 '두 개의 한국 불인'이라는 기본정책을 고수할 수 있는 보장이 없으며, 외교사절 교환의 실리가 박약할 것이므로 현재 이상의 적극적 대 라오스 접근을 지양하고 정세관망 및 현상유지를 건의함.

이동환 주호주대사 겸임국 뉴질랜드 출장

| 64-049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3 / 15 / 1~15(15p)

1. 이동환 주호주대사는 1963.10.17.~22. 간 겸임국인 뉴질랜드에 출장하여 뉴질랜드 정부가 유엔총회, 콜롬보플랜 및 FAO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이동환 대사는 동 출장 기간 중 Holyoake 수상 겸 외상, Shannahan 외무차관 등 예방 및 Fergusson 총독주최 리셉션 참석, 외교단 접촉 등의 일정을 가졌는바, 뉴질랜드측 인사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국의 민주적인 선거에 대해 좋은 반향을 보였다고 보고함. 또한 동 대사는 뉴질랜드의 국회 개원식 참석, 정부 인사와의 교류 및 콜롬보플랜에 의한 원조 촉진 등을 위해 외무부 본부가 뉴질랜드 출장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세네갈 · 대만(구 자유중국) 외교관계 단절, 1964.9.19

| 64-050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아중동과
MF번호	C-60 / 38 / 1~9(9p)

1. 세네갈 외무성은 1964.9.2. 대만(구 자유중국) 대리대사를 추방한 데 이어 9.19. 대만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발표하였다고 9.19.자 외신이 보도한 것과 관련, 외무부는 주카이로총영사 및 주대만대사에게 사실 여부를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함.
 - ✪ 외무부 아중동과는 프랑스가 중국(구 중공)을 승인한 후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대만 및 중립국의 동향과 관련된 재외공관의 보고를 종합, 분석함.
2. 주유엔대표부는 1964.9.22. 주유엔 대만대표부 참사관이 세네갈 정부의 대만대사관 철수 요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함.
3. 1964.9.22.자 Le Monde지는 세네갈 정부의 대만과의 외교관계 단절은 프랑스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생골 대통령은 중국(구 중공)과 외교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보도함.

7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국교수립-케냐, 1964.2.7

| 64-051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4 / 5 / 1~82(82p)

1. 외무부는 나이로비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케냐의 독립과 동시에 대사관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기로 1963.3.3. 내부 방침을 결정하고, 1963.8.15. 나이로비에 총영사관을 개설함.

※ 전영령 동부아프리카는 주영대사관이 관할하고 있으나 거리관계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실질적인 외교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1개 공관을 개설할 방침을 정하고 우선 우간다를 후보국으로 추진하였으나, 우간다가 우리와의 외교관계 수립 합의 직전에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에 따라 동 지역 내 새로운 외교거점 확보 필요성이 더욱 긴박해짐.

80

2.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는 1963.10.19. 나이로비를 방문, 케냐 정부와 국교수립 문제를 협의하였는바, 케냐측은 독립 후 한국과 정식 국교를 수립하는 데 아무 이의도 없다는 반응을 보임. 케냐측은 아직 완전 독립 전이므로 우리 정부가 영국 외무성을 통하여 국교수립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케냐타 수상에게도 별도로 국교수립 의사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내줄 것을 희망함.

3. 외무부는 케냐의 12.12. 독립 시 공식 외교관계의 수립을 희망하는 장관 명의의 케냐 수상 앞 서한을 케냐측에 전달하고 케냐측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으면 독립 즉시 양국 수도에서 정식 국교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에 합의할 것을 1963.11.2. 주나이로비총영사에게 훈령함. 또한 외무부는 케냐의 독립 시 동 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서한을 발송했음을 영국 정부에도 전달하고, 영국 정부의 측면적인 협조를 요청토록 주영대사에게 지시함.

※ 외무부장관은 1963.11.22. '케냐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됨. 외무부는 12.4. 안광호 총영사를 12.12.부로 케냐 주재 임시대사대리로 임명, 발령함.

4. 케냐타 케냐 수상은 1963.12.18. 안광호 대사대리를 수상실에 초치, 한국과의 정상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주나이로비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을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락한다고 구두 통고함.

※ 북한의 박찬세 법무장관 일행은 12.12. 독립기념식이 끝난 후 케냐 정부와 국교수립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5. 케냐 정부는 1964.1.23. 한국과 케냐 양국간의 정식 국교수립과 주케냐한국대사관 설치 동의에 관한 공한을 우리 정부에 송부함.

국교수립-라이베리아, 1964.3.18

| 64-052 |

생산년도	1959-64
생 산 과	경무대/의전과
MF번호	C-4 / 6 / 1~26(26p)

한·라이베리아 간 국교는 다음과 같이 수립됨.

1. 아프리카지역 친선사절단(단장: 백선엽 주프랑스대사)은 라이베리아를 방문하여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제의(1961.7.20.)
2. 주모로코대사가 라이베리아 국무장관에게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1964.2.17.)한 데 대해, 동 국무장관이 이의 없다는 회신을 보내움에 따라(1964.3.18.) 국교가 수립됨.

8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국교수립-모리타니, 1963.7.30

| 64-053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4 / 11 / 1~20(20p)

한 · 모리타니 간 국교는 다음과 같이 수립됨.

1. 1963.7.30. 김창훈 서기관-모리타니 외상 간에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2. 1964.4.9. 백선엽 주프랑스대사, 주 모리타니 겸임대사로서 신임장 제정

국교수립-페루, 1964.3.1

| 64-054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미주과
MF번호	C-4 / 20 / 1~87(87p)

한·페루 간 국교는 다음과 같이 수립됨.

1. 1963.2.28. 주브라질대사는 페루측으로부터 국교수립에 동의한다는 서한을 접수
* 최초의 외교사절은 페루의 관례에 따라 공사급으로 교환하기로 함.
2. 1963.12.7. 주브라질대사,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의하는 각서를 페루측에 전달
3. 1964.1.14. 주브라질대사, 외교사절 대사급 격상에 대한 페루측 동의 회신 접수
4. 1964.3.1. 대사급 격상에 대한 양국 공동성명을 서울과 리마에서 각각 발표

국교수립-우루과이, 1964.10.7

| 64-055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C-4 / 31 / 1~80(80p)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와의 국교수립에 관한 내용임.

1. 교섭 경위

- ※ 주미대사관은 주미국 우루과이대사관에 국교 수립을 희망하는 공한(1962.3.23.) 전달 및 교섭
- ※ 주미대사관은 주미국 우루과이대사관에 국교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안(1962.11.13.) 전달 및 교섭
- 84 ※ 주브라질대사의 국교수립 교섭차 우루과이 방문(1963.5.30.~6.5.) 및 교섭 결과보고
 -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며 공동성명서 발표문제는 우루과이 국가최고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할 것 이라 함.
 - 우루과이 외무장관에게 공동성명안 제시
 - 최초 공사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루과이 정부의 방침이며, 쌍방이 당분간 겸임으로 임명할 수 있음을 합의
- ※ 주브라질대사의 우루과이 방문(1963.10.29.~11.2.) 및 교섭 결과보고
 - 우루과이 외무장관은 한국, 터키, 알제리 및 나이지리아 4개국과 국교를 개설키로 방침을 정하고 국가최고회의에 상정 준비 중이며, 주일대사를 주한대사 겸임토록 할 계획 등 한국과의 국교수립에 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시사

2. 국교 수립

- ※ 우루과이 국가최고회의는 한국과의 국교수립 합의(1964.10.7.)
- ※ 국무회의는 우루과이공화국과의 국교수립 의결(1964.10.27.)

아랍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교섭

| 64-056 |

생산년도	1962-64
생산과	아중동과
MF번호	C-4 / 33 / 1~29(29p)

아랍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교섭 및 향후 방침에 관한 외무부 구미국 보고서 내용임

1. 아랍제국 중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국: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2. 미수교 아랍제국과의 교섭현황 및 향후방침

- ✧ 알제리
 -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및 북한 상주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음에 비추어 국교수립 교섭 중지
- ✧ 튀니지
 - 외교관계 수립교섭이 담보상태이나, 제18차 유엔총회시 우리나라에 유리한 태도를 취한 점을 감안하여 계속 추진
- ✧ 리비아
 - 외교관계 수립교섭이 담보상태이나, 친서방 색채가 농후한 나라이며 대만(구 자유중국)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 추진
- ✧ 수단
 - 1962.11.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이 이스라엘에 대사를 파견치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외교관계 수립은 회피적이나 무역 증진을 위한 총영사관 설치는 별 이의가 없다고 시사한 바 있으므로 우선 총영사관 설치 추진
- ✧ 레바논
 - 외교관계 수립교섭의 진전은 없으나 장차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하고 있고 정치적, 경제적인 교류의 필요성 및 북한의 대 쿠웨이트 침투공작 등을 감안하여 조속 추진
- ✧ 쿠웨이트
 - 외교관계 수립교섭의 진전은 없으나 장차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하고 있고 정치적, 경제적인 교류의 필요성 및 북한의 대 쿠웨이트 침투공작 등을 감안하여 조속 추진
- ✧ 이라크
 - 이라크 정부의 중립정책 고수로 외교관계 수립교섭에 진전이 없으나 북한 무역대표부의 활동이



미미한 점에 비추어 당분간 사태 관망

✧ 시리아

- 1962.7. 국교수립에 동의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단념한다는 각서 요구로 일단 좌절되었으나 계속 추진

✧ 예멘

- 1963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외교관계 교섭 대상이 되지 않으나 측면적으로 우리나라의 합법성을 인식시키도록 노력

86

3. 주카이로총영사관 존폐 문제

✧ 이집트는 1963.8.25. 종래의 분단국가 불승인 정책을 변경하여 북한과 대표부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이집트의 대 아랍 및 아프리카 영향력을 감안하고 동 지역에서 북한의 독무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승인의 효과 없는 영사관계만은 계속 유지함이 필요



국교수립-자유우방 및 중립국가

| 64-057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미주과
MF번호	C-4 / 34 / 1~186(186p)

1. 외무부는 1961.11월 자유우방 및 중립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이들 국가와의 유대를 공고히 하여 경제, 문화면의 상호교류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참전 16개국 가운데 아직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와 아·아블력을 위시한 중립국가 등에 대해 정식외교관계 수립 또는 영사관계를 맺도록 교섭하고, 1962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주 사절 3개국, 겸임 사절 38개국 파견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정함.
2. 외무부는 1961.12.9. 각 재외공관에 대한 훈령을 통해 대다수의 자유우방 및 중립국 제국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지시함.
 - ※ 주미대사관은 캐나다·멕시코·파나마 등 15개국, 주태국대사관은 라오스, 주월남대사관은 캄보디아, 주시드니총영사관은 뉴질랜드, 주터키대사관은 파키스탄·이란·이라크 등 7개국, 주이탈리아대사관은 리비아 등 3개국, 주독대사관은 오스트리아 등 2개국, 주영대사관은 나이지리아 등 2개국, 주프랑스대사관은 모리타니·세네갈·차드 등 10개국 등 총 9개 공관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 대상국은 모두 42개국에 달함.
3. 외무부는 신년도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리비아 및 나이지리아 3개국에 상주공관을 설치기로 1962.1.9. 결정함.
4. 1962.5.25. 현재 외교 및 영사관계가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하기로 합의한 국가는 총 42개국, 상주공관(대사관, 대표부 및 총영사관)이 설치된 수는 총 26개임. 1961.5.16. 혁명 당시 우리나라는 상주공관으로 대사관 10개, 대표부 3개, 총영사관 6개 등 총 19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겸임사절 파견국은 3개국이었음.
5. 대통령비서실은 1964.10.15. 대통령에게 제출한 대중립국 외교정책의 종합적 재검토 제하의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는 서독의 경우와 같은 할슈타인 원칙의 일률적 사용을 피할 것, 신생중립국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한국과의 관계는 case by case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할 것, 신생중립국과의 관계수립에 있어서 총영사관 설치방법을 견지할 것, 신생중립국에 파견되는 총영사는 정치력 있는 거물급 인사(대사급)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

재외공관 설치-Cairo(통일아랍공화국) 총영사관, 1962.4.25

| 64-058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구아과
MF번호	C-5 / 1 / 1~149(149p)

주카이로총영사관은 다음과 같이 개설됨.

1. 1961.9.26. 우리 정부, 통일아랍공화국(UAR/이집트)측에 영사관계 수립 제의
2. 1961.11.13. UAR 정부 동의
3. 1961.12.13. UAR측, 양국간 영사관계 수립되었음을 언론에 공표
4. 1961.12.14. 우리 정부도 언론에 발표
5. 1962.4.25. 주카이로총영사관 개설
6. 1963.8.25. 북한-통일아랍공화국 대리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우리 정부, 주카이로총영사관 존폐문제 검토
7. 1964.1.22. 주카이로총영사관 존속 잠정 결정

재외공관 설치-Hamburg(독일)출장소, 1964.8.13

| 64-059 |

생산년도	1958-64
생산과	구미과
MF번호	C-5 / 2 / 1~108(108p)

주독일 함부르크출장소 설치에 관한 내용임.

1. 주독공사의 대통령 앞 함부르크출장소 설치시 사무실 면적 및 임차료 등에 관한 보고(1958.2.)

2. 외무차관의 대통령 앞 함부르크출장소 설치 건의(1958.3./1958.6.)

- ※ 한·독 양국간 무역증대, 함부르크는 독일 및 유럽 최대 항구도시로서 독일 상공업 중심지, 수출 진흥차 함부르크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지도, 독일 각종 산업의 조사 업무 등

3. 외무부의 재무부 앞 함부르크출장소 설치시 소요예산(연 7,557불: 1958.7.)

4. 주독대사관의 함부르크총영사관 설치문제에 대한 보고(1963.4.26.)

- ※ 필요성: 양국간 무역증대 등
- ※ 계획: 공관의 성격, 관할구역, 공관 인원, 소요예산, 공관의 지위문제 및 대사관과의 업무 분장, 건의(1963.7.1 부터 총영사관 개설희망 등)

5. 주독대사관의 함부르크출장소 명칭문제에 대한 보고(1964.7.26.)

- ※ 주독대사관 함부르크출장소라는 명칭은 독일 국내법규 및 관례에 어긋나므로 실현 불가능
- ※ 국내적으로는 주독대사관 함부르크출장소 형식을 하되, 대외적으로는 영사관 또는 총영사관이라는 명칭을 가져야만 영사특권 향유 가능

6. 주독대사관의 함부르크 사무소 창설문제 보고(1964.8.5.)

- ※ 명칭, 관장 업무범위(영사업무, 상무 및 조달업무, 경제협력업무, 홍보문화업무 등), 예산관계, 영사인가장 관계 및 창설 일정

7. 함부르크 출장소 개설(1964.8.13.) 및 업무 개시(1964.8.24.)



8. 본부는 함부르크출장소의 명칭을 대외적으로 주함부르크대한민국영사관으로 결정(1964.8.17.)

9. 주독대사관, 독일 외무성에 주함부르크영사관 개설 통보 및 박창남 영사의 인가장 발급 신청 (1964.8.18.)

✻ 독일 외무성의 영사인가장 발급(1964.9.7.)

90

10. 재외공관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1964.8.22.)

11. 전 재외공관에 주함부르크영사관 개설 통보(1964.9.2.)

12. 주독대사관, 독일 외무성에 주함부르크영사관을 주함부르크총영사관(박창남 영사의 총영사 승진 이유)으로 명칭 변경 통보(1964.10.)



재외공관 설치-케냐, 1963.8.15(Nairobi 총영사관 개설) 및 1964.2.7(대사관 승격)

| 64-060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5 / 3 / 1~94(94p)

1. 외무부는 나이로비(케냐)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케냐 독립과 동시에 대사관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방침을 1963.3.30. 결정하였는바, 동 결정에 따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전영령 동부아프리카는 현재 주영대사관이 관할하고 있으나 거리관계와 동 대사관의 과중한 부담으로 실질적 외교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현 공관 배치의 지리적 균형을 고려하여 동 지역 내에 1개 공관을 개설할 방침을 정하고 우선 우간다를 후보국으로 추진한 바 있음.
- ✱ 그러나 우간다가 우리와의 외교관계 수립 공식 합의 직전에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사태번복에 주력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반면 북한 진출 저지를 위하여 동 지역 내 외교거점 확보의 필요성이 긴박해짐.
- ✱ 전영령 동부아프리카지역 중 나이로비는 최대도시이며, 상업, 경제, 문화적 중심지이며, 케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독립이 예상되어 대유엔 전략상 필요성 등을 감안함.

2. 외무부는 나이로비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안건을 각의에 상정하여 1963.6.21. 의결됨. 외무부는 1963.7.15. 주나이로비총영사에게 케냐가 1963.12.12. 완전 독립될 예정이므로, 독립 즉시 주나이로비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과, 주재국이 비동맹 중립을 표방하고 있어 장차 북한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 진출 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을 훈령함.

3. 외무부는 케냐국과 외교관계 수립 및 대사관 설치에 관한 안건을 각의에 상정하여 1963.11.22. 의결됨.

4. 케냐 정부는 1964.1.23. 한국과의 정식 국교 수립 및 주케냐한국대사관 설치 동의에 관한 정식 공한을 주케냐대사관에 송부함.

주한공관 설치-이스라엘, 1964.8.28

| 64-061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5 / 10 / 1~23(23p)

주한이스라엘 공관 설치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이스라엘 상주공관 설치문제에 관한 검토 보고서(1964.8.25.)

- ✧ 이스라엘 개요, 역사 및 대 아랍 관계
- ✧ 우리나라의 대 아랍제국 관계
 - 아랍제국의 중요성
 - 아랍제국에 대한 정책
- ✧ 이스라엘의 대 아프리카 관계 및 대외 무역관계
- ✧ 한 · 이스라엘 관계
 - 대한민국 수립 당시부터 한국을 지지해 준 우방국가로서 한국동란시에는 17만불 상당의 의약품 을 원조
 - 구주지역 친선사절단(단장: 김용식 주영대사)의 동 국 방문시 국교수립과 통상 및 문화 교류 제 의 및 합의(1961.7.10.~12.)
 - 이스라엘 외무성 아시아국장 친선방한(1962.2.21.)
 - 겸임대사 교환에 관한 정식 국교수립 합의(1962.4.9.) 및 주일 야코브 쉬모니 이스라엘대사 신임 장 제정(1962.5.23.)
 - 미국 아이젠버그 상사 한국주재 벤토크만 지배인이 주한이스라엘 명예영사로 임명(1963.1.27.)
 - 주일 몰데카이 쉐나슨 이스라엘대사 제2대 주한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1964.1.17.)
- ✧ 주한이스라엘 상주공관 설치시 장 · 단점
 - 주한이스라엘 상주공관 설치가 우리나라의 대외관계나 통상에 있어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겸임대사를 접수하고 있는 지금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타당한 구실을 내세울 수 없 으며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금번 이스라엘이 상주공관 을 설치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음.

2. 주한 이스라엘 상주공관 개설(1964.8.28.) 및 Evi Redar 대사대리 부임



3. 외무부, 전 재외공관에 주한이스라엘 상주공관 설치에 관한 훈령(1964.8.31.)

- ✪ 본부는 아랍제국과 이스라엘과의 적대관계를 고려하여 그간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설치에 관한 이스라엘측 요청을 회피 및 지연시켜 왔으나 1962.4.9. 이래 이미 양국간에는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또한 주일이스라엘대사가 주한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절차상 주한이스라엘 공관 개설을 더 이상 회피 내지 반대할 수 없었음.
- ✪ 이 점 유의, 향후 아랍인사 접촉시 비공산국가와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기본방침이며 금번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설치문제는 양국간 합의된 원칙을 절차상 시행하였음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계속 아랍제국과의 우호증진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아랍제국의 오해를 불식토록 노력 바람.

주한공관 설치-말레이시아, 1964.3.31

| 64-062 |

생산년도	1959-64
생 산 과	동남아주과
MF번호	C-5 / 11 / 1~57(57p)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설치됨.

1. 1960.2.23. 상주공관 설치 및 겸임대사 교환에 관한 양국 공동성명 발표
2. 1962.11.16. 말레이시아 외무성,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한대사관을 설치할 계획을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통보
3. 1963.1.14. 주말레이시아대사, Rahman 말레이시아 수상에게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 요청
4. 1964.1.2. 말레이시아 외무성 Lim Taik Choon 총무국장, 공관설치 준비 목적으로 서울 방문
5. 1964.3.14. Dato Ismail 주한말레이시아대사 임명

아랍정상회담, 제1-2차

| 64-063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아중동과
MF번호	C-5 / 14 / 1~94(9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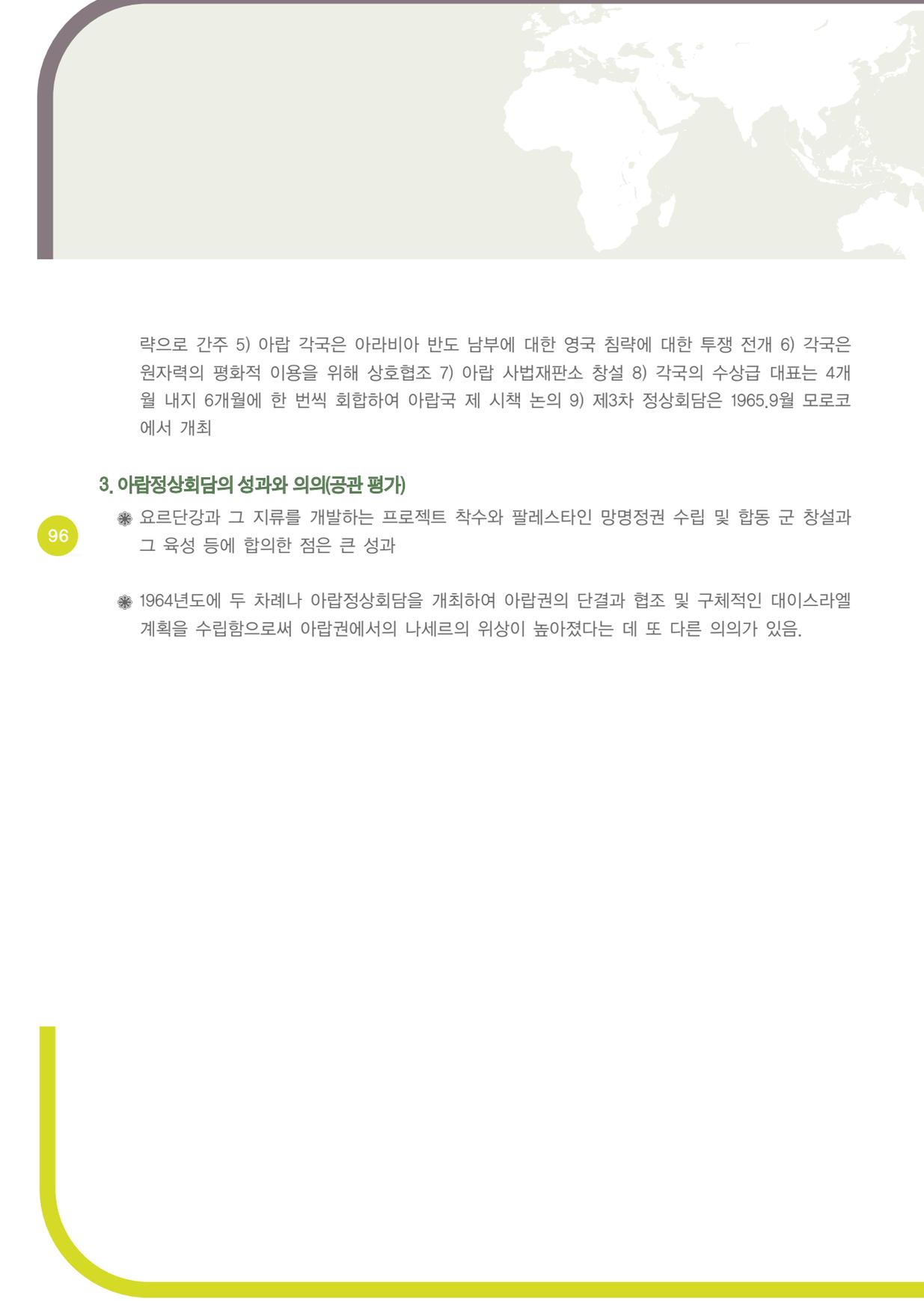
주카이로총영사관이 아랍정상회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한 주간 정세보고서임.

1. 제1차 아랍정상회담(1964.1.13.~16. 카이로)

- ✿ 참가국: 13개 아랍연맹 가맹국
- 알제리,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수단, 예멘, 튀니지, 시리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집트
- ✿ 개최 경유: 나세르 아랍 대통령은 1963.12.23. '수에즈(Suez)전쟁' 전승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Port Said에서 거행된 기념식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요르단강의 흐름을 획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카이로에서 아랍정상회담 개최 제의
- ✿ 주요 의결 사항
1) 아랍제국의 화합을 위하여 상호 비방공세 중지 2) 아랍제국은 요르단강 수로변경을 위한 아랍측 공사계획 추진 3) 수로 공사비는 이집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알제리 및 시리아 각국이 분할 거출 4) 이집트군 참모총장을 아랍통합군 총사령관 임명 5) 아랍제국 외상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세계 각 대륙을 순방하여 아랍제국의 대 이스라엘 입장에 관한 여론 환기 6) 아랍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며, 1964년 8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2차 정상회담 개최 7) 팔레스타인의 실지회복 노력 전폭 지지 8) 1955년 반동회의 이래의 아·아 인민의 결속 공고화 등 11개 사항

제2차 아랍정상회담(1964.9.5.~11. 알렉산드리아)

- ✿ 참가국: 13개 아랍연맹 가맹국
- ✿ 주요 의제
1) 요르단강과 그 지류의 개발 2) 아랍 통합군 사령부 문제 3) 팔레스타인 문제 4)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획득을 위한 아랍 외상들의 세계 각국 순방계획 5) 팔레스타인 점령하의 남부와 오만 문제 6) 경제문화 및 정보협정 체결문제
- ✿ 공동 성명서
1) 요르단강 지류 공사 즉각 착수 2) 팔레스타인 해방군 조직 착수 3) 아랍 각 지역과 키프로스 주둔 외국군 기지 철수 요구 4) 아랍의 한 국가에 대한 제3국의 침략은 아랍국 전체에 대한 침



략으로 간주 5) 아랍 각국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대한 영국 침략에 대한 투쟁 전개 6) 각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상호협조 7) 아랍 사법재판소 창설 8) 각국의 수상급 대표는 4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회합하여 아랍국 제 시책 논의 9) 제3차 정상회담은 1965.9월 모로코에서 개최

3. 아랍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공관 평가)

96

- ✧ 요르단강과 그 지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착수와 팔레스타인 망명정권 수립 및 합동 군 창설과 그 육성 등에 합의한 점은 큰 성과
- ✧ 1964년도에 두 차례나 아랍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아랍권의 단결과 협조 및 구체적인 대이스라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랍권에서의 나세르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음.

UAM(아프리카·말라가시연맹) 국가원수회의 개최 및 동기구 해체

| 64-064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아프리카과
MF번호	C-5 / 15 / 1~99(99p)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 연맹(UAM) 국가원수회의 개최 및 해체 경위는 다음과 같음.

1. 1962.9.9.~13. 가봉 개최

2. 1963년

- ※ 1차회의: 3.10.~15. 부르키나파소(구 어퍼볼타) 개최
- ※ 2차회의(외상회의): 7.22.~26.

3. 1964년

- ※ 1차회의: 1.15. 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 개최
- ※ 2차회의: 3.7.~10. 세네갈 개최
- UAM의 정치활동을 지양하고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 경제협조 연맹으로 개편하기로 결의

OAU정상회담, 제1차. Cairo(통일아랍공화국), 1964.7.17-21

| 64-065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5 / 17 / 1~165(165p)

98

1. OAU(아프리카통합기구) 제2차 외상회의가 1964.2.24.~28.간 나이지리아의 Lagos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회의에서는 소말리아이디오피아 국경분쟁, 케냐-소말리아 국경문제, 아프리카 공동방위체 문제, 알제리-모로코간의 문제 등 아프리카의 현안문제를 협의함.
2. OAU 제2차 정상회담이 1964.7.17.~21.간 Cairo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에 앞서 OAU 제3차 외상회의가 7.13.부터 개최되어 OAU 정상회담시 논의될 토의 의제 등에 관해 사전 협의를 행함.
3. OAU 제2차 정상회담 시 토의된 의제는 Apartheid 문제, 남로데시아 문제, 가나의 Union Government of Africa 안, OAU 사무국 선출, 차기 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 등임.
4. OAU 정상회담은 7.21. 폐막시 아프리카대륙의 백인 지배 지역의 해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강경조치를 취할 것을 골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이를 코뮈니케 형식으로 발표함.
 - ※ 남아공화국에 대하여 석유 산출국은 석유 공급을 즉각 중지하고 남아공에서 체포된 흑인 민족주의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며, OAU 사무국 내에 남아공 제재 추진을 위한 상설기관을 설치함.
 - ※ 남아공을 목적지로 비행, 항해하는 모든 비행기, 선박에 대한 자국의 공항, 항만의 사용 금지
 - ※ 남로데시아의 일반적 독립선언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함.
 - ※ 앙골라 및 모잠비크에 대하여 독립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모로코 정부 태도 비난
5. 정상회담 의제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아프리카 통일문제는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OAU 내에 통합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치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통과됨. 차기 정상회담은 가나의 Accra에서 개최기로 함.
6. 외무부 구미국 아중동과가 1964.7.28. 작성한 OAU 제2차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정상회담 기간 중 참가국간의 견해 차이가 노골적으로 표면화된 점을 감안할 때 상기 참가국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분석함.

아·아인민단결기구(Afro-Asian People's Solidarity Organization) 회의

| 64-066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5 / 18 / 1~38(38p)

아·아인민단결기구(Afro-Asian People's Solidarity Organization) 관련 회의가 1961~64년간 다음과 같이 개최됨.

1. 제3차 전아프리카 인민회의(All-African People's Congress: 1961.3.26.~30, 카이로)

- ※ 34개국이 참가하여 주로 아프리카의 연합문제를 협의함.
- ※ 참가국들로부터 아프리카를 위한 유엔의 역할에 대한 불만과 반미적인 주장이 표출되었으며, 서구의 원조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함. 대회 기간 중 자유기금의 창설이 선언되었으며, 아프리카 독립국가들이 아직도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 주장이 제기됨.
- ※ 알제리 및 콩고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도 거론됨.

2. 제3차 아·아인민단결회의(Afro-Asian People's Solidarity Conference: 1963.2.4.~11, 탕가니카 Moshi)

- ※ 65개국 아·아제국 대표 약 400명이 참석
- ※ 인도가 제의한 인도·중국(구 중공)간 국경분쟁에 관한 콜롬보회의 결의안에 대하여 중국(구 중공)측이 무조건 수락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논쟁적이라는 이유로 의제에서 삭제되어 인도 대표가 퇴장함.
- ※ 북한대표는 시종일관 중국(구 중공) 입장을 지지하였고, 남한에서의 미군철수 결의안을 제출, 통과시킴.

3. 제7차 아·아인민단결기구 집행위원회(1964.12월, 케냐 나이로비)

- ※ 알제리, 콩고, 카메룬, 이라크, 인도네시아, 소련, 중국(구 중공) 등 30개국 참가
- ※ 당초 집행위원회가 우간다의 Kampala에서 1964.10월경 개최 예정이었으나 우간다 정부의 개최 거절로 회의 개최지를 나이로비로 변경하여 1964.12월에 개최기로 함.
- ※ 외무부는 동 집행위원회에 북한 대표단 참가시도 경우 케냐 정부가 입국을 허용치 않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케냐대사대리에게 1964.12.16. 훈령함.

신생독립국 승인-몰타

| 64-067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C-5 / 27 / 1~30(30p)

1. 우리 정부는 몰타국 독립일(1964.9.21.)에 총리 및 외무부 장관 명의의 축전과 동 국 승인에 관한 전문을 몰타국에 타전함.
2. 9.21. 차관회의 및 9.25. 국무회의에서 몰타국 승인을 결정함.

Johnson, Lyndon B. 미국 대통령 메시지

| 64-068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미주과
MF번호	C3-1 / 1 / 1~34(34p)

존슨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와 이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회한임.

1. 박정희 대통령 취임축하 메시지(1963.12.16)

- ✱ 취임 축하와 아울러 기존 한·미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

2. 박정희 대통령의 존슨 미국 대통령 앞 회한(1963.12.28)

- ✱ 대통령 취임에 따른 서한 송부와 취임식 참석을 위한 번즈 하와이주지사 및 버거 주한 미국대사의 특사 파견에 대한 사의 표명
- ✱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반공태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국의 현 실정상 한국민의 인내와 노력만으로는 용이치 않으므로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3. 맥아더 장군의 서거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 앞 메시지(1964.4.16)

- ✱ 맥아더 장군의 유가족에 대한 조의 및 최두순 총리를 단장으로 한 조문사절단 파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4. 베트남(구 월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 앞 메시지(1964.8.5)

- ✱ 공산월맹이 통킹만에서 미국군함에 대한 불법공격의 재발을 계기로 하여 단호한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된데 대한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서(1964.8.4.)와 아울러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각하는 동의하리라는 메시지 송부
- ✱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 회한 및 Press Release 발표(1964.8.6.)

5. 한·일관계 정상화 촉구를 위한 메시지(1964.8.18)

- ✱ 한·일관계 정상화는 한국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극동의 자유우방국에도 기여할 것임.
- ✱ 미국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으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정상화로 인하여 미국의 지원이 더욱 성과를 가져올 것임.

10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속개 제6차 한·일 본회담(1964.3.12-4월) 문화재소위원회 회의, 제1차

| 64-069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Re-9 / 10 / 1~13(13p)

1. 제6차 한일본회담 문화재소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1964.3.21, 10:00~10:40간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바, 양측 참석자는 다음과 같음.

- ※ 한국측: 이흥직 대표, 황수영 대표, 신동원 서기관, 우문기 보좌
- ※ 일본측: 하리가이 대표, 마에다 북동아과장, 모리다 보좌, 구리하라 보좌

102

2. 제1차 회의 주요 진행 내용

- ※ 전례에 따라 회의진행은 예비절충에서의 토의결과를 토대로 함.
- ※ 우리측은 일측에 대하여 반환품목의 구체적 목록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일측은 회의의 전반적인 진행상황, 특히 농상회담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목록을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일측의 '문화협력의 정서' 형식에 의한 해결방안 토의를 주장함.
- ※ 다음 회의 일자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속개 제6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 64-070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아주과
MF번호	Re-9 / 9 / 1-66(66p)

1. 제6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가 1964.4.23. 및 5.8.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양측 회의 참석자

- 한국측: 이문용 대표, 최광수 주일대표부 정무과장 등 4명
- 일본측: 히로세 다쓰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마에다 도시가스 북동아 과장 등 4명

※ 1, 2차 회의 주요 논의 사항

(제1차 회담)

- 우리측은 10여 년 만에 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음을 회고하고, 우리측 입장은 1957.12.31.자 합의 의사록 및 1962.12.21.자 우리 정부의 제시문서에 표시된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조약의 형식은 기본관계의 성격과 국민감정에 비추어 기본조약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일측은 한일회담의 양상이 그간 많이 변동하였으므로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공동성명의 형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동선언의 내용은 각 현안에 대한 구체적 규정보다는 양국의 기본관계 수립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함.

(제2차 회담)

- 우리측은 기본관계를 (가) 청구권, 어업 등 각 현안을 협정의 형식으로 타결할 것을 고려 중이므로 균형상 조약 형식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나) 한일회담은 과거 청산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선언 형식보다 조약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 일측은 우리측 입장에 대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반복함.

2. 본 문건에는 외무부가 작성한 한일기본조약 시안이 첨부되어 있음.

제6차 한·일회담. 대표단 임면관계

| 64-071 |

생산년도	1961-64
생산과	아주과
MF번호	Re-6 / 1 / 1~211(211p)

제6차 한일회담(1961~64년) 주요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음.

1. 1961.10.20. 개최 회의 대표단

- ※ 수석대표: 배의환 전 한국은행 총재
- ※ 차석대표: 이동환 주일 공사
- ※ 고문: 이한기 최고회의 의장고문, 서울법대 교수
- ※ 대표: 김윤근 변호사, 이천상 변호사, 김재원 국립박물관장, 고범준 한은 부총재, 이흥직 고대교수, 황수영 동국대 교수, 지철근 한국수산중앙회 고문, 홍승희 산업은행 이사, 이상덕 한은 참사, 정태섭 변호사, 정일영 외무장관 자문위원, 최영택 주일 참사관, 전상진 외무부 정무국장, 이규성 외무부 통상국장 외 5명

2. 1964.5.2. 박 대통령은 한일회담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타결할 목적으로 수석대표 및 교체수석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함.

- ※ 수석대표: 김용식 외무장관
- ※ 교체 수석대표: 배의환 주일대사, 최규하 대사

3. 재일 한인 법적지위 위원회에 민단 고문 임명

- ※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재일 한인의 희망사항 전달 및 건의
- ※ 재일 한인에 대한 홍보
- ※ 대표단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회합에 참석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소위원회

| 64-072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6 / 6 / 1~151(151p)

1.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

※ 문화재소위원회

- 1961.10.31.~1962.2.28.간 7차에 걸쳐 회의 개최
- 양측 참석자
한국측: 이동환 수석위원, 이홍직 위원, 황수영 위원, 정일영 위원 등 7명
일본측: 이세키 외무성 아세아국장, 우라베 외무참사관, 사꾸라이 대장성 이재국 외채과장, 마에다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7명

※ 전문가회의

- 1961.11.17.~12.21.간 6차에 걸쳐 회의 개최
- 양측 참석자
한국측: 이홍직 대표, 황수영 대표, 박상두 위원, 김태지 보좌 등 3~4명
일본측: 마쓰시다 문부성 문화재보호위원회 공예과장, 사또우 동 위원회 보좌관, 마에다 북동아과장 등 3~4명

2. 상기 문화재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양측의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음.

※ 한국측

- 1905년 이후 일본에 반출된 한국 문화재는 일본이 부당, 불법한 수단으로 토굴, 반출해 간 문화재 이므로 한국측이 제출한 목록에 의하여(일본의 국유, 사유 막론하고) 현품으로 한국에 '인도'(turn over)라는 명목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문화협력 교류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이를 한일간 현안문제의 하나로서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부시킬 것은 아니므로 이는 국교정상화 후 한일간 제반실정을 참작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 일본측

- 한국측이 요구하는 문화재에 대한 일본의 반환의무 또는 한국의 요구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
- 그러나 장래 양국의 국교정상화가 실현될 경우 양국간의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일본측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국유문화재 기증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식으로 문화협정에 관한 의정서 요강(안)을 제출한다.

- ※ 전문가회의시 한국측은 소네본, 데라우찌문고, 통감본 등 9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일측은 대부분 소재불명 또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함.

제6차 한·일회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관계회의, 1961.10-64.3

| 64-073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6 / 7 / 1~428(428p)

제6차 한일회담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관계회의가 1961.10월~1963.3월간 동경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됨.

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가 1961.10.27.~1962.3.7.간 4차에 걸쳐 개최되었는바,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주요 논의 의제는 재일한인의 영주권의 범위 및 부여방법, 영주권자 귀화문제, 퇴거강제문제, 재산반출, 국적확인 등임.
- ※ 우리측은 종전 당시부터 일본 계속 거주자, 협정 체결 당시까지 출생한 그 자손 및 협정 체결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출생하는 자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해 일측은 퇴거강제대상을 넓히면 영주권 부여 범위도 넓히고 퇴거대상이 좁아지면 영주권 범위도 좁아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

2.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에서 법적지위관련 한일 양측의 합의 및 미합의점에 대한 대사작업이 1962.8월~10월간 개최됨.

- ※ 원칙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종전부터 거주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영주허가 신청기간, 양국의 국교친선을 해하는 자 및 마약범의 퇴거강제, 재일한국인 자손에 대한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기회 부여, 극빈자에 대한 생활보호,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등임.
- ※ 양측간에 미합의된 내용은 종전 이후 출생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영주권 부여방법, 강제퇴거 사유 중 흉악범의 범위정도, 재산권 및 직업권, 재일한국인학교의 정규학교 인정, 영주귀국자의 재산 환금 반출범위, 국적확인 방법, 극빈귀국자에 대한 보조금 지불 등임.

3.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이 1962.10.5.~1964.3.10.간 40차에 걸쳐 개최됨. 대통령비서실은 1964.4.9.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한일 양측간의 주요 미합의 사항은 영주권을 취득할 한국인의 자손에 관한 문제(우리측은 영주권 자동부여, 일측은 20세 도달 시 심사 후 부여 입장), 종전 후 밀입국자 취급,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내국민 처우 문제 등이라고 보고하면서, 법적지위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건의함.

4. 재일한국인 영주권자의 퇴거강제문제를 협의하는 전문가회의가 1963.2.22.~12.13.간 12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빈곤, 질병자 등 퇴거강제 대상자 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의 차이로 합의에 달하지 못함.

속개 제6차 한·일회담. [재일한인]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록, 1-3차, 1964.4.22-5.14

| 64-074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9 / 11 / 1~127(127p)

제6차 한일회담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차 회의(4.22)

- ※ 우리측이 협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일측은 우리측 안을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서 일측 입장을 밝히겠다고 함.

2. 제2차 회의(5.6) 협의내용

- ※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 ※ 영주권자의 범위
- ※ 영주 신청 절차
- ※ 퇴거 강제 사유
- ※ 영주권자 자손의 범위

3. 제3차 회의(5.14.)

- ※ 일측은 우리측 안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
 - 본국으로부터 동 위원회에서 토의되어 온 것보다 후퇴하는 안을 다시 제시하지 않겠다는 교섭 태도의 보장
 - 지난번의 한국측 안은 일측으로서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안이니 다시 검토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 하겠다는 명확한 회답이 없으면 토의에 응할 수 없음.
- ※ 대표단의 본국 보고내용
 - 일측은 과거 우리측과 합의하였던 '나' 항까지 금번 우리측이 제출한 안에서 반복되어 있다는 이유로 우리측을 불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바, 우리측이 즉각적으로 수정안을 낼 수도 없는 상황 이므로 감정이 완화될 때까지 당분간 회의를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속개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회합) 1-21차, 1964.3.26-11.5

| 64-075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9 / 12 / 1~231(231p)

1.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가 1964.3.26.~11.5.간 21차에 걸쳐 동경에서 개최되어 어업협력문제, 청구권 문제, 문화재 반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등 한일회담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회담 전반의 진행을 촉진하는 방안을 협의함.

※ 우리측에서는 배익환 수석대표, 김정령 대표 등 3명, 일측에서는 미찌스께 수석대표, 도-루 대사, 도라오 아세아 국장 등 4명이 참석함.

108

2. 우리 정부는 1964.5.14. 제5차 회의 시 일측에 어업각료회담을 재개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계기로 청구권 문제 및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위원회를 재개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측과 합의하도록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 일측은 어업각료회담을 계기로 어업문제의 대체적인 타결을 한 후에 각 현안 문제의 토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우리측은 동 회의 시 일본 어선의 평화선 계속 침범 및 일 순시선의 한국 근해 접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일측은 비록 영해 침범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선을 연행한 것은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항의함.

3. 일측은 1964.6.11. 제8차 회의 시 한국에서의 계엄령 선포 등 새로운 사태의 발전에 구애됨이 없이 조속히 회담을 타결시킨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국측이 실질적 토의를 제외하면 언제라도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우리측은 6.24. 개최된 제9차 회의 시 우리 정부도 조기 타결의 기본태도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일회담과는 별도로 무역불균형의 시정 및 무역증진 등 한일경제관계의 개선을 통한 분위기 조성 필요성을 강조함.

4. 우리측은 1964.9.17. 개최된 제17차 회의 시 일어선의 평화선 집단 침범 계속에 대해 엄중 항의함. 일측은 최근 언론이 어선나포와 2,000만불의 원자재 연불 도입문제를 결부하는 것 같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전혀 일정부의 의도와 다르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함. 양측은 동 회의 시 청구권과 관련 없는 순수한 민간차관으로서의 플랜트 도입문제, 재한일상사원에 대한 과세문제 등을 협의함.

5. 1964.11.5.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일측은 나포된 일어선 및 어부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한일회담 재개는 신내각의 결정을 보아야 구체적 개시 일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임.

제6차 한·일회담(1961.10.20-64.4)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록, 1963.4-64.1

| 64-076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8 / 1 / 1-262(262p)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을 위한 제21차~제42차 어업관계회의가 1963.4.18.~1964.1.10.간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리측 대표단은 최세황 대표 외 4~5명이며, 일측 대표단은 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주사 외 5명임)

1. 1963.5.23. 개최된 제22차 회의시 우리측은 한일간에 어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서 양국간 어업 능력의 현격한 차이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중요 관심사항은 영세한 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가져오는 실질적으로 공평한 협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임을 강조함. 이에 대해 일측은 전관수역을 인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평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12마일 전관수역을 제안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측 입장에 대한 조속한 회답을 촉구함.

2. 일측은 7.16. 개최된 제31차 회의 시 한국측이 제안한 기선에는 직선의 길이가 80마일 이상에 달하는 것이 있으나 이는 제네바조약의 취지에 어긋나며 기선은 현실적으로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한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기선은 국제법의 원칙과 관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안국이 자주적으로 확정 선포하며 인접국과 협의하여 정할 문제가 아니나 한일간의 차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측과 협의하려는 것이라고 대응함. 한편, 어업협력문제와 관련 우리측이 1억 7,800만불을 제시한 데 대해 일측은 일본 어업에 관련된 국내 지불이 3천만불인데 외국원조에 그 이상 지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임.

3. 한일 양측은 9.22.~30.간 3차에 걸쳐 비공식 절충을 가졌는바, 우리측이 모든 규제방법과 협력문제가 만족하게 합의된다면 전관수역에 관하여 40마일안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니 일측에서 규제안을 만들어 그것을 중심으로 공동작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일측이 이에 동의함.

4. 주일대표부는 1963.12.4. 일측과의 어업교섭 관련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외무부에 건의함.

- ☼ 전관수역문제: 기선으로부터 12마일 해역 인정. 단, 측정 기준선이 되는 기선문제, 전관수역 외측에서의 어업규제문제 및 어업협력문제가 우리측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어야 함.
- ☼ 기선문제: 1차적으로는 현재 일본에 제시하고 있는 선에 의함. 그러나 어업규제 및 어업협력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유리한 타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최저선의 재검토는 필요함.

※ 어업협력문제: 금액은 1억7,800만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114,052,000불을 확보하도록 함.

5. 주일대표부는 1964.1.10. 개최된 제42차 어업관계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조치에 관한 양측 입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규제문제 토의 시 어업자원의 보호, 연안 어민의 권익 보호, 한국어업의 근대화 3대 목표가 다 같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할 것임과 지금까지 일측이 밝힌 한국의 신흥 수산국으로서의 입장 등을 일측으로 하여금 재확인토록 하겠다고 1964.1.13. 외무부에 보고함.



속개 제6차 한·일회담. 농상회담(어업관계). 동경, 1964.3.10-4.6

| 64-077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아주과
MF번호	Re-9 / 13-14 / 1-446(446p)

한일 어업 각료회담의 경과 및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회담 경과

- ※ 1964.3.10.~4.6.간 12차에 걸쳐 열렸으며, 2차부터 11차 회담까지는 원용석 농림장관과 아까기 일본 농림대신 간의 양자회담(2~3명 소수인원 동석)으로 진행됨.

2. 주요 협의내용

- ※ 전관수역 문제
 - 전관수역 12마일에 관하여 우리측은 언급을 회피하려 하였고 일측은 명확한 언질을 받으려 했음.
- ※ 기선 문제
 - 협의 사항: 동해안 및 서해안 기선
 - 입장 대립: 제주도 주변, 홍도-상백도 간 기선, 소흑산, 대흑산 군도, 북한의 기선 문제
- ※ 규제수역의 획정 및 규제내용
 - 규제수역에 관하여 A, B, C, D의 4개 수역은 확정시킴.
- ※ 어업협력 문제
 - 협력 금액에 있어서 우리측은 일측의 양보를 촉구하는 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 11,400백만불을 제시하였고 일측은 7,000만불을 공식적으로 제시함.
- ※ 기타
 -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협정 위반의 단속, 감시 및 재판 관할권, 협정 해석상의 문제처리 등 절차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양측이 각각 문서로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토의에는 들어가지 못함.

속개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개최를 위한 예비교섭(최규하 본부대사 방일접촉보고) 및 본회의, 1963.6-64.3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9 / 8 / 1~139(139p)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1964.3.12.) 개최를 위한 최규하 본부대사의 예비교섭과 본회의 개최 관련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최규하 대사(최고회의 의장 고문직 겸임)의 방일 접촉 활동

가. 일본측 접촉 인사 및 활동

- ※ 접촉 인사: 시마 외무차관, 오히라 외상, 스키 수석대표, 나카가와 조약국장, 우시로구 아세아국장, 오오노 자민당 부총재, 다나카, 기다시와, 이시이, 우나다 자민당의원, 시게마사 농림상, 우에무라 일한경제협의회 회장, 아다찌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기시 전총리 등

※ 주요 활동

- 한국 정부의 한일회담 조기 타결 희망과 조기 타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공동노력 촉구
- 청구권 문제, 어업문제, 경제협력문제 병행해결 희망과 어업문제는 대일 평화조약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어업협정(1. 공해에 있어서의 어족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또는 제한조치와 보호조치 및 개발조치, 2. 한국어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조, 어산물 수출증진, 어업협력, 3. 한일 양국 어민의 상호이익 모색, 4. 청구권과는 별도의 어업협력자금 고려 등) 체결 필요성 강조
- 독도의 회담의제 불가 및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반대 입장 설명
- 한일회담 현안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정치회담 개최문제 타진
- 어업에 관한 각료회담(1964.3.10.) 및 예비 절충회의(1964.3.12.)를 본회담으로 전환 합의 등

나. 주일미국대사관측 접촉 인사 및 활동

- ※ 접촉 인사: 라이샤와 대사, Emmerson 공사, Farringham 및 Smith 서기관 등

※ 주요 활동

- 한국측의 한일 회담 조기타결 입장과 일본측의 반응 설명
- 청구권 문제, 어업문제 등 한일회담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설명과 이에 대한 미측의 협조요청 등

다. 일본 체류기간(1963.11.1.~12.) 중의 관찰보고(일본의 국내정세, 한일회담에 대한 일본측 태도, 전망)



2. 본 회의

- ✿ 개최 일시 및 장소: 1964.3.12. 일본 외무성

- ✿ 양측 대표단
 - 한국측: 배의환 주일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
 - 일본측: 스기 수석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 ✿ 회의 내용: 양측 수석대표의 인사말, 대표단 소개, 회의 진행방법 합의 등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1962.6-64.3. 전5권 v.1 1962.6-12

| 64-079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7 / 6 / 1~264(264p)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어업문제 회의는 1962.10.5.(1차)~12.27.(10차)간 개최되어 협정안을 협의하였으며, 마지막 회의인 제10차 회의에서의 양측 주요입장 및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일측 대표의 모두발언 요지

- ※ 전날 개최된 청구권문제 회의에서 대폭적 진전이 있었던 듯함. 어업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솔직한 이야기가 없었으나 마침내 본질적인 토의가 가능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됨.

114

2. 우리 대표의 모두발언 요지

- ※ 일측 안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이미 여러 번 표명하였거니와 현재의 일측 안은 1958.11.28.에 제시된 일측 안보다도 후퇴하였는데 이에 대한 일측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됨.

3. 일측 입장: 일측으로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음

- ※ 평화선과 같은 선을 설치하는 것
- ※ 관할수역(12마일)에 관한 생각
- ※ 공해상의 규제는 과학적 조사 후에 한다는 것
- ※ 공해상의 자원 보존은 공동입장에서 함
단, '다' 항에 관하여는 조사 후에 시정할 수 있다면 공해상의 규제 선행도 연구해 볼 수 있음

4. 우리측 입장

- ※ 공해상의 규제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 연안국의 특수이익을 인정해야 함
- ※ 어업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함
- ※ 분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기해야 함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1962.6-64.3. 전5권 v.2 1963.2-5

| 64-080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7 / 7 / 1~347(347p)

1. 제6차 한일회담 기간 중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가 1963.2.6.(11차)~5.30.(23차)간 개최됨.

2. 제11차~22차 회의에서 협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과거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점 검토
- ✿ 양국의 어종별 어획량 설명
- ✿ 어민대표 시찰, 자원 공동조사
- ✿ 자원의 보존, 전관수역, 어업협력의 내용

3. 마지막 회의인 제23차 회의에서 제기된 양측의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음.

- ✿ 우리측 입장
 - 어업협력 안의 구체적 설명이 없으면 전관수역에 관한 아측 안도 tough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
- ✿ 일측 입장
 - 어업협력 안에 관하여 일측은 전관수역이 결정되지 않으면 불만족한 안밖에 제시하지 못할 것임을 반복하여 주장
 - 일측은 협력안을 선결하는 경우 전관수역 결정시에 bargain 자료가 될 것을 우려하고, 협력안 제시 전에 실무자 간 비공식 회합으로 의견조절을 할 것을 제의함.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1962.6-64.3. 전5권 v.3 1963.6-9

| 64-081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7 / 8 / 1~342(342p)

1. 제6차 한일회담 기간 중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 회의는 1963.6.7.(제24차)~9.27.(제36차)까지 진행되었으며, 협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전관수역 문제
- ※ 전관수역 외측에서의 공동규제 문제
- ※ 직선기선 문제
- ※ 어업협력 문제 등

2. 상기 마지막 회의인 제36차 회의 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어업문제에 관한 한국 여론
 - 한국측은 어업문제에 관한 국내 여론이 강경한바, 그 이유는 역사적 국민감정, 한국어업의 열세로 인한 위협감이라고 말하고 이 위협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 ※ 타결의 시기
 - 일측은 타결의 대강을 정할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문의한바, 한국측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 일본의 국회 해산 전에 타결을 보고 싶다고 말함.
- ※ 전관수역
 - 일측이 전관수역을 12마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바, 한국측은 한국 어민의 권익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시안으로 토의해도 좋으며 그것이 된다면 40마일 전관수역을 반드시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함.
- ※ 일본어선 나포
 - 일측이 당일에도 일 어선 2척이 나포되어 콜레라 발생지역으로 연행해 간 데 대하여 일본 어민이 분격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한국측은 일측의 요망을 본국에 보고하겠으며 현 시기에 일측이 자숙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함.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1962.6-64.3. 전5권 v.4 1963.10-64.1

| 64-082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7 / 9 / 1~378(378p)

1. 제6차 한일회담 기간 중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는 1963.10.4.(제37차)~1964.1.10.(제42차)까지 진행되었으며, 협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직선기선 문제
- ✿ 전관수역 문제
- ✿ 어업규제 문제
- ✿ 어업협력 문제 등

2. 상기 제42차 회의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어업규제 및 어업협력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은 다음과 같음.

- ✿ 어업규제 문제
 - 우리측은 각 규제수역 별로 일측의 각 어업별 실적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일측에게 구체적인 과거 어획실적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 일측은 어획량에 의한 실적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각 어기별로 최고척수와 최저척수를 규정하는 방법을 시사함.
- ✿ 어업협력 금액
 - 일측은 정치회담에서 금액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비공식으로 5천만불 또는 1억불이면 가능하다는 견해를 비쳤음.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1962.6-64.3. 전5권 v.5 1964.2-3

| 64-083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7 / 10 / 1~246(246p)

제6차 한일회담 기간 중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의 주요 협의내용 및 '스즈끼 시안'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어업 고위회담 및 전문가 회의(1964.2.3.~3.7.) 주요 협의내용

- ※ 전관수역(제주도 문제를 포함한 직선기선 문제)
- ※ 전관수역 외측 규제수역의 확정 및 규제 내용
- ※ 어업협력의 금액 조건
- ※ 공동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스즈끼 시안 요지(1964.2.21. 장기영-스즈끼 젠코 면담시 일측 제시)

- ※ 어업문제가 가장 큰 난관인바, 막후 교섭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본 시안의 목적임.
- ※ 동 시안에 대하여 한국의 대통령이하 고위층에서 동의한다면 본인도 일본의 수상이하 고위층에 압력을 가하여 결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렇게 되면 어업회담을 중단하고 양국의 장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함.
- ※ 이와 같이 어업문제가 해결된다면 특히 독도문제는 보류하도록 노력하겠음.
- ※ 기선에 관하여 한국측이 제주도의 동, 서쪽 기선 안을 수정하면 제주도를 본토에 포함시키는 데 이의 없음.
- ※ A구역에서는 일측은 기선 저인망 및 트롤어업을 300척으로 제한하고 한국측도 300척을 조업 척수로 함.
- ※ 공동규제의 기본정신은 일측의 현 출어 척수는 감소시키고 한국측 어선의 수는 어업협력으로서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함.
- ※ 이상과 같은 전제 하에서 한국의 어업을 근대화하고 일본과 같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업협력을 행하며, 이는 수출입은행 베이스로 함.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65차, 1962.8.21-64.2.6. 전5권 v.1 1-3차(1962.8.21-8.29)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8 / 5 / 1-339(339p)

1. 배의환 주일대사는 1962.8.9. 최덕신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제6차 한일회담과 관련, 일측은 8.20.부터 8월말까지 예비절충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고하면서, 일측은 한국에서 정권이 민간에 이양된 후에는 국회의 승인절차라는 난점이 첨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교정상화 문제를 현 혁명정부와 타결하겠다는 의사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2. 외무부는 1962.8.9. 주일대사에게 일측과의 예비교섭 시 청구권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서 제1안 순번제 3억불, 무상조 지불 3억불, 계 6억불(이 경우 차관은 불포함) 등의 5개 안을 하달하면서 동 5개 안은 교섭을 결렬에 이끌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섭기술상 가장 실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일측과 교섭하도록 훈령함.
3. 외무부는 1962.8.16. 주일대사에게 한일국교가 정상화된다면 과거 대미관계만이 중추적인 요소를 이루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및 군사면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새로운 요소로서 등장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외교정책은 한,미,일 3국간의 관계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전개될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과거 한일회담 추진을 위하여 일본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 미국은 한일 국교정상화와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을 예의 탐지 보고할 것을 지시함.
4. 예비절충 제1차 회의가 우리측에서 배의환 수석대표, 최영택 참사관, 김정태 2등서기관과 일측에서 스키 수석대표, 이세키 아세아국장, 야나기야 북동아과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동 회담에서 일측은 한국이 청구권조 지불과 무상조 지불의 두 개의 방식을 주장하나 청구권은 엄격하게 따지게 되어 소액이 될 것이므로 무상만의 명목을 사용하면 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청구권 문제는 지불방식과 청구권, 무상지불 액수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 이 두 개는 분리해서 토의할 것은 아니라고 답함.
5. 8.24. 개최된 예비절충 제2차 회의 시 일측은 무상공여만으로 1억5천만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무상공여 1개 명목만으로 된 일측 제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청구권 및 무상의 명



목에 의한 숫자 제시를 요구한 후, 순변제 3억불, 무상조 지불 3억불, 계 6억불을 우리측 입장으로 제안함.

6. 8.29. 개최된 제3차 회의 시 일측은 청구권에 대한 한국측 주장을 고려한 표현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면서, 한국측이 제시한 6억불은 숫자가 너무 크므로 수정액수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함.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65차, 1962.8.21-64.2.6. 전5권 v.2
4-21차(1962.9.3-12.26)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8 / 6 / 1-466(466p)

1.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1962.9.13. 개최된 제6차 회의 시 우리측이 비공식으로 청구권의 액수를 5억 불로 제시한 후 일측이 1.7억불로 응한 후 이러한 논의를 없던 사실로 취소한다고 하였음에도 일측이 간접적으로 이 선에 따라 언론에 누설하고 있는 데 대해 일측에 항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일측으로 하여금 3억불을 제시케 하자는 데 있는 것임을 유의하도록 9.19. 지시함.
2. 외무부는 1962.10.26. 주일대사에게 김·오하라 회담에서 오하라 외상이 제시한 무상공여 3억불은 비공식 제의이기는 하나 우리의 최종선에 상당히 접근하여 교섭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므로 우선 이 금액을 일측이 예비교섭에서 공식 제의로서 제안토록 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하고 교섭을 진행할 것을 지시함.
3. 외무부는 1962.11.15. 제15차 회의 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재가를 받아 11.21. 주일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본국 정부의 입장을 하달함.
 - ※ 청구권 명목에 관하여 당초 우리측은 청구권에 대한 순변제로서 수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측의 국내 대책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권 해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순변제와 무상조 지불을 합친 총액'으로 하자는 양보안을 제의한 바 있음.
 - ※ 또한, 2차에 걸친 김·오하라 회담에서 일측의 사정을 고려한 끝에 차관문제는 청구권 문제와 별도로 국교정상화 후에야 논의한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물러나 차관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인 것이라면 이를 포함 토의하여도 좋다는 일방적 양보를 거듭해 온 점을 감안하여 일측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4. 일본 자민당의 오오노 반보꾸 부총재는 1962.12.10. 내한하여 한일회담에 관한 일측 기본 입장에 관한 문서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제시함. 외무부는 12.14. 주일대사에게 동 문서에서 일측이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평화조약을 언급치 않고 '제2차 세계대전 종결에 따라 발생된' 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청구권 문제를 '무상경제협력' 과 '유상경제협력' 으로 표현하지 말고 우리측 제안대로 할 것을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5. 일측은 1962.12.26. 개최된 제21차 회의 시 무상경제협력 3억불(매년 3,000만불씩 10년간 제공), 대한



채권(OA) 4,573만불(3년간 균등상환 조건으로 한국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무상공여액을 상환 상당액으로 감액), 유상경제협력 2억불(장기저리 차관으로 10년간 공여하며 연이율 3.5% 상환기간 20년 이내) 제공 등 일측 입장을 담은 문서를 우리측에 수교함.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65차, 1962.8.21-64.2.6. 전5권 v.3 22-32차(1963.1.11-3.28)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8 / 7 / 1-269(269p)

한일 예비절충 제22차~제32차 회의가 동경에서 1963.1.11.~3.28. 간 개최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는 일측이 1962.12.26. 개최된 제21차 회의 시 제시한 무상경험 및 유상경제협력 제공 등의 입장에 대해, 공여액 3억불은 청산계정의 채무를 공여액에 포함시켜 해결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공여액의 지불기간(10년 또는 단축 가능)에 균등 탕감시킴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며, 정부 차관의 상환조건은 각년 차관 수입분에 대해 각각 거처 기간 7년 후 20년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는 입장 등을 제23차 회의시 발언토록 주일대사에게 1963.1.10. 지시함.
2. 우리 대표단은 1963.1.23. 개최된 제23차 회의 시 본부 지시에 따라 무상경험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제시한바, 일측은 한국측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한다는 반응을 보임. 또한 우리측은 김·오히라 회담으로 청구권 액수에 관하여 실질적인 합의를 보았으므로 회담 진행을 예비교섭으로부터 본회담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일측은 청구권 문제는 원칙이 합의되었다 해도 기타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쌍방의 의견에 차이가 있으므로 예비 절충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본회담 문제는 상부와 협의 후 회담하겠다고 함.
3. 1963.1.28., 2.1. 개최된 제24차 및 제25차 회의에서 한일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함. 정부차관상환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일측이 7년 거처기간이 상환기간 20년 중에 포함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우리측은 7년 거처 후 20년간 상환을 주장함.
4. 1963.2.8., 2.14., 2.21. 개최된 제26차~제28차 회의 시 일측은 박 의장의 대통령 출마 포기설 등으로 야기된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우리측이 국내정세에 불안요소가 없다는 점을 설명함. 일측은 청구권회합의 명칭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관계회합이라고 할 것을 주장함. 또한 일측은 세계빙상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증을 발급치 않고 별지 도합증을 발급하고, 체제기간의 최소화, 국기 불계양 방침임을 설명함.



5. 외무부는 1963.3.16. 군정 연장에 관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성명과 이에 수반할 국민투표의 시행 등 우리의 정치 사정과 4월에 지방선거를 앞둔 일본의 국내정세 등을 종합할 때, 일측이 당분간 한일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피하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한일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일측과 사무적인 절충을 계속하는 등 회담을 종전대로 계속할 것을 1963.3.21.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65차, 1962.8.21-64.2.6. 전5권 v.4
33-46차(1963.4.3-7.25)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8 / 8 / 1~309(309p)

한일 예비절충 제33차~제46차 회의가 동경에서 1963.4.4.~7.25.간 개최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일대사는 1963.4.1. 한국 정세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종전대로 계속하기로 일측과 합의하였음을 보고함.

2. 예비절충 회의시 논의된 주요 내용

※ 청구권 문제

- 일측은 상환기간 문제와 관련, 10년간 연 2,500만불이 되도록 무상을 단축하고, 차관상환기간은 20년(거치기간 7년 포함)으로 하는 것에 대해 외무성으로서는 문제가 없으나 대장성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양보할 수 없으며, OA문제가 해결되면 청구권회합을 개최하자고 주장함.
- 일측은 한국측 안이 수용 불능이므로 어업문제 진전 시까지 냉각기를 두고 외상회담에서 해결키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어업 문제

- 우리측은 일어선의 평화선 침범 증가를 비난하면서, 일측이 평화선 내 출어를 단속하고 어업협력 토의를 약속하면 나포어선 석방을 본국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제의함.
- 우리측은 12마일 이외에는 공해라는 일측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일측은 한국측이 40마일을 고집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 전관수역 12해리 플러스 알파로 타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일측은 어선 석방 전에는 어업협력 문제를 검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업협력 중 금전관계는 수은차관 1억불 이상으로 하며, 어업차관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청구권과 어업협력은 따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3. 주일대사는 1963.7.8. 이계다 수상에 대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친서를 오히라 외상을 통하여 수교함. 동 친서에는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한국측이 제시한 40마일은 한국 어민의 이익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한 후, 일측의 성의 여하에 따라서는 상호 접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일측의 어업차관 등 그에 응분한 성의 표시가 불가결한 요소임이 강조되어 있음.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65차, 1962.8.21-64.2.6. 전5권 v.5 47-65차(1963.8.8-64.2.6)

| 64-088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8 / 9 / 1~280(280p)

한일 예비절충 제33차~제46차 회의가 동경에서 1963.4.4.~7.25.간 개최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어난 평화선 침범 문제

- ※ 일측은 1964.1.30. 개최된 제64차 회의 시 한국 경비정의 일어난 나포와 일어난에의 발포에 항의하면서, 어업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국회가 개최 중인데 나포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기 석방을 요청함.
-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측도 자중하여 평화선 침범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2. 어업 문제

- ※ 우리측은 일측이 어획량에 기초를 둔 척수가 아니라 일본 경비정에 의한 연간 일 어선 출어 집계수 중 최고치를 제시, 고집하므로 교섭이 난항에 빠져 있다고 지적함.
- ※ 이에 대해 일측은 한국측의 산출방식은 사실상 일측 실적을 깎아내려 수락이 불가능하므로 최고출어척수와 최저출어척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하여, 우리측도 향후 이 방식에 접근하는 방향에서 어업교섭을 진행시키자고 함.
- ※ 어업협력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측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선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측은 협력문제는 원칙적으로 정치회담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우선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정치가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안을 작성해 보겠다고 함.

3.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 ※ 일측은 영주권의 범위 및 강제퇴거 등이 포함된 협정 초안을 제시하면서 일측 원안에 따라 토의를 진행시켜 주기를 희망하였으나, 우리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4. 청구권 문제

- ※ 우리측은 어업문제의 대강이 타결되는 대로 청구권 문제도 Drafting Stage에 들어가야 할 것이므로 한국측이 제시한 협정요강 토의를 개시하자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해 일측은 한국측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고 함.



5. 독도 관련 사항

- ✿ 일측은 9.26. 개최된 제50차 회의 시 독도에 관하여 국교정상화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독도는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함.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자료: 동남아제국에 대한 배상 문제

| 64-089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아주과/조약과
MF번호	Re-9 / 5 / 1~222(222p)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협상자료로 활용코자 일본의 동남아제국에 대한 배상문제를 조사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의 동남아 각국별 배상관계

가. 대 베트남(구 월남)

- ※ 배상액: 5년간 미화 39백만불(140억4천만엔)
 - 최초 3년간 연 천만불과 2년간 연 450만불씩 지불하는 배상협정 체결
 - 1959.5.13. 사이공에서 서명 및 1960.1.12. 발효
- ※ 배상협정 관련 각서교환(1959.5.13.): 배상협정 시행에 관한 각서 및 배상협정 제2조3항 물품에 관한 각서, 차관협정(3년간 미화 750만불)

나. 대 인도네시아

- ※ 배상액: 12년간 미화 22,308만불(803억880만엔)
 - 최초 7년간 연 2천만불과 나머지는 5년간 균등 지불하는 배상협정 체결
- ※ 1958.1.20. 자카르타에서 서명 및 1958.4.15. 발효
- ※ 배상협정 관련 각서교환(1958.1.20.): 배상협정 시행에 관한 각서, 경제협력에 관한 각서, 인도네시아. 일본 평화협정, 청구권 관련 의정서

다. 대 필리핀

- ※ 배상액: 20년간 미화 55천만불(1,980억엔)
 - 최초 10년간 연 25백만불과 그 후 10년간 연 3천만불씩 지불하는 배상협정 체결
 - 1956.5.9. 마닐라에서 서명 및 1956.7.22. 발효
- ※ 배상협정 관련 각서교환(1956.5.9.): 배상협정 시행에 관한 각서, 차관에 관한 각서

라. 대 버마

- ※ 배상액: 10년간 미화 22천만불(720억엔) : 1955.4.16. 발효



마. 대 라오스

✿ 배상액: 2년간 10억엔 : 1959.1.29. 발효

바. 대 캄보디아

✿ 배상액: 3년간 15억엔

2. 일본의 동남아 제국에 대한 배상 및 경제기술 협력 현황

3. 주베트남, 주필리핀 대사관 및 주랑군총영사관의 주재국 정부의 일본 배상액 처리관계(주재국 국민에 대한 변상문제, 취급기관 및 방법 등) 조사 보고 등

속개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 64-090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C1-9 / 7 / 1~156(156p)

1. 외무부는 1964.3.16. 주일대사에게 한일회담 본회담 개최와 더불어 토의될 청구권문제 중 원칙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훈령하였는바, 동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 협정명: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 일본의 3억미불과 동등한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10년 기간 내에(지불기한은 6년까지 단축 가능) 무상 제공한다.
- ※ 일본은 2억미불과 동등한 원의 차관을 10년 기간 내에(6년까지 단축 가능) 제공한다.
- ※ 일본은 1억미불 이상의 상업차관 제공을 용이하게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 한국과 일본은 본 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 (a)항 및 (b)항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인정한다.

2. 주일대사는 우리측의 '청구권위원회'의 명칭 사용 주장에 관하여 일측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로 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대립되어, 양측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 우리측은 청구권위원회, 일측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로 각기 상이한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고 1964.3.16.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64.4.15. 주일대사에게 한일간의 청구권협정이 정식으로 기초될 경우에 대비하여 청구권 관계협정의 정부안을 송부하고 이를 Standard Form으로 사용할 것을 훈령함.

- ※ 동 협정안은 본협정과 3개의 교환공문 및 1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외무부 통상국은 대일재산청구권 관계 협정안에 대하여 본협정의 차관조건은 '연 이자율 3.5% 이하 및 상환기간 20년 이상'으로 할 것과 7년 처치기간을 상환기간 내에 포함시키고, 구매에 관한 규정에서 구매사절단을 설치하지 않고 AID 구매방식을 추진할 것 등의 의견을 1964.3.25. 아주국에 제시함.

5. 외무부는 1964.4.23. 경제기획원에 대하여 대일 재산청구권 협정안에 첨부될 일본으로부터 받을 금



액의 용도를 일본이 동남아제국과 체결한 배상 및 경제협력 협정의 선례를 감안하여 작성,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6. 외무부는 1964.4.25. 주일대사에게 국고정상화 전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하여는 일 정부도 이들을 청구권과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최근 일 측이 그 태도를 변경하여 청구권과 관련시키려 하는 것 같이 관측되고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추진 되는 사업들이 양국 정부 최종 승인 하에 확정 시행될 때에는 기존 방침대로 청구권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을 명문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훈령함.

속개 제6차 한·일회담. 현안문제에 관한 한국측 최종입장, 1963.4-64.3

| 64-091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10 / 1 / 1~140(140p)

제6차 한일회담 현안문제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1. 한일회담 대책의 최종 검토(1963.3.23. 청와대 비서실의 대통령 보고문서)

- ※ 건의
 - 막후교섭을 일원화하여 본회담 수석대표를 보조하도록 할 것
 - 본회담 대표단을 일본측과 대등한 실력을 갖춘 인사로 강화할 것

132

- ※ 참고사항
 - 김용식, 장기영, 최규하, 배의환에 대한 평가

2. 한일회담 각 현안문제에 관한 우리측 최종입장 결정(1963.4.20.)

- ※ 각 현안문제에 관한 우리측 입장
- ※ 각 현안문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양측 입장

3. 한일회담 각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측 최종입장(1964.2.3.)

4. 어업문제를 제외한 현안문제에 관한 입장(1964.3.4.)

- ※ 우리측 입장을 정하고 이 입장의 테두리 안에서 외무부와 현지 대표단이 그때그때 회담 전반의 진전 상황과 일측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중간 안을 제시, 교섭하게 하기 위한 안임.
- ※ 각 현안문제에 관한 우리측 입장
 - 일반 청구권 문제
 - 법적지위 문제
 - 선박 문제
 - 문화재 문제
 - 기본관계 문제
 - 독도 문제
- ※ 각 현안문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양측 입장

제6차 한·일회담. 회담관계 각료회의 및 회담관계 제 문제점 연구

| 64-092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9 / 7 / 1-344(344p)

1. 외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일회담의 중요성 및 다면성에 비추어 관계 각 부처간의 협조를 긴밀히 하여 정부 내 의사를 통일하고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의 신속 및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일회담 관계 각료회의'를 설치하는 규정을 1963.12.30.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그 설치가 심의, 양해됨.

※ 한일회담 관계 각료회의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며, 회의는 의장인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함.

2. 주일대사는 한일회담 진행에 대한 일본측 태도 및 금후 전망에 관한 보고를 1964.6.15. 외무부에 제출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일측 태도

- 일측은 6·3사태 이전부터 한국의 국내 정정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금번 사태가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한 치안의 회복만으로 근본적으로 수습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함.
- 이께다 수상 등 일정부 당국자들은 6·3 사태를 전후한 한국내 상황에 대하여 민주국가의 진통으로 간주하며 한국의 정정이 변하였다 하여 일측이 교섭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식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 사무당국은 적어도 7월 중순 이후 일본의 신내각이 성립되고 한국의 국내정국도 상당한 정도 안정된 후이나 실질적인 교섭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인 것으로 보임.
- 한일회담의 타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멀어짐에 따라 일측은 한일회담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과는 별도로 민간경제협력의 추진과 한일 무역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안정에 이바지함으로써 양국간의 사실상의 관계를 증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면의 타개를 기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우리측이 취하여야 할 태도에 관한 건의

- 일본의 국내사정을 감안할 때 신내각 발족 후인 8월 초순경이 되어야 실질적인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우리측은 실질적인 교섭 재개시까지 언제라도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필요가 있음.
-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개를 위하여 어업각료회담 재개를 건의하며, 한편 건전한 방식의 민간경제협력 추진, 대일수출증대에 의한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3. 본 문건에는 한일회담 추진에 대한 제문제, 정치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할 제문제 등 중앙정보부가

133

대한민국의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1963.9월~12월간 작성한 업무참고자료, 한일회담 제현안의 중요미결문제, 한일 양측 주장의 제 차이점 등 외무부 실무진이 1963.12월~1964.4월간 작성한 검토 자료 및 관련 문서도 수록되어 있음.

한 · 일회담에 관한 미국의 입장

| 64-093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Re-12 / 2 / 1~92(92p)

한 · 일회담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미 주요인사의 발언 등에서 파악될 수 있는바, 그 주요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주한미국대사의 외무차관과의 면담시 발언(1961.7.29)

- ※ 한국 정부의 지도자들도 일본과 합의에 도달하려고 희망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이번 기회를 일실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일본도 한일간 현안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한국이 주한일본대표부 설치를 즉시 허가한다면 한국 자신을 위하여서도 이로울 것임.
- ※ 한일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하여 한일 양국이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을 결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결의와 성의의 증거로서 한국은 일본의 주한대표부 설치를 허가하고 일본은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함.
- ※ 미국의 대한 원조와 관련하여 미 행정부가 금년 내에 한일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미 의회에 발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2. 주미대사의 한일 국교정상화에 관한 미국 정부의 견해에 관한 보고(1963.2.27)

- ※ 해리만 국무성 차관보 등은 한일회담을 조속히 종결시켜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 미국 정부는 어업문제 때문에 한일간의 국교정상화가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평화선을 지금도 고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임.

3. 라이사와 주일미국대사의 주일대사 면담시 발언(1964.7.10)

- ※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이 어려울 경우 주한일본대표부의 설치를 허용하여 사실상 수교 관계를 긴밀히 하면 어떻겠는가?

4. 외무장관과 브라운 주한미국대사와의 공동성명서(1964.8.17)

- ※ 한국 대통령과 러스크 미 국무장관과의 공동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미국은 한일정상화 이후에도 한국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



- ✿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은 한국, 일본 및 자유 우방국가에 커다란 기여가 될 것이며, 미국은 이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임.

5. 라이샤와 주일미국대사의 주일대사 면담시 발언(1964.12.31.)

- ✿ 중국(구 중공)의 유엔가입 움직임 등 현 국제정세에 비추어 한일회담이 신년도에 타결되는 것이 좋겠음.

제2차 아시아지역 외상(정상)회의 개최계획

| 64-094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동남아주과
MF번호	C1-11 / 8 / 1~75(75p)

아시아 정상회담 개최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1. 아시아 정상회담 개최에 관하여 1962.7.5. 월남, 대만(구 자유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정부에 의사를 타진한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함.

2. 1964.8.19.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선거공약 및 1964년 연두교서에서 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1964년 중에 아시아 외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 ※ 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
- ※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아시아 민족의 단결된 의사 표시
- ※ 아시아 각국의 통상관계 발전
- ※ 한일 국교 정상화에 관한 아시아 각국의 공동관심과 지지 표명

13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공관장회의, 1964년도-구 · 아중동지역

| 64-095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1-11 / 10 / 1~151(151p)

1964년도 구주 ·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본부, 해당공관에 표제회의 개최통보 및 지시사항 하달

- ※ 구 · 아지역 공관장회의(제1차)
 - 개최 일시 및 장소: 1964.12.12. 뮌헨
 - 참석자: 구 · 아지역 13개 공관장 전원(주영, 주프랑스, 주독, 주터키, 주이탈리아, 주모로코, 주콩고, 주스웨덴, 주스위스, 주제네바, 주우간다, 주케냐 및 주카이로)
- ※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제2차)
 - 개최 일시 및 장소: 1964.12.16.~17. 파리
 - 참석자: 아중동 지역 공관장 및 주프랑스대사
- ※ 의제: 기본 외교정책 설명(장관), 각국 정세보고(공관장),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교환, 대 구라파 경제외교 강화책, 대 아중동 외교강화 방안 및 공관 운영 문제
- ※ 준비사항: 토의자료 준비와 아울러 각국 정세 보고, 대 아중동 외교강화 방안 및 기타 건의사항을 문서로 제출

2. 공관장 회의자료

- ※ 구미국, 주카이로총영사관, 주케냐대사관, 주우간다대사관 작성 자료

3. 구 · 아지역 공관장회의 보고(외무부 구미국)

- ※ 주제: 대통령(독일 방문계기)
- ※ 의사진행: 외무장관 개회사, 대통령 각하 훈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정책설명, 상공장관 정책설명, 각 공관장의 정세보고 및 건의사항

4.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 보고(외무부 구미국)

- ※ 주제: 이동원 외무장관



- ※ 의사진행: 외무차관 개회사, 대 아중동 국교 현황 설명(아중동과장), 각 공관장의 정세보고 및 건의사항, 대 아중동 외교강화책(외교정책목표 수정 문제, 외교망 재조정 문제, 아·아회의 문제) 토의

5. 공관장 회의 주요 건의사항 요약(외무부 구미국)

- ※ 외교정책 목표 수정, 외교망 재조정, 방문 및 초청 외교강화, 경제·기술·문화교류 증진, 기타 행정지원 문제

공관장회의, 1964년도-아주지역

| 64-096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C1-11 / 12 / 1-96(96p)

1964년 아주지역 공관장회의가 다음과 같이 2회 개최됨.

1. 동부 아주지역 공관장 회의

가. 일시: 3.20.

나. 장소: 홍콩

다. 주재: 정일권 외무장관

라. 참석 공관장: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 주필리핀대사, 주월남대사, 주홍콩총영사

마. 주요 협의내용

※ 지역정세 보고: 일·중국(구 중공)관계, 프랑스의 중국(구 중공) 승인, 월남의 2차 군사혁명 후 정세

※ 통상진흥: 대 자유중국 수출 증진, 대 월남 수출 현황, 대 필리핀 수출 전시회, 선진국의 사양 산업에 착안하여 대 홍콩 시장 진출

2. 아주 공관장회의

가. 일시: 12.26.~28.

나. 장소: 마닐라

다. 주재: 이동원 외무장관

라. 참석 공관장: 주호주,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 필리핀,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뉴델리, 홍콩, 랑군, 프놈펜

마. 주요 협의내용

※ 지역정세 보고: 중국(구 중공)의 핵실험, 흐루시초프의 실각, 미 대통령 선거, 제2차 비동맹국 회의, 말레이시아 분규, 월남사태, 중국(구 중공)-인도 국경분쟁

※ 아·아 중립국 정세와 제2차 아·아회의

※ 경제협력

- 자본협력 증진 방안 강구

- Colombo계획지역 내 국가간의 기술협력 증진 방안

- 기술훈련소 등의 자본 및 기자재 원조 획득 방안 강구

- 대한 경제원조 협의체 구성 문제

- 북한의 진출에 대한 저지책 강구

- 경제관계 협정의 필요성 검토

박정희 대통령 독일 방문, 1964.12.6-15. 전3권 v.1 기본문서집

| 64-097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구주과/의전과
MF번호	C-6 / 1 / 1~327(327p)

박정희 대통령(내외)의 독일 방문 관련 양국 정부간 교섭 사항과 이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 등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독일대사의 주재국 국회의장축과의 교섭결과 보고(64.7.)

- ※ 방독 잠정시기(64.10.14.~17.), 특별항공기 제공문제 및 수행원 등 표제관련사항

2. 교섭사항

- ※ 독일 체류기간: 64.12.8.~13.
- ※ 방독에 관한 양국간 공동발표: 64.9.16.
- ※ 수행원 인원, 일정, 공식 회담의제, 훈장 및 서훈, 만찬, 복장 등

3. 준비사항

- ※ 대통령 내외분 이력서 및 사진
- ※ 수행원 이력서
- ※ 홍보물
- ※ 초청장
- ※ 연설문(출국 및 귀국 성명, 독일 도착 성명, 공식 행사시 연설문)
- ※ 선물 대상자 명단 및 종류
- ※ 태극기(게양용, 환영 및 환송용) 등

4. 선발대 파견



5. 주독대사관의 대통령 방독 PR에 관한 계획(64.10.)

6. 대통령 내외분의 방독 총괄계획표(64.10.)

7. 대통령 방독 잠정일정표(64.12.6.~14.)

142

8. 대통령 방독 환 · 송영 계획

9. 대통령 탑승항공기 항로 경유국가에 경호 및 영접조치 등 협조 요청(이탈리아, 인도, 이집트, 태국, 홍콩)



박정희 대통령 독일 방문, 1964.12.6-15. 전3권 v.2 기본문서집

| 64-098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구주과/의전과
MF번호	C-6 / 2 / 1~225(225p)

박정희 대통령(내외)의 독일 방문 관련 양국 정부간 교섭사항 및 이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과 독일 방문활동 및 귀국 후 조치사항 등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교섭사항

- ※ 훈장 및 서훈 대상자별 훈격
- ※ 일정 조정
- ※ 독일 쾰른시와 경주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2. 대통령 주재 구라파주재 공관장회의 개최 계획 및 준비

3. 대통령 방독 홍보계획

4. 선발대 활동보고

5. 대통령 방독 환 · 송영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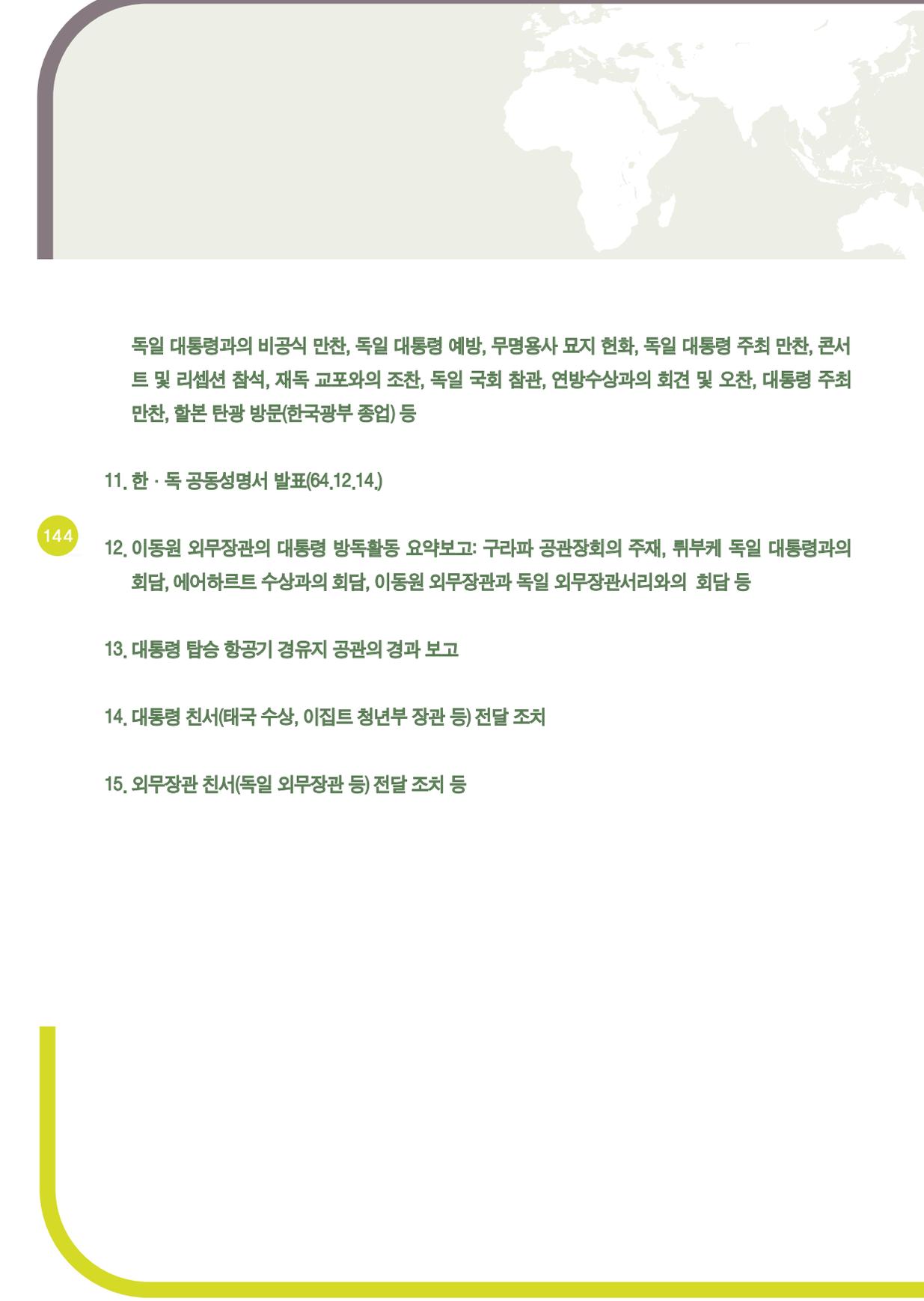
6. 대통령 독일 방문일정 설명서(64.12.5. 외무부 의전실)

7. 대통령 탑승 항공기 경유지 공관의 주재국 정부측과의 교섭결과 보고

8. 대통령 일행의 독일 방문차 출국 통보(주이탈리아, 주태국, 주홍콩 총영사관)

9. 수행기자단의 출국 및 방콕 도착시까지의 스케치 자료

10. 주독대사관의 대통령 독일 본 도착(64.12.7.)시부터 백림시 도착(12.10.)까지의 진행상황 요약보고:



독일 대통령과의 비공식 만찬, 독일 대통령 예방, 무명용사 묘지 헌화, 독일 대통령 주최 만찬, 콘서트 및 리셉션 참석, 재독 교포와의 조찬, 독일 국회 참관, 연방수상과의 회견 및 오찬, 대통령 주최 만찬, 일본 탄광 방문(한국광부 종업) 등

11. 한·독 공동성명서 발표(64.12.14.)

144

12. 이동원 외무장관의 대통령 방독활동 요약보고: 구라파 공관장회의 주재, 튀부케 독일 대통령과의 회담, 에어하르트 수상과의 회담, 이동원 외무장관과 독일 외무장관서리와의 회담 등

13. 대통령 탑승 항공기 경유지 공관의 경과 보고

14. 대통령 친서(태국 수상, 이집트 청년부 장관 등) 전달 조치

15. 외무장관 친서(독일 외무장관 등) 전달 조치 등

박정희 대통령 독일 방문, 1964.12.6-15. 전3권 v.3 자료집

| 64-099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구주과/의전과
MF번호	C-6 / 3 / 1~408(408p)

박정희 대통령(내외)의 독일 방문 관련자료와 대통령 방독시 회담 또는 담화 내용에서 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사후처리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료

- ✿ 독일 대통령, 수상 및 외상 이력서
- ✿ 대통령 방독자료(64.10.12.: 외무부 구미국)
 - 독일의 역사적 배경, 권력구조, 지도자 및 정당 상황 - 독일과 동독 및 동구와의 관계
 - 독일과 미·러(구 소련)와의 관계 - 독일 통일방안과 세계상
- ✿ 대통령 방독 일정 설명서(64.11.26.: 외무부 의전실)
- ✿ 회담 자료
 - 한독 통일문제, 평화공존 및 긴장완화, 중립화론, 전 한국 및 전 독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 중국(구 중공) 문제, 공동 통일방안 및 경제협력 관계
- ✿ 계기별 성명 또는 연설문(영문)
- ✿ 독일 언론 보도기사

2. 사후처리

- ✿ 대통령 비서실의 하기사항 조치 및 결과 보고 지시(내각)
 - 독일 대통령 방한초청
 - 독일 수상의 대통령 개인 경례고문관 1명 파견 의사 표명
 - 독일 수상의 한국상품 전시회 한독 공동개최 용의 표명
 - 케스트마이어 하원의장의 한국과의 유대강화 표명
 - 데막회사 사장의 우리나라 기술자 3명 초청의사 표명
 - 뒤셀돌프주의 한국 유학생 초청의사 표명
 - 재독 광부 건의사항(3년 후 귀국시 직장알선, 송금환을 특혜조치, 3년 후 희망자에 대한 독일 취업지원, 귀국시 가재도구의 면세반입허가, 국제노동기구 가입추진, 주독대사관 노무관 상주 등)
 - 브란트 백림시장 방한초청



- 백립시 상원의원의 한국 간호원 20명 초청의사 표명
- 대통령 주재 유럽 공관장회의시 건의사항(아프리카 상주 및 검임공관 증설 등)
- 한독 재정지원 협정체결문제
- 방독 경제사절단의 합의사항 처리여부 등

✻ 외무부 소관사항 조치현황 보고 등

정일권 국무총리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1964.10.8-12

| 64-100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동남아주과
MF번호	C-6 / 6 / 1~227(227p)

정일권 국무총리의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 관련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본문서(방문계획)

- ✻ 방문 경위 및 목적, 일행 및 수행기자 명단, 준비사항(복장 등), 대만 정부요인 약력, 한·대만 관계, 교포 실태, 대만 개요, 대만정부 각료 및 정부 지도자 명단, 휴대인쇄물 목록, 대만정부 요인 방문시 제기될 문제점과 우리측 입장(동남아 외상회담, 대 중국(구 중공) 대책, 일본·중국 관계, 아세아 반공연맹, 한·대만 우호관계 증진, 한·대만 경제관계, 한일회담)

2. 결과보고(국무총리 비서실의 대만 방문에 관한 기록집)

- ✻ 방문 목적과 의의, 일정, 대만 도착성명(국·영문), 대만 외교부장과의 면담요지(10.8.), 대만 행정원장과의 면담요지(10.8.), 장군 비서장과의 면담요지(10.8.), 장군 비서장의 환영 만찬사(10.8.) 및 총리 답사, 대만 총통과의 면담요지(10.9.), 대만 행정원장의 훈장 수여사(10.9.) 및 김성은 국방장관 답사, 대만 행정원장의 환영 만찬사(10.9.) 및 총리 답사, 아세아 반공연맹 대만 이사장의 다과회 연설문 및 총리 답사, 대만 총통의 총리에 대한 훈장 수여사(10.11.) 및 총리 답사, 대만 외교부장과의 1.2차 회담 요지(10.12.), 대만 이룩성명(10.13.), 내외 기자 회견 요지(10.13), 귀국성명(10.14.), 주대만대사의 건의사항, 선물목록(전달 품목 및 수령 품목)

3. 언론보도

- ✻ 국내 언론보도
- ✻ 대만 언론보도

DO Mou 월남 부수상 방한, 1964.8.13-17

| 64-101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동남아주과
MF번호	C-9 / 18 / 1~27(27p)

1. 월남의 Do Mou 부수상(장군)은 1964.8.5. 주월대사에게 방한하기로 한 킴 국방부장관의 형편상 자신이 국방장관에 대신하여 군사혁명위원회 제2부위원장 및 행정부 부수상의 자격으로 한국을 친선 방문, 파월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의를 전하는 동시에 8·15 경축 기념식에도 참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측 초청 가능 여부를 문의함.
- 148 2. 외무부는 8·15에 즈음하여 각국의 경축 사절이 다수 내한하기 때문에 Do Mou 부수상의 방한을 초청 케이스로 하기에는 시간적, 인적 여력이 없는 실정임을 동 부수상에게 설명하도록 1964.8.8. 지시함. 이에 대해 동 부수상은 월남에 긴급 사태는 선포되어 있으나 새로운 정세 변동이 없는 한 방한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칸 수상이 특별히 고려한 것이라고 전함.
3. 외무부는 1964.8.11. Do Mou 부수상의 친선 방한을 환영한다는 뜻을 동 부수상에게 전달할 것을 주월대사에게 지시함.
 - ※ 동 부수상은 월남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 4개를 소지 방한하며, 방한 중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및 연참의장 예방, 일선 시찰 및 MASH 책임자 면담, 주한월남대사대리 주최 리셉션 등의 일정을 희망함.

정일권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4.4.3-7

| 64-102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동북아주과
MF번호	Re-13 / 2 / 1~12(12p)

정일권 외무부장관은 1964.4.3.~7.간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정

- ✿ 4.3. 일본 도착
- ✿ 4.4. 오히라 외상과 회담
- ✿ 4.6. 이께다 수상 면담
- ✿ 4.7. 서울 향발

2. 정 · 이께다수상 면담 요지

- ✿ 정일권 장관 발언요지
 - 한국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데모는 애국심에서 나타난 것임을 설명
 - 박 대통령은 학생데모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회담을 계속 추진한다는 한국 측의 기본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이께다 수상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음.
 - 어업규제 및 제주도 부근 직선기선 문제는 일본이 70%, 한국이 30% 양보로 해결 바람.
 - 현재 한국의 비료 사정이 곤란함을 설명
- ✿ 이께다 수상 언급요지
 - 한국 내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국교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겠음.
 - 한국 학생의 실정은 이해할 수 있음. 어업문제는 기술적인 면이 많으므로 책임자인 양국의 농업 장관이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한국의 비료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박 대통령께 전달 바람.

이동원 외무부장관 구주 및 아주 순방, 1964.12.13-30

| 64-103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구주과
MF번호	C-7 / 1 / 1~266(266p)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제1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입장 지지교섭을 주목적으로 1964.12.13.~30. 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함.

1. 영국(12.13.~15.)

- ※ 이 장관은 12.14. 월슨 수상을 예방, 공산군의 침략으로 인해 한국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영국 정부가 취한 역사적 결정을 한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금후에도 적극적인 지지 및 협조를 요청함. 월슨 수상은 영국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약속함.

2. 프랑스(12.15.~17.)

- ※ 이 장관은 12.17. 뉘빌 외상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 한·불 양국 정부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긴밀한 협조를 계속하며, 프랑스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추진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힘.
- ※ 이 장관은 12.16.~17.간 프랑스, 영국, 터키, 모로코 등 아중동지역 8개 공관장이 참석한 공관장 회의를 파리에서 주재, 대아중동 외교정책 강화 및 북한과의 국교수립 국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협의함.

3. 이탈리아 및 바티칸(12.17.~20.)

- ※ 사라갈 이탈리아 외상은 12.18. 이 장관 면담 시 이탈리아 정부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지지를 재천명함. 또한 이 장관은 이탈리아 외무차관과 한·이 문화협정에 가서명함.
- ※ 이 장관은 12.19. 교황 파울 6세를 예방하였는바, 교황은 북한 주민들이 아직 신앙의 자유를 향수하지 못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모든 한국인이 자유를 찾을 날이 오기를 기원함.

4. 인도(12.20.~22.)

- ※ 이 장관은 12.21. 라다크리수난 대통령 예방, 수와란 싱 외무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가짐. 이 장관은 인도 정부의 비동맹주의 정책으로 인도측과의 협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함.



5. 말레이시아(12.22.~24.)

✿ 이 장관은 12.22. Rahman 수상 예방, 12.23. Yang 국왕 예방, 12.24. 국회의장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짐.

6. 필리핀 및 대만(12.26.~30.)

✿ 이 장관은 마닐라에서 12.26. 멘데즈 외상 방문, 12.27. 마카파칼 대통령 예방 등의 일정을 가짐. 또한 이 장관은 12.26. 저녁 주필리핀대사관에서 아주지역 공관장회의를 주재함.

✿ 이 장관은 12.29. 타이페이에 도착, 외교부 차장 방문, 행정원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짐.

Thanat Khoman 태국 외무장관 방한, 1964.11.24-26

| 64-104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동남아주과/의전과
MF번호	C-9 / 26 / 1~45(45p)

타нат(Thanat Khoman) 태국 외무장관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타нат 외무장관 방한 일정(1964.11.24.-26.)

- ※ 한·태 외무장관 회담(2회),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 예방 등

2. 한·태 외무장관 회담 자료(외무부 아주국)

152

- ※ 동남아 외상회담: 동 회담에 대한 각국의 동향
- ※ 유엔총회 대책: 유엔총회 태국 수석대표인 외상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 필요
- ※ 주한태국군 문제: 1950년 참전 이래 그 일부 병력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계속 주둔 필요성 강조
- ※ 아·아 회의 대책: 1965.4월 알제리 개최 제2차 아·아 회의에서의 태국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 참고자료(한·태 관계 주요일지)

3. 제1차 한·태 외무장관 회담(1964.11.24.)

- ※ 동남아 외상회담에 일본 초청여부 등 참가국 문제
- ※ 예비회담 개최 필요성, 시기 및 장소 문제
- ※ 의제 문제
- ※ 외상회담 교섭과정 등에 관해 협의

4. 제2차 한·태 외무장관 회담(1964.11.25.)

- ※ 한국측 입장
 - 예비회담 개최 및 Research Centre 설치에 동의
 - 일본측에 참석도록 적극 권유하겠으나, 태국측도 일본측에 참가 종용 필요



- ✿ 태국측 입장
 - 외상회담 서울 개최 지지
 - 많은 국가의 참석을 원한다면 예비회담이 필요하며 동 필요성 및 시기 등 제반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 제시
 - 반공, 군사 동맹 등의 Negative Approach를 하지 말 것을 강조(특히 일본 및 중립국가들의 거부 반응)

5. 외상회담 개최 문제 정책조정

- ✿ 예비회담 개최 문제
- ✿ 일본 초청 문제
- ✿ 의제 문제
- ✿ 각국(참가 초청국) 반응
 - 베트남(구 월남), 대만(구 자유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란드
- ✿ 한국으로서의 의견
 - 외상회담을 매년 정례적으로 윤번제로 개최함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

Butler, R. A. 영국 외무장관 방한초청계획

| 64-105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구주과
MF번호	C-9 / 27 / 1~10(10p)

Butler, R. A. 영국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 및 계획에 관한 내용임.

1. 주영대사, 본부에 Butler 영국 외상방한 초청건의 및 본부 동의(1964.2.)

※ 영국 외상은 일본과의 정례 각료회담 참석차 오는 5월 방일 예정

2. 주영대사, 영국 외상에게 한국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 전달 및 방한 종용(1964.3.)

154 ※ Butler 외상은 한국 방문은 영국 내외의 긴박한 사정 특히 총선거(현재로서는 6월) 관계로 도저히 불가능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러나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이 점 한국 외무장관에게 심심한 감사와 더불어 전달해 줄 것을 요망

3. 주한영국대사관은 외무부에 공한(1964.3.16.)으로 영국 외상의 방한 불가 입장을 통지해 옴.

Rusk, Dean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64.1.29

| 64-106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미주과
MF번호	C-9 / 29 / 1~221(221p)

1.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 일행의 방한 주요일정, 박-러스크 회담 요지 등은 다음과 같음.

※ 주요일정(1.29.)

- 대통령 예방, 대통령 주처 오찬, 박-러스크 회담(경제장관 개별회담)

※ 박-러스크 회담 주요내용

(주한미군 감축문제)

- 박 대통령은 프랑스의 중국(구 중공) 승인, 중국(구 중공)의 핵실험 문제, 중국(구 중공)의 침략성, 북한군의 증강 등 극동정세의 불안과 한국군의 축소(휴전시 73만 명, 현재 60만 명) 등을 근거로 주한미군의 감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러스크 장관은 한국전에서 미군 10만 명이 부상, 3만5천 명이 전사하였으며 한국의 방어선은 미국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하고 철군이나 감군은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함.

(대한 경제원조)

- 박 대통령은 한국의 자립경제 실현 위해 현재 수준의 대한 원조 지속, 한국 상품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 원조 등을 요청
- 러스크 장관은 GATT 등을 통하여서도 한국의 세계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으며, 미국은 결코 한국의 경제가 침체되도록 방임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식량지원 문제도 현재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

- 박 대통령은 한일 간 어업협정에 대한 견해 차이, 야당과 어민들의 반발문제 등을 설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함.
- 러스크 장관은 한일 국교 정상화가 조속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미국 입장을 밝힘.

2. 또한 러스크 장관과 동행한 미측 경제관련 인사들은 우리 경제장관들과 다음과 같이 개별회담을 개최함.

- ※ 경제기획원장관 - 헬러 미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회담
- ※ 상공부장관 - 핫시스 미 상무장관 회담
- ※ 농림부장관 - 머피 미 농무차관 회담

김현철 특사 아주 · 구주 순방 및 미국 방문, 1963.12.30-64.2.17

| 64-107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동남아주과
MF번호	C-7 / 9 / 1~133(133p)

김현철 대통령 특사(전 내각수반)의 아주, 구주 순방 및 미국 방문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적 및 임무

- ※ 자유우방 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 강화
- ※ 외자도입 가능성 타진 및 경제협력 증진
- ※ 제18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 ※ 호놀룰루 방문시 대통령을 대리하여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적절한 문명과 예우를 갖출 것

2. 특이사항: 부인만 동반하고 수행원은 없으며, 신임장 또는 친서는 휴대치 않음

3. 방문국가별 예방 및 접견한 주요인사

- ※ 대만(구 자유중국): 장개석 총통, 행정원장, 외교부장, 국방장관, 경제장관, 참모총장
 - 정치망명을 요구하는 주홍경의 중국(구 중공)송환이 실현되지 않도록 한국측의 측면적 협조 건의
 - 한국의 동남아 지역 외상회의 제안 건의
- ※ 필리핀: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외무장관, 상공장관, 경제장관
- ※ 베트남: 혁명위원회 의장, 수상, 외무장관
- ※ 말레이시아: 수상, 부수상, 국회의장, 농림장관, 상공장관
- ※ 태국: 수상, 외무장관, 재무장관, 경제장관
- ※ 터키: 대통령, 수상, 부수상 겸 외상 대리, 총사령관
- ※ 이탈리아: 외상



- ✿ 로마 바티칸: 교황
- ✿ 프랑스: 외무담당 국방상
- ✿ 독일: 대통령, 부수상, 백림시장, 한국광부 등 교포
- ✿ 영국: 외상
- ✿ 미국: 국무차관, AID처장, 상무장관
- ✿ 일본: 총리, 외상, 통산상, 농림상, 대장상

4. 감사서한

- ✿ 방문국 주요 인사 및 당해 공관장에 대한 김현철 전 내각수반의 감사서한 전달

친선사절단 아프리카 파견계획

| 64-108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C-7 / 14 / 1~44(44p)

1. 주유엔대사는 1964.6.17. 외무부장관에게 제19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에 대한 계속 지지확보 내지 종전의 기권을 찬성으로 유도하고, 프랑스의 중국(구 중공) 승인 이후 아프리카 제국이 자유중국 대표권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태도 및 이로 인한 한국 문제에 미칠 영향 탐지 등을 목적으로 김용식 주유엔대사를 특사로 하는 아프리카지역 특별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상기 주유엔대사의 건의를 감안하고, 동시에 1964년도 기본운영 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아프리카 친선사절 및 아프리카 겸임국 출장이 유엔에 있어서 한국문제에 대한 지지 획득, 자유우방 및 중립국과의 친선유대 강화 및 경제외교의 적극 추진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함.

※ 제1안

- 김용식 주유엔대사와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를 함께 아프리카 겸임국 순방을 겸한 친선 및 통상사절로 파견함.
- 파견 대상국은 모리타니, 세네갈, 다호메이, 토고, 코트디바르 등 12개국으로 하고 파견기간은 1964.10.1.~11.17.간 48일로 함.

※ 제2안

- 주유엔대사의 아프리카 친선사절과 주프랑스대사의 겸임국 출장을 겸한 친선 및 통상사절을 별도로 파견하되, 주유엔대사는 아프리카 친선사절, 주프랑스대사는 겸임국 방문을 겸한 친선 및 통상사절로 함.
- 주유엔대사는 모리타니, 세네갈, 시에라리온 등 9개국, 주프랑스대사는 모리타니, 코트디바르, 니제르, 차드 등 11개국으로 함.
- 파견기간은 주유엔대사는 9.1.~10.6.간 36일, 주프랑스대사는 10.1.~11.14.간 44일로 함.

김종필 특사 아주 순방, 1964.3.11-24

| 64-109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C-8 / 3 / 1~121(121p)

1. 우리 정부는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 및 일본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호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김종필 의장을 1964.3.11.~28.간 대통령특사로 파견함.

2. 김종필 특사의 주요 방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만(3.12.~15.)

- 외교부장, 행정원장, 총통부 비서장 등 방문

✿ 월남(3.15.~18.)

- 국가원수(민 장군), 수상(칸 장군),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 등 예방, 칸 수상주최 만찬 참석
- 김 특사는 3.17 칸 수상 예방 시 한국과 월남이 당면한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력한 유대를 갖고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박 대통령과 칸 수상 간의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 월남 3군단장의 안내로 베트남 출몰지역 및 인근 부락 시찰

✿ 일본(3.20.~28.)

- 공식예방: 이께다 수상, 오히라 외상, 아까기 농상, 사도오 국무상, 고노 건설상, 후나다 중의원 의장
- 비공식 접촉: 오오노 자민당 부총재, 마에오 간사장, 스즈끼 부간사장, 라이샤워 주일미국대사 등
- 이께다 수상은 김 특사에게 양국의 국교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하며, 양국이 성의있게 쌍방 입장을 이해하면 한일회담이 원만히 타결될 것이라고 말함. 김 특사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측도 한일회담을 조기타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을 강조함.
- 김 특사는 오히라 외상 등 일측에 대하여 한일회담은 이번 기회에 타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측이 대승적 견지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크게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함. 김 특사는 4.20.경을 목표로 협정문안을 정리하고 5월초에 한일협정에 조인할 것을 일측에 제의함.
- 아까기 농상은 김 특사에게 어업문제에 관한 일측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측이 호의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망하였는바, 김 특사는 한국민의 대일감정, 한국어민의 실정 등을 설명하고 일측이 한국의 입장에 접근할 것을 요청함.

1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국회의원단 일본 방문

| 64-110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C-8 / 14 / 1~51(51p)

1964년 일본 자민당 총재 초청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다음과 같이 일본을 방문함(일측에서는 여야 의원을 초청하였으나, 민주공화당 의원만 초청에 응함).

1. 방일 의원 명단

- ※ 정구영, 김성곤, 권오훈, 송관수, 조시영, 차지철, 현오봉, 신형식, 서인석, 우승원, 이상두 의원 외 수행원 4명

160

2. 주요 일정

- ※ 3.17. 자민당 총재, 국회의장, 외상, 수상 예방, 소니 공장 시찰, 민단 본부 방문
- ※ 3.18. 이스즈 자동차, 가나가와현 농업 시험장 시찰
- ※ 3.19. 이시가와지마 중공업, NHK 시찰
- ※ 3.23. 하네다 공항 출발, 서울 도착

Gerstenmaier, Eugen 독일 하원의장 방한, 1964.5.28

| 64-111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C-9 / 31 / 1~9(9p)

1. 외무부는 1964.5.28. 총무처장관에게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내한 중인 독일연방공화국의 Eugen Gerstenmaier 하원의장에게 우리나라와 독일 간의 우호증진에 대한 공적을 감안, 동 인이 체한하는 동안 수교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Gerstenmaier 하원의장에 대한 공적서에서 동 인이 한국과 독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경주하여 친한적인 여론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양국간의 강력한 결속에 기여하는 등 한·독간 유대강화와 우호증진에 업적이 다대하다고 평가함.

인도 국회의원 방한

| 64-112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동남아1과
MF번호	C-9 / 32 / 1~152(152p)

우리 정부 초청으로 인도 국회의원들이 다음과 같이 방한함.

1. T.S.Pattabiraman 인도 국민회의파 상원 원내총무 외 1명 방한(1963.10.24.~28.) 주요 일정

- ※ 10.25. 외무부장관 예방,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예방, 농림부장관 예방, 상공부장관 예방, 수출품 전시장 방문,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 10.26.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 방문
- ※ 10.27. 판문점 시찰

162

2. 인도 Swatantra당 Dahyabhai V. Patel 원내총무 외 6명 방한(1964.12.3.~6.) 주요 일정

- ※ 12.3. 도착, 자유센터 개관식 참석, 국회 외무위원장 예방, 국회의장 예방
- ※ 12.4. 판문점 시찰, 외무부장관 예방, 국무총리 예방, 국회 외무위원장 주최 만찬
- ※ 12.5. 농촌 시찰, 이화여대 방문

3. 또한 1964.7월 P.K.Deo 등 6명의 인도 국회의원단이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방문 후 자비로 방한할 것을 희망해 왔으나, 인도측의 비용부족 문제로 방한을 취소함.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대만(구 자유중국) 방문계획

| 64-113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의전과
MF번호	C-8 / 15 / 1~7(7p)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하게 되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대통령의 친서 발급 건의문(1964.9.5.)이 수록되어 있음.

16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민간 친선사절단 월남 파견계획

| 64-114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C-8 / 15 / 1~6(6p)

민간 친선사절단의 베트남(구 월남) 파견계획(1964.7.)에 관한 내용임.

1. 목적

- ※ 베트남에 대하여 한국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를 파악
- ※ 한·미·베트남 3국간의 협동과 공동이익 증진을 추구할 방도를 연구
- ※ 한·베트남 경제인간의 유대 조성

2. 논지

- ※ 현 시점에 있어서 베트남은 과거 한국이 경험한 고난을 그대로 겪고 있으며,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제 여건은 유사한 점이 많아 상부상조할 점도 많음.
- ※ 존슨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세계우방제국에 베트남을 지원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반공투쟁에 있어서 자유제국의 막대한 집단이익을 받은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국제지원의 대열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
- ※ 한·베 양국은 공히 미국의 수원국가이며 한·미·베 3국의 유기적 협동을 긴밀화함으로써 원조와 수원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음.
- ※ 이는 한·미 유대의 고차적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임.
- ※ 한국은 지난 수년래 경제발전을 위한 후진국간의 보다 나은 협조를 추구해 왔으며 한·베 양국의 긴밀한 협조는 그러한 정책을 구현하는 가장 적절한 case임.

3. 사절단 구성

4. 출장시기 및 체류기간(10일)

5. 휴대문서(대통령 친서 등)



6. 시행방책

- ✿ 금후 파견될 친선사절단은 베트남 정부 및 경제계 지도층과 접촉하고 아울러 현지 미국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경제기본조사에 주력하고 그 결과를 귀국 후 정부에 종합보고함.
- ✿ 교섭결과 및 조사보고 중 한국업계에 도움이 될 것은 통상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에 전달함.

Chang, Chun 대만(구 자유중국) 총통비서장 방한, 1964.8.21-27

| 64-115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C-9 / 37 / 1~13(13p)

1. 외무부는 1964.8.21.~27.간 방한하는 대만(구 자유중국)의 장춘 총통비서장에 대하여 동 인이 일정 당 시 중국에 망명한 우리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을 적극 지원했을 뿐 아니라, 한·중문화협회의 상무이사로서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건국공로훈장 또는 1등 수교훈장을 수여할 것을 총무처장관에게 요청함.
2. 장춘 총통비서장은 방한기간 중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을 예방하였으며,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 증정 등의 일정을 가짐.

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 일본 외무성 심의관 방한, 1964.12.11-15

| 64-116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C-9 / 40 / 1~36(36p)

우시바 노부히코 일본 외무성 심의관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방한 목적

- ※ 시이나 일본 외상의 명년초 방한 실현을 위한 정지작업
- ※ 청구권, 어업,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기본관계 등 제 현안 문제에 관한 한국측의 구체적인 입장 및 의향 타진
- ※ 한국 실정 파악

2. 우시바 심의관 경력사항: 1909년 출생으로 1932년 일본 외무성 입부후 1961년 주캐나다대사 역임후 1964.6. 현직에 취임 이래 한일회담 일본측 교체 수석대표이며, 한일회담 및 한일관계에 관한 일본의 최고 사무책임자라 할 수 있으며 차기 외무성 사무차관 후보로서 일본 외무성의 No.3 Man임.

3. 주요 방한 일정: 미국 및 독일 대사관 방문, 국무총리 주최 조찬, 외무차관 주최 만찬, 산업부지 및 공장 견학(냉간 압연공장 부지, 수산센터, 김천 화력발전소, 제일제당, 태광산업, 경남모직공장, 인하공대 부설 중앙직업학교), 판문점 시찰 등

4. 일본 외무성 심의관 일행 방한에 관한 기록(외무부 이주국)

- ※ 면담시 언급사항
- ※ 체한 일정표
- ※ 특기사항(심의관 일행의 지방 시찰시 언동 등)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 64-117 |

생산년도	1962-64
생산과	북미1과
MF번호	C-9 / 42 / 1~165(165p)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한 관련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Hariman 차관보(1962.3.16. 방한)와의 토의내용(면담자료)

- ※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교환: 러시아(구 소련)와 중국(구 중공) 간의 반목, 러시아 및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북한 최근정세
- ※ 외교문제: 외교관계 확장문제, 주한 미군지위에 관한 협정체결, 한일회담관계, 한일회담 타결과 미국의 경제원조문제, 콜롬보 계획의 참가에 대한 협력요청
- ※ 경제원조문제
- ※ 국방문제: 북한 현황, 군원의 한국내 현지조달

2. Bundy 차관보 방한(1964.10.1.~3.)

가. 박정희 대통령 예방 요지(10.2.)

- ※ 대통령: 한일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관해 문의

※ 차관보

- 일본 정부, 자민당 지도자나 실업가들도 한일문제의 조기타결을 희망하고 있음.
- 본인은 일본 자민당 간부들에게 대한 무역제한은 완화하도록 강조하였으나 그들은 이 문제를 어업문제와 관련시키고 있음.
-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한정책은 군사원조 및 경제원조를 막론하고 절대 불변할 것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우리의 대한기본정책을 지속할 것임.

나. 국무총리 예방(10.2.)과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회담(10.2.)

다. 이동원 외무장과의 회담 요지(10.3.)

※ 장관

-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은 만형과 같은 입장에서의 역할 주문
- 한일회담 추진에 대한 국내 여론(학생, 야당, 신문 및 압력단체) 동향과 대책 설명



※ 차관보

- 일본측은 대한 무역제한을 완화하고 한국측은 어업문제(평화선에서의 일본어선 나포 중지)에서 양보하는 안을 제시

라. 이동원 외무장관과 번디 차관보 간 공동성명서(10.3.) 요지

※ 이동원 외무장관과 브라운 주한미대사 간 공동성명서(64.8.17.) 내용 재확인

※ 한일회담 조기 재개 희망 표명과 미국은 동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 등

마. 기자회견 요지(10.3.)

※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역할, 박 대통령의 방미 초청여부, 한일회담 재개 시기, 한일정상화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여부 및 군원 이관문제와 베트남 사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

박동진 주브라질대사 Frei Montalva, E. 칠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64.11.1

| 64-118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C-9 / 2 / 1~11(11p)

1964.11.1.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경축사절로 참석하는 박동진 주브라질대사에 대한
신임장 발급 및 송부에 관한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정규섭 주케냐대리대사 케냐공화국 수립 및 독립 1주년 기념식 참석, 1964.12.10-14

| 64-119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의전과
MF번호	C-9 / 7 / 1~21(21p)

정규섭 주케냐대사대리의 케냐공화국 수립 및 독립 1주년 기념식 참석에 관한 내용임.

1. 케냐정부의 표제 기념식(1964.12.12.)에 한국 정부대표 참석 초청장 송부(1964.10.29.)

- ✿ 정규섭 주케냐대사대리의 케냐 수상에게 Lettre de Cabinet 제정(1964.11.17.)

2. 정부는 정규섭 주케냐대사대리를 표제 기념식에 정부대표로 파견결정

- ✿ 신임장 발급(국·영문)

3. 정규섭 주케냐대사대리의 표제 기념식 참석보고

- ✿ 박정희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전달
- 주재국 언론에 보도
- ✿ 기념행사 일정표 및 대표 파견 국가명
- ✿ 케냐 대통령의 대 국민 메시지 등

17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이성가 주멕시코대사 Robles, Marco A.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64.10.1

| 64-120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의전과
MF번호	C-9 / 11 / 1~17(17p)

1. 이성가 주멕시코대사는 겸임국인 파나마 외무성의 요청에 따라 1964.10.1. 거행될 예정인 Marco A. Robles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별사절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1964.8.25.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이성가 주멕시코대사를 경축특사로 파견키로 결정하고 1964.9.3. 특사 임명에 따른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 발급을 재가 받아 송부 조치함.

북한의 알제리 침투

| 64-121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D-2 / 1 / 1~5(5p)

신현준 주모로코대사는 주재국 신문이 북한과 알제리가 1964.10.23. 통상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하였음을 1964.10.29. 외무부에 보고함.

17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북한의 기니 및 다호메이[베냉] 침투

| 64-122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D-2 / 4 / 1~7(7p)

북한 친선사절단은 다음과 같이 기니, 베냉을 방문함.

1. 기니 방문

✿ 단장: 최영곤

✿ 1964.12.6 기니 대통령과 회담, 정치·경제·문화 면에서 양국의 협력을 다짐하고 공동성명 발표(외국군 철수)

174

2. 다호메이(베냉) 방문

✿ 단장: 김태희 부외상

✿ 1964.12.10. 베냉 도착
- 베냉 대통령과 국회의장 영접

북한의 캄보디아 침투

| 64-123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동남아주과
MF번호	D-2 / 5 / 1~182(182p)

1. 외무부는 1962.4.2. 북한과 캄보디아가 총영사관 설치에 관해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이택근 주프놈펜총영사에게 아래 내용에 따라 주재국에서 활동할 것을 1962.7.23. 훈령함.

- ✪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승인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강조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 총영사에 대하여 영사인가장을 발급해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 ✪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재국 정부가 북한 총영사에게 영사인가장을 발급한다면, 우리 정부는 동 영사인가장 발급행위가 국제법상의 국가승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캄보디아 정부의 명시적 보증을 얻어두도록 할 것

2. 북한의 프놈펜 주재 총영사 강설모는 1962.7.15. 부임을 위해 북경 경유시 캄보디아 정부에 영사인가장 발급을 신청한 후 7.29. 프놈펜에 도착함.

3. 이택근 주프놈펜총영사는 주재국 총리, 외무장관 등을 접촉, 북한 총영사에 대한 영사인가장 발급 저지 교섭을 전개하였는바, 주재국 총리 등은 한국의 입장은 잘 이해하지만 중립정책상 남·북한 양측과 영사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주재국 외무부장은 북한에 대한 영사인가장은 발급 시 한국측이 요청하는 국가승인 유보조항은 고려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9.24.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1962.11.1.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및 내각수반에게 캄보디아 정부가 10.6. 북한 총영사에 대하여도 한국과 동일한 영사인가장을 발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의 활약 결과 영사인가장 발급이 국가승인과는 관계없다는 캄보디아 정부의 해명 공한을 받았음을 보고함.

5. 북한의 인민위원단 일행 17명(대표 최원택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1964.4.5.부터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후 4.20.~27. 간 프놈펜을 방문함. 북한 일행은 프놈펜 방문 중 캄보디아 국가원수 및 정계 요인을 방문하고 4.27. 주재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함.

6. 북한총영사 강설모는 1964.7.25. 한국 휴전 11주년 기념 리셉션 주최 중 연설을 통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15개국 정부를 괴뢰정부라고 부르는 동시에, 한국의 실정을 생지옥에 비유하는 등 모욕적인 내용의 폭언을 하였으며, 동 연설 내용이 주재국 언론에 보도됨. 외무부는 강설모의 연설에 반박하는 해명서를 주재국 관영통신에서 공표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1964.9.17. 주프놈펜총영사에게 지시함.

7. 북한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의장, 이주연 부수상, 박성철 외무상 등 일행 42명이 12.12. 프놈펜을 방문 예정이라고 주프놈펜총영사가 1964.11.27. 외무부에 보고함.

북한 · 콩고 외교관계 수립, 1964.12.24

| 64-124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D-2 / 6 / 1~52(52p)

1. 외무부는 콩고 및 다호메이(베냉)가 중국(구 중공)의 압력이 있을 경우 북한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북한의 진출 동향에 대해 보고할 것을 1964.4.22. 주콩고대사에게 지시함.
2. 콩고 혁명 1주년 기념일에 북한 수상 김일성과 외상 박성철은 콩고 대통령 및 외무장관에게 축전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콩고측에서는 답전을 송부했으나, 콩고 정부측은 이와 같은 조치가 비동맹 중립 정책상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콩고대사가 1964.8.23. 외무부에 보고함.
3. 콩고와 북한은 1964.12.24. 브라자빌에서 기니아 주재 북한대사와 콩고 정부수반인 국무총리가 양국 간에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외교사절을 교환하기로 합의, 서명하였다고 발표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12.26. 주콩고대사에게 두 개의 한국을 부인하는 우리 정부 방침에 유의하여 콩고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제출하고 콩고가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 콩고와의 단교 결정을 취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방침임을 유념토록 지시함.
4. 콩고의 Matsika 노동장관이 인솔하는 콩고정부친선사절단이 1964.12.26.~30.간 북한을 방문, 김일성 수상 등 북한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음.
5. 주콩고대사는 1965.1.2. 콩고 수상을 방문,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우리의 입장을 재천명함. 이에 대해 콩고 수상은 북한 승인은 콩고 정부의 비동맹 정책에 의하여 불가피한 것이며 콩고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 대해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함.
6. 주콩고대사는 콩고 대통령 및 외상과의 면담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신을 소환조치해 줄 것을 1965.1.15. 외무부에 건의함.

북한의 통일이랍공화국 침투

| 64-125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D-2 / 7 / 1~123(123p)

북한의 통일이랍공화국(UAR/이집트) 진출 경위는 다음과 같음.

1. 1958.7.9. 주카이로 북한 무역대표부 설치
2. 1961.7.30. 상호 총영사관 개설 합의
- 178 3. 1961.11.29. 주카이로 북한 총영사관 개설
4. 1963.6.12. 주북한 UAR 총영사관 개설
5. 1963.8.25. 대리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6. 1963.8.28. 주UAR 북한 대사관 개설
7. 1963.8.28. 주중국(구 중공) UAR 대사, 주북한 대리대사 겸임
8. 1964.12.26. 대사급 외교관계 승격 합의

북한의 핀란드 침투

| 64-126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구주과
MF번호	D-2 / 8 / 1~27(27p)

북한은 다음과 같이 사절단을 핀란드에 파견하여 관계증진을 추진함.

1. 1963.11월 통상사절단

2. 1964.8월 통상사절단

- ✿ 대표단 명단
- 김옥진 외무성 직원(단장), 이태백 금강무역사 부사장 외 2명
- ✿ 북한 통상사절단의 상주에 관하여 핀란드 정부관계자와 협의

17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북한의 인도네시아 침투

| 64-127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동남아주과
MF번호	D-2 / 9 / 1~22(22p)

북한의 인도네시아 침투현황과 우리의 대처활동 및 대응방침에 관한 내용임.

1. 북한·인도네시아간 교류현황

180

- ※ 1955. 북한 청년대표단 및 무역대표부의 인도네시아 방문
- ※ 1957.5. 북한 무역대표단의 인도네시아 방문 및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민간통상협정 체결(북한이 아·아권의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협정)
- ※ 1957.12.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의 북한 방문 및 북한 노동당과 공동성명 발표
- ※ 1958.7. 인도네시아 조선협회 설립(자카르타)
- ※ 1958.8. 친선협회 창립(평양)
- ※ 1959.1. 북한·인도네시아 친선협회 대표단 인도네시아 방문 및 쌍방 협회간 문화교류계획 서명
- ※ 1961.6. 북한 무역대표단의 인도네시아 방문 및 영사관계 수립에 대하여 합의
- ※ 1961.8. 인도네시아·조선협회 대표의 북한 방문 및 쌍방 협회간 1961~62년도 문화교류 계획서 서명
- ※ 1961.12. 북한 총영사관 자카르타 설치(심영복 총영사 임명)
- ※ 1964.4.16. 인도네시아·북한 외교관계 수립
- ※ 1964.9. 인도네시아 공군 총사령관(인도네시아 대통령 군사고문)의 북한 방문
- ※ 1964.11. 북한 군사대표단의 인도네시아 방문



2. 한국 · 인도네시아간 관계현황

✪ 우리 정부의 주일대사관을 통한 인도네시아와의 영사관계 수립 추진 결과 1963.11월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인도네시아측이 총영사관 설치를 지연시킴으로써 영사관계 수립이 실현되지 못함.

- 1963년도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8천여불, 수입액은 170여만불임.

✪ 인도네시아측은 1964.8.30. 우리 정부에 대하여 63년도에 논의된 바 있는 영사관계 수립을 다시 제의해 왔는바, 우리 정부는 대 중립국 외교정책의 기본원칙(할슈타인 독트린)에 따라 인도네시아와는 여하한 공식관계도 수립하지 않는다는 정책하에 교역증진을 위한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출장소를 설치키로 함.

3. 참고자료

✪ 북한 친선사절단(단장: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북한 방문관계 일지

✪ 인도네시아와 중국(구 중공) 및 북한과의 관계

✪ 이집트와 북한과의 관계 자료

북한의 일본 침투

| 64-128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동북아과
MF번호	D-2 / 10 / 1~35(35p)

북한의 일본 침투현황 및 우리 정부의 대처활동에 관한 내용임.

1. 조총련의 북한 자유왕래 촉진운동

※ 경위

- 조총련측에 의하면 재일교포들의 자발적인 행위로서 1962년 말경부터 일어난 민중운동이라고 하며, 1963.1월초 동경도내 몇몇 지구의 민중대회 개최
- 1963.3월 제30차 조총련 중앙위원회에서 정책화하여 5월 중순부터 전국 일제히 역, 가두에 선전 뼈라를 살포하고 서명운동 단계에 들어감.

※ 현황

- 동경지구는 조총련계 학생들이 동원되고 있음.
- 요코하마시는 역전, 가두에서 조총련계뿐만 아니라 일본 공산당, 사회당, 노조 등이 협력하여 뼈라 살포와 서명운동 실시
- 오사카에는 뼈라, 포스터, 벽보 등으로 선전과 함께 민중대회 개최(약 1만명 운집) 등

※ 성격

- 본 운동은 강제 북송운동의 연장으로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 책동임.
- 본 운동의 시초 동기와 경위를 보면 강제 북송운동과 흡사하며 북한 자유왕래라는 명목을 띤 북한정권의 사전 흥책임.

2. 우리 정부의 대처활동

※ 일본 정부와의 교섭 및 결과

-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일본 정부가 조총련의 북한 자유왕래를 허용할 경우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파괴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아직도 진행 중인 재일교포 강제 북송문제와 아울러 한일관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을 우려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
- 일본 정부는 입국 이유가 정당하고 또한 입국을 인정하여도 일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case by case 방식으로 입국을 허가한다는 지금까지의 방침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자유왕래 불허방침), 북한과의 일반적인 인적교류는 현재의 한일관계로 보아 무리이므로 무역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정된 범위 내의 교류만을 인정키로 함.

※ 재일 거류민단을 통한 저지운동 전개



- 민단이 전개하고 있는 저지운동은 일본 각계의 조총련 운동에 대한 인도적인 동조로 그 목적 달성이 쉽지 않으며, 재일교포 일부에서는 본국에서 언론계를 통한 반대여론 환기와 일본 정부에 대한 강경한 경고를 요망하고 있음.

북한의 케냐 침투

| 64-129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D-2 / 11 / 1~126(126p)

북한의 케냐 침투기도와 우리 정부의 대처활동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북한의 침투기도

- ※ 북한은 대외문화연락협회 명의로 케냐 KANU당(현 야당) 출판교육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2명의 친선문화 대표단 평양 초청(1962.8.)
- 184 ※ 북한은 63.9.15. 케냐에서 개최된 국제자연동물자원보존 총회에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동 회에 Kenyatta 케냐 수상을 방문(1963.9.)
- ※ 북한은 케냐 독립식 행사(63.12.12.)에 참석을 희망하고 케냐 외무성에 초청장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1963.11.)
- ※ 북한 법무장관 일행이 케냐 독립식에 비공식 참석하고 케냐와의 국교수립을 기도하였으나 실패 (1963.12.)
- ※ 중국(구 중공) 주은래 수상의 64.1월 하순 케냐 방문예정과 좌익성향의 케냐 내무장관 및 주케냐중국대사관의 지원에 힘입어 64.1.15. 케냐 각의에서 북한대사관 설치문제가 토의됨.(1964.1.)
- 북한과 케냐와의 외교관계 수립 원칙이 케냐 각의에서 통과된 후 영국 여왕의 승인을 얻어 64.1.30. 케냐 정부는 북한에 Formal Notice를 송부함.
- ※ 북한대사의 신임장 제정 계획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케냐 각의에서 북한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됨.(1964.2.19.)

2. 대처활동

- ※ 우리 정부는 주미, 주영, 주독 및 서방 주요국 대사에게 주재국 정부의 협조요청과 아울러 주케냐대사대리에게 북한의 대 케냐 침투를 저지토록 하는 훈령을 수시하달
- 주미, 주영, 주독 및 주유엔대사의 결과 보고 및 주케냐대사대리의 특별정세보고
- ※ 케냐 주재 우리 공관 철수검토 행정연구서(외무부 구미국)



3. 우리나라와 케냐와의 외교관계

- ✿ 1963.5.20. 케냐 독립 이전에 영 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케냐 나이로비에 총영사관 설치
- ✿ 1963.11.2. 케냐 독립 즉시 영국 정부를 통하여 케냐측에 국교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안을 제시
- ✿ 1963.12.12. 케냐 독립식 행사에 주영대사와 주케냐총영사 참석
- ✿ 1963.12.18. 케냐 수상은 주케냐총영사에게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하는 것을 수락한다고 언급
- ✿ 1964.1.23. 케냐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수립 및 대사관 설치동의에 관한 정식 동의서를 송부해 옴.

북한의 모리타니 침투

| 64-130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D-2 / 12 / 1~5(5p)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이 대만 외교부를 통하여 확인한 북한과 모리타니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하여 1964.11월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 ※ 대만 외교부 아프리카담당관은 금번 모리타니의 북한과의 수교는 지난 9월 한국이 이스라엘대사를 접수한 사실에 자극되어 북한도 이를 이용한 것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표명함.

북한의 우루과이 침투

| 64-131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D-2 / 14 / 1-82(82p)

1. 외무부는 북한 방송이 1963.4.17. 쿠바주재 북한 무역참사 심정섭 일행이 무역대표단 명목으로 우루과이를 방문 중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북한대표단의 활동 등 상세를 보고할 것을 주브라질대사에게 4.27. 지시함.
2. 주미대사는 미 국무성이 워싱턴 주재 우루과이대사관에게 북한의 우루과이 방문에 관하여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기도를 저지하는 데 협력을 요청했다고 1964.9.22. 외무부에 보고함.
3. 주한미대사관은 우루과이를 방문 중인 북한대표단이 Unofficial Trade Mission으로서 체재하는 데 합의하고 체재기간은 3개월마다 연기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1964.9.9. 외무부에 제공함.
4. 외무부는 북한의 비공식 통상사절단 일행이 우루과이에 입국하여 시도하고 있는 상주 통상기관 설치를 좌절시키고 동시에 우리나라와 우루과이 간의 국교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1964.9.23.~10.9. 간 박동진 주브라질대사를 우루과이에 출장시켰는바, 수교교섭에 성공하여 10.7. 양국 정부간에 대사급 외교사절 교환에 합의함.
5. 주브라질대사는 북한이 1, 2명의 대표를 Montevideo에 잔류시켜 놓고 그들의 체류허가가 갱신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므로 12월 초 주브라질미국대사관을 경유 주우루과이미국대사관에 등 정보를 참고로 제공하고 우루과이 외무성에 대하여 체류허가 기간의 만료 시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도록 특별한 압력을 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1964.12.16. 외무부에 보고함.

18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북한 친선사절단 아프리카 순방, 1964.3.25- [4.18]

| 64-132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아중동과
MF번호	D-2 / 16 / 1~14(14p)

북한 친선사절단은 다음과 같이 아프리카를 순방함.

1. 기간: 1964.3.27.~4.18.

2. 대표단 명단

- ✿ 윤기복 교육장관(수석대표), 서울현 주기네대사, 김병기 외무성 과장 외 1명

3. 방문국

- ✿ 세네갈
 - 세네갈 대통령 예방
 - 세네갈 청년사절단 방북 초청
- ✿ 니제르
 - 북·니제르 문화협력 협정 체결
 - 공동성명 발표
- ✿ 가나
- ✿ 부르키나파소(구 어퍼볼타)

독일 Berlin시의 분할 및 통행문제

| 64-133 |

생산년도	1961-64
생산과	구주과
MF번호	E-2 / 2 / 1~171(171p)

동백림 봉쇄 및 통행협정 규정의 경위는 다음과 같음.

1. 동백림 봉쇄 경위

- ※ 1944.9.12. 런던의정서가 서명되어 백림 분할이 확정됨.
- 분할지역의 인구: 동독 100만 명 / 미, 영, 프랑스 3개지구 200만 명
- ※ 1948.7.4. 백림과 서부를 통하는 통로 봉쇄
- ※ 1948.8.21. 독일연방공화국 선포
- ※ 1948.10월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선포
- ※ 피난민 탈주: 1964년까지 400만 명 이상(동독 인구의 24%)

2. 1964.9.24. 백림 통행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방문기간
- ※ 추가방문
- ※ 통행증 신청 및 교부
- ※ 통행증 취급소 설치
- ※ 통행증 취급소 근무시간
- ※ 통행증 취급소 직원의 구성: 동 · 서백림 각 50% 등

비동맹 정상회담, 제2차, Cairo, 1964.10.5-11. 전2권 v.1 기본문서

| 64-134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F-1 / 1 / 1~241(241p)

제2차 비동맹 정상회담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차 비동맹 정상회담(벨그라드회의)

- ※ 개최 일자 및 장소: 1961.9.1.~6. 유고 벨그라드
- ※ 주최국: 유고, 인도, 이집트
- ※ 참가국: 25개국 및 옵서버 3개국
- ※ 세계평화 및 군축을 위해 미·러(구 소련)협상 촉구 등의 선언문 채택

2. 제2차 비동맹 정상회담

가. 개최 배경: 동서긴장의 해동과 더불어 중·소 이념투쟁의 격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양상의 변화

나. 준비회의(대사급)

- ※ 64.3.23.~28. 콜롬보에서 개최(23개국 참가)

※ 합의사항

- 본회담을 64년 10월 첫 주 카이로에서 개최(본회담 개최 전 외상급 예비회담 개최)
- 초청 대상국은 제1차 회의 참가국과 아랍정상회담 참가국 및 OAU 가맹국 등
- 잠정의제로 반식민주의 및 군축문제, 냉전문제(특히 분단국가 문제 포함) 및 경제협력 문제 논의

다. 외상회의

- ※ 64.10.1.~5. 카이로에서 개최하여 콜롬보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재확인 등

라. 본회담

- ※ 64.10.5.~10. 카이로에서 개최(47개국 및 10개 옵서버 대표국 참가)

※ 결의안 채택(25개항)

- 비동맹정책 원칙은 평화증진과 인류복지를 위한 강력한 힘
- 모든 식민주의와 신 식민주의정책 배격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이질적인 사회제도를 가진 제국간의 평화공존 가능
- 분단국가 문제는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통일에 대한 영원 지지
- 유엔총회에 중국(구 중공)을 유엔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적 중국대표 인정요구 등

3. 표제회담 대비 우리나라의 대처활동과 향후 대책

- ※ 콜롬보 준비회의에서 분단국가 문제가 금차 회의 의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동 회의에 우리나라 옵서버 참석 가능성을 타진함.
- ※ 분단국가 문제에 관한 안건을 의제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함.
- ※ 비동맹국은 그 수적인 우세 때문에 국제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므로 소위 비동맹회의 주도국가 등과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 강화가 요망됨.

비동맹 정상회담, 제2차, Cairo, 1964.10.5-11. 전2권 v.2 자료집

| 64-135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F-1 / 2 / 1~93(93p)

(본 문건은 1964.10.5.~11.간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2차 비동맹정상회담의 참석자 명단과 언론 보도 기사에 관한 자료철입.)

1. 제2차 비동맹정상회담에는 알제리, 앙골라, 버마, 부룬디, 캄보디아, 키프로스,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인도, 쿠웨이트,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67개국 정상과 OAU 및 아랍연맹의 옵서버가 참가함.

192

2. 카이로발 와신들은 Neutral Meet To Emphasize Colonialism, Liberation Moves at Cairo Meet, Agenda Bared for Nonaligned Parley 등의 제하에 비동맹 정상회담의 동정을 소개함.

한국의 대월남 군사원조

| 64-136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동남아주과
MF번호	G-2 / 1 / 1~364(364p)

한국의 대베트남(구 월남) 군사원조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 주월남대사에 미국 군대의 월남 파견에 대한 법적근거 및 월남 주둔 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월·미 협정 유무와 주월 외국군(예: 호주 게릴라 훈련단)의 법적지위 등에 관해 조사보고 지시
※ 주월남대사는 주월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군대의 법적지위 등에 관해 보고
2. 한국군(비 전투원) 월남 파병시 주월한국군의 지위문제 및 제반 절차 문제등에 관해 외무부 관계국간 협의 및 검토 연구서
3. 외무부, 주대만(구 자유중국), 주필리핀, 주태국대사에 주재국 정부의 대월 지원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해 조사보고 지시
4. 강기천 장군과 장우주 장군의 월남 방문(1964.6.5.~9.) 보고
※ 월남 수상, 국방장관 및 참모총장 면담 등
5. 국방장관의 주한미군사령관 앞 이동외과병원(130명) 및 태권도 교관(10명) 파견동의 요청서 (1964.7.10.) 및 주한미군사령관의 파견동의서(1964.7.16.)
6. 월남 수상의 국무총리 앞 대월 지원요청 공한(1964.7.15.) 및 국무총리의 지원약속 회한(1964.8.3.)
7. 외무부, 주월남대사에 파월 한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안)에 관해 월남 정부와의 교섭 지시 및 국방부와의 협의
8. 국방부의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파견에 관한 각의 의결안 및 국회 동의안(1964.7.)
※ 파견 이유: 미국 정부의 한국을 포함한 25개 우방국에 대한 월남 지원요청(1964.5.9.) 등
9. 종군기자 월남 파견 계획안(국방부)

19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 인원: 동아, 서울, 조선, 한국, 경향신문 및 동양통신 등 각 1명

✿ 기간: 6개월(희망시 연장 가능) 등

10. 한국군 제1차 월남 파병(1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 140명)

✿ 출발 및 도착 일자: 1964.9.11./9.22.

✿ 이동외과병원 주둔지: 봉타우(사이공 동남방 100킬로 해변가 휴양지)

11. 외무부의 한국과 월남 간 주월 한국원조단 협정에 관한 각의 상정안

✿ 제안 이유: 월남파병 국회동의(1964.7.31.) 및 국무총리의 지원약속(1964.8.3.) 등

✿ 주요 내용: 특권과 면제에 있어서 주월 한국원조단 및 동 요원은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대우를 받음.

12. 주월대사관의 주월 한국군(이동외과병원:MASH) 현황 보고서(1964.10.)

13. 주월대사관의 자유우방국(24개국)의 대월 지원현황 보고서(1964.10.)

14. 한·월간 주월 한국원조단의 지위협정에 관한 각서교환(1964.10.31.)

✿ 동 협정 각의 의결 및 공포(1964.10.31.): 조약 130호

15. 브라운 주한미국대사, 박정희 대통령 면담시 비 전투부대 추가 파병 요청(1964.12.18.)

주한미군 감축관계 발언 및 언론보도

| 64-137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북미2과
MF번호	G-2 / 3 / 1~25(25p)

1. UPI는 1963.2.18. 개최된 미국 하원 세출소위원회에 참석한 Vance 육군장관과 Wheeler 육군중장에 게 Daniel J. Flood 의원은 한국 혁명정부가 경제문제 때문에 육군 5개사단을 감축할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였다고 1963.4.18.자 기사로 보도함.
2. 외무부는 상기 기사와 관련,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의 5개사단 감축계획이란 사실무근한 것인바, 이와 같은 Flood 의원의 증언의 출처를 조속히 파악 보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향을 조사 회보하도록 1963.4.20.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3. 미 국방성 한국담당관은 1963.4.22. Flood 의원의 한국군 감군설 발언의 출처는 자기로서도 확인할 수 없으나 대체로 민주당 정권시대의 감군설과 1961년 당시 한국의 송요찬 수반이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보낸 공한에서 군사예산지원이 감소되는 경우의 감군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 등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미대사관 육군무관에게 설명함.
4. 또한, 미 국방성 한국담당관은 한국군 감축문제에 대하여는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1963.1.30. 하원 군사위원회 및 2.11.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국방성의 입장을 각각 명백히 한 바 있으며, 문제의 Flood 의원의 발언이 있었던 2.18. 하원 세출위원회 증언에서도 Vance 육군장관은 장차의 감군문제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현 시기나 혹은 가까운 장래에 실질적인 감군 가능성은 없으며 또한 그러한 계획도 없다고 강조하였음을 설명함.

19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SOFA-주한미군주둔 관련 제 문제

| 64-138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G-2 / 7 / 1~269(269p)

주한미군 주둔 관련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주한미군에 의한 한국 여인 만행사건

- ※ 1960.1.2. 동두천 주둔 미 7사단 영내에 들어갔던 한국인 성매매 여성 2명이 미군인 2명에 의하여 사발당한 사건 발생
- ※ 이와 관련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
-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미 행정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됨.

196

2. 주한미군 전용택시 운영문제

- ※ 1961.2.28. 내무부 조사에 의하면 한국운수공사, 아세아교통사가 총 86대의 차량으로 미 군속 및 그 가족을 상대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으나 국내법 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금후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
- 이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요망하는 여론 조성

3. Bank of America의 업무한계

- ※ 1964.12월 외무부는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대하여 주한미군 영내에 설치되어 있는 BOA의 사용자의 범위가 미군 관계인사 및 동 가족에 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사용자의 범위 엄수는 물론 사용권리의 남용이 없도록 미측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함.

SOFA-한·미 합동위원회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 64-139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G-4 / 10 / 1~245(245p)

1. 내무부는 유엔군이 사용한 거액의 수도료 및 전기사용료가 장기간 체불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전력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1962.3.13. 내각사무처 및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 방교국은 유엔군의 수도 및 전기료는 1958.12.18. 서명된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한미간의 협정'에 의하여 1950.6.25.~1957.6.30. 기간 중 한국과 유엔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국이 공익물 용역 및 보급품을 상호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청구권을 청산하였으며, 동 협정 발효 이후의 수도료 등 공익물 용역의 청구권은 수도공급계약 및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한미대사관에 1957.7월~1962.1월 기간 중 발생한 미지불액을 지불하도록 유엔군사령부에 알선해 줄 것을 1962.3.28. 요구함.

※ 주한미대사관은 1962.5.4. 본 건이 국토건설청과 미8군 구매처 간에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1962.3.31. 까지 미군측이 국토건설청으로부터 청구받은 미불액은 이미 지불되었음을 외무부에 회신함.

2. 건설부는 유엔군에 급수한 수도 사용료는 1957.7.1.자 한미간의 용도(급수) 계약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한미간의 협약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미행정협정에 유엔군 수도 사용료 계약을 반영하여 줄 것을 1964.4.13. 외무부에 요청함.

3. 한전과 주한미군 조달본부와의 전기요금 계약서(1962~66)

4. 교통부 철도청과 주한미군당국과의 철도수송 계약서(1962~66)

19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주한태국군 철수 검토

| 64-140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동남아2과
MF번호	G-2 / 14 / 1~58(58p)

주한태국군 철수문제 검토 경위는 다음과 같음.

1. 태국은 1950.11.1. UN군의 일원으로 약 4,000명의 병력과 호송함 1척, 수송기 3대, 해군 수송선박 1척을 투입함.
2. 1963.1월 현재 1개 중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음.
3. 1963.1.5. 태국 국방장관, 주한태국군 철수를 위하여 주한유엔군사령부와 교섭 중에 있다고 발표
4. 1.21. 외무부, 주태국대사에게 태국군 계속 주둔 교섭 지시, 주미대사에게도 미국 정부를 통한 교섭 지시
5. 1.24. 외무차관, 주한태국대사에게 태국군 계속 주둔 요청
6. 1.25. 외무부, 주한미대사관에 미국측 협력 요청
7. 1.26. 주태국대사, 태국 각의에서 태국군 철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태국 외무차관으로부터 확인
8. 7.28. 한국에서 근무하던 태국군 교체부대 135명 태국 향발
9. 7.30. 태국군 교체부대가 태국으로부터 한국 향발

주한터키군 철수 검토

| 64-141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구주과
MF번호	G-2 / 15 / 1~113(113p)

1. 최덕신 외무부장관은 터키 정부가 자국 방위상의 필요,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주한터키군을 철수한다는 첩보를 최근 사전에 입수한 데 이어 2.20. 주한터키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철수 결정을 정식으로 통고해 왔다고 1962.2.28.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보고함.

※ 외무부장관은 주한터키대사에게 터키군의 한국에서의 공로를 찬양하면서, 터키군의 철수에 놀라움과 유감의 뜻을 표하고 철수문제를 재고하여 달라고 완곡하게 요청함.

2. 이와 관련, 주한미국대사관 정치담당 참사관은 2.21. 외무부 정무국장에게 미국 정부는 터키군의 철수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며, 이 결정의 재고를 외교경로를 통해 터키 정부에 요청하겠으니 한국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터키 정부의 철수 결정을 번의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함.

3. 주터키대사대리가 3.13. 주재국 Sancar 터키 국방장관과 Tagmac 총부사령관을 방문하여 터키부대의 계속 파병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함. 터키 정부는 파병중지 결정을 전환시키게 된 것은 한국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함. 한편, 주한터키대사관은 터키 정부가 한국 정부의 철수 결정을 번의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터키군의 철수를 1년간 연기하였다는 공한을 외무부에 송부함.

4. 외무부는 주한터키군의 계속 주둔을 희망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한터키대사 및 주터키대사와 주미한국대사 등을 통하여 교섭하는 한편, 터키 국방당국과 의회의 중요 인사를 통하여 터키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요청함. 터키 외무부장관은 1963.3.4. 터키 정부가 1962년도에 이어 1963년에도 터키군을 계속 한국에 주둔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주터키대사에게 통보함.

5. 1964년도 주한터키군 교체부대 선발대가 6.29. 한국에 도착하였으며 본대는 7.3. 도착함.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터키는 1개 여단 병력을 한국에 급파하였으며, 1961년도부터는 중대병력을 파견함.

19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중국(구 중공)의 유엔가입 및 각국의 중국(구 중공) 승인

| 64-142 |

생산년도	1959-64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H-5 / 4 / 1~234(234p)

중국(구 중공)의 유엔 가입 관련 다음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음.

1. 프랑스의 중국(구 중공) 승인

- ※ 1952년 불-중 간 민간 베이스의 통상협정 체결
- ※ 1963년 드골 대통령 특사 중국 방문
- ※ 프랑스 외상은 1964.1.31.을 전후하여 중국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힘.

2. 프랑스의 중국 승인에 대한 각국의 반응

- ※ 미국: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항의 각서를 프랑스에 전달
- ※ 소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프랑스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 이탈리아: 이 문제를 공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힘.
- ※ 벨기에: 일보 후퇴를 의미한다고 논평
- ※ 캄보디아: 프랑스의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말함.
- ※ 프랑스령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 승인의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일거에 공동행동을 취할 징조는 아직 보이지 않음.

3. 중국의 유엔 가입 문제

- ※ 제16차 유엔총회에서 중국 대표권의 변경문제가 헌장 13조에 의한 'Important Question'으로서 2/3의 다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가결됨.
- ※ 따라서 프랑스의 중국 승인이 중국의 유엔 가입을 어느 정도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대표권 변경 결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하던 국가들이 어느 정도 프랑스의 선례를 따를 것인가에 좌우될 것임.

UNCURK가 사용중인 건물부지의 소유권 분쟁

| 64-143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H-5 / 6 / 1~214(214p)

UNCURK가 사용 중인 종로구 옥인동 건물 부지의 소유권 문제 경위는 다음과 같음.

1. 언커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6·25전쟁 시에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것을 동 미군으로부터 이양 받아 사용하고 있는 귀속재산임.
2. 우리 정부가 미군 측에 재산을 징발 제공한 것은 1951.5.24. 부산에서 체결한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에 근거함.
3. 1952.5월 마이어 협정은 유엔군 사령부 예하 기관이 한국 내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시설물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4. 옥인동 산 2-5번지 재산은 1951.7월 미8군에서 사용하였고 1954.7.1. 언커크에 사용인가 하였음.
5. 그러나 귀속재산을 외국기관에 무료로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귀속재산 처리법에 따라 외무부가 본 건물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함.(1964.6월)

20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국제연합기념묘지 대지소유권 이전 및 관리문제

| 64-144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H-5 / 9 / 1~78(78p)

1. 유엔측은 1959.11.6. 서명되고 같은 해 12.11.자로 발효된 유엔기념묘지 협정 제2조에 따라 기념묘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권은 동 협정 효력발생 일자에 유엔에 귀속되고 한국 정부는 이에 관한 국내 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 처리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60.11.12. 재무부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토지소유권의 조속한 이전 조치를 요청함.

※ 재무부는 부산시 대연동 687의 1 외 129필지에 대해 그 소유권을 유엔으로 이전 완료하였음을 1962.1.9. 외무부에 통보함.

2. 건설부는 1962.6.20. 유엔과의 기념묘지 협정에 대한민국은 기념묘지 인근의 토지가 사용됨으로 인하여 기념묘지의 위신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는 용도'의 한계 등에 대하여 외무부의 견해를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유엔기념묘지의 존엄성을 손상하지 않은 용도에 일정한 한계가 정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일반 통념적으로 묘지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용도에 그 인접 토지가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동 묘지의 존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용도에 사용할 경우라도 가급적 국제연합 관리관과 협의한 후 사용함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1962.7.2. 건설부에 회보함.

3. 부산시가 1963.7월 현재 유엔기념묘지의 존엄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50m 폭의 녹지대를 설치하고 그 인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관리관은 외무부에 대하여 동 녹지대 설치가 도로의 확장으로 예상할 수 있는 외연적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념공원이 협정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기념묘지 경계선 밖의 4.79에이커에 해당하는 면적의 처분 방법 등을 외무부에 문의한바, 외무부는 1963.9.2. 동 건 관련 재무부의 견해를 문의함.

※ 재무부는 유엔과의 협정에 따라 기념묘지의 경계를 확정하면 31.74에이커((38,856평1합)이나 실시 점유는 이보다 0.60에이커(743평3합)가 더 많은 32.34에이커(39,599평4합)인바,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협정에 의할 것인지 또는 현 점유부분에 의할 것인지 회시해 줄 것을 1963.11.16. 외무부에 요청함.

4. 한편, 외무부는 1963.12.23. 부산시의 토지구획사업은 협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협정 위반이며, 만일 협정을 필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건설부에 요청함.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총회, 제1차. Geneva, 1964.3.23-6.16

| 64-145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경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I-6 / 3 / 1~311(311p)

제1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본문서

- ✳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취지, 준비과정, 우리나라가 취한 조치와 금후 전망 및 처리에 관한 검토 보고서(외무부 통상국)
- ✳ 표제총회 참가 대표단에 대한 훈령
 - 기본 훈령
 - 세부 훈령(의제별 한국입장)
 - 1)개회식 2)의장선거 3)내규채택 4)주요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5)부의장 선거 6)간사 선거 7)의제채택 8)일반적 토의 9)국제무역 증대와 경제개발 의의 10)1차산품 문제 11)반제품 및 완제품 문제 12)무역수지 개선 13)지역적 경제통합의 영향 14)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금융문제 15)국제무역 증진방안 시행(제도적 조치, 방법 및 기구) 16)최종조치
- ✳ 정일권 외무장관 출장일정(64.3.18.~4.7.)
 - 서울 출발, 동남아시아 공관장회의 주재(홍콩) 및 표제총회 참석 등
- ✳ 표제총회 정일권 외무장관의 정책연설문(policy statement)
- ✳ 외무장관의 해외출장 보고
 -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정책연설(3.26.)과 프랑스 외상과의 회담(3.27.) 결과

2. 전문보고

- ✳ 회의경과보고
 - 본회의 및 5개 주요위원회 토의사항
- ✳ 건의사항
 - 주요문제 토의 및 투표에 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입장
 - 대표단원 추가 파견(물리적으로 각종회의 참석 불가 등 이유)

3. 보고서(주제네바대표부)

20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진

1965

1964

- ※ 유엔무역개발회의에 대한 고찰(안): 표제총회 참석대표를 위한 연구보고서
 - 유엔무역개발회의의 배경, 성격 및 법적지위와 관계국의 태도
 - 주요 의제와 우리의 입장(통상확대와 경제개발관계, 1차산품 수출문제, 공업생산물 수출문제, 무역수지 진흥책, 무역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재정문제와 국제기구 문제)

- ※ 회의 중간보고
 - 주요 위원회별 토의내용, 주요제안 및 참가국 반응, 우리 입장(본부 건의사항 포함 등)
 - 우리 대표단의 활동상황(75개국 그룹 참가 등)

- ※ 한국 등 77개국 그룹(Group of 77 Developing countries)의 공동선언서(영문)
 - 1962년 후진국의 카이로 선언에 참가한 75개국과 한국 및 베트남(구 월남)

- ※ 종합보고서
 - 유엔무역개발회의 보고서(회의 진행경과, 회의성과 및 미해결문제, 대표단의 관찰, 대표단의 활동, 대표단의 건의) 및 제4위원회관계 종합보고서(기구문제)

WFP-IGC(정부간위원회), 제2-6차. Rome

| 64-146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6 / 8 / 1~100(100p)

WFP-IGC(세계식량계획 정부간위원회)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2차 회의(1962.10.29.~31. 로마)

- ☼ 표제기구 사무국의 표제회의 임시의제

2. 제4차 회의(1963.11.4.~9. 로마)

- ☼ 표제기구 사무국장의 WFP 각국 공여약속 현황(제3차 회의부터 1963.7월말 현재) 등의 보고서와 긴급 구조활동(제3차 회의부터 개시 또는 지속 중인 활동) 보고서

3. 제5차 회의(1964.7.6.~11. 제네바)

- ☼ 표제기구 사무국의 한국 읍서버 참가요청 및 임시의제(17개항) 송부
- ☼ 주제네바 조광제 서기관을 읍서버로 파견
 - 외무부는 읍서버 참가에 관해 경제기획원과 농림부와 협의
- ☼ 회의참가 보고서
 - 회의 개최경과
 - 토의내용
 - 건의사항: 50만불 이하의 사업 승인신청과 풍수해 등으로 인한 식량사정 악화시 긴급구조 요청 등

4. 제6차 회의(1964.12.7.~12. 로마)

- ☼ 표제기구 사무국의 한국 읍서버 참가요청 및 임시의제(16개항) 송부
- ☼ 유엔사무총장은 외무장관 앞 공한(1964.10.29.)으로 우리 정부의 WFP에 대한 공여 요청
 - 경제기획원은 정부의 현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추후 검토 입장
- ☼ 우리 정부는 주이탈리아 강석재 서기관을 읍서버로 파견
- ☼ 회의참가 보고서
 - WFP와 교섭활동: WFP의 제주도 순환도로 건설사업, 낙동강 유역 치수사업 및 송탄 이덕 개간사



업 등 우리 정부 신청사업 승인에 사의표명과 아울러 전북 옥구군 미면 간척사업과 충남 서산군 입봉면 소재 간도지 개간사업 신청에 대한 조속한 승인요청

- 건의사항: 1)WFP에 사업신청 계획서 작성시 고려(WFP서울주재 대표와의 긴밀한 접촉) 2)제7차 회의시 읍서버 파견 요망 3)WFP 사업에 대한 적극참여와 지지의 표시로서(token contribution) 소액의 공여 검토 요망



IMCO 특별총회, 제2차. London, 1964.9.10-15

| 64-147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6 / 14 / 1~151(151p)

제2차 IMCO(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특별총회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MCO사무국의 한국대표 표제총회 초청공한

- ✿ 개최 일자 및 장소: 1964.9.10.~15. 런던
- ✿ 임시의제
 - IMCO 헌장 제17조 및 제18조(이사회 구성), 제28조(해사안전위원회 구성) 수정 등
- ✿ 브라질, 프랑스 및 마다가스카르국이 제출한 각 헌장 수정안 첨부

2. 우리나라 대표 파견

- ✿ 대표: 정규섭 주영대사관 참사관
- ✿ 훈령(수정안에 대한 입장)
 - 이사회 회원국 수를 현재의 16개국에서 18개국 증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할 것
 - 상기 3개 개정 안중 18 A, B항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식은 우리나라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자유우방 다수국가가 동의하는 안을 찬성할 것
 - 상기 3개 개정안 중 18 C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도 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배려만을 인정하는 프랑스안을 찬성할 것
 - 28조 A항에 대해서는 자유우방 다수국가가 지지하는 안을 따를 것. 28조 B항에 대해서는 지역적 배려를 고려하는 안을 택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28조 A항의 경우에 준할 것

3. 회의 참가 보고서

- ✿ 일반사항
- ✿ IMCO 제2차 특별총회 개최 경위 및 목적
-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의제 채택
 - 헌장 제17조, 제18조 및 제28조 수정안 토의(브라질, 프랑스 및 마다가스카르국의 수정안과 유고 및 스페인의 재수정안 등)
- ✿ 각국 대표와의 친선도모
- ✿ 결론
- ✿ 관계자료(회의록 등) 첨부

IAEA 총회, 제8차. Vienna, 1964.9.14-19

| 64-148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7 / 2 / 1~145(145p)

1. 우리 정부는 1964.9.14.~19.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8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다음과 같은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결정함.

수석대표: 윤일선 원자력원장
교체대표: 송광정 주독일대사관 참사관
교체대표: 최동진 주이탈리아대사관

208

2. 외무부가 상기 제8차 IAEA 총회 우리 대표단에 대하여 훈령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금번 총회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참가하는 중요 국제회의이므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며 국가이익 증진을 위하여 각국 대표단과 긴밀히 접촉하여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자유진영 대표들과 긴밀히 접촉함으로써 회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능률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할 것
- ※ 키프로스공화국 및 쿠웨이트에 대한 가입을 지지할 것
- ※ 일본 정부의 차기 제9차 총회의 동경 개최 제의를 지지할 것
- ※ 차기 제9차 총회에서의 극동지역 이사국 개선 시 한국의 출마 의사를 표시하고 각 회원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교섭할 것
- ※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부지 선정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한 조사단의 1965.10~11월 초청을 사전 교섭할 것

UNESCO 총회, 제13차, Paris, 1964.10.20-11.20

| 64-149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7 / 8 / 1~279(279p)

제13차 UNESCO 총회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유네스코 사무국의 한국대표 표제총회 초청공한총회관련 검토보고서

- ✿ 개최 일자 및 장소: 1964.10.20.~11.19. 파리
- ✿ 임시의제(30개항) 첨부 등

2. 대표단 파견

- ✿ 문교부는 외무부에 우리대표단 추천
- ✿ 대표단
 - 수석대표: 김활란 박사(전 이대총장)
 - 특별고문: 백낙준 박사(전 참의원 의장)
 - 교체 수석대표: 이창희 주프랑스공사
 - 대표 및 전문위원 5명
- ✿ 훈령안
 - 일반사항
 - 의제별(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집행위원 선거, 회원국 및 준회원국, 중국 대표권 문제, 소련의 평화공존 제안문제 등) 우리측 입장

3. 주요 문제에 대한 대표단의 중간보고

- ✿ 대만(구 자유중국) 대표권 문제, 유네스코 예산 문제, 집행위원 선출 문제, 소련측의 평화공존 문제에 관한 토의 및 결과 보고

4. 한국대표단 보고서

- ✿ 개황(회기, 장소, 참가국, 회의구성 및 진행, 한국대표단 구성 및 업무분담)
- ✿ 회의경과 및 개요 보고(신회원국 및 준회원국 가입승인, 집행위원 선출 등)

20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 ✿ 수석대표 연설
- ✿ 정부훈령(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집행위원 선거, 중국 대표권 문제 등)에 대한 활동보고
- ✿ 유네스코 사업계획(1965~66) 및 사업예산(1965~66)에 관한 의결
- ✿ 차기 14차 총회에 관한 의결
- ✿ 유네스코 원조 획득 현황
- ✿ 대정부 건의
 - 유네스코 본부 상주대표단 설치 및 강화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보호 및 육성 강화
 - 한국대표단원 구성의 연속성 및 대표단 파견 예산 문제

| 64-150 |

뉴질랜드 UNESCO 국내위원회 주최 학교 간행물 사용에 관한 지역연구회. Wellington, 1960.2.1-26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방교과
MF번호	I-7 / 9 / 1~6(6p)

1. 문교부는 뉴질랜드의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주최로 웰링턴의 빅토리아대학교에서 1960.2.1.~26. 간 개최되는 학교간행물 사용에 관한 지역연구회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명원 교수의 참석을 1960.1.6. 외무부에 추천하여 왔는바, 외무부는 동 지역연구회가 우리나라 교육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견지에서 참석시키기로 결정함.

※ 참석 각국은 1명의 대표만을 파견할 수 있으며 경비는 일체 뉴질랜드 유네스코 국내위원회가 부담함.

2. 동 지역연구회는 유네스코 동서교류 계획의 일부로서 실시되며, 각종 학교용 간행물 편찬 자료의 국제적 교환방법의 협의 및 법적 검토와 간행자료의 신축성 있고 경제적인 편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참가국은 한국 이외에 아프가니스탄, 호주, 버마,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미국, 영국, 소련, 월남 등 28개국과 미주기구(OAS), 남태평양위원회(SFC) 및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함.

21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UNESCO-IBE 주최 국제공공교육회의, 제27차. Geneva, 1964.7.6-13

| 64-151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7 / 18 / 1~114(114p)

1. 외무부는 유네스코(UNESCO)와 국제교육국(IBE)이 공동주최하는 제29차 국제교육국 이사회 및 제27차 국제공공교육회의가 1964.7.4.~17. 간 제네바에서 개최됨에 따라 동 회의에 진필식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참석시킬 것을 결정함.

2. 외무부는 상기 회의 관련 다음과 같은 훈령을 시달함.

※ 국제교육국 이사회

- 모리셔스의 가입을 지지할 것
- 공산국 대표가 인종차별 국가를 축출하지는 제의를 할 것이 예상되며, 미국 정부의 입장은 유엔 회원국이면 모두 회원국 자격을 인정하지는 입장인바, 미국 제안에 찬성할 것
- 포르투갈, 남아연방 초청문제 등이 제기될 시에는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중립정책 및 대 유엔 정책 고려 하에 신중히 임하되 투표가 있을 시 적의 결석 또는 기권 바람.
- 공산진영이 북한의 가입문제를 제기할 증세가 보일 경우 자유진영 대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산 측 기도를 봉쇄토록 노력할 것

※ 국제공공교육회의

- 성인교육 및 중등학교의 현대문 교수 관련사항은 문교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토의할 것

3. 제27차 국제공공회의에서 포르투갈 축출안에 관해 비공식으로 타협이 모색되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여 서방 및 남미제국이 철수한 채 표결에 부쳐 찬성 43 기권 7 결석 43으로 가결되었으며, 국제교육국 및 유네스코 사무당국은 이를 불법결의라고 하면서 철수함. (우리나라는 친서방 동남아 제국과 더불어 기권함.)

IBE 이사회, 제29차. Geneva, 1964.7.4-5

| 64-152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7 / 19 / 1~46(46p)

정부는 제29차 국제교육이사회 및 제27차 국제공공교육회의에 다음과 같이 대표를 파견함.

1. 기간

- ✿ 제29차 국제교육국이사회: 1964.7.4.
- ✿ 제27차 국제공공교육회의: 1964.7.6.~17.

2. 대표: 진필식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3. 파견 목적

- ✿ 우리나라의 교육현황 소개
- ✿ 성인교육에 관한 외국의 경험 도입
- ✿ 한국 교육발전 기여

21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IBE 집행위원회, 제41차. Geneva, 1964.2.25-26

| 64-153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7 / 20 / 1~30(30p)

1. 제41차 IBE(국제교육국: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집행위원회가 1964.2.25.~26.간 제네바에
서 개최됨.

2. 외무부, 문교부에 IBE 회의관련 하기 사항에 대해 의견 문의(1964.2.14.)

- ※ 주제네바공사의 우리나라 대표 임명에 대한 의견
- ※ 의제 검토 후 1963년도에 개최된 제26차 국제공공교육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집행 현황과 우리 대표에 대한 정부 훈령을 위한 문교부의 의견

214

3. 문교부, 상기 외무부 문의에 대한 회보(1964.2.18.)

- ※ 주제네바공사의 우리나라 대표 임명 동의
- ※ 의제별 우리측 입장
 - 세네갈, 카타르 및 알제리의 국제교육국 가입지시 등

4. 외무부, 주제네바공사에 IBE 회의 참석에 따른 의제별 우리 입장 등 훈령 하달

5. 기타 본 문건에는 주제네바대표부의 회의 참석 보고서(의제별 토의내용, 우리 대표의 발언내용 등)가 수록되어 있음.

FAO 이사국 한국 당선

| 64-154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8 / 3 / 1~372(372p)

1. 외무부는 우리나라가 1949.9.25.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 가입한 이래 동 기구와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나라의 농업, 임업 및 수산업 발전에 진력하여 왔으나 동 기구의 실질적인 운영기관인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961.11.4.~24. 간 로마에서 개최되는 FAO 제11차 총회에서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입후보할 것을 1961.5.18. 결정하고 각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지 교섭을 위한 훈령을 하달함.

※ 이사회 회원국은 총 25개국인바, 아시아 및 극동지역 이사국은 태국, 파키스탄,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5개국으로 1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는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의 3개국임. 동 임기 만료 3개국 중 태국은 재선 입후보할 뜻을 표명하였으며, 그 밖에 극동지역 이사국으로 입후보한 국가는 한국, 버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월남임.

2. 주이탈리아대사는 FAO 제11차 총회 이사국 보선에 대해 현지 정보를 수집한 결과, 그 결과가 낙관적 이 아님을 1961.11.14. 외무부에 보고함.

3. 1961.11.25. FAO 이사국 보선 투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등 22개국의 지지밖에 얻지 못 하여 이사국에 선출되지 못함. 아시아 극동지역에서는 7차까지 가는 격전 끝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선출됨.

4. 외무부는 1963.11월 로마에서 개최되는 FAO 제12차 총회에서 아시아 및 극동지역 이사국으로 다시 입후보할 것을 결정함. 이와 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1963년말 인도 및 파키스탄, 1964년말에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임기가 만료되어 비교적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및 극동지역 국가 중 이사국을 역임한 바 없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한국 등 몇 나라밖에 없다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이사국 입후보에 적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5. FAO 제12차 총회 기간 중인 1963.12.3. 실시된 아시아 및 극동지역의 이사국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92표 중 말레이시아가 80표, 한국이 76표를 얻어 각각 당선이 확정됨. 우리 대표단은 금번 이사국 선거 시 아프리카 지역 및 기타 서방측 국가의 지원으로 이사국에 선출된 것으로 분석함.

※ 일본과 네팔은 득표수 미달로 재투표 결과 53 대 38로 일본이 당선됨.

21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FAO 아시아 및 극동지역 총회, 제7차. Manila, 1964.11.7-23

| 64-155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8 / 7 / 1~159(159p)

1964.11.7.~23.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FAO 국제 미곡심의회 제9차 회의 및 제7차 FAO 아시아 및 극동지역 총회에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단이 참석함.

1. 대표단

- ※ 한국진 농림수산부 차관 외 4명

216

2. 주요 협의내용

- ※ 지역 내에서의 식량과 농업사정
- ※ 지역 내의 FAO 사업 추진
- ※ 세계 식량대회 및 기아해방운동의 장래 방향
- ※ 농산물 증산과 농민의 의욕 증진
- ※ 개발계획의 실행과 농업교육 및 훈련의 역할
- ※ 경제개발과 영양개선에 대한 농산물 가공의 기여
- ※ 낙농개발의 성공적 계획과 실천을 위한 기본문제
- ※ 지역 내 교역문제와 그 전망
- ※ 인구 증가 문제

FAO 상품문제위원회, 제37차. Rome,
1964.9.22-10.1

| 64-156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8 / 16 / 1~62(62p)

1. FAO 사무국은 1964.9.22.~10.1.간 로마의 FAO 본부에서 개최되는 상품위원회 제37차 회의에 우리나라에서 옵서버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상기 회의에 주이탈리아대사관의 강석재 2등서기관이 옵서버로 참석하여 관계서류를 입수, 본부에 송부할 것을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지시함.

21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FAO 아시아극동지역 농업통계위원회 한국 가입, 1964.8.28

| 64-157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23 / 2 / 1~31(31p)

우리나라는 FAO 아시아 및 극동지역 농업통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가입함.

1. 가입 초청

- ✿ 1964.8월 FAO 아시아 및 극동지역 농업통계위원회는 동 위원회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도록 초청

2. 우리나라의 가입 통고

218

- ✿ 1964.8.28. 우리나라는 동 위원회 가입을 결정하고 FAO 당국에 이 사실을 통고함.

IPFC 총회, 제11차, Kuala Lumpur,
1964.10.16-31

| 64-158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9 / 2 / 1~136(136p)

정부는 1964.10.16.~31.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1차 인도 태평양 수산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대표를 파견함.

1. 대표

- ※ 이봉래 농림부 수산국장
- ※ 정보영 주말레이시아 3등서기관

2. 파견 목적

- ※ 수산자원의 적절한 이용 및 개발문제 토의
- ※ 한국 수산업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 계기 마련

21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IPFC 집행위원회, 제35차. Bangkok,
1964.6.22-28

| 64-159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9 / 3 / 1~14(14p)

1964.6.22.~28.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FAO 인도 태평양 수산이사회 제35차 집행위원회에 우리 대표는 다음과 같이 참석함.

1. 대표: 이봉래 농림부 수산국장

2. 의제: 차기 총회 개최에 대한 제반문제 토의

WHO 총회, 제17차. Geneva, 1964.3.3-21

| 64-160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9 / 9 / 1~150(150p)

제17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WHO 사무총장의 회의 관련 공한

- ※ 회의 개최 일자(1964.3.3.~21.) 및 장소(제네바) 선정 문제에 있어서 여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회의(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와 개최 일자 및 장소가 거의 겹쳐 동 기구와의 협의 내용 등
- ※ 회의시 토의될 “보건 및 사회발전에 미치는 상수도(급수)프로그램의 영향”에 관한 질의서 등(보사부는 답변서 송부)

2. WHO사무국의 회의 임시의제 통보

- ※ 본회의(15개항), 기획 및 예산위원회(12개항), 행정, 재무 및 법사위원회 소관사항(15개항)

3. 대표단 파견

- ※ 대표단
 - 수석대표: 윤석우 보사부 보건국장/교체대표: 이종업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
- ※ 훈령
 - 금번 총회에서는 중국(구 중공)의 대표권 문제를 공산국가에서 강력히 밀고 나올 것이 예상되며 이와 아울러 북한의 동 기구 가입문제에 각별한 주의 요망

4. 주제네바대표부의 중국 WHO 가입여부 결과 보고

- ※ 중국 대표권 문제는 신임장 위원회 보고서 제기되어 체코, 러시아(구 소련), 프랑스 등 14개국 대표단이 가입지지 발언
 - 프랑스 대표단은 “프랑스 정부의 이름으로 중국의 본 기구 가입을 찬성한다”라는 간단한 발언
- ※ 대만(구 자유중국), 베트남(구 월남), 필리핀 대표단 등은 가입반대 발언
 - 필리핀 대표단은 “중국 대표권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며,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WHO총회에서 토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유엔 같은 기관(유엔총회)에서 토의되어야 한다”고 발언
 - 한국 대표단은 정부훈령(대만 대표단의 요청이 있을 시 발언)과 대만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대표단의 견해에 동조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행함.



✿ 투표결과 중국 가입 부결

✿ 신임장위원회 보고시 중국의 대표권 문제 이외에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규탄과 동 국의 축출 등이 주장되었으나, 양단된 국가 즉, 독일 ,한국, 베트남의 대표권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음.

222

5. 우리 수석대표의 중간 보고

✿ 개회, 신임장위원회, 지명위원회 및 1963년도 실적보고에 관한 토의 및 경과내용 등



WHO 서태평양지역위원회, 제15차, Manila, 1964.9.17-22

| 64-161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9 / 16 / 1~82(82p)

제15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위원회에 관한 내용임.

1. WHO 서태평양 지역국의 회의 초청 공한(1964.6.8.)

- ※ 한국대표 통보요청
- ※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토의할 의제 제안요청
- ※ 의제(23개항) 첨부

2. 외무부, 보사부에 회의관련 하기사항 요청

- ※ 정부대표 1명 추천
- ※ 회의 의제 제의여부
- ※ 국내보건 현황 및 훈령자료 제출 등

3. 보사부, 회의 관련사항 회보

- ※ 정부대표 1명 추천
- ※ 토의의제(급속히 증가하는 인구문제와 공중보건 문제) 제출
- ※ 국내보건 현황 및 의제별 우리나라 입장 등 제출

4. 정부대표단 파견

- ※ 수석대표: 한상태 보사부 방역과장 / 교체대표: 진관섭 외무부 담당관
- ※ 훈령사항
 -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회의참가 보고서를 관계자료와 함께 제출할 것. 특히 명년도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예정이므로 이 점 재확인과 아울러 제반 준비사항을 WHO 지역국과 협의할 것

5. 회의 결의안

- ※ 취학 이전 아동 건강보호 촉구 등

ILO(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제153-158차. Geneva

| 64-162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9 / 17 / 1~21(21p)

ILO(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관한 내용임.

1. 제153차 이사회

※ 개최기간 및 장소: 1962.11.6.~9. 제네바

※ 의제

- 61년 및 62년도 ILO 활동 보고
- ILO 주관 세미나 및 연구결과 평가
- 64년도 국제노동회의 의제 결정 등

※ 주제네바대표부의 회의결과 보고

2. 제154차 이사회

※ 개최 기간 및 장소: 1963.3.5.~8. 제네바

3. ILO 추계 이사회

※ 개최 기간 및 장소: 1963.11.12.~15. 제네바

※ 의제

- 64년도 국제노동회의 개최일자 결정
- 65년도 국제노동회의 개최일자 및 의제 결정
- 최근에 개최된 각종회의 결론에 대한 검토 등

※ 주제네바대표부의 회의결과 보고

4. 제158차 이사회

※ 개최 기간 및 장소: 1964.2.13.~17. 제네바

※ 주제네바대표부의 회의결과 보고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제15차, Vienna, 1964.5.29-7.11

| 64-163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9 / 20 / 1~419(419p)

제15차 UPU(만국우편연합) 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기간, 장소: 1964.5.29.~7.11, 비엔나

2. 대표단: 이창희 주프랑스공사, 방문기 체신부 우정국장 외 1명

3. 회의 결과

- ✿ 대만(구 자유중국) 축출 결의안 부결
- ✿ 남아연방공화국 규탄결의안 가결
- ✿ 현재의 만국우편조약을 연합의 기본조약사항은 헌장에 규정하고 현 조약에는 통상 우편업무 사항만을 규제하도록 하는 조약 분리 안을 가결함.
- ✿ 1964~68년간의 연합의 경비문제 결정
- ✿ 협정문서의 발효시기 및 유효기간 결정
- ✿ 우리나라가 서명한 협정문
 - UPU 헌장
 - UPU 헌장 최종 의정서
 - UPU 총칙
 - UPU 총칙 최종의정서
 - UPU 조약
 - UPU 조약 최종의정서
 - UPU 조약 시행규정
 - 소포 우편물 약정
 - 소포우편 약정 최종의정서
 - 소포우편 약정 시행규칙

22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64-164 |

ITU 항공이동업무용 주파수분배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무선통신주관청회의. Geneva, 1964.1.27-2.23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9 / 22 / 1~117(117p)

1.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항공이동업무용 주파수분배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무선통신 주관청회의가 1964.1.22.~2.23.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진필식 주제네바공사(수석대표), 체신부 전 파관리국장 등 3명이 참석함

✿ 우리 대표단은 사정상 일반적인 사항을 토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2.1.부터 시작되는 본 회의에 참석함.

226

2. 외무부는 상기 대표단에 대하여 금번 회의의 목적이 1965년의 본회의를 위한 준비단계임을 감안하여 1959년 제네바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 무선통신규칙의 제규정에 영향을 주거나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주는 안건의 채택 여부를 확인하여 이러한 안건들을 향후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국내무선통신망이 미비하므로 각종 통신을 단파주파수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단파주파수대 지역분배 계획에 관한 변경계획을 제한해야 된다는 점 등을 유의하여 회의에 임할 것을 훈령함.

ITU인사 방한

| 64-165 |

생산년도 | 1962-64

생 산 과 | 국제기구과

MF번호 | I-10 / 1 / 1~79(79p)

1. 체신부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Gerald C. Gross 사무총장을 유엔특별기금에 의한 전기통신 훈련 소 설치에 관한 운영계획서 서명차 1962.9.20.~9.24. 간 방한 초청함.
2. 체신부는 ITU의 Sandaram 기술원조부장을 1964.5.18.~22.간 방한 초청함. 동 인은 방한 기간 중 UN 특별기금에 의한 한국의 라디오통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한국 정부와 독일 정부 간의 양자 협정에 의해 독일로부터 라디오 통신장비를 공급받는 방안 등에 대해 체신부측과 협의함.

22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ITU-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총회, 제3차. Geneva, 1964.5.25-6.26

| 64-166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0 / 2 / 1~82(82p)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제3차 총회 개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기간: 1964.5.25.~6.27.

2. 장소: 제네바

228

3. 대표단

- ※ 안동열 체신부 공무국장, 김길식 체신부 사무관

4. 주요 토의사항

- ※ 북한, 중국(구 중공), 동독 등 대표단의 참석을 주장하는 공산측 발언에 대하여 본 회의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회의이므로 정치문제를 토의할 수 없다는 자유진영의 성명이 발표되었고 의장의 제안으로 이 문제 토의에 종결을 봄.
- ※ 독일에 대한 세계 자동전화 회선망 단일국가 약호(49)를 부여하기로 결정. 우리나라 단일국가 약호도 원안대로 통과
- ※ 대한민국 텔렉스 약호를 801로 결정, 전보 재송 약호표 승인(서울 KRSE, 기타 KRSX)

IOE총회, 제32차. Paris, 1964.5.18-23

| 64-167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0 / 7 / 1~46(46p)

1. 외무부는 1964.5.18.~23.간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32차 IOE(국제수역국사무국) 총회에 주프랑스대사관의 이승수 1등서기관을 참석시킬 것을 결정함.

※ 농림부는 여비관계상 대표를 파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주프랑스대사관 직원이 참석한 후, 동 결과를 알려줄 것을 1964.4.28. 외무부에 요청함.

2. 상기 IOE 총회에는 60개국의 수역전문가 및 기타 국제기구의 옵서버가 참석함. 총회시 IOE의 Vittos 사무국장은 1964년도 사무국의 활동과 과학·기술분야에 걸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각국 대표들은 의제별로 송아지전염병 및 가축백혈병 등에 관하여 발표함.

3. 각 지역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 대표가 참석한 동아시아위원회에는 일본, 월남, 태국, 인도, 파키스탄, 캄보디아 대표가 참석하여 1964.11.24.~29.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지역수역회의에 관해 논의함.

4. 1965년도 차기 총회는 5.24.~29.간 IOE 본부에서 개최기로 하였으며, 차기 총회 의장단으로 의장에는 베네수엘라 대표, 부의장에는 이란 대표가 선출됨.

22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IOE 아시아지역회의, New Delhi,
1964.11.24-29

| 64-168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0 / 8 / 1~46(46p)

국제수역사무국 아시아지역회의에 우리 대표는 다음과 같이 참석함.

1. 기간: 1964.11.21.~12.12.

2. 장소: 뉴델리

230

3. 대표: 김영한 농림부 축산국장

4. 주요 협의내용

- ※ 구제역의 발생 및 예방
- ※ 우역의 발생 및 예방
- ※ 조류에 의한 전염병 방역
- ※ 각국별 가축위생 및 병리시험관계 시행규칙 토의
- ※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방법

AOPU(아시아·대양주우편연합)회의. Vienna, 1964.5.26-28

| 64-169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0 / 11 / 1~42(42p)

1964년도 AOPU(아시아·대양주 우편연합: Asian-Oceanic Postal Union)에 관한 내용임.

1. 체신부, 외무부에 회의 관련 의견문의(1964.3.13.)

- ※ 회의 개최(1964.5.26.~28. 비엔나) 관련 우리나라 대표 명단
- ※ 아시아·대양주 우편연합에 인도 등 15개국 읍서버 초청계획에 대한 의견

2. 외무부, 상기 체신부 문의에 대한 회보(1964.4.18.)

- ※ 우리 대표단 결정 통보
 - 수석대표: 이창희 주프랑스공사 / 교체대표: 방문기 체신부 우정국장
 - 대표: 김용수 체신부 국제우편과장
- ※ 15개국 읍서버 초청에 대해 이의 없음

3. 외무부, 우리 수석대표에 훈령 하달

- ※ 국가이익의 증진과 국위선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 ※ 관계자료와 함께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회의 복명서 제출
- ※ 회의 참가 계획서(체신부 자료)
 - 회의배경 검토 연구서
 - 국내현황 조사서
 - 논쟁자료 및 제안설명서(영문) 등

4. 대표단(교체 수석대표 및 대표)의 해외출장 복명서

- ※ 회의 참가국
 - 회원국(4개국):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필리핀 및 태국
 - 읍서버(7개국): 인도, 이란, 파키스탄, 홍콩, 호주, 싱가포르 및 일본
- ※ 주요 토의사항

23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 AOPU회원국 확장문제
- AOPU회원국간 우편요금 인하 및 우편업무 개선확장
- 회원국 우정청 상호간 기술원조
- AOPU 회장
- 제15차 UPU(만국우편연합)총회 대비사항 토의
- 1963년도 AOPU 활동보고
- 차기 AOPU회의 등



IBWM총회, 제12차. Paris, 1964.10.6-13

| 64-170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0 / 16 / 1~167(167p)

제12차 국제도량형국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됨.

1. 기간: 1964.10.6.~13.

2. 장소: 파리

3. 대표: 이승수 주프랑스대사관 2등서기관

4. 주요 협의내용

- ✿ 사무국장 선출
- ✿ 이온 방사능과 신설을 위한 제3차 분담금 문제
- ✿ 국제 도량형국의 총예산 인상문제
- ✿ 국제 도량형국의 사용언어 문제
- ✿ 국제 도량형 위원회 위원 개선 등

23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AARRO집행위원회, 제3차. New Delhi, 1964.12.21-22

| 64-171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0 / 18 / 1~43(43p)

1.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제3차 집행위원회가 1964.12.21.~22.간 뉴델리에서 개최되어 정남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이 동 회의에 참석함.

✿ 우리나라는 동 기구의 제1차 총회에서 집행위원국으로 피선됨.

2. 상기 제3차 집행위원회는 당초 1964.10.15.~16.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개최시 및 개최장소가 변경됨.

AARRO(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총회, 제1차, Kuala Lumpur, 1964.2.17-3.2

| 64-172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0 / 17 / 1~144(144p)

제1차 AARRO(Afro-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 총회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ARRO 사무총장의 한국대표 초청공한

- ✿ 개최 일자 및 장소: 1964.2.17.~3.2.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 임시의제(10개항) 및 프로그램 등 첨부
- ✿ 하기 문제에 대한 한국대표 연설요청
 - 농촌계획 수립방법
 - 농촌개발기구
 - 협동조합 관계법
 - 교육, 훈련 및 연구

2. 대표단 파견

- ✿ 대표단
 - 수석대표: 채관식 농림부 농업생산국장
 - 대표: 박진환 서울대 농대교수
- ✿ 훈령
- ✿ 우리 대표 발표문(안)
 - 한국의 농촌진흥사업
 - 한국에 있어서의 농업협동조합의 기구, 활동 및 법에 관한 소개
 - 한국에 있어서의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교육, 조사 및 연구사업에 관한 소개

3. 회의 참가 보고서

- ✿ AARRO 기구의 연혁, 조직 및 활동
- ✿ 회의 일자 및 의제

- ※ 대표단의 구성 및 회의준비
- ※ 회의 진행사항
- ※ 대표단의 활동 및 업무분담
- ※ 집행위원회 구성과 토의사항
- ※ 회의소감 및 성과
- ※ 건의사항
- ※ 부록(회의 일정표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회원국 및 참가자 명단, 사무총장 임명 토의내용 발췌본 등)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방교과
MF번호	I-11 / 1 / 1~354(354p)

우리나라의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 가입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참의원 및 민의원 의장 명의의 가입희망 메시지 IPU사무국 전달(1960.8.28.)

2. IPU 한국협회 결성(1960.12.3.)

3. IPU 한국협회의 IPU 가입신청서 제출(1960.12.13.)

- ※ 제120차 IPU집행위원회(1960.12.14.~15. 제네바)개최시 IPU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가입신청서 제출지연으로 토의되지 못함.

4. 제121차 IPU집행위원회 및 제88차 이사회(1961.4.3.~9. 제네바) 대비활동

- ※ 북한의 가입저지와 한국 단독가입을 위한 주미, 주영 및 주제네바대표부 등 관련공관의 IPU 당국 및 주재국 IPU 대표와의 교섭활동 및 결과보고
- ※ 박준규 민의원 현지 교섭활동결과 외무장관 앞 보고서 및 건의서
- ※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결과
 - 북한가입 저지 및 한국 단독가입 승인(단, 남한만을 대표한다는 조건부)
- ※ 사후 대책활동
 - 북한의 IPU 가입 저지와 한국 가입을 위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라이베리아 및 미국 등 우방국 IPU 대표에 대한 훈장 수여 추진 등

5. 제50차 IPU총회(1961.9.14.~22. 브뤼셀) 대비활동

- ※ 북한의 IPU가입저지와 1961.5.16. 혁명으로 국회가 해산됨에 따른 우리나라의 IPU회원 자격문제(국회해산시 IPU 회원자격의 자동적 정지와 국회가 재조직시 자동적 복귀 여부 등)에 관한 주제네바 등 관련공관의 IPU당국 및 주재국 IPU대표와의 교섭활동



✿ 주독일대사관 윤석헌 참사관 옵서버 자격 파견

✿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결과

- 북한의 IPU 가입신청 봉쇄 및 한국의 IPU가입 일시정지
- 우리나라의 경우 1961.4. IPU가입승인은 유효하나 다만 IPU규약 제3조에 의거 필요한 조건, 즉 남한 인구만 대표한다는 서면이 제출되지 않아 가입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신 국회가 구성되어 전기 서면 제출시 가입효력 발생

238

6. 북한의 IPU가입 무산

✿ 북한은 1958년도에 IPU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48차 및 제49차 총회시 가입 시도하였으나 우리의 저지활동으로 가입이 봉쇄됨.

IPU(국제의원연맹) 가입. 전2권 v.2 1964

| 64-174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방교과
MF번호	I-11 / 2 / 1~421(421p)

우리나라의 IPU(국제의원연맹) 가입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PU 한국의원협회 재결성(1964.2.20.)
2.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IPU당국에 가입신청서 제출(1964.3.13.)
3. 차기 IPU 집행위원회 및 평의회(1964.4.5.~6. 스위스 루센른 개최) 대비, 주제네바대표부 등 전 재외공관의 가입교섭활동과 국회 박준규 의원 및 김성용 의원(한국의원협회 간사:읍서버 파견)의 현지활동
※ 특히, 현재 양단된 독일 및 월남의 IPU가입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도 부대조건(남한만을 대표한다는 조건) 없이 IPU 가입희망
4. 제131차 IPU집행위원회(1964.3.30. 개최)는 한국 가입안을 64년 8월(코펜하겐 개최)로 연기 결정
5. 한국의원협회 회장(국회의장)의 IPU 각국 의원협회 회장 앞 우리나라 IPU가입지지 요청서한 발송(1964.6.)
6. 북한의 IPU 가입신청서 제출(1964.7월초)
※ 제132차 IPU집행위원회(코펜하겐 개최)에서 정식 논의 가능성
7. 외무부의 차기 IPU집행위 대비, 우리의 IPU가입 및 북한의 가입저지 대책활동 전 재외공관에 하달(1964.7.) 및 각 공관의 현지교섭 결과보고
8. 외무부의 국회 사무총장 앞 IPU가입교섭 경위보고서(1964.7.)
※ IPU가입신청서 제출 전 교섭경위(1964.3.13.), 가입신청서 제출 후 교섭경위(1964.3.13. 이후) 및 IPU 8월회의 대비 교섭경위
9. 국회 IPU가입 교섭대표단(단장: 나용균 국회부의장)파견(1964.7.)

23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10. IPU한국의원협회의 IPU 가입추진 교섭자료

11. IPU한국의원협회 제1차 총회 회의록(1964.6.15.)

12. IPU 국회 가입교섭단의 제132차 IPU집행위원회 및 제94차 이사회 결과보고(1964.8.20.)

✻ 한국 가입안 가결(남한만을 대표한다는 조건부) 및 북한 가입안 보류

240

13. 한국 대표단의 IPU가입안 수락 통고(1964.8.20.)

14. 한국 대표단의 IPU총회 참석 및 가입수락 연설(1964.8.21.)

15. 한국 IPU 조건부 가입동의에 관한 국내 언론 보도

16. 대통령 정무비서관의 한국 IPU 가입문제에 관한 보고서(1964.8.26.)



ICPO(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33차. Caracas, 1964.9.30-10.7

| 64-175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1 / 5 / 1~107(107p)

1. 내무부는 한국 경찰의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내무부장관 명의로 1964.4.11. 동 기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1964.9.30.~10.7.간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개최되는 동 기구 제33차 정기총회에서 한국 경찰의 가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원국에 대한 지지교섭을 해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64.5.4. 주미, 주영, 주프랑스, 주일 등 24개 재외공관에 대해 주재국 및 겸임국의 Police Body와 한국 경찰의 INTERPOL 가입을 지지해 주도록 교섭할 것을 훈령함.
3. 외무부는 1964.8.28. 현재 재외공관의 지지 교섭 결과 우리나라의 INTERPOL 가입 지지를 통보한 국가 20개국, 가입을 지지하나 최종 결정을 보지 못한 국가 3개국, 대표 불참으로 지지 불능을 통보한 국가가 1개국임을 내무부에 통보함.

24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EROPA 집행이사회, 제6차. 동경, 1964.5.31-6.1

| 64-176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2 / 1 / 1~85(85p)

제6차 EROPA(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동부지역 공공행정 기구) 집행이사회에 관한 내용임.

1. EROPA사무국의 한국대표 초청공한

※ 개최 일자 및 장소: 1964.5.31.~6.6. 동경

242

※ 회의일정 및 회원국현황 첨부

2. 대표단 파견: 수석대표 김옥형 총무처 차관 외 6명

3. 우리 대표단의 회의 중간보고

※ 한국대표는 EROPA이사회 '장래사업 계획분과 위원회' 위원장 및 '현장 개정위원회' 위원 선임 예정

※ 한국대표는 금년 11월 우리나라 개최 제3차 총회 준비사항 보고 예정

※ EROPA본부의 동남아시아 내 EROPA 외교관훈련지역센터 설치계획 관련 한국의 동 센터 설치 제의 검토에 대한 정부입장 청훈 등
- 외무부는 총무처와 협의 후 훈령 하달

4. 수석대표의 EROPA이사회 및 세미나(아세아에 있어서 대 도시지역의 도시계획) 참석 결과보고서

※ 정부대표단 명단

※ EROPA 제6차 이사회

- 회의 일정표(1964.5.31.~6.6.)

- 회의(본회의 및 4개 분과위원회) 참석결과 및 우리 대표단의 활동 보고

※ 세미나

- 일정표(1964.6.7.~13.)

- 세미나(뉴델리, 방콕, 싱가포르, 자카르타, 동경 및 나고야의 도시계획에 관한 보고 및 토의) 참석 결과 및 우리 대표단의 활동 보고

EROPA 총회, 제3차 및 집행이사회, 제8차. 서울, 1964.11.7-17

| 64-177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2 / 2 / 1~267(267p)

1. EROPA(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제3차 총회와 집행위원회가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이란, 미국, 일본 등의 관리, 학자 및 각종 국제기구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64.11.9.~16.간 서울에서 개최되어 동부지역 내 발전도상국가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상호토론하고 해결방안을 협의함.

※ EROPA는 동부지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공공행정에 있어서 지역협력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58년에 창설됨.

2. 상기 총회 시 4차에 걸쳐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총회 논의 의제 결정, 신입회원 소개, 사무총장 및 이사회 의장의 보고, 총회분과위원 임명, 컨트리리포트 보고(필리핀 경제조정관의 '개발계획 및 정책', 이란 국무장관의 '개발행정기구', 한국 재무장관의 '개발재정') 및 각 분과위원회 개최 등의 일정이 진행됨.

3. 총회 개회식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여 차사를 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회의 개최 기간 중 회의 참석 각국 대표들을 위하여 총무처장관 및 서울시장 주최 만찬, 중앙공무원교육원·외무공무원교육원·육사 방문, 시내 관광 등의 일정을 주선했.

24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기술원조에 관한 아시아지역본회의 예비회의. New Delhi, 1964.3.30-31

| 64-178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국제연합과
MF번호	I-12 / 3 / 1~29(29p)

1.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는 1965.1.18.~23. 간 방콕에서 개최될 기술원조에 관한 아시아지역 본회의를 앞두고 1964.3.30.~31. 간 뉴델리에서 예비회의를 개최함.
2. 상기 기술원조회의는 피원조국의 견지에서 기술원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원조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뉴델리 예비회의에서는 방콕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이외에 본회의에서의 토의를 위한 질문서를 채택함.
3. 이와 관련하여 총무처는 뉴델리 예비회의에서 채택한 피원조국의 견지에 입각한 기술원조에 대한 질문서 및 기술원조에 관한 뉴델리 예비회의 관계기록을 1964.12.22. 경제기획원에 송부하고, 동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함.
 - ※ 동 질문서는 기술원조의 진행 절차, 국가경제개발계획, 기술원조 필요성 등 피원조국의 실태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29차.
Aix Les Bains(프랑스) 1964.5.19-30

| 64-179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2 / 10 / 1~53(53p)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관련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제29차 총회에는 예산 사정상 우리 대표를 파견하지 않음.
2. 북한에서는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나 동 회의에서는 기술적 문제만을 토의하였기 때문에 북한 측의 정치적 책동은 없었음.

24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CISM총회, 제18-19차

| 64-180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공보문화과
MF번호	I-12 / 17 / 1~57(57p)

제18차 및 제19차 CISM(국제군인체육이사회) 총회에 관한 내용임.

1. 제18차 총회 우리 수석대표(이창우 육군준장) 참석 결과보고서

- ※ 개최 일자 및 장소: 1963.10.14.~21. 모로코
- ※ 총회 참석자 명단: 한국 등 회원국 24개국 대표
- ※ 의사일정
- ※ 총회 참석을 위한 우리 대표의 여행경위
- ※ 회의록(제1~4차 및 전체회의)
 - 집행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각 종목별 위원회 편성 및 신규회원 가입문제 등에 대한 토의 및 투표

2. 제19차 총회

- ※ 개최 일자 및 장소: 1964.11.3.~12. 멕시코
- ※ 한국 대표단 파견: 수석대표 박두선 공군준장 외 1명
- ※ 금번 총회시 하기 신규회원 가입예상국 찬성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외무부 의견문의 및 외무부의 회보
 - 이디오피아, 리비아, 콩고, 알제리, 세네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파나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자메이카, 우루과이,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국제기구 가입신청 승인의 건

| 64-181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4 / 14 / 1~6(6p)

1. KBS가 창립회원의 일원인 아시아방송연맹(ABU:Asian Broadcasting Union)의 창립총회가 1964.11.13.~23.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됨에 따라, 동 연맹의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각국으로부터의 가입 신청이 제출됨. 이와 관련, 공보부는 우리나라 대표가 가입 신청국의 승인문제에 대하여 창립회원국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됨을 감안하여 하기 가입 신청국 중 중동국 등의 동 기구 가입문제에 관한 외무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정회원 가입 신청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시리아

※ 준회원국 가입 신청국: 이라크, 나이지리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2. 외무부는 중동 국가 중 이란 및 요르단은 1963.3.13. 및 1962.12.6. 정식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으며, 시리아, 쿠웨이트, 이라크 및 나이지리아와는 상급 정식 외교관계가 없으나, 방송에 관계되는 문제를 연구, 상호협조하고 우호를 증진시키는 목적하에 가입을 지지, 승인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1964.10.29. 내부적으로 결정함.

24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아시아 및 중근동철도회의, 제4차, Cairo (통일아랍공화국) 1964.3.21-4.2

| 64-182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I-12 / 23 / 1~53(53p)

제4차 아세아 및 중근동 철도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됨.

1. 기간: 1964.3.21.~4.2.

2. 장소: 카이로

248

3. 대표: 강춘희 주카이로총영사

4. 주요 행사 내용: 회의 주최국 홍보내용의 산업시설 시찰 및 관광

- ※ 개최식, 이집트 공보장관 연설
-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 수에즈 운하 시찰
- ※ 철도박물관 관람
- ※ 섬유공장 시찰
- ※ 이집트 박물관 및 카이로 타워 방문
- ※ 피라미드 및 스피нк스 관광
- ※ 아스완 댐 시찰 등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 64-183 |

생산년도 | 1960-64

생 산 과 | 조약과

MF번호 | J-10 / 4 / 1~140(140p)

다음 사항들에 대한 조약근거 검토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음.

1. 외국의 원조 자금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외국원조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작성된 '외원의 효율적인 운용요강'에 대한 검토(1960년)
2. ICA 기술용역 자금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동차 및 동 자금에 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자동차에 대한 면세문제 등에 관한 검토(1960년)
3. 기술원조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문제(1960년)
4. 4·19로 부상한 외국인의 치료비 변상 문제(1960년)
5. 미군 및 USOM과의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외국인 등록의무 유무에 관한 검토(1962년)
6. 6·25 당시 항만 내 침몰 선박 및 폐철의 처분 문제(1963년)
7.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부두 사용료 징수 문제(1964년)

24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일간 연지불협정 체결시의 국회동의 획득 문제

| 64-184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0 / 5 / 1~19(19p)

250

1. 외무부 방교국은 통상국이 한·일간에 연지불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1964.9.26.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보함.

※ Exporters Credit 방식의 경우

- 본 방식의 성격은 한국 수입업자에 대한 일본의 민간차관으로서 일정 금리를 지불하고 원금을 연부불로 상환하며, 동 차관의 도입절차는 한국 수입업자에 의한 일본 수출업자로부터의 연불 수입이라고 규정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방식을 한·일 정부간 협정에서 채택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차관에 관한 지불보증법'에 따라 국회에 지불보증에 관한 연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나 협정 자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 Bank Financing 방식의 경우

- 본 방식의 성격은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의 차관으로서 일정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연부불로 상환하며, 그 도입절차는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하여 한국은행 앞 신용을 설정하고 동 신용한도액 내에서 한국 정부는 자기 책임하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내업자에게 연불수입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한·일 정부간의 협정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은 정부간의 차관협정으로서 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

2. 외무부 방교국은 일본으로부터 2천만불 연지불 도입을 위한 방식으로 한국은행과 일본수출입은행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차관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내법상 한국은행이 이와 같은 차관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한 동 협정의 기초가 되는 한·일 양국정부간 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1964.11.13. 통상국에 제시함.

- ※ 방교국은 현행 국내법상 한국은행이 이와 같은 차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법무부의 유권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국내법이 없다면 협정 대신 관계 국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 의견을 첨부함.

[주월한국군 지원을 위한] 한·월·미간의 군사실무약정

| 64-185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북미2과
MF번호	J-10 / 14 / 1~10(10p)

1964.8.28.~9.7.간 월남을 방문한 우리나라의 대 월남 지원단 선발대가 보급 및 안전보호 등 대 월남 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사항을 공급하기 위하여 월남군 관계 당국 및 재월 미국 군사지원사령부 측과 실무자급에서 합의한 사항을 문서화한 Working Arrangements가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병원의 건설
- 2. 병원의 운영
- 3. 치료 및 피난
- 4. 생활공간 및 주방 설치
- 5. 입원환자들에 대한 물자 지원
- 6. 지원단에 대한 안전
- 7. 태권도 교관에 대한 지원 등

한·월남간의 주월한국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 64-186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조약과
MF번호	J-10 / 6 / 1-283(283p)

주월남 한국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한·월간 협정이 1964.10.31.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 발효 되었으며, 동 협정의 체결경위 및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체결 경위

- ※ 1964.7.15. 월남 수상, 공한으로 공산침략 격퇴를 위해 지원하여 줄 것을 한국에 요청
- ※ 1964.7.31. 우리 정부, 한국 원조단을 월남에 파견할 것을 결정
- ※ 1964.10.31. 한국 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양국간 협정 체결

252

2. 협정의 주요 골자

- ※ 한국 원조단은 이미 월남에 군사지원을 하고 있는 호주 및 뉴질랜드 지원단의 지위협정과 동일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도록 함.
- ※ 지원단은 월남 정부와 합의할 분야에서 원조를 제공함.
- ※ 월남 정부는 1950년 미국, 월남, 프랑스, 캄보디아, 라오스 간의 5자 협정에 따라 미국 지원단에 부여한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함.
- ※ 월남 정부는 한국 원조단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원조단은 현지 법률을 존중함.

유엔 및 국제기구의 직원에 대한 특권 및 면제

| 64-187 |

생산년도	195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6 / 8 / 1~112(112p)

유엔 및 국제기구의 직원에 대한 특권 및 면제, 특히 유엔기술원조처(UNTAB)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특권 및 면제 문제와 관련한 외무부의 재무부와 UNTAB측과의 협의경위 및 처리내용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제의 개요

- ※ 한국 사세당국(중부세무서)은 유엔기술원조처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4명)에 대하여 을종 소득세를 부과하고 1963.12.16.자로 독촉장을 발부하여 강제징수 예정임을 UNTAB측에 통지함.
- ※ UNTAB측에서는 1958.6.19.자로 체결되고 1963.5.18.자로 수정된 “대한민국정부와 유엔기술원조처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제5조에 의거 동 인들이 면세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면세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1963.12.30.)

2. 협의경위 및 처리내용

- ※ 외무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당부로서는 동 협정 적용상 의견을 달리하는 바 있어 그간 UNTAB측과 의견조정 중에 있으므로 본건 UNTAB측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보류해 주기를 재무부에 협조 요청(1964.2.)
 - 재무부는 국제징수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징수를 보류할 수 없다고 회보
- ※ 외무부는 주유엔대사에게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자료를 송부토록 지시하는 한편 UNTAB측과의 협의(1964.3.2.) 후 재무부에 본건 강제처분 유예를 재요청함.(1964.3.4.)
- ※ 외무부는 UNTAB측이 과세문제에 관하여서는 한국측 주장에 이의를 가진 채 현재까지 과세된 세액은 납부하겠으나 과세액 이외의 독촉 수수료 등 가산금은 납입치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재무부에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1964.4.15./4.21.)
 - 재무부는 징수유예는 불가능하다고 회보(1964.4.22./4.25.)
- ※ 외무부는 유엔사무차장의 주유엔대사 앞 1964.4.22.자 서한에서 유엔본부는 UNTAB 서울사무소 근무 한국인의 면세특권을 다시 주장하고 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 조세당국의 과세에 응하지 말도록 현지기관에 훈령중임을 통보해 온 사실을 재무부에 알리고 체납관계 가산금만은 징수보류해 줄 것을 요청(1964.5.18.)



- 재무부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세금의 징수유예 및 가산금의 면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회보(1964.6.10.)

✿ 외무부는 UNTAB측에 3차 최고장을 발부하고 1964.7.29. 이후 미납시에는 강제 징수할 것임을 통지한 서울 광화문 세무서에 유엔당국과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징수조치보류를 요청함.(1964.7.29.)

254

3. 주요 문건

- ✿ 미국 정부의 외국정부 대표자에 부여한 특권 및 면제 규정
- ✿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 ✿ 유엔사무차장의 주유엔대사 앞 서한 등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 64-188 |

생산년도	1960-64
생산과	북미담당관실
MF번호	J-10 / 22 / 1~224(224p)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대미부채 발생 및 그간의 경위와 해결방안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개요 및 상황

가. 개요

- ※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은 1948년 정부수립시 미 군정 당국과 과도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한국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관할권을 양도받는 협정으로서 1948.9.11. 서울에서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한국 정부는 군정기간 중 미국이 한국경제에 제공한 재산 및 재정에 대한 대가로서 \$24,920,595.80불을 지불하고, 동 부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원금 잔액에 대하여 연 2.3~8%의 이자를 매년 7월 1일 지불함.
 - 미국 정부가 \$3,970,576.38 해당의 한국 정부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므로 협정체결 당시의 원금은 \$20,950,019.42로 감액되었으며, 연간 이자는 \$497,562.90임.

나. 5·16 이전까지의 상황

- ※ 우리 정부는 동 협정에 의거 1949.7.1.~1953.7.1.까지 5년간 매년 \$497,562.90 상당의 금액을 지불함.(총 이자지불액 \$2,487,814.80)
- ※ 1954년 이후부터는 재정상 형편으로 원금 및 누적된 이자 총액을 지불할 수 없어 1955~58년에 걸쳐 미국 정부에 대하여 동 부채의 탕감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행정부는 입법 조치(의회) 사항임을 이유로 우리측 요구 거부
- ※ 1959~1960년초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미국 의회로 하여금 한국 부채 말소 법안 통과 모색

다. 5·16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 ※ 주미대사는 입법 및 행정부관계 당국과 교섭하는 한편 방한하는 미국 행정부 및 입법부 당국자에게 동 부채 말소를 요청하는 방안 및 제1차 대전 후의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경우처럼 부채를 상환토록 하되 1961년 7월 1일 현재의 부채는 연불로 상환하고 향후 발생될 이자는 면제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 
2. 미국의회 앞 한국 부채 말소요청 법안(1960.4.2. 우리 고용 미 변호사의 초안)
 3. 미국측의 채무변제 독촉 공한(1960.6.27/7.22, 1962.7.19/9.20.)
 4. 미국측의 한국 부채 8개년(1962.8.1.~69.7.1.) 상환 이행계획 제시안(1962.8.16.)
 5. 주미대사관 담당관의 미 국무성 접촉활동 보고(1962.12.26/63.1.10.)
 6. 관계부처(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실무자회의 보고(1963.5.27/6.21.)
 7. 외무부의 표제문제에 대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외무국방위원장 및 재경위원장 앞 종합보고서(1963.4.26.) 및 경제각의 의결안(1963.7.18.)
 - ※ 해결방안(건의)
 - 미국 정부와 교섭하고 미국의회에서 채무 말소를 위한 입법조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원금 및 지금까지의 이자를 30년간 상환하거나 또는 연 100만불 상환시까지 지불하되, 앞으로 발생될 이자는 면제받도록 교섭함.
 8. 표제문제에 관한 한·미 실무자회의 보고(1963.5.29/8.19. 서울)

한·UNESCO간의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잔여자금에 관한 특별협정 및 동 협정기간 연장추진

| 64-189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0 / 17 / 1~113(113p)

1. 우리 정부는 1959년 운크라(UNKRA : 유엔한국재건단)에 대하여 그 사업 잔여자금 50만불을 사용하여 인천중앙종합직업학교의 시설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운크라는 동 요청에 합의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하는 동시에 유네스코(UNESCO)를 집행기관으로 선정함. 이와 관련, 유네스코는 1960.4월 2명의 직업교육 전문가를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원조를 위한 실지 조사를 마치고 사업협정 체결 절차에 필요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요청함.
2. 문교부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크라 사업 잔여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운크라와 한국 정부 간에 이미 체결된 원조협정을 그대로 적용시켜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 간에 협정문을 작성, 서명 교환함으로써 유효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1960.7.5. 외무부에 문의함.
3. 외무부는 우리나라와 유엔기술원조처(UNTAB) 간에 1958.6.19. 이미 체결된 기본협정에 의거하여 운크라 잔여자금 50만불을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원조의 집행기관으로 지정된 유네스코와 본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사업을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1960.8.9. 확정함.
4. 외무부는 인천중앙종합직업학교에 운크라 잔여자금을 사용하는 외무부, 문교부, 유네스코사무국 간의 3차 특별협정 체결 교섭이 완료됨에 따라 1961.8.22. 제62회 각의에 '운크라 잔여자금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특별협정'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으며, 동 협정은 1961.9.8. 국가재건최고회의 제43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 동 특별협정은 1961.9.14. 정부대표가 서명함으로써 공포됨.
5. 유네스코는 동 특별협정이 1964.12.17.부로 만료됨에 따라 최후로 착임한 기술자(기계공학, 건축, 전기공학 분야)의 복무기간(3년)이 만료되는 1966.4.30.까지 동 협정을 연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제의하여 왔는바, 우리 정부는 1966.4월까지 동 협정이 유효함을 유네스코에 통보함.

25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1 / 12 / 1~525(525p)

1. 체신부장관은 1961.6.27. 건설부장관에게 공한을 송부, 건설부가 서독에 경제교섭단을 파견할 때 체신부 대표 1명이 참가하여 서독차관에 의한 전화시설 확장사업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경제기획원장관은 1962.6.4. 독일 정부 재정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기 사업에 대하여 1962.5월말까지의 현황에 대해 각의에 보고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신전화사업

- 875만불의 차관신청사업계획서 서독대사관에 제출
- 독일 해외재정원조심의위원회, 원칙적으로 사업승인하고 KFW(재건은행)에 심사 명령. KFW는 이자율 3%, 상환기간 15~17년의 협정안 작성 중

※ 탄전개발

- 400만불의 차관신청사업계획서 제출
- 독일 경제성 동 차관, 원칙적으로 승인, KFW에 검토명령서 전달 예정

※ 탄차도입

- 450만불의 차관신청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독일측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 없음.

※ 조선공사 확장사업

- 150만불의 사업계획에 대해 독일측은 한국 정부가 KFW 조사단에게 신청서 검토를 의뢰한다면 이에 응할 용의 시사

※ 한독간 의정서에 의한 기술원조

- 서독 지질학자 및 지질관계 기술자 2명 1962.4월 내한, 태백산지구 지질조사
- 조선관계 기술자 1인 내한, 한국 기술자 60명 훈련 등

3. 경제기획원장관은 1963년도 대독일 정부 차관교섭 작성을 위해 전신전화사업, 선박도입, 울산항만개발에 2,403.7만불(이상 재정차관), 전기기기공장, 방직기, 시멘트공장 건설 등에 5,000만DM(이상 장기상업차관)의 지원 가능성을 독일 정부와 교섭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4. 주독대사관은 1964.4.16. 외무부에 송부한 전문에서 독일측이 AID자금 950만불로 지원하는 장성광 개발사업 중 국제경쟁입찰로 지정한 Hoist Equipment(82만불 상당)가 독일측 상사에 의해 낙찰될 경우 독일측이 제공하는 재정차관 7,500만DM에서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함.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독일측 제공 7,500만DM은 부산시 상수도과 조선공사 확장공사에 전액 사용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독일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독일측에 설명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1 / 13 / 1~273(273p)

한 · 독 간에 체결한 통신망 확장사업 및 관광 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의 주요 내용(1962.11.13. 서명)

※ 경위

- 1962.9.26.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과의 차관협정에 대하여 3억6천만불 한도 내에서 추진할 것을 포괄적으로 결정함.
- 1962.11.13. 동 3억6천만불에 포함된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서독 재정차관 3천5백만 마르크에 대한 재건은행과의 차관협정이 체결됨.

※ 협정의 주요 규정

- 차주
- 차관 한도액 및 사용목적
- 차관금 대출 마감일
- 상환조건 및 대부 수수료 등

2. 관광 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의 주요 내용(1964.4.23. 서명)

※ 경위

- 1961.12.13. 체결한 한 · 독간의 기술 및 경제협조에 관한 의정서에서 규정한 차관규모 7천5백만 DM 중 일부를 차관하기 위한 것임.

※ 협정의 주요 규정

- 차관의 금액(2천7십2만DM) 및 목적
- 차관의 전대
- 자금 지출
- 약정 수수료, 이자 및 상환
- 지출정지 및 취소
- 조세, 수수료 및 관세 등

한 · 불간의 이증과세방지협약 체결추진

| 64-192 |

생산년도	1963-64
생산과	경제협력과
MF번호	J-11 / 11 / 1~35(35p)

우리나라의 한 · 프랑스간 이증과세 방지협약 체결추진 내용임.

1. 재무부는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의 이증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면서, 외무부에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1963.7.)
2.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에 재무부의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의 이증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문의한바, 경제기획원도 동 협정추진에 동의를 표명함.(1963.8)
3. 외무부는 한 · 불 이증과세방지협정 체결추진과 관련, 주프랑스대사관에 주재국의 타국과의 이증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등을 조사 보고토록 지시함.
4. 주프랑스대사관은 프랑스와 여타국가와의 이증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과 동 협정사본 및 프랑스 재정법을 송부하면서, 표기협정의 우리측 안을 프랑스 정부에 정식 제안할 것을 건의함.(1963.10.)
5. 외무부는 한 · 불 이증과세방지협정 체결에 관한 우리측의 협정안이 작성되는 대로 이를 프랑스측에 제시할 예정임을 프랑스 관계당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주재국정부의 의향을 타진 보고함과 아울러 일본과 프랑스간에 체결된 이증과세방지협정 사본을 구득 송부토록 지시함.(1964.7.)

26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

1965

1964

한 · 미간의 군산화전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 64-193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1 / 4 / 1~35(35p)

1. 한 · 미간의 군산화전(7만5천kw의 시설용량)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이 1963.12.11.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를 거쳐 1964.3.5. 제20차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1964.3.9. 서명함.
2. 동 차관협정은 1964.3.9.자로 발효되었으며, 헌법 제5조에 규정된 조약과 동일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한·미간의 AID 차관협정(통신망 확장·개선 및 상수도 확장)

| 64-194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조약과
MF번호	J-11 / 5 / 1~318(318p)

한·미간 AID 차관협정의 체결 경위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위

- ※ 1963.12.11. 최고회의에서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과 차관협정을 체결할 것을 결정
- ※ 체신부의 통신망 확장을 위한 '반송 무선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제 시설과 기술도입용 외자 조달 목적으로 AID와 840만불의 AID 개발 차관협정을 체결

2. 주요 규정내용

- ※ 차관공여 및 전대조건
- ※ 선행조건
- ※ 선행조건 및 부대조건 이행 마감일
- ※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마감일
- ※ 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 ※ 장기 차입의 금지
- ※ 물자 구매 등

한·미간의 송배전 시설을 위한 AID차관협정, 제1차

| 64-195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조약과
MF번호	J-11 / 6 / 1~35(35p)

1964.12.14. 송배전 시설을 위한 소요 외자 775만불의 AID 차관을 위한 한·미간 협정이 다음과 같이 체결됨.

1. 체결 경위

- ※ 발전량 증가에 따라 이에 부수되는 송배전 시설 도입을 위하여 정부는 1963.3.23. AID 개발차관 신청서를 제출
- ※ 차관협정서 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한국전력이 공동 검토한 결과 이를 수락하여도 좋다는 결론을 함.

264

2. 협정의 주요 골자

- ※ 차주인 우리 정부는 차관금 775만불을 송배전 시설을 위하여 한국전력에 전대하고 상환조건을 정함.
- ※ 적용환율
- ※ 선행조건
- ※ 대출요청 마감일
- ※ 구매지역
- ※ 해상운송 및 보험
- ※ 제세, 수입세 및 부과금 면제
- ※ 기채 금지 등

한·영간의 철도신호시설을 위한 차관협정

| 64-196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조약과
MF번호	J-11 / 14 / 1~92(92p)

1964.8.4. 각서교환으로 체결, 발효된 한·영간 철도 신호시설을 위한 차관협정의 국무회의 의결안과 관보임.

1. 국무회의 의결안(주요 요지)

- ☛ 의결 주문: 중앙선(청량리-제천)에 설치할 철도 자동시설을 위하여 영국 수출신용보증국이 제공하는 50만 파운드(미화1,400,000불)의 차관협정 체결을 승인하고 영국 수출신용보증국을 대표하여 주한영국대사가 서명할 본 협정에, 정부를 대표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서명할 것을 의결함.
- ☛ 제안 이유: 수송량이 증가하는 중앙선의 복선화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자동신호 시설을 우선 부설하여 현 수송능력을 50%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본 시설에 소요되는 외화를 영국 재정차관으로 조달코자 함.
- ☛ 차관협정안 주요 골자
 - 차관액: 50만 파운드(\$1,400,000불)
 - 대주: 영국 수출 신용보증국
 - 상환조건: 5년거치 10년 상환 등

2. 관보

- ☛ 1964.6.23.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4.8.4.자로 체결, 발효된 표기 차관협정을 1964.9.26. 공포(조약 제130호)

26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영간 서울-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신협정)

| 64-197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조약과
MF번호	J-12 / 5 / 1~169(169p)

1964.11.19. 외무장관과 주한영국대사 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된 한·영간 서울-홍콩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본 협정은 각서교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고, 30일의 사전 통고로써 폐기할 수 있음.

2. 항로

266

✧ KAL: 서울-타이페이-홍콩

✧ CPA: 홍콩-후쿠오카-서울

3. 운수권 없는 임의 경유 지점

✧ KAL: 동경,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오키나와

✧ CPA: 타이페이, 오키나와, 나고야, 오사카, 동경

4. 운항 회수

✧ 주 2회까지(상호 합의에 따라 증편될 수 있음)

5. 항공기의 종류에는 제한 없음.

한 · 파라과이 간의 이민협정 체결교섭

| 64-198 |

생산년도	1958-64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J-6-101 / 12 / 1~244(244p)

1958년~1964년까지 한 · 파라과이간 이민협정 체결교섭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58년: 주미대사를 통하여 파라과이 이민법 및 이민정책 조사와 한국 이민가능성 타진

2. 1961년

- ✳️ 외무부는 이민교섭 계획서(정의, 이민의 종류, 진출지역, 교섭방침, 송출의리, 진출시기, 한국이민의 보호 및 육성, 결론) 작성
- ✳️ 외무부는 이민 수입국에 제출할 이민계획서(안) 및 이민협정(안) 작성
 - 이민계획서(안): 취지문, 이민의 성질, 이민의 연도별 진출계획, 이민의 직업별 구분, 이주지역의 선정, 이주자의 이주비용(도항, 토지구입, 주택시설, 도로시설, 수도시설, 병원시설, 학교신축, 교회신축 등), 이주자에 대한 용자(농업이민, 기술이민 등), 이주자의 보호조치(이민의 장려 및 육성, 과세정책, 보호관세정책, 취업보장, 교육정책 등), 이민협정체결 제의 등
- ✳️ 이민협정안(국 · 서반어문): 20개 조항으로 구성

3. 1962년: 우리나라 이민교섭단(단장: 보사부 차관)은 파라과이를 방문계획이었으나, 우리측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함.

4. 1963년

- ✳️ 주미대사 및 주유엔대사 건의: 파라과이 정부는 한국이민 수용원칙에 합의하였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기본조사와 이민협정체결 요망(파라과이-일본간 이민협정사본 송부)
- ✳️ 주브라질대사 건의: 파라과이 정부는 한국이민을 환영하므로 파라과이정부와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준한 양국간 Joint Commission(이민 합동위원회)을 조속 구성하여 제반문제 합의와 이민협정 체결 요망
- ✳️ 주브라질대사는 한국이민협회 추진 100세대 이민 건 및 이민합동위원회 운영문제에 관한 윤경



도 참사관의 파라과이 정부측과의 교섭결과 보고
- 한·파라과이 이민합동위원회 1964.2.1. 발족 조치 요망 등

5. 1964년

- ※ 한·파라과이 이민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 선정 및 파라과이 파견
- ※ 외무부와 보사부는 한·파라과이 이민협정안 협의 및 마련
- ※ 이민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는 파라과이측과의 이민협정 교섭결과 보고
- 파라과이측의 수정안 수락여부 건의 등
- ※ 외무부와 보사부는 파라과이측의 수정안 협의 및 우리측 최종안 마련
- ※ 주브라질대사관은 주브라질 파라과이대사관 앞 공한(1964.9.24.)을 통하여 우리측 최종안을 송부하면서 이를 본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

한 · 미간의 영사협약 시행

| 64-199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2 / 10 / 1~19(19p)

한 · 미간 영사협약 시행에 관한 내용임.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의 보고

- ※ 한 · 미영사협약(1963.12.18.) 발효 후 공관용 승용차 구입시 판매세를 지불하였는바, 동 판매세 면제여부에 대한 본부 입장(유권해석) 하달 요망
- 본부는 미국에 있어서의 국제법(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와 본건에 대한 조세면세 문제를 분석한 결과, 본건 차량은 표제협약에 의거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캘리포니아 주정부 당국에 제차 설명하되, 주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 당국이 연방정부에 조회토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

2. 본부는 주샌프란시스코, 주호놀룰루 및 주뉴욕 총영사관에 표제협약 실시에 관해 조사보고 지시

- ※ 표제협약 발효 이후 동산 또는 부동산에 속하는 재산의 구입 유무와 구입한 경우 동 재산에 대한 미국 연방 또는 주당국의 조세부과 또는 면제여부

3. 상기 관련 공관의 보고사항

-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총영사관 건물에 대한 1963~64년도분 가옥세 지불통지와 관련 시 당국과 동 면세문제 교섭 중임.
- ※ 주호놀룰루총영사관
 - 제1종 연방소비세(전신, 전화 등)에 대해서는 표제 협약 후 면세 조치를 받고 있음.
 - 제2종 연방소비세(자동차, 휘발유, 타이어 튜브 등)와 지방세인 판매세에 대해서는 면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미국과 영사협약을 체결한 타국 영사들도 동일한 입장), 당지 영사단은 면세 조치를 향유하기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
- ※ 주뉴욕총영사관
 - 일반상품 구입시 판매세는 면세조치 받음.
 - 외국제 승용차 수입시에는 미 국무성의 면세에 관한 관계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69

대한민국외교자료해제집

1965

1964

1956.3.13에 체결된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및 부록의 추가협정

| 64-200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3 / 9 / 1~326(326p)

1956.3.13. 체결된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및 부록의 추가협정 체결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체결 이유, 교섭 경위 및 주요 협정내용

※ 이유

- 1956.3.13. 대한민국, 스칸디나비아 3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유엔한국재건단(UNKRA) 간에 체결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이 1963.9.30. 만료됨에 따라, 중앙의료원에 대한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일정기간 동안의 추가 지원 필요 등

※ 교섭경위

- 협정에 의하여 UNKRA는 건축자금 240만불을, 스칸디나비아 3국은 병원시설 200만불을 제공하고 한국은 병원대지 및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1956.9.7. 공사 착공과 1958.10.2. 준공하여 1958.11.28. 개원 및 진료 개시
- 그간 스칸디나비아 3국은 평균 80명의 직원 파견과 매년 150만불의 비용을 제공하여 공동 운영
- 1961.4. 보사부 대표와 스칸디나비아위원회 대표간 회의에서 한국측의 1963.9.30. 협정 5개년 연장 요청과 스칸디나비아측의 이에 대한 원칙적 동의
- 1962.4. 보사부 대표와 스칸디나비아 대표는 스칸디나비아 정부의 국립의료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원칙에 합의하는 각서 서명
- 1962.11. 한국측은 스칸디나비아측에 국립의료원 운영 연장에 관한 협정체결 제의
- 1964.1.30.~2.4. 한·스 양측은 서울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추가협정안에 최종 합의
- 1964.3.3. 추가협정 가서명

※ 주요 협정내용

- 당사자: 협정 당사자의 하나인 UNKRA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UNKRA 대신 UN을 당사자로 규정
- 기간연장: 최초협정의 효력을 1968.9.30.까지 5년간 연장
- 스측의 원조대상 사업: 국립의료원 운영과 충남모범 보건사업 운영
- 스측의 주요 부담: 추가협정 기간내 65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향후 5년간 자금 공여
- 한국측 주요 부담: 총 운영자금 중 원조액으로 할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경비 부담 등

2. 협정서명: 1964.6.19. 서울

3. 국내조치 사항

- ※ 추가협정안 국무회의 의결(1964.2.28.), 국회 동의(1964.5.7.), 법령공포(조약 제126호)

1955.5.2자 한·미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

| 64-201 |

생산년도	1962-64
생산과	조약과
MF번호	J-13 / 6 / 1~130(130p)

1955.5.2.자로 발효된 한·미간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에 있어서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정 제7항에 의거한 한·미 공동위원회 설치 경위 및 운영 현황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공동위원회 설치경위

- ※ 미측은 1963.3.19.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표기협정의 해석과 시행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한·미간의 협의 및 결정기관으로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함.
- ※ 외무부는 보사부와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1963.4.15.자 주한미국대사관 앞 공한으로 미측의 공동위원회 설치제외에 동의하며, 한국 정부 대표자로 보사부 기획조정관과 외무부, 재무부 및 보사부 직원 각 1명이 보좌관으로 지명될 것임을 통지함.

2. 공동위원회 운영현황

- ※ 제1차 회의(1963.5.8.)시 미측은 주한 외국민간 구호단체에서 도입하는 차량 중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 등 요청
- ※ 제2차 회의(1963.11.15.)
 - 의제: 제1차 회의록 통과, 미국 정부에서 추가로 공인된 의원(외국원조)단체에 관한 문제, 의원단체의 차량도입 건
- ※ 제3차 회의(1964.2.27.)
 - 의제: 제2차 회의록 통과, 의원단체 추가등록문제, 의원단체에 대한 지방재산세 면제문제, 의료품 면세도입문제

3. 주요 문건

- ※ 한·미간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및 해석에 관한 각서문
- ※ 한·미 공동위원회 제2차~제3차 회의록
- ※ 구호물자 반입의 개선을 위한 재무부 등 관계부처 회의록(1964.3.26.)
- ※ 보사부 등록 봉사단체 명단(1962.10.31./1963.11.11.현재)
- ※ 한·미간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적용단체 명단(보사부)
- ※ 보사부와 CARE(미국세계 민간구호협회) 간의 공동구호사업계약(1964.7.1.)

한국 보사회부와 미국 세계민간구호협회(CARE) 간의 우유급식에 관한 계약 및 수정

| 64-202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3 / 7 / 1~79(79p)

1. 보건사회부는 CARE(미국민간구호협회)와 계약을 체결, 동 협회의 우유 보유총량 8천만Lbs 중 우선 5천만Lbs를 도입하여 국내의 아동, 임산부 및 난민정착자 등의 보충급식을 실시하여 왔으나 본 계약을 수정하여 잔량을 계속 도입하기 위하여 1960.1.13. 자로 영문 수정계약서에 보건사회부 차관의 서명을 완료하였음을 1960.1.21. 외무부에 통보함.
2. 보건사회부는 CARE와 계약을 체결, 우유급식사업을 1961년도에도 계속하기 위하여 총 5천만환의 예산을 요구 중이므로 이에 대한 외무부의 견해를 회사해 줄 것을 1960.11.21. 요청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의 우유급식 계약이 1955.5.2. 자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우리 정부의 방침과 모순되는 바 없어 특별한 이의는 없으나, 동 계약안에 한국 항만에서의 물품 하륙 이후에 생기는 손실 및 피해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 정부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에 대한 전보의 책임을 회피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1961.12. 회보함.
 - ※ 보건사회부는 국민학교 아동 및 난민정착사업장 입주자들에 대한 급식사업을 위하여 1961.3.13. CARE측과 우유도입계약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1962.1.26. 및 1963.6.21. 2차에 걸쳐 동 계약을 연장함.
3. 보건사회부는 1963.8.22. 외무부에 공한을 송부, 보건사회부가 CARE와의 공동급식사업을 1965년도에도 계속 예정이므로 계속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한·IAEA간의 기술원조 및 기술원조전문가 용역에 관한 각서교환

| 64-203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J-13 / 12 / 1~438(438p)

1.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은 1960.5.30. 외무부에 공한을 송부, 우리나라의 1961년도 기술원조 요청서 제출을 권고하면서, 동 기술원조 부여 시 UNTAB협정(대한민국과 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 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 1958.6.19. 체결)의 제 조항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우리 정부는 IAEA가 UNTAB협정의 당사자는 아니나 유엔의 확대기술원조 계획에 참가하여 사실상 전문기구와 동일한 지위에서 기술원조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1961년도 IAEA의 기술원조에 동 협정을 적용할 것을 1960.8.2.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헌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국회에 심의 및 동의를 요청하였는바, 동 의안은 1961.4.27. 국회의 동의 얻음.
※ IAEA 기술원조 요청에 관한 협정은 1961.5.15. 우리 정부와 IAEA 측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 발효됨.
3. 외무부는 원자력원의 요청에 따라 1961.10.11. IAEA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사업에 대한 기술원조를 요청하였으며, IAEA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수락, 기술원조 제공 계획을 1962.5.7. 외무부에 송부함. 이에 외무부는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대한 각의의 의결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이를 1962.10.15. IAEA측에 통고하여 동 협정이 성립함.
※ IAEA측이 우리측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원조는 농업에 대한 응용을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제조소의 설치 및 핵기구의 사용과 원자로 관리임.
4. 우리 정부와 IAEA는 실험핵물리학에 관한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1962.8.6. 및 12.8. 각서를 교환하였으며, 동 협정은 각의의 의결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1962.12.18. 발효됨.
5. 우리 정부와 IAEA 간의 방사화학 및 고체물리학과 관련한 전문가 파견에 관한 협정이 각서 교환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거쳐 1962.4.3. 및 1963.11.2. 각각 발효됨.

27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수정된 농업교역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의한 한·미간의 농산물협정(한·미간의 잉여농산물 구매협정)

| 64-204 |

생산년도	1960-64
생산과	조약과
MF번호	J-14 / 14 / 1~356(356p)

수정된 농업 교역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의한 한·미간의 농산물 협정(한·미간 잉여농산물 구매협정) 관련 다음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음.

1. 1961년도 수정된 농업교역 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의한 한·미간의 농산물 협정 및 부대각서
2. 1961년도 협정의 제2, 3조의 개정에 관한 각서 교환
3. 1961년도 협정의 일부 개정에 관한 각서 교환
4. 1962년도 수정된 농업교역 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의한 한·미간의 농산물 협정 및 부대각서
5. 1962년도 협정의 일부 개정에 관한 각서 교환
6. 1963년도 수정된 농업교역 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의한 한·미간의 농산물 협정 및 부대각서
7. 1963년도 협정의 일부 개정에 관한 각서 교환(3회)
8. 1964년도 수정된 농업교역 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의한 한·미간의 농산물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9. 1965년도 수정된 농업교역 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의한 한·미간의 농산물 협정

한·미얀마(구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v.1 교섭철

| 64-205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통상과
MF번호	J-14 / 15 / 1~263(263p)

1. 주랑군총영사는 1963.4.25. 외무부에 우리 상품의 버마시장 개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버마 간의 무역협정 및 우편협정 체결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63.6.25. 주랑군총영사에 대한 회신에서, 우리나라는 GATT의 가맹국이 아니므로 무역협정이나 관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가할 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곤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버마의 경우 무역이 국영화됨에 따라 무역에 대한 버마정부의 관여가 강화되어 협정체결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버마정부가 무역협정에 합의하면 협정 초안을 제의할 예정임을 하달함.
3. 또한, 외무부는 버마가 UPU 및 소포우편물약정의 가맹국이므로 1964.7.1.부터 일본을 중개지로 하여 우리나라와 버마 간의 소포우편물 교환을 개설키로 되었음을 주랑군총영사에게 통보함.
4. 버마의 농수산물수출원 Lt. Colonel San Win 부원장 및 동 수출원의 관계관이 통상사절단의 자격으로 1963.7.10.~13. 간 방한하여 외무부, 상공부, 조달청,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하고 무역협정 체결문제를 비롯한 양국간의 통상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함.
* 외무부는 버마통상사절단에게 무역협정에 대한 우리 입장을 기록한 Aide Memoire을 수교함.
5. 북한의 무역상 이일경을 단장으로 하는 일행 18명으로 구성된 북한의 통상사절단이 1963.10.29.~11.3. 간 버마를 방문, 중립국가에 대한 통상관계를 확대하고 정식 국교수립을 측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함.
6. 우리 정부는 동남아 중립국가와의 정치 및 경제관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63년 내에 캄보디아, 버마 및 인도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교섭해 왔으며, 특히 무역협정 체결을 교섭 중인 버마 및 인도와의 조속한 협정 타결을 위하여 1964.1.8.부터 2주간의 예정으로 이철승 상공부 상역차 관보(단장) 등 3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을 양국에 파견키로 함.

27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미얀마(구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v.2 체결철

| 64-206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통상과
MF번호	J-14 / 16 / 1~381(381p)

1. 한·버마 및 한·인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단(이철승 상공부 상역차관보 등 3명)은 당초 1964.1.8. 출발 예정이었으나 국내 사정 등으로 1.13.에 출발하여 1.13.~18. 버마, 1.20.~23. 간 인도를 각각 방문함.
2. 우리 교섭단은 버마정부와 1.17. 무역협정에 가서명함. 버마정부와의 교섭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 측이 제안한 초안 중 제3조 2항(군사 및 경제원조계획하에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최혜국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과 제7조(유효기간과 용어)였으며 제3조 2항은 버마측 요청에 따라 삭제하고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
- ※ 인도와는 1.22. 무역협정에 가서명하였는바, 인도는 정식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와는 정식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Exchange of Letter 형식의 Arrangement를 체결하는 데 합의함.
3. '대한민국정부와 버마연방정부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의안은 1964.3.27.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버마정부는 동 협정 서명을 위하여 서명자의 전권위임장 제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동 협정 서명을 위한 전권위임장을 발급치 않고 특명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박준하 주랑군총영사로 하여금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에 서명토록 함. 동 협정은 1964.6.17. 박준하 주랑군총영사와 버마 통상성 차관 San Win 중령 간에 서명되었으며, 서명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됨.

한·캄보디아간의 무역 및 지불협정. 전2권 v.1 교섭철

| 64-207 |

생산년도 | 1964

생 산 과 | 통상1과/조약과

MF번호 | J-15 / 1 / 1~275(275p)

한·캄보디아 간의 무역 및 지불협정 추진 관련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목적

- ※ 높은 관세로 인하여 우리 상품의 대 캄보디아 수출이 어려운 실정으므로 캄보디아와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2. 경위

- ※ 1963년 초에 우리측이 협정 체결을 제의
- ※ 1963.10월부터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11월에 캄보디아 측이 무역 및 금융의 국영화를 발표하는 등 정세가 불안하여 실무회담을 1964년 초로 연기함.

3. 협정안의 품목 조정

- ※ 1964.9.4. 캄보디아의 대 한국 수출희망 28개 품목 중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하고 있어 수입이 전혀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15개 품목을 캄보디아 측에 제출

4. 우리측 협정문안을 1964.9.8. 캄보디아 측에 제출

277

대한민국외교자료해제집

1965

1964

한·캄보디아간의 무역 및 지불협정. 전2권 v.2 체결철

| 64-208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통상1과/조약과
MF번호	J-15 / 2 / 1-272(272p)

한·캄보디아 간의 무역 및 지불협정의 체결 경위,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1. 체결경위

※ 우리나라는 수출증대와 시장 개척을 위하여 1963년부터 중립국인 캄보디아와도 무역협정을 추진함.

278

※ 본 협정은 1963.3월 우리나라가 제의한 이래 계속 교섭을 진행하여 양국이 합의에 도달함.

2. 주요 골자

※ 본 협정은 전문 8조와 양국의 수출품목 부표 및 해석각서로 구성됨.

※ 양 체약국은 양국간의 수출입을 촉진하고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며 상호간에 가능한 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함.

※ 허가장 교부 및 세관검사 등 무역에 관련된 절차에서 무차별 원칙을 적용함.

※ 관세에서 양국은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동위원회를 설치함.

한 · 독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교섭

| 64-209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구미과/조약과
MF번호	J-16 / 5 / 1~202(202p)

1. 재무부는 1960.12.19. 개최된 외자도입 촉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외국 민간자본의 도입을 위하여 영국, 서독, 이탈리아 등 서구 우방제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해 줄 것을 1960.12.23.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61.1.12. 주독대사에게 우리 정부가 우방제국과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고 통상관계를 촉진하는 한편 외국인에 의한 국내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목적 하에 우방국들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그 첫 단계로서 독일과의 조약 체결을 결정하였으므로 독일 정부에 대하여 조약 체결을 제의할 것을 훈령함.
3. 주독대사는 1961.1.30. 독일 정부에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을 정식 제의하고, 우리측 조약 초안을 제출함. 이에 대해 독일측은 한국과 조약을 체결할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본건 교섭 장소로서 본을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독대사가 1961.2.20.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독일측이 제시한 초안 등을 감안한 한독우호통상항해조약 제1차 시안을 1964.8.27. 작성하여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27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 · 인도간의 무역협정

| 64-210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1과
MF번호	J-15 / 4 / 1~439(439p)

한 · 인도 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교섭 경위

280

- ※ 한 · 인도간 무역 불균형 시정과 양국간 통상 및 우의증진을 위하여 1962.10월부터 한 · 인도 무역협정 체결을 교섭함.
- ※ 그 후 양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보고 우리나라는 1963.7.4. 주뉴델리총영사를 통하여 본 협정체결을 위한 5개 원칙을 Aide-Memoire로 인도 정부에 제의함.
- ※ 1963.10.3.~5. 한국을 방문한 인도 통상성 동부 및 동남아 차관보(Srinivasachar)로부터 우리측이 제의한 원칙에 합의한다는 구두통보를 접함.
- ※ 우리나라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1963.12.5. 전문 8조 및 양국의 수출입 가능품목표로 구성된 협정초안을 주뉴델리총영사를 통하여 인도측에 제의함.
- ※ 인도 정부는 1963.12.24. 우리측 제의에 대한 회보와 아울러 협정교섭 및 서명을 위한 한국 통상사절단의 인도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1964.1.18.~25. 인도를 방문한 우리 통상사절단장(이철승 상공부 차관보)은 Srinivasachar 인도 통상성 차관보와 1964.1.22. 무역협정에 가서명함.
- ※ 양국은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 후 1964.4.29. 양국간 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함.

2. 협정 주요내용

- ※ 본 협정은 각서 교환형식으로 되어 있고 양국의 수출입품목을 정하고 있는 목록표 "A(한국의 28개 수출가능품목표)"와 "B(인도의 29개 수출가능품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 타방 체약국에게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하나 3가지 예외를 두고 있음.
- ※ 본 협정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2년이며, 양측의 협정종료 통고가 없는 한 매년 효력 지속함.

3. 국내조치 사항

- ※ 한 · 인도 무역협정안 국무회의 의결(1964.3.27.) 및 대통령 재가(1964.4.14.)

한국 통상사절단 · 인도네시아 국가무역공사 일반관리위원회간의 무역에 관한 약정

| 64-211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통상진흥과
MF번호	J-15 / 5 / 1-43(43p)

1.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1962.9.29. 우리나라 통상사절단(단장: 유재홍 주태국대사)과 인도네시아 국가무역공사 간에 무역약정을 체결한 바 있음. 외무부는 동 약정의 유효기간이 1964.9.29.부로 만료 되는 것과 관련하여 1964.7.13.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통상사절단과 동 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정식무역협정의 체결 제의 등의 대처방안을 검토함.
2. 외무부 방교국은 (1)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와 정식 외교관계가 없으나 무역협정 체결은 전적으로 양국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2) 현 무역약정의 법적 성격을 그대로 존속시키고자 할 경우 그 개정 방식은 동 약정의 법적 성격에 일치시켜야 하며 이 경우 인도네시아측과 양해가 성립된다면 개정의 당사자로서 인도네시아측은 현 당사자를 그대로 하고 한국측은 이에 대응하는 의미의 국가기관인 대한무역진흥공사로 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1964.7.14. 통상국에 제시함.

28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필리핀간의 무역협정 개정

| 64-212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5 / 9 / 1~123(123p)

1964.3.20.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하여 필리핀 측의 확인 각서를 받아 기존의 한·필 무역협정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의 개정은 한·필 합동위원회의 건의사항을 한·필 양국 정부가 확인하는 형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2. 협정 부표 A 및 B를 모두 개정하여 필리핀의 대 한국 수출품목을 종전의 19개에서 40개로 증가시키고 한국의 대 필 수출품목을 46개에서 53개로 증가시킴.
3. 1961년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항 삭제
4. 합동위원회를 1년에 1회씩 개최하도록 함.

한 · 파라과이간의 무역협정 체결추진

| 64-213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통상진흥과
MF번호	J-26 / 22 / 1~45(45p)

한 · 파라과이 무역협정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1. 주유엔대사는 1963.8.15.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기회에 한국과 파라과이 간 통상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파라과이 외상의 공한을 받음.
2. 동 공한은 양국의 주유엔대사를 통하여 통상협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브라질대사가 겸임대사로 신임장을 제정하였으므로 차후에는 주브라질대사를 통하여 동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외무부 방침을 결정
3. 주브라질대사는 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우리측 일반원칙을 파라과이 측에 제시하고 동 원칙에 파라과이 측이 동의한다면 어느 일방에서든지 조속 무역협정 안을 제의할 것에 관한 의견을 타진하도록 외무부에서 주브라질대사에게 지시함.

28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미간의 1964년 석유협정 및 합의의사록. 전2권 v.1 교섭철

| 64-214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7 / 2 / 1~227(227p)

1964년 한·미 석유협정 및 합의의사록 체결을 위한 한·미간 교섭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교섭 경위

- ※ 현행 “한·미석유운영협정”을 종결하고자 1963.10.29. 경제기획원장이 USOM처장보에게 협정 종료를 위한 한·미간 회의 개최를 제의함.
- ※ 미국측은 1964.1.17.자 주한미국대사의 외무장관 앞 공한으로 동 협정 폐기원칙에 동의하는 한편 그에 선행하여 미측이 석유생산품 및 시설의 사용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한 새로운 석유협정을 한·미간에 체결할 것을 요청함.

284

2. 회의 내용 및 결과

- ※ 1964.1.17. 제1차 교섭회의 이래 1964.4.8.까지 전후 1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안 합의
- ※ 1964.4.17. 협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후 1964.4.22.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문 일부 내용 및 자구 수정에 합의함.

3. 주요 문건

- ※ 한·미 석유운영협정(KOSCO) 폐기 제안 이유
- ※ 정유공장건설에 따라 한·미 석유운영협정 폐기를 위한 한·미교섭 경위
- ※ 한국측 대표자 제1차 예비회의 결과보고
- ※ 미측 협정초안 및 한국측 초안(상공부 안)
- ※ 외무부 구미국의 한·미석유협정 체결교섭 관계자료(회의결과 보고 등)와 동 자료에 대한 외무부 방교국의 검토 의견서 등

한·미간의 1964년 석유협정 및 합의의사록. 전2권 v.2 체결 및 공포철

| 64-215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7 / 3 / 1~289(289p)

1964년 한·미 석유협정 및 합의의사록 체결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체결 이유(필요성)

- ※ 1962.7.24. 법률 제1111호 “대한석유공사법”에 의거 대한석유공사가 설립되고 동 공사의 울산 정유공장이 1963.12.22. 완공 후 1964.4월 이후 일일 35,000 BPSD 처리용량의 시설로서 석유의 생산 및 공급이 개시됨.
- ※ 이에 따라, 1955.5.31. 체결된 현행 “한·미석유운영협정”은 동 협정종결 조항에 따라 종결이 예상되고 이로써 종전 미군용 석유를 일부 취급하던 대한석유저장회사(KOSCO)가 장차 해체될 것이며 석유공사의 조업개시와 함께 종전 석유공급원인 AID 도입유에 국산 석유가 대체됨.
- ※ 주한미군 및 국군의 유류공급 및 제반시설 조작과 군 작전상의 필요에 대한 보장 및 그 취급 또는 공급조건을 약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2. 교섭 경위

- ※ 현행 “한미석유운영협정”을 종결하고자 1963.10.29. 경제기획원장이 USOM 처장보에게 협정종료를 위한 한·미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
- ※ 주한미국대사는 1964.1.17.자 외무장관 앞 공한으로 현행 협정 종료에 동의하는 한편 미측이 석유 생산품 및 시설의 사용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한 새로운 석유협정을 한·미간에 체결할 것을 요청함.
- ※ 한·미 양측은 1964.1.17. 제1차 회의 이래 1964.4.8.까지 전후 1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안에 합의하고 1964.4.17. 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한·미 양측합의로 일부 내용 및 자구 수정을 봄.
- ※ 상공장관과 주한미국대사는 표기 협정이 한국 국회의 동의 및 대통령의 비준 후 90일에 발효하는 것을 조건으로 1964.5.12. 서명함.

3. 협정 발효

28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 국회 동의(1964.5.30.) 및 대통령 비준(1964.6.5.)을 거친 후 90일인 1964.9.3. 발효됨.

4. 협정 주요내용: 본 협정은 전문 10조와 부록으로 구성

※ 전문: 1조(정보와 검사), 2조(비상사태), 3조(시설이용 및 대금지불), 4조(방위용 비축류), 5조(제품 교환), 6조(미국제품의 통관), 7조(손실과 보상), 8조(석유 공동위원회 설치), 9조(합의사항 이행), 10조(발효 및 기간)

286

※ 부록(합의의사록): 전문 제2조, 3조, 4조 및 6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5. 국내조치 사항

※ 표기 협정안 국무회의 의결(1964.4.17.), 국회 동의(1964.5.30.), 대통령 비준(1964.6.5.)

※ 법령 공포(조약 제125호)



Meyer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Re-32 / 25 / 1~62(62p)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에 체결된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적용 및 운용 문제에 관하여 재무부 등 관계기관(인)의 외무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외무부의 회보 내용임.

1. 미8군 공사를 계약한 한국청부업자에 대한 조세의 비과세 여부 문제(1961.7. 재무부 질의)

- ※ 한국청부업자에 대한 조세의 비과세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그러한 규정을 둔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바 없음.

2. 미군영 내 외국인 및 외국상사의 조세 면제 여부 문제(1963.4. 재무부 질의)

- ※ Meyer 협정 제3조13항의 조약문이 명확치 않으나 “개인과 기관”에는 미군의 이익을 위하여 주재하는 계약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한미간 경제기술원조협정(1961.2.8. 체결) 제6항 “가”에서도 미국 정부와의 계약자에게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고 있음.

3. 인천 미육군 저장시설 징발 보상문제(1964.6. 아주 금속공업주식회사 질의)

- ※ 관계부처에 조회하여야만 질의에 대한 최종판단을 할 수 있는 성질이지만, 귀한 및 관계 자료로 미루어보아 미 8군에 의한 동 부동산의 사용이 징발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1차적으로는 추정되며, 일단 징발된 이상 동 부동산의 사용권자인 미 8군의 허가 없이는 개인이나 회사에 의한 사권의 행사는 제한을 받는 것으로 사료됨.

4. 드레이크·킹케이드사의 공항건설관련, 1964.12. 외무부(조약과)가 준비한 광주 지방법원의 외무부 조약과장(증인)에 대한 증인 심문사항과 이에 대한 조약과장의 답변안

혼인에 대한 동의 · 최저혼인적령 및 혼인등록에 관한 협약 가입추진

| 64-217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8 / 6 / 1~34(34p)

1. 외무부는 1964.9.5. 법제처 및 법무부 등에 대하여 유엔에서 1962.12.10. 채택된 '혼인에 대한 동의, 최저혼인 적령 및 혼인등록에 관한 협약' 가입에 따른 의견을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2. 법제처는 1964.9.14. 상기 협약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동 협약에서 요구하는 입법조치는 이미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비준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무부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1964.10.22. 외무부에 회보함.
3. 한편, 외무부내 정무국은 상기 관련 방교국의 검토 의견 문의요청에 대하여, 동 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인 혼인의 기본적 요건은 소위 속인법의 규정 사항으로 각국의 인종, 기후, 풍습 등에 따라서 그 규정 내용이 상이할 수 있고, 혼인의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정하는 문제는 국가에 따라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제조약으로서 규정함에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회보함.

IFC(국제금융공사)규정 가입, 1964.3.16. 전2권
v.1 교섭철, 1955-63.8

| 64-218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조약과
MF번호	J-18 / 11 / 1~309(309p)

1.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국제금융공사)는 가입국 중 특히 후진국가의 생산적 민간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활동을 보조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6.7.20. 발족함.
2. 외무부는 우리나라가 1962년을 기점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에 있어서 민간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외국자본의 도입 추진이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외국자본 도입 추진 원천으로서의 국제금융공사에 대한 가입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및 한국은행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1962.2.4. 개최함.
* 동 회의 시 IFC에 가입하더라도 당장 투유자를 유치하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외자도입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가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합의함.
3. 외무부는 각의에 IFC 가입신청 의안을 상정, 1963.7.23. 각의에서 의결됨. 이에 따라 외무부는 주미대사에게 IFC 가입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주미대사는 IFC측이 139,000불의 출자액을 포함한 가입조건을 수락한다는 통고가 요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고함.
4. 재무부는 1963.8.9. IFC측 가입에 따르는 출자액을 포함한 가입조건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회보함.

28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1965

1964

IFC(국제금융공사)규정 가입, 1964.3.16. 전2권 v.2 가입철, 1963.10-64

| 64-219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8 / 12 / 1~293(293p)

1. IFC(국제금융공사)의 9.30.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무부는 동 공사 가입 동의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 1963.11.11. 제123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 외무부는 1963.11.13. 우리나라의 IFC 가입 승인 사실을 재무부에 통보하면서, 재무부가 동 공사 가입에 따른 출자금 139,000불을 조속히 지불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 재무부는 1963.12.31. IFC 가입에 따른 출자금을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을 통해 뉴욕연방 준비은행에 송금 조치함.

290

2. 외무부는 주미대사를 특명전권위원으로 임명하여 IFC측과 국제금융공사협정에 대한 서명 절차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동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동 협정을 공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964.2.21. 재가를 받음. 동 협정은 1964.3.16. 워싱턴에서 주미대사와 IFC측 간에 서명된 후 IBRD에 기탁됨으로써 우리나라는 IFC의 77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3.17. 국내에서 공포됨.

[1960.6.24자] 제2국제석협정 가입, 1962.1.3.
전2권 v.1 제2차 국제연합석회의. New
York(UN) 1960.5.23-6.24

| 64-220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9 / 1 / 1~273(273p)

정부는 유엔 석(tin)회의에 다음과 같이 대표단을 파견함.

1. 기간: 1960.5.23.

2. 장소: 뉴욕

3. 대표단

- ※ 최용진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김혁 주유엔 3등서기관

4. 파견 목적

- ※ 금번 회의에서는 신 국제 석협정 체결에 관한 제반 문제를 토의하게 됨.
- ※ 우리나라도 1961.6.31. 이전에 신 협정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동 회의에 참가하여 각국의 견해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각국 대표와 의견을 교환하여 우리나라 가입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참고하기 위함임.

29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0.6.24자] 제2국제석협정 가입, 1962.1.3. 전2권 v.2 한국가입

| 64-221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J-19 / 2 / 1~122(122p)

1960.6.24, UN 석(tin)회의 최종회의에서 채택된 제2 국제석협정에 정부는 1961.9월 가입하기로 함.

1. 경위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석협정은 1961.6.1. 효력이 종료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제2 국제석협정이 1961.7.1. 효력을 발생함.

292

※ 1961.1.11.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동 협정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였고 1961.7.3. 국제 석이사회에서 동 가입이 승인됨.

2. 가입 목적

※ 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며,

※ 더욱 경제적인 석의 생산을 촉진하여 세계적 석 소비의 증대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우리나라의 재정적 부담

※ 연간 부담액은 220파운드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장기협정 가입, 1964.12.10. 전2권 v.1 1962-63

| 64-222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조약과/통상진흥과
MF번호	J-19 / 3 / 1~185(185p)

우리나라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장기협정(Long-Term Cotton Textiles Arrangement) 가입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는 1962.2.9. 제네바에서 채택된 표기협정문 주요 조항 검토(1962.2.)
2. 주미대사관은 미국의 표기협정 비가입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동향보고와 아울러 지금까지 미국 및 영국에 집중되어 온 면직물 수출을 서구 특히 구주공동체 시장으로 일부 전환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와 구주 각국도 저개발국으로부터 면직물 수입제한 완화조치 움직임 등이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표기협정 가입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본부에 건의함.(1962.7.)
3.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표기협정 가입절차와 각국의 표기협정 가입동향에 관해 보고토록 지시함.
4. 외무부는 1962.12. 표기협정 가입여부를 검토 끝에 우리나라도 주요 면직물 수출국의 입장에서 현재 및 장래를 위하여 표기협정 가입이 유리하다는 결론하에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가입문제를 조속히 결정하기로 함.
5. 외무부는 표기협정 가입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제기획원, 재무부 및 상공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1963.3.15. 개최함.
 - ※ 외무부는 표기협정의 유래 및 현황설명과 아울러 동 협정 가입에 찬성하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이 합치되는 대로 가입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 경제기획원은 GATT와 표기협정과의 관계를 문의하고 미국뿐 아니라 구라파, 동남아 등 지역에서의 시장개척에 기여할 것이므로 협정가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힘.
 - ※ 재무부는 표기협정 가입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기타 한국 면직물산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지 문의하고 그러한 제약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양해하에 표기협정 가입에 이의 없다는 의견을 밝힘.

29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 상공부는 표기협정 가입을 현재로서는 반대한다는 의견과 그 이유를 밝힘.

6. 외무부는 GATT 가입을 위한 당초계획(1963년 전반기에 GATT에의 가입을 위하여 예비 교섭을 구체화하고 1963.10.22.~11.15. 개최되는 제21차 GATT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을 파견하여 GATT 가입 목표 달성계획)을 우리나라의 현 경제사정과 GATT가입시 합의조건 이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동 계획추진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1963.4. 재무부 및 상공부에 통보함.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장기협정 가입, 1964.12.10. 전2권 v.2 1964

| 64-223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조약과/통상진흥과
MF번호	J-19 / 4 / 1~351(351p)

우리나라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장기협정 가입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입 경위

- ※ 외무부는 우리나라 면직물의 합리적인 교역증진은 물론 향후 계속될지도 모르는 제3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수입제한에 대비하여 표기협정 가입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표기협정 가입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봄으로써 표기 협정가입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함.(1964.8.)
- ※ 외무부는 64.10월~11월경 GATT면직물위원회에 표기협정 가입신청을 위한 관계자료(면직물 생산 및 소비실적 등)를 상공부 및 대한방직협회에 요청함.(1964.8.)
- ※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표기협정 가입시 문제점 보고와 아울러 관계자료를 송부토록 지시함.
- ※ 외무부는 표기협정 가입에 관한 법제처 의견문의 및 국무회의 상정 등 가입에 필요한 사전 국 내절차 조치를 취함.
- 국무회의 의결: 1964.10.23. 및 대통령 재가: 1964.10.28.
- ※ 외무부는 각 재외공관에 금차 GATT 면직물 위원회에 표기협정 가입(1964.10.1. 현재 28개국 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입에 대한 주재국정부의 지지를 획득토록 훈령 하 달함.(1964.9.9.)
- ※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1964.11.4. GATT사무국에 표기협정 가입신청서를 제출함.
- ※ 우리나라의 표기협정 가입문제가 1964.12.3. 면직물위원회 회의에서 토의되어, 이집트 대표의 한국 가입지지 발언에 뒤이어 일본, 호주, 미국, 대만, EEC 및 멕시코 대표의 지지발언 등으로 우리의 가입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1964.12.10.자로 동 협정이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게 되었음.
- 주제네바대사는 토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표기협정 가입희망을 표명하고, 본 협정 제11조2항의 의무(GATT 비회원국 의무)를 인수한다는 발언을 함.

2. 국내 조치사항: 법령공포(조약 제134호)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가입, 1964.12.13. 전2권 v.1 협약 채택을 위한 전권 회의 준비, 1958.10-61.1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방교과
MF번호	J-20 / 9 / 1~135(135p)

1. 유엔사무총장은 마약단일협약채택전권회의가 1961.1.24.~3.7.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
이므로 동 회의에 한국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1960.8.16. 주유엔대표부에 송부해 음.
이와 관련,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와 협의의 거처 동 마약단일협약 초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락할
수 있으나 일부 초안 내용에 관하여 수정 제안을 하는 등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296

※ 우리측 수정 제안 내용은 (1) 국제마약통제국 구성에 있어서 각 지역 국가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하고 동양 국가들의 균등한 참여를 기하기 위한 '지역적 대표성 고려'의 추가(87.1항 관련), (2) 협약의 수락 자격국이 유엔 회원국과 특정회의에 초청된 또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초청한 국가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가입에 초청될 것을 고려하고 또 본 협약의 목적 및 국제조약 일반관례에 비추어, 동 협약 수락에 있어서 한정된 국가가 아니라도 초청장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수락할 수 있도록 '... on behalf of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다음에 'or of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를 삽입하는 것임.

2. 상기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대표단은 문덕주 주뉴욕총영사(대표), 임석태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이현연 보건사회부 마약과 약물관 3인인바, 외무부는 동 대표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훈령을 시달함.

- ※ 금번 회의는 현존하는 14개의 마약관계 국제협약을 단일화하고자 소집되는 회의인 만큼 우리나라 마약법규를 참작하여 회의에 임할 것
- ※ 정부에서 기 제시한 바 있는 개정안을 채택시키도록 할 것이며 생산, 제조, 소비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실정을 유의하여 국가권익을 손실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조국으로 되어 있는 미국과 같은 우방국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산정권의 대표권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좌절시킬 것이며 중립국의 지지획득에 노력하는 한편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국정부의 지시를 받을 것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가입, 1964.12.13. 전2권 v.2 전권회의 및 발효, 1961.2-65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방교과
MF번호	J-20 / 10 / 1~291(291p)

1. 마약단일협약채택전권회의가 1961.1.24.~3.25.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문덕주 주뉴욕총영사(수석대표) 등 3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는바, 우리대표단은 동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1) 마약통제 및 통제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 협약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 완화, (2) 마약저장의 제한과 몰수된 아편과 앵속 고의처분에 관한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을 삭제하여 이러한 조치를 각국의 재량에 의하도록 하는 수정안 등에 대한 본국정부의 훈령을 하달해 줄 것을 청훈함.
2. 상기 우리대표단의 청훈에 대해 외무부는 보건사회부와 협의를 거쳐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은 우방제국과 보조를 같이할 것, 제31조 및 제32조 완전 삭제에 대하여는 현 국내실정과 마약기구를 참작하여 처리하되 미국의 제안과 같이 적절한 수정안을 채택할 것 등을 훈령함.
 - ※ 단일마약협정은 1961.3.15. 찬성 46 기권 8표로 채택되었으며, 기권한 8개국은 소련 및 그 위성 국가 등임. 이들이 기권한 이유는 여타 공산국가가 본회의에 초청되지 않았다는 정치적인 것임.
3. 외무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비준' 안건은 1961.10.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961.11.21. 국가재건최고회의 제72차 상임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비준서를 1962.2.13.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공포됨.

핵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 의정서 및 동 가입검토

| 64-226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J-20 / 13 / 1~143(143p)

핵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의정서 및 동 가입검토와 관련,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의정서 검토회의기간: 1963.4.29.~5.19.

2. 대표: 김동휘 주독대사관 2등서기관

298

3. 협약의 검토 경위

- ※ 1961.5월 개최된 정부간 위원회 제1차 회합에서 성안된 제1초안과 각 정부가 제출한 견해를 기초로 1962.10.22.~27. 비엔나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제2차 초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제출한 것임.

4. 본 협약의 중요 원칙

- ※ 원자력 피해에 대한 원자로 가동자의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민사상의 책임
- ※ 금액으로서 표시되는 배상책임액의 한정
- ※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법정수의 축소 또는 한정

5. 우리 정부의 가입 문제

- ※ 협약 서명이 5.21.에 있었으나 정부 지시에 따라 우리대표는 서명에 참가하지 않음.
- ※ 총 57개 참가국 중 협약에 서명한 나라는 5개국뿐으로 대부분의 대표단이 협약에 대한 철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함.
- ※ 협약 21조에 의하면 서명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 후 유보사항이 있으면 그 유보사항과 함께 서명을 하되 IAEA 총회를 계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가입, 1964.7.24

| 64-227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조약과
MF번호	J-20 / 14 / 1~300(300p)

우리 정부는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 금지 조약에 다음과 같이 가입함.

1. 경위

- ✿ 1963.8.5. 조약 채택
- ✿ 1963.8.30. 우리 정부 대표 서명
- ✿ 1964.7.24. 우리 정부의 비준서 기탁

2. 조약의 주요 내용

- ✿ 조약의 목적
 -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 일체의 핵실험의 영구적인 규제를 실현할 것과
 - 방사능 물질에 의한 오염을 종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 ✿ 핵무기 실험 금지의 범위
 - 지하실험을 제외한 일체의 핵실험을 규제함.
- ✿ 조약의 수정
 - 이 조약은 당사국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음.

동남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 가입검토

| 64-228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J-21 / 8 / 1~8(8p)

주이탈리아대사는 우리나라의 동남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협정 가입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FAO 사무국으로부터 입수하여 1964.11.10. 외무부에 보고하였는바, 동 자료에 소개된 동남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위원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동남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위원회 설치 경위

※ 1955.11.21. FAO 이사회에서 동남아 및 태평양 식물보호협정에 의거 설치

300

2. 설치 목적 : 식물병의 지역 내 유입 및 확산 방지에 관한 국제협력

3. 회원국 : 버마, 스리랑카, 인도, 라오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월남,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 등 13개국

4. 회의 개최

- 1차, 2차 회의 방콕(1956, 1957), 3차 회의 뉴델리(1959), 4차 회의 마닐라(1962)
- 제5차 회의는 1964.11.26.~12.2.간 호주의 캔버라에서 개최 예정

독도 문제

| 64-229 |

생산년도	1960-64
생산과	동북아주과
MF번호	K-9 / 4 / 1~208(208p)

독도문제와 관련 1960~64년간 한·일 양국은 다음과 같이 구술서 등을 통하여 자국 입장을 주장함.

1. 1960.12.22. 일측은 한국이 독도에 설치한 구조물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구술서를 우리측에 전달
2. 1961.1.5. 우리측은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이 문제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입장에 있지 않다는 회답 공한 전달
3. 1961.12.25. 일측은 한국이 독도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우리측에 전달
4. 1961.12.27. 우리측은 독도에 관한 반대항의서를 일측에 전달
5. 1961.12월 외무부는 'The Truth About Dokto' 제하의 자료집 배포
6. 1962.2.10. 일측은 한국일보 기자 등 5명이 독도에 상륙하여 활동할 계획에 대하여 항의하는 문서를 우리측에 전달
7. 1962.7.13. 일측은 한국 관천이 여전히 독도에 주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서한 전달
※ '독도에 관한 1959.1.7자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일 정부의 견해' 자료 첨부
8. 1963.2.5. 일측은 일본에 표류한 우리나라 경찰 경비선 '화랑호'가 독도로 수송되는 무기를 적재하고 있었던 것을 항의하는 문서 전달
9. 1963.2.6.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는 일본 정부가 무조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도

30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10. 1963.2.25.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하여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 타당하다는 문서를 일측에 전달

11. 1963.12.10. 외무부는 '독도문제' 제하의 자료집 배포

302

12. 1964.3.3. 일측은 독도에 한국 정부 관리가 주재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문 전달

13. 1964.3.18. 우리측은 일측 항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문서를 일측에 전달



국제법적 의견문의 및 회신

| 64-230 |

생산년도	1962-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K-2 / 7 / 1~191(191p)

외국인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국제법적 문의 및 회신과 관련 법조문, 외국기관의 비주권행위에 관한 독일법정의 관할문제에 대한 검토 요청 자료임.

1. 외국인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한 문의 및 회신(외무부 의전장실과 방교국)

- ☛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법적지위: 유엔에서 파견된 기관 또는 개인으로 인정하여 일반 외교관과 동등한 대우 여부 등
 - 1953.7.27.자로 체결된 “한국군사정전협정”제2조13항 규정에 의하면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위원은 외교관과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를 향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정은 대한민국정부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대한민국 국군을 포함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 협정규정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현재 동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한 대우를 하는 것이 타당함.

2. 외국기관의 비주권행위에 대한 독일법정의 관할 문제

- ☛ 주독일대사관은 표기문제에 대한 1963.4.30.자로 판결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본부에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본부의 검토를 건의함.

3. 주요 문건

- ☛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국내법조문
- ☛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관계조약 및 협정문
- ☛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등

303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페스타로치” 아동촌내의 한국의 집 건립

| 64-231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L-2 / 2 / 1~58(58p)

스위스 페스타로치 아동촌에서 우리나라 아동과 청년들이 일반교육, 학교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1964년 우리 보사부와 페스타로치 아동재단 간에 다음 내용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함.

1. 교육 위임

2. 교사부부, 보조교사 및 아동의 입촌 절차

304

3. 후견인 및 보호자

※ 후견인: 주스위스 대사

※ 보호자: 재단이사회

4. 교사의 신분보장

5. 교육

6. 고유의 풍속보호 및 귀국보장 등

호주 · 한 협회

| 64-232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공보문화과
MF번호	L-2 / 9 / 1~5(5p)

호주에 있는 다음과 같은 3개 친한단체에 관한 문서가 수록되어 있음.

1. The Australian - Korean Society

✿ 회장: Mrs. Margo Hammond

2. Korean and Malaya Forces Association

✿ 회장: A.W.A Laing

3. APACL(아시아 반공연맹 호주지부)

✿ 이사장: George Hannan 빅토리아주 상원의원

305

대한민국외교자료해제집

1965

1964

재스웨덴 친한단체

| 64-233 |

생산년도	1960-64
생 산 과	구주과/구미과
MF번호	L-2 / 10 / 1~117(117p)

재 스웨덴 친한단체의 현황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스웨덴 · 한국 협회(Swedish-Korean Society): 1951.6. 창립

- ※ 주영대사는 한 · 서협회의 요청에 따라 동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시(1961.4.22.) 한 · 서 협회 발족 및 발전과 한 · 서 우의증진에 공로가 혁혁한 Ake J. EK 회장 및 수명의 협회 간부에 게 우리나라 훈장 및 감사장 수여를 외무부에 건의함.
- ※ 외무부는 Ake회장에게 문화훈장(국민장)을 수여하고 기타 회원 6명에게는 외무장관 명의 감사장을 수여키로 결정하고 동 기념행사에 주영국대사관 박동진 참사관이 참석하여 전달토록 지시함.
- ※ 박동진 참사관은 동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연설 및 훈장수여, 스웨덴 외무성 의전국장 면담, 한 · 서협회 간부 및 스톡홀름 거주 한국 유학생 일부(20여명)와의 오찬, 재 스웨덴 한국협회 간부와의 오찬 등 출장 결과를 보고함.
- 한 · 서협회는 한국전쟁 중 한국에 파견되었던 스웨덴 적십자병원 부대의 직원들이 중심이며 비 개방적이고, 10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체이나 그 구성원들은 스웨덴 내에서 사회적으로 비교적 중류이하에 속하여 상류계급에 속하는 스웨덴 인사들은 동 협회 가입을 주저하고 있어, 앞으로도 대외적인 큰 영향을 갖기 어려운 형편임.

2. 재 스웨덴 한국협회(Kotran Association in Sweden): 1961.4. 창립

- ※ 종래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출신 스웨덴인(그에 파견되었던 간부들은 사실상 스웨덴 국내에서 상당히 저명하고 유력한 인사로서 상류계급에 속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들은 새로운 조직체를 결성함이 유리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1961.4월에 한국협회를 결성함.
- ※ 동 협회는 장래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기존단체인 한 · 서협회보다 훨씬 커다란 활약이 기대됨.
- ※ 동 협회는 “요보새요”라는 책자 발간 등 한 · 서 양국민 친선도모를 위한 여러 행사를 계획 중.

국교정상화 이전의 한일경제협력정책

| 64-234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 / 2 / 1~61(61p)

1. 외무부는 1963.3.8. 주일대사에게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의 대한투자, 차관 및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사하고 있는 연불수출이 순수한 무역형식의 것이라면 이는 한일간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측의 이와 같은 움직임의 배경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주일대사는 1963.3.9. 상기 일본 정부의 대한연불 수출 관련 시사(이께다 수상 및 오히라 외상의 국회 발언 시 언급)는 한일회담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대한경제협력을 민간 베이스에서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견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오히라 합의사항에 1억불 이상의 민간 베이스에 의한 경제협력을 케이스별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그러나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가 김·오히라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유상공여는 7년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분할 지불원칙 입장이나 한국측이 7년 거치 기간과 별도로 20년 분할 지불을 주장하고 있어 민간 베이스의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청산계정상의 채무이행에 대하여도 일측의 3년 분할 입장에 대하여 한국측은 10년 분할지불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민간 베이스에 의한 효율적인 경제협력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1963.4.11. 내각수반에 대한 보고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국교정상화 전 한일간의 경제협력을 막아온 정책적인 이유는 대일부채의 확대가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에 있었으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사업을 촉진시키고 국내의 경제적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자도입촉진법을 개정, 수출진흥과 차관의 일원화를 기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도입에 대비하여 한일경제협력의 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방침을 사전에 확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5. 외무부는 1964.4.20. 주일대사에게 국교정상화 전 장기결제 방식에 의한 일본의 자본재 도입은 현재 또는 장차 이를 청구권(무상 3억불, 유상 3억불)과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명문상으로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청구권 중 1억불에 관하여도 지금까지의 입장대로 김·오히라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이를 청구권의 테두리 내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을 훈령함.

독일 민간회사의 대한차관제공 제의

| 64-235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 / 5 / 1~40(40p)

독일 민간회사의 경제기획원에 차관제공 제의와 동 제의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검토 내용임.

1. 독일 민간회사의 차관제공 제의 요지

※ 차관 공여자

- Heinrich Koppers 주식회사(독일 Essen 소재)로서 기술용역으로부터 은행을 통한 재원 조달까지 알선
- Societe de Finance Internationle(스위스 Vaduz 소재) 회사는 필요한 자금 마련

※ 차관제의액 및 형태

- 금액: 1억불 규모(7천만불은 산업공장 및 자재용, 3천만불은 소비재)
- 형태: 현금차관이 아니고 연불형식에 의한 구매물품을 그들의 기관 또는 지정된 공급자를 통하여 제공

※ 차관 조건

- 공장의 경우 : 100% 자금조달, 거치기간 4년, 상환기간 10년, 이자율 연 5%, 중앙은행의 지불보증 요구
- 정부구매용 자본재인 경우: 100% 자금조달, 거치기간 4년, 상환기간 2~10년, 이자율 연 5%, 중앙은행의 지불보증 요구
- 소비재인 경우: 100%자금조달, 상환기간 1.5~2년, 이자율 5%, 중앙은행의 지불보증 요구

※ 제공할 수 있는 기술용역 외 대상사업

- 소기업 공장(벽돌, 유리공장 등), 석유 및 석유화학공장, 기타 토목공사 등

2. 경제기획원의 검토 내용

- ※ 상기 차관조건은 국제관례로 보아 불리한 차관이라고 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추진 가능할 것임.
 - 차관공여 회사의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재력 및 신용도
 - 지불보증문제: 한국은행의 지불보증 요구는 1964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조정가능성 여부 및 내년도 지불보증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결론



- 제의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거액의 상업차관을 사용할 계획이 없으나 금후 필요한 시기에는 동 제의를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보함.
- 향후 이용가능성을 연구하는 자료를 위하여 제의자의 재력 및 신용도 조사 필요

3. 한국은행과 주독대사관의 차관공여회사의 재력 및 신용도 조사 보고서

4. 독일 Heinrich Koppers회사의 차관제외와 화일전력회사와의 관계사항

한·독 경제실무자회담. 서울, 1964.7.10

| 64-236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 / 7 / 1~7(7p)

1964.7.10.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독 경제실무자회담의 회의록으로, 동 회의에서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및 독일의 한국 면직물 수입쿼터 증가 문제 등 양국간 무역관계 사항이 협의됨.

한·미 경제협력회의. 서울, 1964.1.31

| 64-237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M-2 / 8 / 1~8(8p)

1.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1964.1.31. 개최된 한·미 경제협력회의의 시 토의안건은 물자수급계획이었는데, 동 회의에서 주한미국경제협조처(USOM)측은 SA자금(미국 정부가 대외원조수권법에 의거하여 지원 하는 원조)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기함.

※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SA자금 사용 명세서 제출 요구

※ 수출용 원자재 도입조로 4,000만불을 구분한 이유 문의(수출용 원자재로 도입된 물품이 반드시 수출 상품 제조에만 사용된다는 보장이 어려우며, 수출용 원자재의 사전확보가 어려우면 수출 가능량도 감소되는 난점이 있다는 견지에서)

※ 수입계획 500만불 가운데 SA품목의 제외 필요성 등

2. 상기 USOM측의 제기사항에 대하여, 우리측은 SA자금 사용 명세서는 추후 제출하겠으며, 원자재 수입은 수출 L/C에 의거하여 허가하고 행정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수출용 도입 원자재가 국내 수요층으로 전용되지 않으며, 보유불로 도입하는 품목은 수출용 원자재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3. 대통령비서실은 상기 한·미 경제협력회의의 결과를 1964.2.1.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한·미 경제협력회의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미측 예상 질문에 관해 통일된 의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31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경제사절단 구주순방, 1964.11.7-12.8

| 64-238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구주과
MF번호	M-5 / 5 / 1~231(231p)

우리나라 경제사절단(단장: 박충훈 상공장관)의 구주 순방(1964.11.7.~12.8.)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이탈리아(1964.11.7.~11.)

- ※ 한·이 무역협정 가서명(1964.11.10.) 등의 활동을 함.

312

2. 프랑스(1964.11.15.~17.)

- ※ 주요 활동
 - 프랑스 관계당국과 차관교섭, 기술협력, 어선도입 및 신어장 개척, 무역협정에 관해 협의
 - 팔당수력발전소 차관 계약서 서명(1964.11.15.)

3. 영국(1964.11.18.~20.)

- ※ 영국 관계당국과 차관문제, 무역증대, 면직물 수출, 기술원조, 원자력 발전소 문제에 관해 협의함.

4. 독일(1964.11.21.~12.8.)

- ※ 주요 활동
 - 독일 관계당국과 한·독 경제관계회담, 무역, 투자, 거주협정, 해상수송, 기술원조, 독일 내에서의 한국 근로자의 취업, 장기 수출 신용거래에 대한 위한 보증, 자본원조 등에 관해 협의 또는 합의
 - 한·독 경제회담에 관한 의정서 서명(1964.12.4.)
 - 한·독 무역협정 가서명(1964.12.4.)
 - 한·독 재정원조협정 가서명(1964.12.4.) 및 정식 서명(1964.12.7.)
 - 공동성명서 발표(1964.12.4.)

덴마크의 대한 경제원조 제의

| 64-239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2 / 12 / 1~66(66p)

1963.10월 덴마크 정부는 주한덴마크대사관(동경 상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 경제원조를 제의해 옴.

1. 원조의 형태

- ※ 덴마크정부의 상업차관

2. 원조 대상

- ※ 어선용 디젤엔진

3. 원조 규모

- ※ 300,000~500,000미불

4. 차관 조건

- ※ 상환기간: 7~15년
- ※ 착수금: 10%
- ※ 연이율: 5.5%

5. 기술원조

- ※ 필요에 따라 수반함

31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미국의 추가원조 및 제2차 잉여농산물(PL480) 지원

| 64-240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미주과/경제협력과
MF번호	M-2 / 16 / 1~182(182p)

314

1. 주미대사는 1963.4.11. 외무부에 미국의 SA 및 PL480 추가 원조 획득 교섭을 위해 1963년 SA 자금의 최근 소화 상황, 1964년도 원조 요청에 관한 미측과의 교섭진행 등에 관한 자료를 긴급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2. 경제기획원은 1963.4.20. 주미대사관 송부를 위해 외무부에 보내온 자료에서, 1963년도 SA자금 75백만불은 5월말까지 비료 구입 22백만불, 민수 원자재 32백만불 등에 이미 전액 배정, 소화될 예정이나 배정 공고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원조 25백만불이 하반기에 계속 필요한 실정이며, 1964년도 원조요청에 관하여는 AID 및 USOM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함.
3. 외무부는 1964.5.20. 주미대사에게 미국 정부와 잉여농산물 및 추가 경제원조를 신속히 얻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또한 외무부는 5.27. 주미대사에게 러스크 미 국무장관을 만나는 기회에 추가원조문제를 빨리 결정하여 줄 것을 교섭토록 지시함.
4. AID측은 5.30. 미국 정부가 SA 15백만불, PL480 19.6백만불의 추가원조를 공여키로 결정했음을 확인함.
5. 외무부는 상공부의 요청에 의거, PL480에 의한 우지구매가 미측 Meridian Petroleum Co.의 공급량 부족으로 인하여 소정 인도기일인 10.31. 내에 전량 선적을 필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계획량 확보에 차질이 초래되었으므로 1964.12.31.까지 계획량 전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 농무성 측과 공급기간 연장을 교섭하도록 1964.12.7. 지시함.
 - ※ 미측은 12.17. 우리측이 요청하는 우지구매량 부족분은 전량 8,000톤 중 약100톤으로 전체 액수의 1.2%에 불과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속을 밟는 것은 피차간에 경제적이 못 된다는 이유를 들어 동 건의 종결을 권고함.
6. 경제기획원은 PL480에 의한 미국 수송이 미국적 선박의 배선 확보가 어렵고 부두노동자들의 파업 전에 수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선박과 비미국선박을 50 대 50의 비율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1964.12.8. 외무부에 요청함.
 - ※ 12.29. 주미대사 보고에 의하면, 미측 선박회사는 선체고장 수리로 소정기일 내 수송은 어려우나 타선을 대신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함.

AID 소다회공장 건설차관 도입교섭

| 64-241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 / 20 / 1~42(42p)

1. 경제기획원은 소다회(soda ash)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장입지 변경에 따른 사업평가 및 건의서를 AID에 송부한 바 있으나 입지변경 승인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으므로 AID 당국과 적극 교섭해 줄 것을 1963.5.23. 외무부에 요청함.
2. 주미대사는 1963.6.5. 외무부에 송부한 전문에서 AID 본부가 한국 정부에서 제출한 소다회 공장건설 관련 자료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한국의 소다회 생산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에 비해 훨씬 고가이므로 한국산 소다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산업생산품의 원가를 올려 물가면에 줄 영향에 대한 우려와, 소금을 생산가격 이하로 공급토록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 불만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일본 및 기타 국가의 소다회 가격과 우리 정부의 보조 예정액 및 보조 없이 수익운영 가능성 등을 교섭용 참고 자료로 보내 줄 것을 건의함.
3. 상공부는 1963.8.3. 외무부에 공문을 송부, 소다회공장 건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개년 사업으로 한국에서 절대불가결한 알칼리공업 부문 사업이며 동 사업의 핵심인 염(salt) 가격은 우리 정부가 사업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업염 가격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외무부가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AID 당국과 적극 교섭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주미대사는 AID 실무자들이 정부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한 AID 차관 공여를 가급적 금지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소다회공장 건설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보조를 점차 감소시켜 수년 후에는 정부 보조를 완전히 지양해도 건전한 수익채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차적 보조 계획을 긴급 회시하여 줄 것을 1964.1.15. 외무부에 건의함.
5. 경제기획원은 상공부가 통보한 소다회공장에 대한 정부보조의 필요성은 없으며 그러한 계획 자체도 수립한 바 없음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해 줄 것을 1964.1.28. 외무부에 요청함.

원자재 도입을 위한 대일 긴급차관 도입 교섭

| 64-242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2 / 24 / 1-21(21p)

원자재 도입을 위한 대일 긴급차관 도입교섭(오정근 전 최고위원의 개별교섭)에 관한 내용임.

1. 주일대표부의 오정근 전 최고위원의 추진업무에 관한 보고

- ※ 오정근 전 최고위원이 체일시 추진코자 하는 업무의 대체적인 내용은 약 3천만불에 해당하는 일본의 원자재(양국 정부가 동의하는 품목)를 정부 대 정부 base로 도입하고, 이를 가급적이면 3년거치 3년분할로 우리 농수산물로 상환토록 하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임.

316

2. 주일대표부의 오정근 전 위원과 일본 대장성장관간 회동(1964.1.23.) 보고

- ※ 오정근 전 위원과 일본 대장성 다나카 장관과의 회동 내용
 - 상기 거래의 필요성에 관해 의견 교환
 - 다나카 장관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일본 외무성의 본건에 대한 방침이 세워져 대장성에 제기되도록 바라고 있는 인상을 받았음.
 - 다나카 장관은 한국측이 좀 더 신속하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언사를 하였는바 이는 한일회담 문제와 본건에 대하여 다같이 적용되는 동 장관의 의중이라는 인상을 받음.
- ※ 오정근 전 위원은 대표부가 정부훈령 하에 일본 외무성과 접촉 교섭함이 좋겠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한 정부방침 하달 요망
 - 정부는 본건에 관하여 정식 교섭 지시를 내릴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개별적 교섭을 진행토록 하고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 보고 바람.

장기 결제방식에 의한 대일 자본재도입

| 64-243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M-3 / 1 / 1~328(328p)

1. 장기 결제방식에 의한 대일 플랜트 수입문제는 1962년 말 청구권문제에 관한 해결원칙이 합의된 후부터 한일 양국간에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토의가 진행된 것은 우리 정부가 1963.12.12. 1) PVC 공장(300만불, 3년 거처 9년 상환, 연리 6%), 2) 제5시멘트(581만불, 2년 거처 7년 상환, 5%), 폴리아크릴 섬유공장(380만불, 2년 거처 7년 상환, 연리 6%)의 대일 도입을 결정한 후부터임.
2. 일측은 1964.7.25. 주일대표부에 구상서를 송부, 한국측이 요망하는 3개 플랜트 중 PVC 및 시멘트의 2개 플랜트에 대해 '통상 상업 베이스의 민간차관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산입된다'라는 조건을 확인할 경우 장기결제방식에 의거하여 수출할 것을 인정할 용의가 있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우리측은 이에 반대함. 일측은 다시 9.3. 일본 외무성 니시야마 경제협력국장의 시안으로 '1962년말 쌍방간에 도달된 가양해의 제3항에 예정되어 있는 상업 베이스에 의한 통상 민간신용의 범주의 것이다'라는 안을 제시함.
3. 이에 대해 외무부는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 플랜트 수입은 1962.11월의 김·오히라 회담에서 1억불 이상의 상업차관을 국교정상화 이전에도 실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일측과의 합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이를 우리 정부가 확인할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청구권의 사전 도입을 부인하는 정부 입장이 약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1964.10.13. 상부의 재가를 받아 결정하고 동 결정을 주일대표부에 하달함.
 - ※ 제1단계로 대국내적으로 1) 정부는 현재까지 대일청구권과 관련 있는 어떤 형태의 차관도 받아 들인 바 없다. 2) 국익을 위하여 선의의 순수한 민간차관 '1억불 이상' 개념의 차관은 국교정상화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인다는 정부의 태도를 밝힌다. 또한 일측에 대하여는 7.25.자 구상서에서 제의한 조건을 삭제할 것을 교섭하되 일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니시야마 경제협력국장의 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일측에 표명한다.
4. 우리측은 1964.11.4. 일측의 수정된 구상서를 접수하고 11.11. 동 내용을 확인하는 우리측 구상서를 일 외무성에 송부함으로써 본건에 관한 교섭은 일단락됨.

IMF/IBRD 총회, 제19차. 동경, 1964.9.3-17

| 64-244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3 / 11 / 1~204(204p)

우리 정부 대표단은 제19차 IMF/IBRD 총회에 다음과 같이 참석함.

1. 기간: 1964.9.3.~17.

2. 장소: 동경

318

3. 대표단

- ※ 이정환 재무장관, 이재설 재무부 외환국장, 홍완모 한국은행 조사부장, 정소영 대통령 정무비서관, 전상진 외무부 통상국장 외 3명

4. 주요 협의내용

- ※ IMF의 증자 문제
- ※ IBRD의 대 IFC 자금 대여
- ※ IBRD의 대 IDA 자금 증여
- ※ 투자 분쟁의 해결 문제
- ※ 상무이사 선출
- ※ 1965년 총회의 장소, 시기 등 결정

IMF 연차협의단 방한, 1964.8.31-9.2

| 64-245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3 / 15 / 1~498(498p)

1964년도 IMF 연차 협의단의 방한 일정, 대표단 명단,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주요 일정

- ✿ 8.31. 김포 도착, 재무부장관 방문, 기자회견
- ✿ 9.1. 국무총리 예방, 대통령 예방
- ✿ 9.2. 경제관계 장관들과의 연석회의(경제기획원장관, 재무장관, 농림장관, 상공장관, 한은총재, 경제과학 심의위원 참석), 김포 출발

2. 대표단 명단

- ✿ Mr. John R. Woodley(Assistant Director)
- ✿ Mr. A. Rahaman(Assistant Chief, Far Eastern Division)
- ✿ Mr. B. H. Kay(Economist)
- ✿ Mr. P. O. Ojha(Economist)
- ✿ Miss E. E. Russel(Secretary)

3. 보고서 요지

- ✿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당국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고무적인 인상을 받았음.
- ✿ 한국 정부에서 Credit Control과 금리체계 개선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 재정 안정 계획을 위하여 노력한 한국 정부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할 가치가 있으나 한국의 재정안정계획은 아직도 많은 난제가 있음.
- ✿ 한국의 수입제한 정책의 완화가 필요함.

GATT 총회, 제21차, Geneva, 1964.2.24-3.20

| 64-246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M-4 / 4 / 1~33(33p)

제21차 GATT 총회에 우리 정부 대표는 옵서버로 다음과 같이 참석함.

1. 기간: 1964.2.24.~3.20.

2. 장소: 제네바

320

3. 우리 대표: 주제네바대표부 진필식 공사, 전순규 3등서기관

4. 주요 의제

- ※ 국제수지 역조에 의한 수입제한
- ※ 잔존하는 수입제한 조치
- ※ 잉여상품 처분 문제
- ※ 보조금
- ※ 후진국과의 관계
- ※ 1964년도 통상협상
- ※ 후진국의 통상 문제
- ※ 면직물 무역

아시아경제토론회의

| 64-247 |

생산년도	1958-64
생 산 과	아주과
MF번호	M-6 / 4 / 1~27(27p)

아프리카 · 아시아 경제토론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아프리카 · 아시아 경제회의(1958.12.8.~11. 카이로 개최)

- ※ 동 회의에 관한 짚막한 외신 및 국내언론 보도
 - 동 회의에 40여개국 참가와 필리핀 등 수개국 대표는 동 회의에 한국 및 대만(구 자유중국) 초청 주장 등의 내용

2. 제2차 아시아 경제토론회(1964.6.15. 평양 개최)

- ※ 표제회의 연혁 및 성격, 참가국, 금번 회의 의제, 참가국 대표 성향, 표제회의와 반동회의와의 관계, 자유우방국(일본, 호주, 태국 등)의 참가 등에 관한 외무부의 주홍콩총영사관 등 관련공관에 조사 보고지시
- ※ 관련공관 보고
 - 금번 회의의 29개국 및 지역대표 명단
 - 금번 회의는 신생독립국,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 및 식민지 예속국이 상호 경제적인 협조하에 반제 · 반식민지 투쟁 기여와 반동정신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고취 목적 등의 내용

32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Adler, John, H. EDI(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 소장 방한, 1964.9.2-5

| 64-248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M-4 / 9 / 1~19(19p)

경제개발연구원(EDI) 소장인 John H. Adler 내외의 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주요 일정

- ※ 9.2. 김포 도착
- ※ 9.3. 경제기획원, 외무부, 한국은행 방문, 서울-안양지역 공장 시찰
- ※ 9.4. 판문점 방문
- ※ 9.5. 출국

2. 방한 보고서에 대한 미국 관계 당국 등 반응

- ※ 한국 경제 상태는 63년 경제안정계획 실시 이래 많은 개선을 보았으나 한국 정부가 경제 안정 정책을 계속 강력히 시행할 것인지 주목됨.
- ※ 한국경제의 현 상태로는 세계은행 융자는 고려될 수 없지만 IDA의 추가 원조가 고려될 가능성이 있음.

한·대만(구 자유중국) 무역회담, 제3차. Taipei, 1964.11.23-12.4

| 64-249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통상1과
MF번호	N-2 / 4 / 1~25(25p)

1. 한·대만(구 자유중국)간 제3차 무역회담이 1964.11.23.~12.4. 간 타이페이에서 개최되었는바,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철승 상공부 상역차관보, 대만측은 경제부의 Li Chao-Nien임.
2. 양측은 12.4. 한·대만무역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금번 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국간의 무역을 증진시키고 점진적인 무역균형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1)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수출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상품의 검사나 지불 등과 관련되는 절차를 효율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등의 대책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함.
3. 한편, 무역회담 시 양측은 상기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1) 동일한 해외시장에서의 무역에 관여하게 될 경우 상호간에 손상을 주는 경쟁을 피한다, (2) 대만에서 산출되는 동광석을 가공하기 위하여 한국의 동제련시설을 활용하는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등 양국간 통상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함.

3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필리핀 합동무역위원회, 제2차. 서울, 1964.12.15-22

| 64-250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통상진흥과
MF번호	N-2 / 7 / 1~96(96p)

제2차 한·필리핀 합동 무역위원회(무역회담) 개최 및 결과에 관한 내용임.

1. 회담 개최 준비

- ※ 우리측의 회담 개최일자 및 대표단 명단 제의와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한 필리핀측과의 교섭
- ※ 회담 대비 우리측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1964.10.13.)
 - 참석자: 외무부, 상공부,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실무자
 - 회의 안건: 제1차 한·필리핀 무역회담 건의사항 이행, 한·필리핀 무역협정이행에 관한 사항, 필리핀 목재수입과 사라와크 목재수입, 대비 수출품목 수정, 대비 수출상의 애로사항, 기타 의제로 채택되어야 할 사항
- ※ 주필리핀대사관의 표제회담 관련 건의서
 - 제1차 한·필리핀 무역회담에서 채택된 건의사항 이행 여부
 - 건의사항(제5항, 6항 및 9항)에 대한 검토 및 건의
 - 한·필리핀 교역관계
 - 필리핀경제 주요 참고자료
- ※ 상공부, KOTRA, 한국통조림 수출협회측의 회담 관계자료
- ※ 우리측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1963.11.27.)
 - 참석자: 외무부, 상공부, KOTRA,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관계자

2. 회담 개최(1964.12.15.~22. 서울)

- ※ 한국 대표단: 대표 김우근 상공부 상역국장 외 9명
- ※ 필리핀 대표단: Augustin Mangila 외무성 경제담당 공사참사관 외 4명

3. 회담 개최 결과

- ※ 합의의사록(7개항), 공동성명서(7개항) 등 발표

4. 후속 조치

- ※ 주필리핀대사관은 표제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와 협조를 요청하는 구술서를 필리핀 외무성에 송부

인도네시아 통상사절단 방한

| 64-251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N-2 / 11 / 1~79(79p)

1. 인도네시아 무역성의 Ahdiwinoto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상사절단(총 4명)이 1964.5.27.~6.3.간 방한하여 외무부 통상국장 등과 양국간의 통상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함.
2. 특히 우리측이 한·인도네시아 간 통상약정을 무역협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의향을 타진한 데 대해, 인도네시아측은 무역협정 체결문제는 국교수립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이 문제는 국교수립 문제와 병행하여 금후 한국에서 사절단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당국과 논의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32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아르헨티나 국내정세

| 64-252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O-18 / 1 / 1~21(21p)

1964년 아르헨티나 노동 총동맹의 대 정부 투쟁에 관하여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다음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1. 노동 총동맹의 투쟁 전개 원인

- ※ 실업자의 증가
- ※ 노동자 임금의 저하
- ※ 억압법의 존속으로 경관에 의한 구금, 고문 등
- ※ 임금 수령문제 미결

326

2. 투쟁 방법

- ※ 준비단계(2.15.~28.)
 - 산하 단체에 대한 선전책자 배포,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전국적인 선전
- ※ 실행행사(3.25.~31.)
 - 모든 생산부문의 마비 및 시위행진

3. 사회 여론

- ※ 천주교, 정부, 기업들은 동 행사계획이 국가에 이롭지 못한 처사라고 반대함.

캄보디아 정세

| 64-253 |

생산년도 | 1963-64

생 산 과 | 동남아주과

MF번호 | O-18 / 3 / 1~12(12p)

독일-캄보디아 외교관계 수립 관련,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독일 정부의 제의

- ✪ 1963.4월 독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

2. Diplomatic Mission 합의

- ✪ 양국 정부는 파리 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계속 협의한 결과, 양국에 Diplomatic Mission(모든 특권과 면제 향유)을 설치하기로 합의함.

3. 전망

- ✪ 시하누크의 성격 변화가 심하고 러시아(구 소련)가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불안은 남아 있음.

32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쿠바 정세

| 64-254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중남미과
MF번호	O-18 / 4 / 1~11(11p)

독일-쿠바 외교관계 단절 관련, 1963.1.24. 주한독일대사관이 다음 요지의 공한을 외무부에 보내옴.

- ✪ 독일연방공화국은 쿠바 정부가 러시아(구 소련) 점령하의 독일 일부지역과 외교관계를 맺은 데 대해 쿠바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란 정세

| 64-255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O-18 / 6 / 1~8(8p)

1. 이란 학생 9명이 주미이란대사관 앞에서 철야 데모를 하다가 미국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고 주미대사가 1963.1.22. 외무부에 보고함. 동 학생들은 토지분할 등 개혁을 위한 이란의 1.20. 국민투표는 불법이며 Shah는 심한 독재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이를 반대한다고 주장함.
2. AP통신은 1963.6.4. 이란의 테헤란에서 15,000~20,000명의 회교도 및 정치인들이 부녀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와 토지개혁에 반대한다는 반정부데모가 발생했다고 보도함. 동 데모대가 군경과 충돌하자 군경이 데모대에 대한 기관총 및 최루탄 발사 등으로 사망자 200여명, 부상자 700여명이 발생함. 이에 이란 정부는 22:00~05:00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모든 집회를 금지함.

32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일본 정세

| 64-256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O-18 / 7 / 1~18(18p)

주일대표부의 일본 정세에 관한 보고 내용임.

1. 이께다 신 정권에 관한 특별정세 보고(1964.7.23.)

※ 서언

- 신임 각료들의 포부
- 이께다 신임 수상의 내정 및 외교 전반에 관한 소신 피력(취임 후 최초 기자회견)
 - 1) 당과 내각의 혼연일체 구축
 - 2) 집권당의 근대화 추진
 - 3) 중소기업, 농업 및 노동력 수요공급문제 해결
 - 4) 기존 대중(구 중공)외교의 정경분리방침 지속추진 등

※ 불균형 시정

- 중소기업, 농업 및 노사문제가 안고 있는 불균형 문제의 조속한 시정
- 물가 대책 등

※ 외교

- 한일문제의 담보상태 인정
- 대중국(대만 및 중국)외교의 고층과 대중(구 중공)외교의 정경분리 외교방침
- 대아시아 외교강화
- 남북문제(후진국과 선진국)에 대한 역할 등

2. 이께다 수상의 입원과 임시 수상대리의 임명문제(1964.10.2.)

※ 이께다 수상의 입원 경과

※ 일본 정부의 중요 현안(임시국회 문제 포함)

※ 각 정당의 태도

※ 자민당 내 각파의 동태

※ 내각법 제9조의 해석 문제

케냐 정세

| 64-257 |

생산년도	1963-64
생산과	구아과
MF번호	O-18 / 8 / 1~31(31p)

주케냐대사관의 주재국 정세에 관한 보고 내용임.

1. 케냐 총선 전망 및 결과 보고

2. 총선에 승리한 Kenyatta 수상의 신 조각 명단

3. 이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자료(정세보고 및 토의자료)

가. 정세보고

✿ 정치정세

- 정당관계
- 동아프리카 3개국(케냐, 탕가니카 및 우간다)연방 문제
- 소말리아와의 국경 분쟁 문제
- 케냐의 특수정세
- 케냐정부의 외교관계 수립 현황

✿ 경제정세

- 농수산업, 공업 및 광산업 현황
- 무역관계 현황
- 금융관계 현황
- 통상협정 수립 현황
- 경제협력 및 국제차관 관계 현황

나. 대아프리카 외교강화 방안

다. 건의사항

스웨덴 국내정세

| 64-258 |

생산년도	1964
생산과	구주2과
MF번호	O-24 / 6 / 1~37(37p)

주스웨덴대사관의 주재국 정세에 관한 보고 내용임.

1. 주재지 보고서

가. 개요

- ※ 위치 및 기후
- ※ 주재지 개황
 - 역사적 배경
 - 인구
 - 언어
 - 생활상

※ 인근 명소

※ 공관 위치

나. 오락과 사교

※ 운동과 옥외생활

- 운동시설
- 아동 유희장
- 관광
- 수립: 면허, 시기 장소 및 대상

※ 사교

※ 오락: 극장, 음악회, 식당, 방송 및 축제

※ 도서: 도서관 및 서점

다. 주택과 가구

※ 주택

- 호텔, 아파트 및 일반가옥

※ 가구

※ 시설: 전기, 수도, 전화 및 냉·난방장치

라. 식료품, 의류, 생활필수품, 공공용역, 교육 및 종교

마. 교통 및 통신

바. 보건

사. 법규 등

332

2. 스웨덴 국방성 조직표

일본 · 북한간의 재일한인 북한송환협정 연장

| 64-259 |

생산년도	1961-64
생 산 과	동북아과
MF번호	C1-4 / 13 / 1~180(180p)

1. 주일대표부는 1961.7.20. 동 일자 주재국 영자신문 Japan Times가 11월에 만료되는 소위 북송협정에 관해 협의하는 일정부 내의 연락회의가 있었고 동 회의에서는 북송희망자 수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하였으며, 동 사실에 대해 일외무성 당국자도 이를 시인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상기 관련, 한국 정부가 5·16 군사혁명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선린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양국간 국교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중대한 단계에서 한국민 전체가 거국적으로 반대하는 재일한인의 북송을 일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한다면 한일 우호관계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7.21. 발표함.
3. 일본적십자는 1961.7.31. 북한적십자사에 대하여 북송협정의 1년 연장에 동의한다는 답전을 전달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주일대표부에 대하여 일외무성에 항의하고, 일본적십자사 사장이 1년 이내에 북송을 끝낼 수 있다고 한 말을 인용, 이 문제를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함.
 - ※ 일외무성 이세키 아시아국장은 8.2. 우리측 항의에 대해 일정부는 북송을 조속히 완료할 생각이며 북송 협정의 유효기간 내라도 북송을 중단할 때는 희망자 수를 감안하여 북한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함.
4. 일 · 북한 양 적십자대표는 1962.11.8. 니이가다에 회담한 결과 북송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합의서를 교환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11.9. 주일대표부에 대하여 한일문제 타결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일정부의 불성실한 처사는 한일회담의 장래를 위하여 결코 유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하도록 지시함.
5. 1963.11.22.로 만료되는 재일한인 북송협정이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 간에 1년 연장기로 합의된 것과 관련하여, 주일대표부는 1963.8.3. 일외무성에 대하여 북송문제의 철폐를 위한 대책을 강경하게 요구함.
6. 일본적십자사가 소위 북송협정을 다시 연장하지는 북한적십자사의 제안을 수락한 것과 관련하여, 주일대표부는 1964.8.8. 일외무성에 항의구상서를 전달하고 재일한인의 북송을 즉각 중지할 것을 재차 요구함.

33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일본 회담 법적지위 요구 관철 민중대회 후의 민단 정상화를 위한 건의

| 64-260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동북아주과
MF번호	P-6-18 / 8 / 1~5(5p)

한일회담에서의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 타결 추진과 관련, 민단의 분열 및 정상화 방안에 관하여 1964.3.2. 주일대사관에서 다음 요지로 보고함.

1. 조총련의대 민단 공작

- ※ 한일회담 분쇄
- ※ 민단에 대하여 반정부 운동 할 것을 선동

334

2. 2.14. 개최된 법적지위 요구국 관철 민중대회 이후 민단의 분열 상황

3. 민단의 강화 방안

- ※ 오는 3, 4월에 있을 동본 총회에서 반정부 태도로 일관해 온 정영옥 대신 다른 사람을 당선시킴.
- ※ 중총 내의 반정부 인사들을 배제시켜 민단을 정상화함.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에 관한 건

| 64-261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P-2 / 3 / 1~41(41p)

재외국민 지도위원회 계속 존속 여부에 관한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재외국민 지도위원회 규정

- ※ 재외국민의 지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그에 관한 관계부처의 업무조정에 관하여 외무부장관 소속하에 재외국민 지도위원회를 둠.

2. 동 지도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대한 외무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 동 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으로 하여금 외무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관계부처간 협조를 위하여 각 장관 명의로 발송되는 공한을 통하여 상호처리하고 있음.
- ※ 따라서 동 위원회 소집은 불요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의 '관계관 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브라질 이민

| 64-262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교민과
MF번호	P-3 / 9 / 1~349(349p)

1964년도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이민 송출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브라질대사는 CAUSA(브라질 국제농업이민 및 식민도시 건설공사)회사 소유 토지(한국이민 정착 예정지)의 현지 답사 결과, 정착예정지의 불리한 여건상 한국이민협회가 추진하는 한국이민 50세대의 이주계획에 반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대가 정착을 고집할 시에는 그들의 대표가 현지답사 후 그들의 책임으로 최종 결정하기를 본부에 건의함.(1964.4.)
2. 외무부 및 보사부 등 관계부처 및 이민협회로 구성된 이주 심사위원회는 50세대의 이민이 CAUSA 토지에 정착이 불가능 시에는 이주 포기를 조건으로 해외이주 허가를 결정(1964.5.)
3. 보사부는 공관보고와 같이 타 토지를 선정할 경우 CAUSA와의 계약 포기와 VISA 발급이 보장되지 않는 점과 이주자들이 정착예정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영농정착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코자 한다면서 외무부에 협조(여권 발급 및 VISA 획득) 요청함.(1964.6.)
※ 외무부는 이주자 주택의 사전건립, 육로 수송비의 CAUSA 책임하에 지불 및 CAUSA가 이주자들의 정착시까지의 제반책임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여권발급 및 비자신청에 협조하겠다고 통보
4. 주일 브라질 Ferreira 요코하마 영사 내한(1964.7.25.~28.)하여 42세대에 비자 발급함.
5. CAUSA측 본사 Aloysio 대표가 방한하여 보사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42세대 이민 송출에 관하여 협의함.(1964.7.6.)
6. 한국이민 총 37세대 203명은 1964.8.18. 출발하여 10.15. Rio항에 도착함.
7. CAUSA 관계이민의 잔류세대 및 볼리비아 초청이민 79명도 1964.9.18. 출발함.
8. 주브라질대사는 CAUSA 이민의 최근 동향과 관련, 이민자들은 영농계획을 가진 자는 거의 전무하며



그 대부분이 상파울루 시내에 거주할 계획이며 CAUSA 회사는 원래 예정된 농장으로 그들을 수송할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함.(1964.10.29)

9. 주요 문건

- ✿ 외무부와 보사부 간 이민업무 추진 대비표(1964.3. 외무부 작성)
- ✿ 이민 정착예정지에 대한 공관 답사 보고서(1964.4.)
- ✿ 브라질 자영농업이주(CAUSA 50세대 및 추가구제 12세대) 송출을 위한 종합이주계획서 (1964.4. 한국이민협회)
- ✿ CAUSA 아세아 대표(박종식) 서약서 및 이주자(세대주) 서약서
- ✿ 이민희망자 50세대(296명)의 여권발급 현황

에콰도르 이민교섭

| 64-263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교민과
MF번호	P-2 / 6 / 1~44(44p)

우리나라의 에콰도르 이민교섭에 관한 내용임.

1. 주일 Gustavo Larrera 대사는 주일대사 방문시 한국 농업기술자(미곡경작 기술자) 5~6세대의 에콰도르 이민초청 의사를 표명함.(1963.5.8.)

338

2. 주일 에콰도르대사는 주한 겸임대사로서 신임장 제정차 방한시 한국이민 10세대에 대하여 우리측과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함.

※ 에콰도르대사는 보사부차관과의 요담시(1963.6.5.) 쌀과 콩 재배를 위한 농업기술자 10세대 이내의 한국이민을 시험적으로 수용할 의사이며, 에콰도르측은 영농자금의 저리 장기 대부와 토지, 가옥 및 농기구의 무상 대여, 이들이 자립한 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상환조치토록 하며, 한국측은 도항비 및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봄.

※ 에콰도르대사는 보사부차관과의 2차 요담시(1963.6.10.) 한국이민문제에 관한 1차 요담 내용을 재확인하고, 동 합의내용을 각서로 교환기로 상호 약속함.

※ 에콰도르대사는 외무부차관과의 요담시(1963.6.5.) 양국간 이민, 통상 및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함.

3. 보사부는 한국이민교섭에 관한 에콰도르대사와의 합의에 따른 이민조건 각서안을 외무부에 송부함.(1963.6.22.)

4.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한국 정부 명의를 아닌 주일대표부 명의로 작성된 각서안 송부 및 이를 에콰도르측과 교섭 지시함.(1963.8.)

※ 에콰도르측은 한국 정부가 선정한 이민대상자의 수락 여부는 에콰도르 정부의 권한임을 명시할 것을 희망하는 등의 수정을 요구함.

5. 주일대표부는 에콰도르측의 수정요구에 동의하는 각서를 송부함.(1963.9.25.)

※ 주일 에콰도르대사관은 상기 각서를 접수하였다고 통보해 옴.(1963.10.1.)



**6. 주브라질대사는 에콰도르 겸임대사로서 신임장 제정시 에콰도르 외무성 차관보 및 Gustavo Larrera
대사와 이민문제를 교섭하고 그 결과를 보고(1963.12.12.)**

- ✿ 에콰도르측은 우리측 최초안(1963.8.)과 수정안(1963.10.)과는 차이가 있어, 최초안을 추진할 것을 희망함.
- ✿ 우리측이 최초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하는 경우, 외무장관이 문서로 주일 에콰도르대사에게 통지하기를 요망함.

**7. 외무부는 주브라질대사의 건의는 주일대표부 명의의 서한을 송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주일대사에 지시함.(1964.1.14.)**

국적취득 및 상실문제

| 64-264 |

생산년도	1964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P-2 / 14 / 1~12(12p)

1. 국적취득 및 상실문제에 관한 외무부, 법무부 및 법제처 실무자간의 논의 내용(외무부 실무자의 면담 보고)
2. 주일대표부의 1) 재일교포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일본인 여자의 한국 국적취득 절차와 2) 외국인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의 상실 여부 및 시기에 관한 문의에 대한 본부 회보(법무부의 국적법에 관한 유권해석)

영친왕 이은 영주귀국 및 국적회복

| 64-265 |

생산년도	1963-64
생 산 과	교민과
MF번호	P-2 / 15 / 1~84(84p)

영친왕 이은의 한국국적 회복 문제에 대한 외무부와 법무부 간의 협의 내용과 영친왕 이은의 영주 귀국(환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한 내용임.

1. 영친왕의 한국국적 회복문제

- ※ 외무부는, 일본에 체류 중인 구황족 이은 및 최근에 귀국한 덕혜옹주가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조처방안을 강구하라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의 지시(1962.2.1.)에 따라, 부내 자체 연구검토(국적법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한 국적회복이 곤란한 사정 등)와 아울러 법무부에 국적회복 가능방안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1962.2.6.)
- ※ 법무부는 동 건 관련 현행 국적법상 실제 한국한 후가 아니면 국적회복 또는 귀화조치가 불가능하고 또한 동 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특정 개인을 위하여 더욱이 단 한 번 적용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할 문제이며, 덕혜옹주에 대해서는 환국하였으므로 서류가 완비되는 대로 국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회보함.(1962.2.12.)

2. 영친왕의 영주귀국(환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및 편의 제공

- ※ 영친왕의 한국국적 회복 전(1962년)에는 신병치료비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였으나, 국적회복(1963년) 후에는 다른 구황족과 동일하게 일정금액의 월 생계비 및 치료비를 지급하고 입원시에도 입원비를 지불함.
- ※ 매월 지급되는 생활부조금이 이은 씨 앞으로 직접 송금되면 일본 정부가 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동 생활부조금을 주일대사 앞으로 송금하고 이를 주일대사가 이은 씨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희망하여 이를 조치함.
- ※ 영친왕 이은의 영주귀국에 대비하여 의사 2명의 일본파견, 귀국여비 및 이전료(이사비용), 입주할 주택인 낙선재 수리, 생계비 및 생활보조금의 예산조치 등 제반사항을 준비함.
- ※ 영친왕의 가재도구 등 재산반입의 간이통관을 위하여 수취인 명의를 문교부 문예국장으로 하는 것을 허가함.



- ※ 이은 씨 환국에 제하여 일본 정부는 전별의 뜻으로 약 500만 원을 공여하겠다는 의사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 1963.11.22. 환국시 수행할 일본인 5명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과 환국을 위하여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JAL 항공기 및 승무원에 대한 조속한 입국 허가 조치 등

342

3. 주요 문건

- ※ 외무부의 영친왕 이은 씨와 덕혜옹주의 한국국적 회복문제 검토 보고서(1962.2.)



1965년도



이승만 박사 귀국시도 및 서거

| 65-001 |

생산년도	1962-65
생산과	미주
MF번호	B-7 / 1 / 1~219(219p)

1. 하와이에 망명 중이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생전에 귀국을 희망하여 주호놀룰루총영사가 이를 보고했으나 외무부는 불가를 통보함. 외무부의 이러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감정”을 반대 이유로 내세운 의장의 메모를 내려보냈으며 이를 연락받은 전 대통령측은 귀국을 포기함.
2. 대통령 비서실은 청와대 내의 이승만 전 대통령 사유재산 처리에 필요하다며 법정처리인 지정을 의뢰하도록 외무부에 지시하여 현지공관을 통해 연락했으나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함. 프란체스카 여사가 대통령 비서실이 제시한 품목이 “가치 없는 것뿐”이라는 반응이었다고 보고함.
3.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에 즈음하여 정부는 적절한 예우를 표하고 유족 의사에 따라 유해운구와 묘소 문제를 처리키로 함.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조의를 표하고 현지공관을 통해 장례와 조문, 유해운구, 묘소결정 등에 관해 프란체스카 여사와 협의하는 한편, 유해운구를 위한 미국 정부의 협조도 요청함. 정부는 각국 정부가 보내온 조전에 대해 답전을 발송했으며, 장례절차가 끝난 후에는 전 대통령의 간병을 지원했던 외국인을 서훈함.

34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사파견-코트디보르

| 65-002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의전/서부아프리카
MF번호	B-7 / 13 / 1~8(8p)

1. 외무부 본부는 이수영 주프랑스대사를 아프리카 11개국과 유럽 5개국에 겸임 발령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주코트디보르(아이보리코스트) 겸임대사 임명절차와 외교교섭을 진행함.
2. 본부는 주프랑스대사관을 경유하여 주프랑스 코트디보르대사관을 통해 아그레망을 신청했고 같은 경로로 동의를 받음.

대사파견-아르헨티나

| 65-003 |

생산년도 | 1964-65

생 산 과 | 의전

MF번호 | B-7 / 2 / 1~71(71p)

1. 외무부 본부는 초대 주아르헨티나 상주대사에 배의환 주일대사를 파견하기 위해 인사명령 등의 국내 절차와 외교교섭을 진행시킴. 본부와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아그레망, 소환장, 신임장 제정 문제 등을 처리하여 국내외 절차를 마침.
2. 이와 병행하여 주아르헨티나대사를 겸임하던 김용식 주미대사의 소환절차를 밟음.

34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벨기에

| 65-004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의전/서구1
MF번호	B-7 / 3 / 1~12(12p)

1. 외무부 본부는 이수영 주프랑스대사를 아프리카 11개국과 유럽 5개국에 겸임발령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주벨기에 겸임대사 임명을 위한 인사발령 등의 국내절차와 외교절차를 밟음.
2. 본부는 주프랑스대사관을 창구로 주프랑스 벨기에대사관에의 공한을 통해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동의를 받음.
3. 동시에 주일대사관을 통해서도 주한벨기에 겸임대사관(일본 상주)을 경유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 시킴.

대사파견-볼리비아

| 65-005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7 / 4 / 1~43(43p)

정부는 1965.3.25 및 4.6.에 각각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와 국교를 수립하고 이들 국가와 상호 대사급 겸임사절을 교환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 상주하는 배의환 대사가 볼리비아를 겸임하는 초대 대사로 임명되었으며 동 대사가 볼리비아에 가서 신임장을 제정하는 내용임. 동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볼리비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합의에 따라 배의환 주아르헨티나대사로 하여금 주볼리비아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주볼리비아대사에게 아그레망 요청 및 교섭 지시(1965.7.15. 아그레망 접수)
2. 신임장 발급 및 송부
3. 신임장 제정 및 관련 교섭활동
4. 신임장 제정(1965.10.27.) 관련 보고

* 볼리비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두 명의 장군에게 각각 신임장을 제정함.

34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칠레

| 65-006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7 / 5 / 1~50(50p)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상주 대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동년 11.25. 배의환 대사를 초대 상주 아르헨티나대사로 임명하였으며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주아르헨티나대사의 겸임관할로 함. 이에 따라 1964.12.10. 아르헨티나 정부에 배의환 상주 대사의 임명을 통고하였으며 동 대사가 아르헨티나에 부임한 이후 주아르헨티나대사가 칠레를 겸임할 수 있도록 칠레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고 동 아그레망 접수 후 칠레를 방문, 칠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내용임. 동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350

1. 배의환 대사에 대한 칠레 정부의 아그레망 접수(1964.12.7.)
2. 신임장 제정(1965.4.30.)
3. 신임장 제정을 위한 칠레 방문 및 활동 보고

대사파견-캐나다

| 65-007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의전/미주
MF번호	B-7 / 6 / 1~28(28p)

1. 외무부 본부는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를 초대 주캐나다 상주대사로 파견하기 위한 인사발령 등의 국내 절차와 외교절차를 밟음.
2. 아그레망 신청, 교섭, 동의 접수 등의 외교절차는 본부의 지시로 주캐나다대사관이 진행시킴.
3. 그동안 주캐나다대사는 김용식 주미대사가 겸임함.

35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코스타리카

| 65-008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7 / 7 / 1~25(25p)

정부가 이성이 주멕시코대사 후임에 오천석 대사를 임명함에 따라 주멕시코대사의 겸임 관할 국가인 니카라과, 자메이카, 과테말라, 파나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도미니카 제국과 아이티 정부에 오천석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하도록 주멕시코대사관에 지시하였음. 이들 국가들로부터 아그레망이 접수된 후 오천석 대사가 겸임국인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정부에 신임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를 방문함.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352

1. 정부의 주멕시코대사 경질 통보 및 주재국 및 겸임국 정부에 후임대사 아그레망 요청지시(1964.8.18)
2. 겸임국 정부인 코스타리카 정부로부터 아그레망 접수(1964.10.21.)
3. 기타 겸임국가 정부로부터 아그레망 접수(1964.10.24.~12.4.)
4. 주멕시코대사의 겸임관할국인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정부에 신임장 제정을 위한 방문 (1965.3.29.~4.23.) 활동 보고

대사파견-엘살바도르

| 65-009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의전1/중미
MF번호	B-7 / 8 / 1-22(22p)

1. 정부는 1964.10.8. 이성이 주멕시코대사를 본부로 전임 발령하고 후임으로 이화여자대학 교수인 오천석 박사를 내정함. 이에 따라 외무부는 이성이 대사에게 멕시코 및 주멕시코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던 니카라과, 자메이카, 과테말라, 파나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도미니카와 아이티 정부에 오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훈령함.
2. 외무부는 1964.12.4. 아그레망이 승인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과테말라, 자메이카 및 니카라과 7개국에 신임 오천석 대사의 신임장 및 이성이 대사의 소환장을 송부함.
3. 오천석 주멕시코 신임대사는 1965.2.12. 겸임국인 엘살바도르의 Rivera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함.
※ 오 대사는 임창남 2등서기관을 대동하여 1965.2.8.~27.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대한 겸임 신임장 제정을 위해 출장함.
4. 오천석 대사는 엘살바도르에 대한 신임장 제정 후 1965.3.2. 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 요직에 있는 인사 다수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금후 우리나라의 중미에 있어서의 활동, 특히 경제적 활동의 본거지로서 엘살바도르가 유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본부에 제시함.

3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사파견-이디오피아

| 65-010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의전/인사
MF번호	B-7 / 9 / 1~15(15p)

외무부 구미국은 1964.8. “주이디오피아 상주대사관 설치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디오피아 왕국에 대사대리를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상주대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하였는바,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정부가 취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동 보고서 주요내용: 주이디오피아 공관설치 필요성 건의

354 ※ 정치적 이유로서 우리나라와 이디오피아가 1963.12.23.자로 양국간 국교수립에 합의할 당시 상주공관 설치를 합의한 바 있고,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와 함께 정치적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는 아프리카 통합기구(OAU)의 사무국 소재지가 되는 등 동 국의 국제적 위상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월남이 동 국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나 미 국무성이 우리나라의 상주공관 설치를 권고한 점 및 예상되는 북한 침투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상주공관 설치가 바람직함.

※ 경제적 이유로서 이디오피아는 자유무역정책을 채택하고 관세제한조치가 없으며 인구와 위치 측면에서도 수교의 실익이 있을 것임.

2. 정부 조치사항

※ 정부는 주이디오피아대사가 임명되어 부임할 때까지 주뉴델리총영사관의 한기봉 총영사를 주이디오피아 대사대리로 임명하고 동 사실을 이디오피아 정부에 통보하도록 지시함.(1965.3.24.)

대사파견-프랑스

| 65-011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의전/구주
MF번호	B-7 / 10 / 1~54(54p)

1. 정부는 1965.6.11.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를 주캐나다대사로 전임하고 그 후임으로 이수영 전공보부장관을 내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무부는 이수영 신임대사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토록 주프랑스대사관에 지시함.
2. 프랑스 정부는 1965.6.30. 이수영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수여하였음을 구두로 정식 통보함.
※ 프랑스 외무성측은 아그레망 수여를 정식 공한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자국의 외교관례라고 설명함.
3. 외무부는 1965.8.9. 이수영 신임대사에 대해 포르투갈,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마다가스카르, 부르키나파소(어퍼볼타), 가봉, 세네갈, 카메룬, 베냉, 토고, 차드, 콩고(레오폴드빌),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 니제르 등 16개국에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신청할 것을 주프랑스대사관에 지시함.
4. 이수영 대사는 1965.9.18 드골 프랑스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함. 드골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식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이 한국전쟁 시 보인 용감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단일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단되어 있으나 통일의 날이 조속히 도래하여 앞으로 가일층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35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과테말라

| 65-012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7 / 9 / 1~15(15p)

1. 정부는 1964.10.8. 이성이 주멕시코대사를 본부로 전임 발령하고 후임으로 이화여자대학 교수인 오천석 박사를 내정함. 이에 따라 외무부는 이성이 대사에게 멕시코 및 주멕시코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던 니카라과, 자메이카, 과테말라, 파나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도미니카와 아이티 정부에 오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훈령함.
2. 외무부는 1964.12.4. 아그레망이 승인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과테말라, 자메이카 및 니카라과 7개국에 신임 오천석 대사의 신임장 및 이성이 대사의 소환장을 송부함.
3. 오천석 대사는 1965.2.12. 겸임국인 과테말라의 Asurdia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함.
※ 오 대사는 임창남 2등서기관을 대동하여 1965.2.8.~27.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대한 겸임 신임장 제정을 위해 출장함.
4. 오천석 대사는 과테말라에 대한 신임장 제정 후 1965.3.2. 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각부 장관 등과 회담한 결과 받은 인상으로는 과테말라가 이민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이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교섭 없이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특히 1965년 중 실시될 대통령 선거 후 정권의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는 교섭 자체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대사파견-온두라스

| 65-013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의전1/중미
MF번호	B-7 / 12 / 1~19(19p)

1. 정부는 1964.10.8. 이성가 주멕시코대사를 본부로 전임 발령하고 후임으로 이화여자대학의 교수인 오천석 박사를 내정함. 이에 따라 외무부는 이성가 대사에게 멕시코 및 주멕시코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던 니카라과, 자메이카, 과테말라, 파나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도미니카와 아이티 정부에 오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을 훈령함.
2. 외무부는 1964.12.4. 아그레망이 승인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과테말라, 자메이카 및 니카라과 7개국에 신임 오천석 대사의 신임장 및 이성가 대사의 소환장을 송부함.
3. 오천석 대사는 1965.2.26. 겸임국인 온두라스의 Lopes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함.
※ 오 대사는 임창남 2등서기관을 대동하여 1965.2.8.~27.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대한 겸임 신임장 제정을 위해 출장함.
4. 오천석 대사는 온두라스에 대한 신임장 제정 후 1965.3.2. 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온두라스는 중미 5개국 중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후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자 진출과 제품 수출을 위하여 유망한 지역이라는 견해를 제시함. 또한, 오 대사는 과테말라의 판아메리칸 항공사에 근무 중인 교포가 사적으로 한국이민 50세대를 온두라스에 이주 초청하는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바, 온두라스에 대한 이민계획은 신중히 검토하여 브라질 이민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를 요한다고 본부에 건의함.

35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사파견-일본

| 65-014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의전/인사
MF번호	B-7 / 14 / 1~16(16p)

1. 한일 국교정상화로 주일대표부가 주일대사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임시대리대사 임명이 필요해져 방희 주일대표부 공사를 발령하기 위한 국내절차와 외교절차를 밟음.
2. 이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과 절차를 진행시킨 주일대표부는 일본주재 공산권 제국 공관에 대한 대사관 승격사실 통고 여부를 문의하여 본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외교관례대로 통고할 것을 지시함.
3. 일본 외무성은 외상명의 공한으로 임시대리대사 임명에 동의함.

대사파견-자메이카

| 65-015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7 / 15 / 1~19(19p)

정부가 이성이 주멕시코대사 후임으로 오천석 대사를 임명함에 따라 주멕시코대사의 겸임 관할국가인 니카라과, 자메이카, 과테말라, 파나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도미니카 제국과 아이티 정부에 오천석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주멕시코대사관에 지시함. 이들 국가들로부터 아그레망이 접수된 후 오천석 대사가 겸임국인 자메이카 정부에 신임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동 국을 방문함.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겸임국정부인 코스타리카 정부로부터 아그레망 접수(1964.11.11)
2. 주멕시코대사의 겸임관할국인 자메이카 정부에 신임장 제정을 위한 방문(1965.1.26.) 보고

3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사파견-몰타

| 65-016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의전/구주
MF번호	B-7 / 16 / 1~55(55p)

1. 외무부 본부는 이형근 주영대사를 주몰타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발령 등의 국내절차와 외교 교섭을 밟음.
2. 아그레망 신청, 동의(영국여왕 명의 공한) 접수, 대외발표, 신임장 제정 등과 관련한 절차는 본부의 지시에 따라 주영대사관이 주영 몰타 고등판무관실과 진행시킴.
3. 주몰타 명예영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됨.

대사파견-니카라과

| 65-017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7 / 17 / 1~28(28p)

1. 외무부 본부는 신임 주멕시코대사(오천석) 임명에 즈음하여 주멕시코대사가 겸임하는 중미 9개국 가운데 니카라과 겸임대사로 발령하기 위한 국내절차와 외교절차를 밝음.
2. 아그레망 신청, 교섭, 동의 접수, 소환장 송부, 신임장 제정 등의 외교절차는 본부의 지시에 따라 주멕시코대사관이 진행시킴.

361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니제르

| 65-018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7 / 18 / 1~19(19p)

1. 아프리카 검임지역국을 순방하고 있는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는 1964.11.6. 니제르공화국 대통령과의 면담 시 한·니제르 양국간의 유대강화와 상호지원 협력을 위한 의견교환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주니제르 검임대사의 아그레망 신청 조치를 취하여도 좋겠다는 판단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본부에 건의함.

※ 우리나라와 니제르는 1961.7.27. 양국간의 국교수립에 합의함.

362

2.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의 건의에 따라 주프랑스대사를 주니제르 검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할 것을 상신하여 1964.11.18.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니제르 정부는 1965.2.24. 백선엽 대사의 아그레망에 동의함.

3. 주프랑스대사는 니제르에 대한 신임장은 본부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출장여비가 영달되지 않아 신임장 제정 일자를 교섭하기 곤란하므로 조속 조치해 줄 것을 1964.5.26. 본부에 건의함.

대사파견-파라과이

| 65-019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의전1/중남미
MF번호	B-7 / 19 / 1~53(53p)

정부는 남미지역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상주 대사관을 유지하고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겸임 관할하는 국가를 조정하였으며 주브라질대사관을 리우데자네이루에 유지하고 겸임 관할국을 조정하는 한편, 이들 대사에게 우리나라와 미수교국인 국가와의 수교 교섭 임무를 부여함. (1964.11.2. 건의)

1.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겸임 관할하는 국가를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하고 주아르헨티나대사가 볼리비아와의 수교 교섭을 책임지도록 함.
2. 주브라질대사관이 겸임 관할하는 국가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하고 주브라질대사가 베네수엘라와의 수교 교섭을 책임지도록 함.

3. 구체적 진행상황

- ※ 파라과이 외무성이 배의환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아그레망 수락 통보(1964.12.18.)
- ※ 배의환 대사의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1965.5.28.) 및 활동사항 보고
- ※ 특이사항
 - 배의환 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위하여 1965.5.16.~23.간 파라과이를 방문하였으나 당초 5.21. 예정되었던 신임장 제정식이 파라과이 대통령측 사정으로 돌연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아르헨티나로 귀임한 후 5.26.~29. 재차 방문하여 신임장을 제정함.

36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파나마

| 65-020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의전/중남미
MF번호	B-7 / 20 / 1~27(27p)

오천석 신임 주멕시코대사가 부임한 후 겸임관할국인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방문하여 신임장을 제정함.(1965. 3.29.~4.23.)

1. 파나마 정부의 오천석 신임 주멕시코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수락 통보(1964.11.12.)

2. 신임 주멕시코대사의 겸임국 신임장 제정을 위하여 파나마 방문 및 활동 보고

대사파견-토고

| 65-021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의전
MF번호	B-7 / 21 / 1~9(9p)

1. 외무부 본부는 이수영 주프랑스대사를 아프리카 11개국과 유럽 5개국에 겸임발령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주토고 겸임대사 임명을 위한 인사발령 등의 국내절차와 외교절차를 밟음.
2. 본부는 주프랑스대사관을 경유하여 주프랑스 토고대사관을 통해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같은 경로로 동의를 받음.

36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파견-우루과이

| 65-022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7 / 22 / 1~67(67p)

1. 외무부는 1964.11.2. 배의환 대사의 주아르헨티나 상주대사 임명을 계기로 남미지역 겸임공관 관할 구역을 재조정하여 주아르헨티나대사가 칠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아그레망 신청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특히, 우루과이에 대하여는 북한통상사절단이 동 국에 침투를 기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외교교섭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겸임 대사 아그레망 신청을 추진키로 함.

※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개설되기 전에는 주브라질대사관이 우루과이를 겸임 관할함.

366

2. 브라질 주재 우루과이대사관은 우루과이공화국 집정협의회가 1965.3.15. 정기회의에서 배의환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수락하였다고 주브라질대사관에 통보해 옴.

3. 배의환 대사는 신임장 제정 및 북한통상사절단에 관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1965.8.22.~31.간 몬테비데오에 출장함.

4. 배 대사는 1965.8.27. Washington Beltran 우루과이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함. Beltran 대통령은 양국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기를 바라며, 그의 재임 중에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접수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함.

5. 배 대사는 Zaglio 우루과이 외무장관 등 정부 인사와의 면담 시 북한통상사절단의 우루과이 체류를 더 이상 허가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함. 이에 대해 우루과이측은 북한통상사절 및 공산주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우루과이 정부로서도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우루과이에 입국하여 통상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금지할 도리가 없으나 통상관계로 인하여 공산국가와 외교관계를 맺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대사파견-자이르

| 65-023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의전/인사
MF번호	B-7 / 23 / 1~19(19p)

1. 외무부 본부는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를 주자이르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인사발령 등의 국내절차와 외교절차를 밟음.
2. 아그레망 신청, 교섭, 동의 접수, 신임장 제정 등의 외교절차는 본부의 지시로 주프랑스대사관이 진행시킴.
3. 백선엽 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위한 자이르 방문시의 주요 일정, 요인면담 결과, 자이르 정세를 보고함.

36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인도의 주한 총영사 부임

| 65-024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10 / 35 / 1~13(13p)

인도 정부는 초대 주서울 인도총영사로 Bix Shiv Lall Chibber Unbix를 임명하고 동 인에 대한 아그레망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동 인의 임명에 동의함.

1. 인도 정부의 아그레망 요청(1965.6.28.)

2.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수락 통보(1965.7.3.)

대사부임-일본

| 65-025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의전/인사
MF번호	B-7 / 24 / 1~8(8p)

일본 정부는 한일국교 수립 후 첫 주한 대사를 임명하기 전에 요시다 겐조(吉田健三) 주영공사를 주한 대사대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일본 외무대신 명의의 서한을 통하여 한국 외무장관에게 알려옴. 이에 대하여 한국 외무장관은 동 사실을 인지한다는 서한을 일본 외무대신에게 발송함.

1. 일본 외무대신의 서한 발송(1965.12.18.)
2. 한국 외무장관의 답신(1965.12.20.)

36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사부임-네덜란드

| 65-026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7 / 25 / 1~41(41p)

1. 외무부 본부는 네덜란드 정부가 주한네덜란드 겸임대사로 Robert H. V. Gulik 주일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아그레망 신청함에 따라 필요한 국내절차와 외교절차를 밝음.
2. 아그레망 신청, 교섭, 동의, 신임장 제정 등의 외교절차는 본부의 지시에 따라 주일대사관이 창구가 되어 주일네덜란드대사관과 진행시킴.
3. 본부는 신임장 제정에 앞서 대통령 비서실에 신임장 제정식 일자를 건의하고 신임장 제정사, 대통령 답사(안), 네덜란드 정세 등을 전달하고 보고함.
4. 또한, 본부는 행사 진행을 위해 내무부에 겸임대사 내정자를 위한 경호편의 제공을 의뢰하고 국방부에 제정식을 위한 의장대 지원을 요청함.

대사부임-뉴질란드

| 65-027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의전/동남아
MF번호	B-7 / 26 / 1~40(40p)

뉴질란드 정부는 자국의 주일본대사를 교체 발령하여 신임 주일본상주 뉴질란드대사가 한국 겸임 대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에 동 인의 한국대사로서의 아그레망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서 한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방한함.

1. John Vivian Scott 신임 주일본 뉴질란드대사의 주한대사 겸임에 따른 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 서한(1965.3.4.)
2. 한국 정부의 동 인에 대한 아그레망 승인(1965.3.25.)
3. 동 대사의 우리나라 대통령 예방 신임장 봉정(1965.10.7.) 및 한국 주요인사 예방

37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사부임-스페인

| 65-028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의전/구주
MF번호	B-7 / 27 / 1~44(44p)

1. 주한스페인 겸임대사대리는 1964.8.6.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Antonio Villaceros 주한 겸임대사의 후임으로 Don Luis Garcia de Llera 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스페인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여 왔으며, 우리 정부는 1964.8.31.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승인함.
2. Don Luis Garcia de Llera 주한스페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이 1965.6.22. 청와대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대사는 Don Francisco Franco 스페인 총통의 신임장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정함.

대사부임-스위스

| 65-029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의전/구주
MF번호	B-7 / 28 / 1~54(54p)

1. 외무부 본부는 스위스 정부가 주한스위스 겸임대사로 Jean de Rahm 주일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아그레망 신청함에 따라 필요한 국내절차와 외교절차를 밟음.
2. 아그레망 신청, 교섭, 동의, 신임장 제정 등의 외교절차는 본부의 지시에 따라 주일대사관이 창구가 되어 주일 스위스대사관과 진행시킴.
3. 본부는 신임장 제정에 앞서 대통령 비서실에 신임장 제정식 일자를 건의하고 신임장 제정사, 대통령 답사(안), 스위스 정세 등을 전달하고 보고함.
4. 또한, 본부는 행사 진행을 위해 내무부에 겸임대사 내정자를 위한 경호편의 제공을 의뢰하고 국방부에 제정식을 위한 의장대 지원을 요청함.

37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사부임-태국

| 65-030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의전
MF번호	B-7 / 29 / 1~26(26p)

1. 태국 정부는 1964.11.10. Yuad Loesrit 주미태국대사관 공사를 주한태국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 요청 공한을 주태국대사관에 송부해 왔는바, 우리 정부는 1964.12.2. 동 대사의 임명에 동의함.
2. Yuad Loesrit 주한신임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이 1965.5.11. 청와대에서 거행되었는바, 동 대사는 태국 국왕의 신임장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정함.

주한오스트리아 명예영사 임명문제

| 65-031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B-7 / 30 / 1~7(7p)

1. Dr. Fritz Hartlemayr 주한오스트리아 겸임대사(동경 상주)는 1965.1.12. 외무부 구미국장을 방문, 오스트리아 정부가 한국에 2명의 명예영사 임명을 희망하고 있으며, 명예총영사(또는 명예영사)로는 한국 사정에 밝고 한국경제계에 많은 친지가 있는 Mr. Eisenberg, 명예영사(또는 명예부영사)로는 반도호텔 주재 오스트리아인 상사원인 Mr. F. W. Gabriel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함. 동 대사는 2명의 명예영사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Mr. Eisenberg가 한국에 상주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한국에 상주하는 Mr. Gabriel로 하여금 영사업무를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언함.
2. 구미국장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2명의 명예영사를 임명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명예영사를 2명이나 임명하는 것은 관례에 없는 이례적인 조치로서 명예영사의 특권과 면제부여와도 관련되어 난점이 있다고 하면서, 의전실 및 재무당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함. 이에 대해 동 대사는 Mr. Eisenberg가 한국에 상주하지 않을 것이므로 Mr. Gabriel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선처해 줄 수 없겠는지를 재문의하여, 구미국장은 동 대사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하였을 때 전례를 만들게 되어 역시 난점이 있다고 지적함.
3. 또한, 구미국장이 동 대사에게 오스트리아 정부가 1960년 북한과의 민간무역협정 체결 및 비엔나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의 설치 합의, 1964년부터 북한에 대한 제강플랜트 수출을 위한 차관교섭 추진 등 대북교류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오스트리아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그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함. 이에 대해 동 대사는 미, 영 등 자유진영도 대공산무역을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가 공산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및 산업육성을 위한 돌파구로서 대공산권 무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함.

37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주한이스라엘 명예영사관 폐쇄, 1965.11.15

| 65-032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B-7 / 31 / 1~11(11p)

1. Shneerson 주한이스라엘대사(동경 상주)는 1965.1.27. 문덕주 외무차관을 방문, 주한이스라엘 상주대사관이 1964.8월 개설되었으나 Belokmen 주한이스라엘 명예영사의 존속을 계속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함.
2. 윤호근 외무부 의전실장은 1965.7.19. Kedar 이스라엘 임시대리대사에게 서울에 이스라엘의 상주대사관이 설치된 이상 명예영사의 존속은 관례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함.
3.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1965.9.9. 및 9.15. 외무부에 대하여 Belokmen 명예영사가 본인 소속회사의 인사이동에 의하여 한국을 떠날 예정이나 동 전출시기를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약 3개월간만 여유를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3개월 연기는 곤란하므로 11월 15일경까지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스라엘측은 우리측 요청을 양승하고 1965.11.15. 자로 명예영사관을 폐쇄함.

명예영사 인가장(접수)-요르단

| 65-033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B-7 / 32 / 1~22(22p)

1. 외무부 본부는 요르단 정부가 주한명예영사(한국인) 임명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동의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와 외교절차를 밟음.
2. 본부는 먼저 주카이로총영사관을 경유하여 요르단 정부의 명예영사 임명사실을 확인한 후 주터키 대사관을 창구로 요르단 정부와 외교절차를 진행시킴.
3. 본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동의키로 결정하고 주한요르단 명예영사관 설치 재가(외무부장관) 절차를 거쳐 주터키대사관을 통해 명예영사 인가 발급 사실을 통고함.

37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주재관(국방무관) 부임-이스라엘

| 65-034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의전/중동
MF번호	B-8 / 49 / 1~8(8p)

1. 외무부 본부는 이스라엘 정부가 주태국 이스라엘대사관 상주 무관을 주한 겸임무관으로 발령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필요한 국내절차와 외교절차를 밟음.
2. 본부는 의전실과 지역국이 협의하여 동의키로 결정하고 주한 이스라엘대사관과의 교환 공한을 통해 통보하고 확인을 받음.
3. 외무부 본부가 국방부에 겸임 무관 임명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공문은 폐안으로 처리됨.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임.)

각국의 외국인 토지법

| 65-035 |

생산년도	1944-65
생 산 과	경무대/국제법규
MF번호	B-23 / 20 / 1~295(295p)

특정 국가의 외국인 토지 소유에 관한 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내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한국, 중국(중화민국, 대만을 지칭), 일본, 태국의 경우와 해외주재 공관을 통하여 수집한 독일,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아르헨티나, 우간다, 일본(영문 및 일본어),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내용임.

379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국의 외교정책

| 65-036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C-10 / 2 / 1~113(113p)

1. 외무부는 아중동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외교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 독일 방문 중에 박 대통령이 현지에서 주재한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수립함.
2. 대책에는 공관 신설, 검임공관 확대, 교류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됨.
 - ※ 3개 상주공관 신설(코트디부아르, 이디오피아, 세네갈)
 - 380 ※ 4개 검임공관 설치(자이르, 니제르, 중앙아, 르완다)
 - ※ 인적 교류 등 강화
 - 요인 파견, 유력인사 방한 초청, 문화교류
 - 의사, 교사, 농업기술자 파견
 - ※ 미국, 독일 등과 합동병원 건설
3. 외무부 본부는 각 실국에 대통령이 재가한 “아중동외교 강화계획”을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지시했으며 담당부서 조직·인력 강화 방안과 함께 이란, 레바논, 튀니지, 요르단, 자이르, 가나 등의 지역국가를 포함하는 연차별 공관 추가증설과 교류강화 방안을 검토함.
4. 본부는 상공부(무역진흥공사)와 경제기획원에도 아중동외교 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함.
5. 한편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에 대한 “우리 외교의 방향” 제하 보고에서 한일관계, 한미관계, 아중동관계, 서구관계와 함께 아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활동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6. 대통령 비서실은 총리실에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 건의사항 이행 등 대통령의 독일(서독) 방문 후속 조치를 독려함.

재한화교의 토지소유권 문제

| 65-037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동북아2
MF번호	C-14 / 4 / 1~18(18p)

1. 외무부 본부는 주한대만(구 자유중국)대사관이 홍콩거주 재한화교 담정택이 국내토지소유권(명동 유네스코 회관 부지) 행사를 위해 희망한다며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따라 대책을 검토하고 외교교섭을 진행시킴.
2. 먼저 본부는 사증발급 여부에 관해 중앙정보부의 의견을 문의하여 “외무부 판단에 따라 처리하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어 부내 협의를 거쳐 발급을 결정한 후, 주홍콩 총영사관에 대한 발급을 지시하고 주한대만대사관에도 이를 통보함.
3. 본부는 주한대만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문교부에도 국내토지소유권 행사를 위한 담정택의 방한 목적을 설명하는 대사관 공한 사본을 첨부하여 사실관계를 알림.

381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한 · 이스라엘 정무일반

| 65-038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C-10 / 3 / 1~46(46p)

한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발전과 이러한 관계발전이 한국과 아랍국가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문서로서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1965.3.16.부터 3.19.까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에카페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에카페 가입문제에 대하여 한국대표는 아랍국가들의 동향을 고려하여 입장을 표명함.
2. 여권에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를 방문 목적지로 기재하는 경우 다른 어느 한 쪽을 경유지로 추가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관장 재량으로 여행 허가를 하고 양 지역을 함께 기재하지 않도록 함.
3. 한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아랍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하여금 이스라엘과의 관계발전에 기여할 각종 행사를 사전에 외무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이스라엘의 농업문제 전문가인 Goldberg 박사가 주한 이스라엘 대리대사와 동행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 · 이스라엘간의 관계발전 방안을 협의함.
5. 차균희 농림부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감사서한을 보냄.
6. 일본상주 이스라엘대사가 겸임관할이니 한국을 방문하여 국무총리,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를 예방 (1965.10.28.~11.3.)하고자 하는 서한을 보냄.(1965.10.21.)
7. 주터키대사가 앙카라주재 요르단대사로부터 이스라엘이 서구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무기 행선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아랍연맹 제국들이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비밀협정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듣고 이를 본부에 보고함.
 - ※ 이에 대하여 본부는 서구국가 주재 공관에 주재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출 사실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보내고 국방부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협력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터키 요르단 대사대리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주터키대사에게 통보하고 동 사건의 전말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한 · 뉴질랜드 정무일반

| 65-039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10 / 4 / 1-22(22p)

본 문건은 한 · 뉴질랜드간의 정무 일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바, 동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뉴질랜드 수상 방한 초청

- ※ 주호주대사는 뉴질랜드의 Keith Holyoake 수상 겸 외상이 1965.6.28.~7.5.간 일본을 공식방문 예정인 것과 관련, 이 기회에 유엔에서의 우리 정부 입장 지지 및 콜롬보 원조 확보 등 대뉴질랜드 외교교섭을 강화하기 위하여 7.5. 이후에 동 수상의 방한 초청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1965.3.31. 외무부에 건의함.
- ※ 외무부는 1965.6.28. 주일대사에게 Holyoake 뉴질랜드 수상의 방일 기회에 우리 국무총리의 방한초청 의사를 뉴질랜드측에 전달하고 동 결과를 지급 회보할 것을 지시함.
- ※ 주일뉴질랜드대사관은 Holyoake 수상이 7.9. 본국에서의 불가피한 국회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한국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1965.6.29. 주일대사관에 전달해 옴.

2. 주한뉴질랜드대사 신임장 제정

- ※ 주일본뉴질랜드대사관은 1965.4.17. 주한뉴질랜드 겸임대사로 내정된 Scott 대사가 1965.5.23 경 부산 유엔묘지 봉헌식 참석을 위한 방한 시 신임장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주일대사관에 문의해 옴.
- 주일뉴질랜드대사관의 Fenaughty 참사관도 1965.5.23.부터 일주일간 방한, 부산 유엔묘지 행사 참석 및 외무부와 경제관련 기관과의 의견 교환 등을 할 예정임.

3. 기타 영사업무

- ※ 주일뉴질랜드대사관의 영사부장은 1965.11.10. 주일대사관을 방문, 한국선박 TONG HWA No.2가 Cook Islands의 Rakahanga도에 도착하여 현지 관헌에게 1963.12월에 동도 근방에서 조난한 바 있는 조난선원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 선원 등 3명의 상륙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허가하였으나, 선원 중 2명을 제외한 선원 모두가 상륙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맥주, 담배 등을 배포하는 등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협을 주는 처사를 하여 현지 당국이 향후 한국 선원의 유사한 요청을 거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알려옴.
- ※ 주일대사관측은 동 선원들이 주류 등을 배부한 것은 위령제를 지낸 데 대한 감사의 표시방법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는 한편, 동 사건의 전말에 대해 조사, 그 결과를 회보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미국 소득세 면제문제

| 65-040 |

생산년도	1961~65
생 산 과	북미
MF번호	C-10 / 5 / 1~31(31p)

미국은 미국 뉴욕에 주재하는 한국은행과 은행직원이 미국으로부터 소득세를 면제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한을 보내고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동 한국은행이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밝힌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384

1. 미 국무성은 1961.11.17.자 주미대사 앞 서한으로 미국의 국내재원위원회(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가 미국의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미국에 주재하는 외국은행이 정부 기관일 경우에 한하여 미국의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알리는 서한을 통보하여 왔는바, 주미대사관은 동 서한을 본부에 통보하고 본부는 이를 한국은행 측에 전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함.
2. 상기 내용에 대하여 한국은행측은 뉴욕주재 한국은행은 본국과의 연락업무만을 담당하며 사무소의 운영경비는 본국으로부터의 송금으로 충당하므로 한국은행의 직원의 보수는 미국에서의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발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함.
3. 주미한국대사는 이러한 내용을 미 국무성에 1962.3.2.자 서한으로 전달함.
4. 미 국무성은 한국대사의 서한을 미 재무성에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1965.3.16.자 서한으로 주미대사에게 알려줌.

미해군장교의 제한적 영사업무 수행허가 문제

| 65-041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미주
MF번호	C-10 / 6 / 1-84(84p)

1. 외무부 구미국은 주한미국대사관이 1964.5.11. 부산에서 미해군 상급장교가 영사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한 것과 관련하여 방교국의 의견을 문의하였는바, 방교국은 1965.4.25. 요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 미 해군장교의 외국항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영사기능(선박 및 선원에 관련된) 수행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상으로 확립된 원칙이나 관례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미국 국내법상의 규정에 불과한 것임.
- ✪ 부산항에 있어서의 미 해군장교의 선박 및 선원에 관련된 제한적인 영사기능 수행을 인정하는냐의 여부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관례를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사항이 되지 못하고 오직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됨.
- ✪ 우리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미영사협약의 관계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의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인 영사기능을 수행하는 영사로서의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될 것이나, 면제 및 특권의 부여문제에 관한 한 동 해군장교가 협약 15조의 규정에 정한 full-time officer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특권부여 여부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따라서 미 국무장관이 Consular Agent에 관한 Practice에 따라 임명하는 형식을 취할 때에는 우리 정부가 이에 관한 선례는 없다 하더라도 한·미영사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Authorization을 부여함으로써 영사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한·미영사협약은 본 문건에 첨부되어 있음)

2. 외무부는 1965.7.6. 전 재외공관에 대하여 주재국에 있는 외교사절단 중 영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규영사가 아닌 해군장교가 임시로 영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보고토록 지시함. 이에 대해 주호주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등 21개 재외공관은 여사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함.

38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이동환 주호주대사 겸임국 뉴질랜드 출장

| 65-042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남아1
MF번호	C-10 / 7 / 1~12(12p)

호주에 주재하는 뉴질랜드 고등관무관은 우리나라의 주호주대사에게 뉴질랜드 국회의 개원식에 한국측이 참석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하는 1965.4.30.자 서한을 보내와서 주호주대사부부가 겸임관할국인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1965.5.27. 개최된 뉴질랜드 국회개원식에 참석함.

주호주대사는 그 이후 1965.12.6. 뉴질랜드를 다시 방문하여 뉴질랜드 주요인사를 예방하고 양국간 주요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박동진 주브라질대사 겸임국 출장

| 65-043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10 / 8 / 1-64(64p)

박동진 주브라질대사는 1965.7.16.~8.12.간 겸임국인 콜롬비아, 페루 및 에콰도르를 출장(문창화 3등서기관 대동)한 후 8.19. 출장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콜롬비아

- ※ 방문 기간: 7.16.~24.
- ※ 일정: 독립절 미사 참석 및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독립절 축전 전달(7.20.), Martinez 외무장관 면담(7.21.), Vargas 하원의장 예방(7.22.), 콜롬비아군 한국전쟁 참전 중군기장 전달식(7.23.), 교포 및 유학생 초청 오찬(7.24.)
- ※ 박 대사는 하원의장 및 외무장관 등 콜롬비아 주요인사들과의 면담 시 콜롬비아가 과거 한국에 대해 보여준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 후 한일협정의 서명, 월남의 공산침략 분쇄 지원을 위한 한국의 월남파병 및 아·아블록회의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설명함. 콜롬비아측은 인접국가인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와 제반 현안을 타결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공산주의와 투쟁하고 있는 입장과 결의를 이해한다는 견해를 표명함.

2. 페루

- ※ 방문기간 : 7.24.~8.5. / 8.10.~12.(경유를 위한 방문)
- ※ 일정 : 독립절 미사 참석, 페루 대통령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독립절 축전 전달 및 국회개원식 참석(7.28.), 재무성 방문(7.30.), Aldana 국무총리 겸 외무장관 방문(8.2.)
- ※ 박 대사는 Aldana 외무장관에게 한일관계, 월남파병 등에 관해 설명하였는바, 동 장관은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페루 정부도 공산 게릴라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함.

3. 에콰도르

- ※ 방문기간: 8.5.~10.
- ※ 일정: Valencia 외무장관서리 방문(8.5.), El Tiempo지 기자와의 인터뷰(8.6.), 외무성 의전장서리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국경일 축전 전달(8.9.)
- ※ Valencia 외무장관서리가 한국의 내외사정에 대해 문의하여 박 대사는 한일관계 및 월남파병 등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에콰도르 정부의 이해를 촉구하였는바, 동 장관서리는 한국 정부 입장에 동조한다고 말함.

국교수립-볼리비아, 1965.4.25

| 65-044 |

생산년도	1962-65
생 산 과	미주
MF번호	C-10 / 9 / 1~125(125p)

1. 우리나라는 볼리비아와의 국교수립을 위하여 주미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을 통하여 노력하다가 아르헨티나에 상주 대사관이 설립된 후,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볼리비아를 검임 관할하도록 하고 주아르헨티나대사가 볼리비아와의 국교수립 문제를 전담하도록 함.
2. 배의환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65.4.5.~10. 간 볼리비아를 방문하여 볼리비아 대통령 등 주요인사를 예방하고 한국과의 수교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볼리비아 외무성으로부터 1965.4.8.자로 한국과 수교하기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음.
3. 한국과 볼리비아는 1965.4.25. 양국이 수교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국교단절-공고, 1965.5.11

| 65-045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C-10 / 10 / 1~166(166p)

1. 정부는 좌파정권이 수립된 공고가 대만(구 자유중국)과 단교하고 중국(구 중공)과 수교한 데 이어 북한과 수교를 추진함에 따라 국내적 검토와 외교교섭을 거쳐 “남북한 동시수교 불가”원칙에 의거하여 단교하고 공관을 철수시킴.

2. 그 과정은 아래와 같음.

※ 주공고대사관을 통해 공고와 북한 간 교류진전의 추이를 파악함.

- 공고 혁명기념일 축전 교환
- 친선사절단 상호 방문
- 공고 친선사절단 북한 내 활동
- 북한과의 수교 합의
- 북한대사관 설치 추이
- 시설 확보
- 신임장 제정 계획

※ 수교 저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외교교섭을 강화함.

- 공고 외상 등 요인 접촉
- 경제협력 등 검토

※ 저지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두 개의 한국 부인”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함.

- 단교에 앞선 주재국과의 외교절차 진행
- 첫 단계의 대사 소환
- 다음 단계의 공관 철수
- 인원 철수, 장비 반출, 시설 처분, 문서 파기

3. 본부는 국내절차로서 국무회의에서 단교의결문서를 채택하고 공관원을 인사 발령함.

4. 공고와 대만(구 자유중국)의 단교에 관해서는 주한대만대사관이 공한으로 그 경과를 외무부에 알려줌.

38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국교수립-몰타, 1965.4.2(각의의결)

| 65-046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서구2
MF번호	C-10 / 11 / 1~68(68p)

1. 정부는 몰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함에 즈음하여 주영대사관을 창구로 몰타정부가 영국에 파견한 고등판무관실과 영국 정부를 경유하여 수교를 교섭하고 국내절차를 진행시킴.
2. 수교에 이르기까지 주영대사관을 경유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고 조치를 취함.
- ※ 몰타 독립에 즈음하여 축전 발송
- 축하사절단 파견을 추진(무산)
 - ※ 몰타를 국가 승인함.
 - ※ 몰타 총리, 외상과의 서한 교환을 통해 수교를 제의하고 동의 획득
 - ※ 공관 형태를 협의하여 비상주 겸임공관으로 합의
 - ※ 주영대사를 겸임대사로 임명
 - ※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결과가 되어 몰타의 항의를 수습
3. 본부는 수교에 앞선 절차진행을 위해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엔의 몰타 국가승인절차를 확인하고 유엔대사와 몰타 총리의 면담을 성사시킴.
4. 국내절차로서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수교의결문서를 채택하고 겸임대사를 임명함.

국교수립 교섭-싱가포르

| 65-047 |

생산년도	1958-65
생산과	동남아주/통상1/조약
MF번호	C-10 / 12 / 1~231(231p)

1. 주싱가포르총영사관 및 명예영사관 설치 교섭 경위

- ※ 최덕신 주월남대사는 1958.11.15.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한 정무보고서에서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사관 설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당분간은 명예영사를 임명하여 주필리핀대사관이나 주월남대사관이 명예영사의 활동을 관장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고함.
- ※ 유재흥 주태국대사는 싱가포르 주재 Selkirk 영국 고등판무관이 1962.4.10. 한국에서 싱가포르에 영사관 설치를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였다고 4.11. 외무부에 보고 하면서, 싱가포르 주재 영사관 설치에 관한 본부 방침을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함.
- ※ 외무부는 영국의 자치주인 싱가포르에서 1963년 중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의한 말레이연방과의 통합이 야당인 Barisan Socialist당의 격렬한 반대 등으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되나, 설사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총영사관이 그 이전에 설치된다면 총영사관의 지위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싱가포르총영사관 설치를 위한 교섭을 추진할 것을 1962.4.23. 결정함.
- ※ 주말레이시아대사는 말레이시아연방이 발족하기까지 싱가포르에 우선 통상연락사무소라도 설치하여 영사사무 등을 수행토록 할 것을 1963.1.18. 및 2.8. 외무부에 건의하였으나, 외무부는 통상연락사무소의 직원이 국제법상의 영사의 지위와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여 사무소의 기능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말레이시아연방 성립 시까지 통상연락사무소의 설치를 보류키로 함.
- ※ 외무부는 말레이시아연방이 1963.9월 성립됨에 따라 주싱가포르총영사관 설치를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와 교섭, 추진하도록 1963.10.5.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지시함.
- 외무부는 1964.3.12. 주말레이시아대사에게 본부의 운영계획상 1964년도 중 싱가포르에 총영사관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통보함.
- ※ 외무부는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의 건의에 따라 1964.10.14. 한성무역유한공사(싱가포르 소재)의 정원상 사장을 싱가포르 주재 명예총영사로 임명함.

39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2. 싱가포르 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 추진

- ※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가 1965.8.9.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하여 완전한 독립국가가 됨에 따라 1965.8.12. 싱가포르를 승인하는 전문을 발송함.
- ※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65.8.19. 싱가포르의 외교노선은 영국노동당의 노선을 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당분간 그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싱가포르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싱가포르가 비동맹정책과 아시아·아프리카제국에 대한 배려에서 외교관계를 지연하는 경우 차선책으로 우선 영사관계라도 수립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국교수립-베네수엘라, 1965.4.30

| 65-048 |

생산년도 | 1962-65

생 산 과 | 미주

MF번호 | C-10 / 13 / 1~73(73p)

1.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와의 국교를 수립하기 위하여 주미대사관 및 주멕시코대사관에서 현지 베네수엘라 대사관 측과 교섭하였으며 우리나라가 브라질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한 이후 주브라질대사가 베네수엘라와의 수교교섭을 전담함. 박동진 주브라질대사는 1964.6.12.~17.간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여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을 면담, 한국과의 수교문제를 거론하였으며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회답을 주겠다고 함. 그 후 주미베네수엘라대사관 측은 1965.3월 베네수엘라 외무성이 한국과 국교수립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우리측에 알려줌.
2. 박동진 주브라질대사는 1965.3.15.~28.간 베네수엘라를 재차 방문하여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이 한국과의 수교에 동의하였다는 통보를 받음.
3. 베네수엘라와 한국은 1965.4.30.(한국시간) 양국이 수교하였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39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재외공관 설치-벨기에, 1965.11.1

| 65-049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구주
MF번호	C-10 / 15 / 1~88(88p)

1. 외무부 본부는 구주공동체(EEC)에 상주대표를 파견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벨기에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EEC를 검입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그에 필요한 국내절차와 외교교섭을 진행시킴.

2. 상기 과정까지 본부가 국내적, 대외적으로 밟은 절차와 취한 조치는 아래와 같음.

- ※ 구주공동체에 상주대표(참사관급)를 파견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
- ※ 상주대표를 파견키로 하고 인원, 시설, 예산 등을 결정
- ※ 대통령비서실에 상주대표 파견계획을 보고
- ※ 상주대표 파견을 위한 부내 행정절차를 진행
 - 발령, 행정지원
- ※ 방침 변경에 따라 구주공동체 검입 주벨기에대사관 설치를 위한 아래 절차를 진행
 - 원칙결재(외무부장관)
 - 국무회의 상정 재가(외무부장관)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
 - 대외발표

3. 외무부 본부는 이에 앞선 사전준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럽 주재공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외교 절차를 진행시킴.

- ※ 유럽 각국의 구주공동체 대표 파견형식을 파악
 - (주벨기에대사관 설치계획 결정 이전 단계)
 - 주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대사관
- ※ 벨기에 정부와 수교절차를 협의
 - 주프랑스대사관이 창구(주프랑스대사가 벨기에를 검입)
 - 상주공관 설치합의에 관한 공한 교환
- ※ 주벨기에대사의 검입 문제 등에 관해 구주공동체와 협의를 진행
 - 주스위스대사관이 창구

4. 본부는 실무후속조치로 주벨기에대사관 업무를 지원함.

- ※ 시설, 홍보자료, 경비 등의 지원
- ※ 관할지역 조정과 영사업무 개시

재외공관 설치-이디오피아, 1965.3.25

| 65-050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C-10 / 16 / 1~18(18p)

북한이 케냐에 진출하려는 움직임 등에 대한 우리의 대책에 관하여 1964.1.16. 미국측과 협의할 때 미측은 한국이 이디오피아에 상주 대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과 외무부 구미국 아중동과에서 주이디오피아 상주공관 설치 필요성을 1964.8.27.자 문서 등으로 보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39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재외공관 설치-일본, 1965.12.18

| 65-051 |

생산년도	1961-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C-10 / 17 / 1~66(66p)

1. 일본의 주한대표부 설치 교섭 경위

- ※ 일본 정부는 1952.4.28. 한국의 주일대표부가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지위와 특권을 일본의 주한 대표부에 대해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한국전쟁으로 정부가 부산에 있었던 관계로 사실상 주한일본대표부의 설치가 곤란하였으므로 당분간 이를 설치하지 않기로 함.
- ※ 우리 정부가 휴전으로 서울에 복귀한 후 일본 정부는 1953.10.20. 서울 및 부산에 대표부 및 본실의 설치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대표부 설치를 위한 제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함. 이후에도 일측은 1953.12.1., 1960.8.6., 1961.7.5. 3차에 걸쳐 우리 정부에 대하여 주한대표부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우리측은 한일회담에서 국교가 정상화되면 사절교환이 있을 것이므로 그 전에 대표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함.
- 주한일본사무소는 1965. 6월 한일 기본조약 및 부속협정 서명 이후인 1965. 9월 설치됨.

2. 한일 양국간의 대사관 설치 교섭 경위

- ※ 일 외무성은 1965.10.8. 주일대표부에 대하여 한일기본조약 발효일에 현 주한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시킬 것이며, 이는 조약 해석상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소 설치의 경우와 같이 각서교환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 ※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65.10.27. 기본조약 발효로 외교관계는 자동적으로 수립되나 외교관계의 수립과 외교공관의 설치시기는 별개 문제로서, 외교공관의 설치를 위해서는 한일협정의 발효 이전에 각서교환과 같은 형식으로 대사관의 상호설치에 합의하고 이를 기본조약 발효와 동시에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일측에 설명하도록 주일대표부에 훈령함.
- ※ 일 외무성은 1965.10.28. 주일대표부에 조약발효와 동시에 대사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표명하면서,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문제이며 실제상의 이익이 없는 한 새로운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65.11.8. 기본조약 발효와 동일자의 구술서로서 기본조약의 관계조항에 언급하고 대사관을 상대국에 설치함을 상호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할 것을 훈령하였으며, 일측은 11.15.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 한일 양측의 한일조약 비준서 교환식이 1965.12.18. 10:30~11:05간 동경에서 거행된 직후인 12.18. 11:30 주일대표부의 방회 대사대리가 일 외무성 히로세 아시아국 참사관과 주일한국대사관 및 주한일본대사관 설치통보를 확인하는 구술서를 교환함.

재외공관 설치-일본총영사관 설치추진 및 오사카·후쿠오카 총영사관 개설, 1965.12.18

| 65-052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동북아주
MF번호	C-10 / 18 / 1~250(250p)

1. 외무부는 한일 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일본의 지방에 각급 영사관을 설치하기 위해 공관 숫자, 공관 등급(총영사관, 영사관, 출장소), 공관 인원과 조직, 공관별 관할지역 등에 관해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일본 정부와 교섭함.
2. 외무부 본부는 교포 분포, 영사업무 취급현황, 공관설치 도시 및 관할지역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인원, 조직, 예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법령을 정비함.
3. 이 과정에서 본부는 주일대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총영사관, 영사관, 출장소로 구분하여 오사카 등지에 9개 공관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4. 외교교섭에 있어 처음 일본 정부는 9개 공관 설치에 유보적이었으나 나중에 양해했으며 일본 정부가 난색을 표한 재일교포를 영사로 임명하는 문제는 한국이 이를 수용하여 외무장관 방일 계기에 교환 공한으로 주한일본영사관 설치원칙을 포함하여 합의함.
5. 주일 각급 영사관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후쿠오카, 야마구치, 나가사키 등의 일본 지자체장과 각지 민단의 진정이 있었고 교통부도 어업업무의 필요성을 들어 시모노세키 영사관 설치를 요청함.

39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남미지역 재외공관 관할구역 변경

| 65-053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10 / 19 / 1~102(102p)

1. 외무부는 1964.10.28. 아르헨티나에 상주 대사를 임명하게 된 것을 계기로 남미지역 국가간의 상호 우의, 이해관계 및 지역적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브라질대사관 및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의 겸임·관할지역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키로 결정함.

※ 주브라질대사관: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 아르헨티나의 상주대사관은 1963.12.15. 개설됨

398

2. 외무부는 1965.2.16. 관할국 재조정안이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될 것이 예상되며, 주아르헨티나대사에 대한 주칠레 및 주파라과이대사의 겸임 임명조치도 끝나 양국에 각각 신임장을 제정키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브라질대사관이 관장하고 있는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및 볼리비아에 관한 사무를 주아르헨티나대사관으로 이관 조치 할것을 지시함.

3. 상기 겸임관할지역 조정을 반영한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1965.3.30.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됨.

주한공관 설치-브라질, 1965.5.10

| 65-054 |

생산년도	1962-65
생산과	중남미
MF번호	C-10 / 20 / 1~91(91p)

정부는 한국과 브라질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브라질이 한국에 상주공관을 설치하도록 교섭할 것을 주브라질대사에게 지시(1962.12.22.)한 이후 한국과 브라질 양측이 주한브라질 공관설치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여 1965.4월 Roberto Bathel-Rosa 공사가 주한브라질 대사대리 자격으로 서울에 부임하여 주한 브라질 상주대사관 설립의 임무를 맡게 됨. 동 과정은 아래와 같음.

1. 정부는 주브라질대사에게 브라질로 하여금 주한 상주대사관을 설치하도록 교섭하되 한국에 파견할 브라질의 외교관 등급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브라질 정부가 상주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브라질의 상황에 따라서 겸임 총영사 또는 영사 파견도 수락하도록 함.(1962.12.22.)
2. 일본에 상주하고 한국을 겸임 관할하는 브라질 Moura 대사는 주일대사를 면담하고 브라질이 한국에 대사대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브라질 공관은 브라질 주재 한국대사관과 대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타진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한국의 브라질 커피 수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관이 방한할 것이라고 함.(1963.3.)
3. 정부는 브라질산 커피 수입은 보세가공무역으로 군납이나 제3국 재수출 목적임을 밝히고 수교문제와 커피수입문제가 별개의 사안임을 주일대사에게 통보함.
4. 주한 브라질 공관과 주브라질 한국대사관 대지 상호교환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재 사정상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브라질 정부 측이 대지 공여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 없이 실현하기 어렵다는 내부 검토 안을 작성함.
5. 브라질의 주한공관 설치 시 공관원에게 부여할 차량 구입시 면세 혜택을 협의함.(1963.6.20.)
6. 브라질은 주한공관의 등급에 관하여 주일브라질대사가 한국을 겸임 관할하고 한국에 임시대사대리를 파견하도록 결정함.

39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주한공관 설치-일본영사관(부산), 1965.12.18

| 65-055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C-10 / 21 / 1~30(30p)

1. 한일 양국 정부는 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상호적으로 각급 영사관을 지방에 두기로 한 합의의 일환으로 일본의 주부산영사관 설치를 위해 교섭하고 국내절차를 진행시킴.
2. 주일대사관이 창구가 되어 외무성과 가진 협의에서 영사관 인원, 조직, 관할지역에 합의하고 외무장관회담에서 최종 확인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창설계획

| 65-056 |

생산년도	1963-6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10 / 22 / 1~650(650p)

1. 정부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공산침략의 위험을 논의하고 동남아 자유제국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란드와 가능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의 외상을 초청하여 1965.4월, 3일간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외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초청대상국을 상대로 우리의 회담개최 계획에 대한 반응을 타진함.

2. 우리나라의 이러한 구상에 대하여 대만, 월남, 태국은 찬성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필리핀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주도하여 “반공기구”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표명하며 즉각 찬성을 유보하는 입장을 나타냄.

※ 이러한 의구심에 대하여 한국은 “반공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다수 국가들이 동 외상회의에 앞서 예비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선 예비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함.

3. 동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은 아래와 같음.

※ 우리나라가 구상하는 회의가 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방위체제를 창설하려는 계획인 것처럼 언론에 알려져 대외적으로 중립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동 회의의 참여가 인도네시아와 중국(구 중공)과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냄.

※ 호주, 뉴질란드는 우리의 제안에 참여할 경우 새로운 군사동맹체제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며 필리핀도 반공군사동맹 구상에는 우려의 뜻을 표함.

※ 호주, 뉴질란드, 태국, 월남은 일본도 한국 제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어 일본 측 의사를 타진함. 일본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함. (그러나 1965.3. 개최된 방콕 예비회담 이후 방한한 일본 시이나 외상은 일본도 참가하겠다고 말하고 회의 개최 시기를 1966.6.로 할 것을 제의함.)

※ 국내언론이 정부가 동북아 방위조약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정부는 외무부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동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해명함.

※ 인도의 참여 문제도 거론되었으나 인도의 참가 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참가도 거론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함.

40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ASPAC 창설예비회담, 제1차. Bangkok, 1965.3.11-14

| 65-057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C-11 / 1 / 1~240(240p)

402

1. 우리나라가 제의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이사회(ASPAC) 창설을 위한 외상회담에 대하여 초청대상국들이 동 회담의 성격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열자고 주장함에 따라 1965.2월 태국 방콕에서 동 예비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관계국으로 하여금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교섭함.

2. 예비회담의 개최를 위하여 태국의 타넛 외상이 방한하여 한국 외무장관과 예비회담에 관하여 협의하고 장관(말레이시아, 필리핀 방문) 또는 차관(호주 방문)이 일부 관계국을 방문하여 교섭하거나 대상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들이 주재국과 교섭하였는바, 관계국들의 예비회담 참석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음.

- ※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은 참석에 문제가 없음을 표명함.
- ※ 일본은 1965.1. 일본 외상이 방한할 때까지 참석 여부를 통보하기를 유보하였다가 그 후 예비회담 참석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예비회담 개최 시까지 동 사실을 발표하지 않도록 요청함.
- ※ 필리핀은 참석할 계획이나 필리핀 정부가 동 회담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기를 희망함.
- ※ 호주는 외상이 결정하지 못하고 대통령주재 외교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후에 예비회담에 참석할 의사를 표명하고 본 회담 참석여부는 예비회담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함.
- ※ 장관이 말레이시아 라만 대통령 면담시 말레이시아가 방콕주재 대사를 참석시킬 의사를 표명함.
- ※ 뉴질랜드는 예비회담의 참석이 반드시 본 회담 참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예비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3. 예비회담은 1965.3.11.~14.간 방콕에서 태국 타넛 외상 사회로 개최되었으며 동 회담에서 외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참가범위, 회담의 정기적 개최원칙 등을 협의함. 동 회담에서 일본은 외상회담에서 경제, 문화교류 등을 토의하는 것은 환영하나 군사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환영하지 못한다고 함.

아랍정상회담, 제3차, Casablanca(모로코) 1965.9.13-17

| 65-058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C-11 / 2 / 1-67(67p)

주모로코대사관 및 주카이로총영사관은 1965.9.13.~17.간 카사블랑카에서 개최된 제3차 아랍 정상회담에 관해 1965.9월 외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3차 아랍정상회의 참석국

- ※ 알제리, 모로코, 통일아랍공화국, 수단,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쿠웨이트, 리비아 등 12개국(튀니지는 불참함)

2. 아랍정상회의 주요 동정

- ※ 아랍정상회의 의장인 통일아랍공화국의 나세르 대통령은 9.13. 개막 연설에서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팔레스타인의 해방임을 강조하면서, 정상회담의 처음 목적은 요단강 수류 변경 문제에 있었으나 이제는 이외에도 시온주의, 식민지주의, 신식민주의에 대한 투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함.
- ※ 정상회담의 최종 코뮌িকে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요단강 수류 개발사업 계속, OAU의 지지, 아시아·아프리카 연대, 남아프리카의 해방운동 지지, 아랍연합군의 강화, 팔레스타인해방기구 및 팔레스타인 해방군의 지지, 친시온운동의 배격, 국제문제에 대한 아랍정책의 조정, 카슈미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호소, 1954년 제네바협정에 입각한 월남문제 해결 호소 등임.
- ※ 제4차 아랍정상회담은 1966.9월 알제리에서 개최기로 함.

3.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 ※ 제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튀니지 대통령의 불참과 이집트와 시리아, 이라크 간의 심각한 대립 등으로 아랍국가간의 평화공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금번 회의가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음.
- ※ 제2차 정상회담 이후 아랍국가간의 긴장된 관계를 완화하기 위하여 아랍리크 사상 처음으로 아랍연대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동 협정 체결 직후 이라크에서 발생한 친나세르파의 쿠데타 음모 등은 동 협정의 이행에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음.

40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1965

1964



- ✿ 금번 회의를 통하여 아랍리그 헌장 수정문제가 구체화되었다는 것과 동 기구 자체문제만을 토의하여 온 고립적인 상태에서 탈피하여 아랍 외의 국제문제도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목됨.
- ✿ 일시적이거나 금번 회의를 통하여 아랍국가에서의 '나세르즘'의 후퇴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음.

OCAM(아프리카·말라가시공동기구) 정상회담. Abidjan(아이보리코스트) 1965.5.26

| 65-059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프리카
MF번호	C-11 / 3 / 1-8(8p)

주케냐대사관은 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의 Abidjan에서 1965.5.26. 개최된 OCAM(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공동기구) 정상회담에 관해 5.27. 외무부에 보고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65.2월 조직된 Afro-Malagasy Common Organization(OCAM)의 9개 회원국 정상들이 동 기구 발족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가진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OCAM 회원국은 1965.9월 가나의 수도 Accra에서 개최 예정인 OAU(Organization for African Unity)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동 성명서는 콩고 레오폴드빌이 제1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고 발표함.
2. 코트디부아르의 Boigny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Nkrumah 가나 대통령의 이름을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그를 지적하여 암살, 파괴, 선동 등의 수법으로 자국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OAU 사업을 위하여 어느 곳에도 갈 용의가 있으나 Accra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됨.
3. OCAM은 이전에 존립하였던 UAMCE(Afro-Malagasy Union)의 정상들이 모리타니의 Nouakchott에서 1965.2.10.~12.간 회합하고 OAU의 테두리 안에서 불어사용 국가간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재조직된 기구임.
※ OCAM 회원국은 5.27. 현재 카메룬, 차드, 콩고 브라자빌, 베냉, 가봉,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토고, 부르키나파소, 콩고 레오폴드빌 등 14개 국임.

40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AAPSO(아·아인민단결기구) 회의, 제4차. Accra(가나) 1965.5.9-16

| 65-060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C-11 / 4 / 1~7(7p)

- 406
1. AAPSO(아·아인민단결기구 : Afro-Asian People's Solidarity Conference) 제4차 회의가 1965.5.9.~16.간 가나의 Accra에서 개최되어 70여 개국에서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2. 외신보도에 의하면, 동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미국과 서방제국을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주한미군철수 요구와 한반도 분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일회담 규탄,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한반도통일 지지, 월남, 콩고, 도미니카, 남예멘 및 말레이 등으로부터 영미제국주의자들의 군대 철수 등을 요구했다고 함. 또한 동 회의 기간 중 신규 가입국 승인문제에 대해 소련측은 라틴 아메리카 좌경국가들의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중국측은 소련측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말레이시아의 가입을 반대하는 등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고 함.
 3. 외무부는 1965.5.19. 주카이로총영사에게 상기 회의에 참석한 북한대표단의 인적구성, 활동사항 및 한일회담 규탄 결의문 채택 여부 등을 파악, 보고할 것을 훈령하였는바, 주카이로총영사는 북한의 아·아인민단결위원회 부위원장(수석대표) 등 3명이 참석하였으며, 한일회담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사실이라고 1965.5.26. 외무부에 보고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제3차. Accra(가나) 1965.10.21-25

| 65-061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C-11 / 5 / 1~148(148p)

1. 아프리카단결기구(OAS) 제3차 정상회의가 가나의 아크라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동 회의를 가나에서 개최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는 국가들이 동 회의 개최 장소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동 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결국 당초 1965.9월 개최 예정이었던 동 회의가 연기되어 1965.10.21.~25.간 가나에서 개최됨.
2. 동 회의의 가나 개최를 저지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가나가 인접국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인접국에서의 정부전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과 알제리가 주장하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와 개최일자가 중복된다고 주장함.
3. 가나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에 불참한 국가는 8개국으로서 차드, 베냉, 가봉,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니제르, 토고, 부르키나파소 등인바, 이들의 불참 이유는 가나 정부와의 반목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40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신정부 승인-도미니카공화국

| 65-062 |

생산년도	1963-6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C-11 / 6 / 1~60(60p)

408

1. 도미니카, 온두라스에서 각각 1963.9.25. 및 1963.10.3. 극우파에 의한 혁명이 발생하여 반공산, 친서방주의를 표방하는 신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각국의 신정부 승인문제가 대두됨.
2. 도미니카의 경우 Victor Elby Vinas Romas 국방상이 주도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쿠데타의 동기로서 Bosch정권의 옹공정책, 불필요한 국제문제간섭, 선거공약 불이행을 열거하였으나 사실은 Bosch정권이 과거 31년간 통치하던 트루히요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하여 사회개혁과 토지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트루히요 집권 당시의 치부한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보수층의 반발을 사게 되자 이들 보수세력이 불만을 품고 합헌정부를 전복시킨 것임.
3. 온두라스의 경우 군부가 쿠데타로 Ramon Villeda Morales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쿠데타 동기로서 Villeda 대통령이 옹공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Villeda 대통령은 사실상 반공주의자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바, 쿠데타의 실질적인 이유는 9주 후에 있을 총선에서 Villeda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인 모테스토 로디스 일비리노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에 있는 것으로 관측되어짐.
4. 도미니카와 온두라스는 쿠데타 이후 혁명에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충돌이 있었으나 점차로 사회질서를 안정시켜 나감.
5. 도미니카와 온두라스의 신군사 정부에 대하여 중남미에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이 승인을 하였고 도미니카와 온두라스가 상호 승인을 하였으며 역외지역에서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구 서독), 레바논, 대만(구 자유중국)이 승인을 하였으나 미국은 이들 양국에서 쿠데타로 입헌정부를 전복하였다는 이유로 신정부와 외교관계를 단절함.
6. 우리나라는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 시 다수국가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할 입장을 고려, 이들 정부의 승인문제에 관한 미국의 의견을 청취하였던바, 미국은 한국이 이들 정부를 승인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참작하여 1963.12.6. 이들 정부를 승인함.



7. 도미니카는 1965.4.24. 반정부군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나 일부군의 반대로 상호 교전상태가 야기되었으며 결국 OAS의 중재로 9개월 내에 자유선거를 할 것을 약속하는 신정부가 1965.9.3. 수립되었고 우리나라는 이 신정부를 승인함.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3권 V.1 1965.3.18-4.3까지의 교섭

| 65-063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C1-14 / 2 / 1~116(116p)

410

1. 실무자회의와 본회의로 나뉘어 진행된 청구권위원회는 “김·오하라 메모”를 기초로 교섭을 진행하여 무상 3억 달러, 정부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이상, 어업협력 9천만 달러, 선박 협력 3천만 달러 등의 금액과 제공기간(10년), 정부차관 금리(3.5%)와 상환기간(7년 거치 포함 20년) 등의 조건에 합의함. 청구권 자금과 함께 다루어진 문화재 반환 문제는 처음 한국은 청구권의 일환으로 다루려 한 데 비해 일본은 청구권과 분리하여 다룰 것을 주장했으며, 한국은 공공기관과 개인의 소장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문화재는 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공공기관 소장품만 반환하겠다고 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함.
2. 청구권위원회에서의 교섭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개최된 외상회담에서는 상기 1항 내용을 확인하고 재일교포의 자손에 대한 영주권 인정 문제, 한국의 선박 청구권과 일본의 나포선박 청구권을 상쇄하는 문제, 상업차관의 구체액수 등이 논의됨. 영주권 인정문제에 관해 한국은 2세 이후의 자손에게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내세운 반면, 일본은 새로운 절차(신청과 허가)를 설정하려 하여 입장이 대립함.
3. 외상회담의 전후에 개최된 청구권위원회에서 일본은 거듭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못박으려고 함.

| 65-064 |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3권 V.2 1965.4.3 가서명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4-6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C1-14 / 3 / 1~476(476p)

1. 청구권위원회와 산하 전문가 회의에서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후속조치로 교환공문에 답을 청구권 및 경제협력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은 조기합의를 원하고 일본은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의 재확인 같은 일본의 관심사항을 우선함.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소멸 청구권의 범위, 재일교포 청구권문제 등을 제기함.
2. 청구권자금 및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도입절차, 사용계획, 제공될 생산물과 용역의 내용, 계약주체(사절단 파견 포함)와 계약방식, 상사중재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나중의 상환에 관해서도 일본이 현물상환 불가를 주장하여 한국이 받아들임.
3. 한국이 주력한 것은 차관제공기간의 단축(일본은 10년을 주장)과 함께 무상 3억 달러의 일환으로 공여될 물품 가운데 원자재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었으며 일본의 유보적 태도를 누르고 절반 이상으로 합의함.
4. 한국은 일본의 재무당국과의 협의에서 자금도입절차를 협의하고 합의함.

41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제7차 한·일회담 :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전3권 V.3 이해결문제 토의 및 조문화 작업

| 65-065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2 / 1 / 1~343(343p)

1.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합의의사록, 교환공문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교섭을 통해 무상, 유상, 상업 차관, 어업협력, 선박협력 등의 공여방식, 진행절차, 금리와 기간 등 상환조건, 분쟁해결 절차, 2세 이하 재일교포에 대한 영주권 인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끝에 의견접근을 이루고 어업협력 과 선박협력의 무이자 상환 등에 합의함.
2. 위의 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한국은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함.

제7차 한·일본회담(1964.2.3-65.6.22)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 65-066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0 / 5 / 1~73(73p)

1. 외무부는 1965.4.3. 이니셜 된 한일 양국간의 '청구권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에 따라서 인도되어야 할 한국문화재의 품목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훈령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문제 해결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안에 대해 4.20.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한일회담 수석대표에게 시달하면서, 동 훈령 및 의정서안에 따라 일측과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문제 해결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안과 관련된 세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의정서의 문안은 문화재 반환이라는 우리측의 기본입장이 가급적 반영되며, 부득이할 경우에도 양측이 각기 자기측에게 편리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일측의 의정서 요강 제1에서 문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본 출판물, 영화 등 일본문화의 급격한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동 제의를 완곡하게 피하도록 한다.
- ✿ 일측의 의정서 요강 제2에는 일부의 국유분만 인도한다는 입장인바, 국유만이 아니라 사유의 문화재도 공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소유하는'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 ✿ 일본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민간인 유지들의 협력을 얻어 자진 '기증'의 방도로 주요한 문화재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증'을 장려한다는 뜻을 합의사록 등에 규정하도록 교섭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할 우선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고구라 수집품
 - 데라우찌 수집 한적, 서화
 - 일본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재
 - 석조물 중 석굴암의 합룡불 2구 및 소석담

3. 본 문건에는 1965.4.3.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대신 간에 합의된 '한일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 일측이 1965.6월 작성한 도기, 출토품 및 석조미술, 도서, 체신관계품목에 관한 목록이 수록된 '日韓間の文化協力に関する議定書付屬書' 등이 첨부되어 있음.

한·일회담 반환문화재 목록 및 양국 입장

| 65-067 |

생산년도	1953-65
생산과	동북아주
MF번호	Re-25 / 7 / 1~414(414p)

1. 한국은 재산권 청구의 일환으로 일본에 반환을 요구할 문화재 목록으로 문교부가 일본의 공공기관과 개인들이 소장하는 품목을 망라하여 작성한 아래 리스트를 일본에 제시함.

※ 1945년 이전에 총독부가 반출한 품목

※ 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학, 교토대학, 도쿄미술학교 등 공공기관 소장 품목

414

※ 개인소장 품목: 일본각지 소재 도자기 품목, 재일본 한국 종(鐘) 목록, 재일본 석조미술 품목, 오구라 다케유치(개인) 소장 품목, 이치다 지로(개인) 소장 품목, 토다 토시헤이(개인) 소장 품목, 불상, 회화, 목공예, 기와, 거울 등

2. 한일회담에서 표명된 양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은 “불법반출이므로 소장의 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이 의무”라는 것인 데 반해 일본은 “국제법상 반환의무는 없으나 문화교류촉진의 일환으로 ‘기증’ 형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임. 반면, 한국 정부는 내심 개인소장 품목의 경우에는 “기증 형식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3. 최종적으로 합의되어 문화상 협력에 관한 합의의정서에 기술된 내용은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의 차원에서 일본 정부 소장 품목을 한국 정부에 기증한다.”는 것임.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 65-068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동북아주
MF번호	Re-12 / 2 / 1~54(54p)

미국은 여러 경로로 한국 정부에 대해 한일회담을 조기에 타결하도록 독려했으며 한국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에 대해 일본이 성의를 보이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것을 요청함.

1. 버거 주한미국대사

- ✪ 외무차관이 연말까지의 타결이 한국의 희망이라며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를 요청한 데 대해 협조를 약속하면서 일본이 원하는 주한대표부 설치를 인정하도록 권유함. 버거 대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방국들이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으나 차관은 마치 국교가 정상화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회담타결과 국교정상화가 먼저라고 함.
- ✪ 또한 버거 대사가 재일교포 복송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물은 데 대해 차관은 일북간의 협정이 그해 11월에 만료되기까지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나 협정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일회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 ✪ 버거 대사는 이케다 일본총리와 회담한 케네디 미국대통령이 일본이 한국을 원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안 해결을 희망하였으며 이케다 총리도 조기 타결을 바란다고 했다고 전함.

2. 해리만 국무차관, 번디 국무차관보

- ✪ 김용식 주미대사와의 면담에서 한일관계 조기 개선을 당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함.
- ✪ 주미대사와 별도로 만난 번디 차관보도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해 돕겠다고 함.

3. 라이샤워 주일대사

- ✪ 배의환 주일대표부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주한일본대표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한일회담 타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4. 박정희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낸 답서

- ✪ 버거 대사 부임 편에 전달된 서한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관심을 보인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수교의지를 밝히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우월감을 버리고,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해야 하며, 청구권문제에 적극적이라야 한다면서 측면지원을 당부함.

제7차 한·일회담(1964.12.3-65.6.22) [개최경위]

| 65-069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0 / 2 / 1-81(81p)

제6차 한일회담은 1964.4월부터 사실상의 중단상태에 들어갔으나 1964.11.9. 일본의 사토 내각이 새로이 출발하면서 한일회담 타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하여 1964.11.25. 한일 양측은 12.3.부터 제7차 한일회담을 속개할 것에 합의하였는바, 1964.12.3.~1965.2.8.간 개최된 각 위원회별 주요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본관계위원회

416

- ※ 기본관계문제에 관하여는 제4차 회담 이래 다른 현안의 토의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 논의키로 하여 공백상태인 점을 감안, 우선 양측이 각자 입장의 대강을 표시한 요강안을 교환하여 이를 기초로 토의를 진행시킴.
- ※ 양측간 현격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는 과거의 청산과 1910.8.22.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 확인, 한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의 확인, 상항조약 제2조(a)의 규정 및 유엔결의 195(III)의 취지 확인과 관할권, 분쟁처리사항, 합의문서의 형식 및 명칭 문제 등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함.
- 구조약무효확인과 관련, 우리측의 ‘..are null and void’에 대하여 일측은 ‘have no effect’를 주장하였으며, 우리측의 ‘유일한 합법정부’ 조항에 대하여 일측은 이러한 어구가 들어가는 한 수석이 있어도 수락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2. 법적지위위원회

- ※ 우리측이 재일한인의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및 사회보장 등 처우문제 토의에 치중할 것을 제의 하였으나, 일측은 협정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출생한 자(협정상상의 영주권자의 자)에 대한 강제퇴거의 실시를 영주권자의 경우에 준하도록 규정하자는 한국측 입장은 영주권의 범위를 무한정하게 확대하는 것이므로, 처우를 받을 자의 범위 즉 영주권의 범위가 결정되지 않는 한 처우문제 토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주장함.

3.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 ※ 규제수역문제, 기선문제 및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토의됨.
- 우리측은 어족의 월동장인 E수역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양국 농림장관 간에 논의된 규제연구위원회의 조속 설치를 주장함. 이에 대해 일측은 어업문제의 대강에 해결을 보아 전반적인 윤곽이 판명되어야 설치가 동의할 수 있으며, 평화선이 존립하는 현재 평화선 밖으로 확장된 E수역의 설치문제 논의는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의 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이 대립됨.

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12-65.2

| 65-070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0 / 3 / 1~310(310p)

제7차 한일회담에서 한일 양국간 기본관계에 대한 문안을 합의하기 위한 양국 대표간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지시하는 훈령과 그 교섭과정 및 한일기본관계 조약 합의문이 수록되어 있음.

1. 기본관계문제 협의를 위한 우리측 훈령 요지

- ☛ 한일간 과거관계 청산,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 조약의 형식, 구한말 한일간 체결된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 한일 양국간 외교 및 영사관계 수립, 통상항해조약 체결,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별도 협정 체결, 해저전선분할 규정 등의 주장을 관철하도록 하는 것임.

2. 한일간 기본문제에 관한 회의록

- ☛ 제1차 회의(1964.12.8.)부터 제13차 회의(1965.2.15.)까지 협의하였으나 마지막 회의까지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문안과 구한말 체결된 조약의 무효확인 조항 문안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함.
- ☛ 결국 1965.2.17. 일본의 시이나 외상이 방한하여 양국간 외상회담을 개최하여 유일합법 관련 조항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195(III)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라는 문안으로 합의하였으며 구조약 무효확인 관련 조항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문안으로 합의됨.

3. 위와 같은 합의가 있음에 따라 1965.2.20. 한일 양국 외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의 아주국장이 한일관계기본조약에 가조인함.

제7차 한·일회담. 대표단 임면관계

| 65-071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동북아주
MF번호	Re-10 / 4 / 1~63(63p)

1. 한일회담은 제1회담부터 제6차 회담까지 수석대표가 양유찬, 김용식, 양유찬, 임병직(제4차 전반), 허정(제4차 후반), 유진오, 배의환이 담당하였으나 1964.10.19.자로 제7차 회담에 앞서 대표가 신임 주일대사인 김동조 대사로 교체되었으며 1965.1.18.부터 속개되는 제7차 한일회담에 참석하는 우리나라 대표들이 각 위원회(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어업위원회, 법적지위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기타) 별로 새로이 임명됨.

418

2. 일본 측은 제7차 한일회담에 대비하여 일본 무역진흥회이사장인 스키 미치스게를 수석대표로 임명하였으나 회담을 앞두고 동 인이 와병하게 되자 우시바 노부히코 외무성 심의관이 수석대표대리 자격으로 회담을 하려고 하였음. 그러나 1964.12.14. 스키 수석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65.1.6. 미스비시 전기의 상담역인 다카스끼 신이치를 수석대표로 임명함.

제7차 한·일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 65-072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0 / 8 / 1~435(435p)

김동조 신임 주일본대사는 일본 각계인사를 예방하고 한일회담 개최에 관하여 협의하고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신임수상이 한일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1964.12.3. 제7차 회담 제1회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65.1.18. 제3회 본회의가 개최되고 1965.1.20. 첫 수석대표회담이 개최된 이후 1965.6.5.까지 16차례 양측간 수석대표회담이 개최됨. 이 과정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가 1965.1.2. 일본 기자들과 환담하는 기회에 한 발언이 국내신문에 보도되어 양국간 정치문제로 비화됨.

1. 김동조 신임 주일대사가 기시 전 일본 수상을 예방하였을 때 동 인은 그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가 신임 일본 수상이 되었으며 사토 수상은 취임한 이후 무엇보다도 먼저 한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한일회담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시이나 외상을 통하는 것보다 사토 수상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종용하면서 자신이 사토 수상과 자주 만나는 것을 지원할 뜻을 밝힘.
2. 김동조 대사는 1964.11.12. 시이나 외상을 면담하고 한일회담 재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외상이 1965.11. 방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동 외상은 1965년 수상 방미기회에 방한하는 것을 수상과 상의하겠다고 함.
3. 1965.1.19.자 동아일보는 한일회담 일본 측 다카스기 수석대표가 일본인 기자들과 환담하는 기회에 “일본이 20년만 한국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전쟁으로 좌절되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하여 양국간 정치문제로 비화됨. 동 보도가 양국 언론에서 크게 논란이 되자 다카스기 수석대표는 문제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발언을 함.
4. 한일회담 수석대표간 16차 회담 이후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협정 전반에 관한 “분쟁해결에 관한 의정서”형식으로 처리하자는 일측의 제안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 대안은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안)을 제시하였는바 결국 1965.6.22. 양측이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라는 각서를 교환하기로 결정함.

41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일간의 어업협정 시행을 위한 추가합의 사항에 관한 약정

| 65-073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1 / 6 / 1~353(353p)

1. 외무부장관은 1965.8.31. 농림부장관에게 한·일간의 조약 및 제협정의 발효 전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일측과 합의되어야 할 사항인 한국의 실제 출어척수 조정, 공동순시·상호승선·육상시찰방안, 공동위원회 개최, 조업질서에 관한 민간협정 체결, 해난구조협정, 어업협력방안 등의 사안에 대한 우리측의 교섭 입장에 대해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함.
2. 농림부는 1965.10.18. 한일어업협정 제1조 1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어업에 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대통령 고시(안)을 작성하였는바, 동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은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으로 하고, 양국간의 수역이 중첩하는 부분은 동 협정 제1조 3에 의거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외무부는 1965.10.26. 주일대사에게 우리측이 발효 전 합의를 희망하는 어업협정관련 사항은 조업안전에 관한 민간협정, 긴급 피난 등에 관한 약정, 기타 상호승선 및 공동순시 등이므로 일측과 조속 합의할 것을 훈령함.
4. 일본 정부는 1965.12.17. 각의에서 어업 수역의 설정에 관한 정령을 결정, 공포함. 동 정령에는 어업전관 수역의 범위를 시마네현,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및 나가사키현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 및 이들 현의 구역 내의 도서(부속도서가 있는 지도는 첨부되지 않음) 연안으로부터 12해리로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됨.
5.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설정의 건이 대통령 고시 제1호로 1965.12.18. 공포됨.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는 1965.12.28. 외무부에 공한을 송부, 동 고시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연안에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독도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포함됨을 통보함.
6. 대한민국의 수산협동조합중앙회와 일본국의 대일본수산회와의 양국의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 및 질서의 유지에 관한 민간협정이 1965.12.17. 김재식 수산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나카베 켄키치 대일본수산회 회장 간에 체결됨.



7. 한일외상회담이 1965.12.18.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회담 시 이동원 외무부장은 문화재의 조속한 인도 절차, 어업협정 시행에 필요한 감시선간의 연락방법 · 공동순시 · 상호승선 문제 및 해저전선 문제에 관한 단시일 내 합의를 촉구한 후, 일본이 북한과 여하한 관계도 갖지 않기를 요망함. 시이나 외상은 문화재 반환 시기를 1966.4월경으로 예상하면서 공동순시 등 어업협정 시행에 대해 일측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해저전선문제는 계속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한·일회담 각 현안에 관한 양측입장과 해결방안

| 65-074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2 / 3 / 1~54(54p)

외무부 아주국은 1965.1.11. 한일회담 각 현안에 관한 양측 입장과 해결 방안에 관한 내부 참고 자료를 작성함. 동 자료는 양국간 현안을 기본관계문제, 법적지위문제, 청구권문제, 문화재 반환청구, 한일선박반환청구문제, 어업 및 평화선문제, 협정실시에 관한 분쟁처리에 관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양국 입장 및 해결 방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바, 동 내용 중 기본관계문제 및 법적지위문제의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422

1. 기본관계문제

※ 합의문서의 형식

- 한국측: 조약의 형식을 취하고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조약'으로 함
- 일본측: '공동선언'으로 하되 명칭 문제는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함
- 해결방안: 조약의 형식으로 하고 명칭은 기본조약으로 함

※ 전문에 포함될 사항

- 한국측: 상호주의 존중, 항구적 평화와 선린우호관계의 유지, 공동복지의 향상,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유지에의 기여
- 일본측: 철학적이면 무방하나 표현이 문제, 양국간 현안타결과 국교정상화 자체가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
- 해결방안: 우리측이 제시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wording은 일본측도 적절히 조정토록 함

※ 과거의 청산과 1910.8.22.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확인

- 한국측: '당초부터 무효'라는 사실 확인 규정을 둠
- 일본측: 당초부터 무효라는 한국측 입장에 찬성할 수 없음
- 해결방안: 과거의 청산에 관하여는 전문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당초부터 무효'는 '당초'를 삭제하고 그러한 조약 또는 협정이 무효라는 확인 조항을 두도록 함

2. 법적지위문제(전문 내용)

- ※ 일본측: 일본국에 재류하는 특정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기타의 외국인과 다른 법률상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 ※ 한국측: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그의 직계존속이 일본국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배



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법적지위와 처우를 부여함.

- ✪ 해결방안 : 1차적으로 한국측 안대로 추진함. 일측 안을 토의의 기초로 할 경우에도 '특정의'란 용어를 삭제하고 '법률상의 지위' 대신 '법적지위'로 하며, 처우 문제도 규정토록 함.

4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

| 65-075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C1-14 / 5 / 1~188(188p)

1.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개요)

※ 1965.6.22.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제협정은 1965.4.3.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시이나 외상 간에 가조인된 합의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부연하여 한일간의 청구권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해결된 청구권의 한계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대일 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을 위하여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및 민간신용 제공 3억불 이상의 자금을 국내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

424

※ 이 협정에서 제반 도입절차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제2차 대전 후 일본이 동남아 제국과 체결한 배상협정의 실제 운용 면에 있어서 수상국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사정을 최대한으로 반영시켜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의 활용을 기할 수 있는 방도를 택한 것임.

※ 동 협정은 한 개의 기본협정과 일곱 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유상 2억불에 대한 차관계약서가 있음.

※ 금번 타결된 협정 내용과 관련하여 항간에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운위하는 소리가 퍼지고 있으나 이번 협정의 조문에 관한 한 일본의 경제침략의 가능성은 거의 봉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일본의 노후한 시설재를 떠맡게 될 것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상품시장화할 것이라는 등의 우려는 타당치 않음. 협정에 의하면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음.

※ 타국의 배상협정의 경우 일본에 배상 사절단을 상주시켜 동 사절단으로 하여금 모든 구매절차를 일본 국내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조달청 구매 입찰공고 및 경락자 선정을 전부 한국 내에서 행하며 다만 구매계약서의 서명만 일본 국내에서 하게 되어 있음.

2. 본 문건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및 동 합의의사록 등 관련 부속문서와 일측 관련 문서와 일본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버마, 월남 등과 한국과의 배상관계 협정 대비표 등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1965.6.22. 한·일간의 제 협정 서명이후의 합의사항 실시를 위한 관련조치, 1965.7-8

| 65-076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동북아주
MF번호	Re-12 / 4 / 1~67(67p)

1. 정부는 기본조약 등 한일 정부간 합의의 후속조치로 통상, 항공을 비롯한 각종 경제분야 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 어업협정 등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과 제도의 준비를 목표로 관계부처회의에서 기본방침과 시행계획을 결정함.
2. 어업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조업수역설정, 자원보존조치, 어업규제, 불법어업 단속조치 등을 강구키로 함.
3. 외무부는 주일대사관 이외에 3개 총영사관, 6개 영사관 설치를 목표로 추진키로 함.
4. 외무부는 수교 후의 대일외교정책을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며 그 기초로 선린, 주체의식, 일북관계 발전 억제, 자유진영 결속, 호혜적 경제관계 구축 등을 설정함.

42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민간인(김태성) 등]의 대일청구권해결문제

| 65-077 |

생산년도	1955-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2 / 7 / 1~450(450p)

1. 태평양전쟁 당시 사이공에 근거를 두고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던 재일교포 김태성은 일본의 패전에 즈음하여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일본 당국에 진정함. 그는 동남아 현지에 함께 있던 일본인들과 연락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서신으로 받아 함께 제출함. 김태성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연합군이 접수한 남방개발금고 특별당좌예금(61만 루피)

426

※ 연합군이 몰수한 시설가액(725만 필리핀 달러)

※ 일본군에 대한 군납 대금(730만 필리핀 달러)

※ 일본의 현지당국 등이 패전에 즈음하여 동남아 각지에서 사이공으로 집결한 한반도 출신 군속, 징용자, 정신대 등 7백여 명의 귀환문제를 김태성에게 맡기면서 훗날 일본 정부가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한 소요경비(470만 필리핀 달러)

2. 진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간에 청구권 처리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선결이라는 입장을 취함.

3. 김태성은 주일대표부에 대하여도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함.

4. 한국 정부는 일련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함.

※ 한일 양국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합의한 데 따라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교정상화까지 기다려야 할 문제임.

※ 한일 양국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분리 처리키로 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함.

※ 사안의 성격상 한국 정부에 보상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제7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전2권 V.1 제1-24차, 1964.12.7-65.4.16

| 65-078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0 / 6 / 1~322(322p)

1.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를 둘러싼 교섭에서 일본은 한국과 기본적인 접근방법에서 차이를 보임. 한국은 재일교포사회 형성의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반해, 일본은 실정법의 제약과 제3국인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보편적인 특별 고려에 난색을 표하고 케이스 바이케이스 식의 대처를 주장함.

2. 쟁점별 양측 입장과 교섭결과는 아래와 같음.

- ※ 한일협정상 영주권자의 범위에 관해 한국은 2세 이후의 자손에게도 자동적으로 부여할 것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일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치도록 할 것을 주장함. 결국 협정 발효 후 5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이후의 출생자는 신청절차를 받도록 함.
- ※ 범법자 강제퇴거의 조건을 둘러싸고 한국은 가능한 한 관대한 조건을 원한 반면, 일본은 내란·외환, 마약범죄 등을 중심으로 엄격한 적용을 주장함. 결국 누범 횡수 3회, 형기는 일반범죄 7년 이상, 내란·외환죄 2년 이상, 영리목적 마약범 3년 이상 등으로 양측 입장을 절충하여 합의하고 미성년자는 퇴거대상에서 제외기로 함.
- ※ 사회복지에 관해 한국은 일본인과 동등한 처우를 요구한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보험 등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개인적 처리와 케이스바이케이스 방식을 주장함.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전상병자·전몰자 유가족 보호법의 적용 여부였으며 한국은 적용을 주장했으나 일본은 제3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끝까지 응하지 않음.
- ※ 교육은 “일본인과의 기회균등” 원칙에 합의했으나 민족학교 지원문제에 이견을 보임.
- ※ 재산반출 허용범위와 과세 등을 둘러싸고 입장대립이 있었으나 영구귀국자의 재산반출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합의함.

42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제7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전2권 V.2 제25-40차, 1965.4.21-6.15

| 65-079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0 / 7 / 1~271(271p)

1. 법적지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현안 가운데 양측은 협정 명칭, 재일한국인 2세 이하 자손의 영주권 신청기간, 재일한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범위, 영주권자가 설립한 민족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진학 인정여부, 강제 퇴거자 중 인도적 고려 적용대상 등에 관해 입장이 대립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논란을 거쳐 합의함.

※ 한국이 협정 명칭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구속을 피하려는 일본은 “재일한국인의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임.

※ 재일한국인 2세 이하 자손의 영주권 신청기간에 관해 한국은 협정발효 4년 9개월 경과 후 출생한 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일본은 1개월 이내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며 결국 2개월 이내로 절충함.

※ 재일한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범위를 두고 한국이 “제3국인보다 호의적”으로 하고 건강보험제 공을 규정토록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은 제3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제3국인보다 차별하지 않는다.”로 하자는 입장이었음. 또한 일본은 건강보험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을 들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한다.”는 표현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결국 두 가지 모두 일본 입장에 가까운 내용으로 합의함.

※ 한국은 민족학교 인가, 민족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인정, 민족학교 졸업자에게 외국의 동등한 학교 졸업자와 같은 자격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은 끝까지 난색을 표함.

※ 한국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인도적으로 고려한다.”내용을 넣자고 하였으나 일본은 내란·외환(外患)죄의 경우는 인도적 고려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

2. 그 밖에 한국은 법적지위 협정의 해석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의했으나 일본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내 문제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음.

제7차 한·일회담.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V.1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1964.12-65.2

| 65-080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동북아주
MF번호	Re-10 / 9 / 1~397(397p)

1. 한일어업회담에서 양측은 공동규제수역 설정, 수역별 규제내용, 기선 설정, 어업협력 등의 사안을 둘러싸고 입장이 대립함.

- ※ 양측은 A(서해쪽), B(남해-제주도 동쪽), C(남해-대마도 남쪽), D(동해쪽) 등 4개의 공동 규제수역을 설치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한국이 추가 설정을 주장한 E수역(제주도 서쪽)을 두고 일본은 일본국민에게 평화선을 연상시켜 반발을 살 것이라며 반대함.
- ※ 공동규제의 내용에 관해 한국은 양측 입장이 대립한 B와 C에 있어 한국은 B에서, 일본은 C에서 자유조업을 하고 상대의 조업은 인정하지 말자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은 B에서만 공동규제를 적용하고 C는 조업자유 수역으로 하자는 입장이었음.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주장대로 하면 어업이 후진적인 한국이 불리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D수역에 관해서도 한국은 일본어선의 조업을 막으려 했으나 일본은 제한적이거나 조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
- ※ 규제의 범위에 관해 한국은 출어 척수, 어획량 등을 수역별, 시기별, 어업별, 톤수별로 제한하고 양국 이익의 조화를 위해 “공평하고 평등하게 한다.”는 규정을 넣자고 한 데 반해 일본은 수역 단위가 아닌 전체를 뭉뚱그려 과거실적을 반영한 최고치를 정하자고 함.
- ※ 기선획정에 관해서는 동해(영일만, 울산만), 남해(홍도, 상백도)를 기점으로 한다는 데는 의견이 접근하였으나 제주도 주변수역을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 한국은 본토를 포함하여 직선기선을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본토와 분리하여 직선기선을 긋거나 저조선으로 할 것을 주장함.
- ※ 어업협력에 관해 한국은 1억1천만 달러를 정부차관으로 요구하고, 일본은 7천만 달러를 민간신용으로 공여하겠다고 하여 입장이 대립함.

2. 교섭 후반에 양측은 E수역을 포함한 여타 평화선 내 수역을 공동자원조사수역으로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접근시킴.

42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제7차 한·일회담,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V.2 농상회담: 어업관계, 1965.3.3-4.2

| 65-081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동북아주
MF번호	Re-11 / 1 / 1~506(506p)

430

1.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농업장관회담을 중심으로 조업규제의 범위, 제주도 주변수역 기선획정, 위반조업 단속주체와 재판관할, 어업협력 등의 사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여 교섭이 난항함.

- ※ 한국은 각 수역 조업 일본어선 척수, 어업별 어획량을 규정하고 협정에 명기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해, 일본은 수역별로 나누는 대신 전체적으로 척수와 총량만 규정하고 한국어선의 척수도 명시할 것과 이를 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에 포함시키자고 함. 일본은 법적 구속력을 꺼려 협정에 포함시키는데도 난색을 표함.
- ※ 제주도 주변수역 기선획정 문제는 일본이 본토에 포함시키는 획정에 반대하여 한국은 협정에는 기선을 표시하지 않고 외곽선만 표시하는 방향으로 절충을 모색함. 그러나 일본은 제주도 동쪽 수역에서의 전관수역 설정에는 동의하나 서쪽은 불가하다며 맞섬.
- ※ 어업협력에 관해 한국은 어선과 어구 수출금지의 해제, 한국산 수산물 수입제한 철폐와 수입의 확대를 요구함. 일본은 협정타결이 선결이라며 합의를 미루다가 한국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총규모 9천만 달러, 금리 2원화 방안을 제시하고 어선 수출금지 해제, 한국산 수산물 수입(해태)에 동의함.
- ※ 위반조업 단속에 관해 한국은 연안국주의를 주장하고 정선, 확인, 인도를 인정하자고 한 데 비해, 일본은 기국주의를 내세우며 통고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 일본은 “제한적 정선”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
- ※ 공동규제 수역 이외의 평화선 내 수역은 공동자원조사수역으로 설정키로 함.

2. 한국의 차균희 농림장관은 일본의 완강한 입장에 직면하여 교섭전략으로 일단 결렬시킬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계속 교섭하여 타결할 것을 지시함.

3. 결국, 한일 농업장관은 12마일 전관수역 설정, 기선 획정(제주도 수역 제외), 공동규제수역에서의 조업제한(최고 출어척수, 톤수별 척수, 어업별 척수, 어획량), 공동자원조사수역 설정 등 어업협정의 큰 틀에 합의함. 일본은 D수역에서 일본어선의 조업을 막으려는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임.

| 65-082 |

제7차 한·일회담.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V.3 합의사항 초안 및 한국측 요약회의록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1 / 2 / 1~236(236p)

1. 차균희 한국 농림장관과 아카기 무네노리 일본 농수산상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함.

- ※ 한국의 연안기선으로부터 12마일까지를 한국의 어업수역으로 함(어업기선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저조선으로 한다고 규정).
- ※ 어업협정 발효 후 3년 동안 일본어선은 한국 어업수역에서의 조업을 중단함.
- ※ 대마도 저조선으로부터 12마일까지를 일본의 어업수역으로 함.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 이외의 일본연안 기선으로부터 12마일까지 수역을 설정할 권리를 인정함.
- ※ 수역이 중복되는 부분은 등거리로 경계를 정함.
- ※ 단속에 있어 경고와 정선은 안 되고 퇴거요구만 할 수 있음. 재판관할권에는 기국주의를 적용함.
- ※ 협정대상 이외의 수역에는 공해자유의 원칙을 적용함.
- ※ 공동규제수역에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원보존조치를 취함.
- ※ 공동자원조사구역을 설정함(규제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평화선 내 수역).

2. 그 밖에 양국 농업장관은 수역 구분 없이 전체 수역을 대상으로 시기별, 어업종류별, 출어 척수별, 톤 수별로 자주적으로 규제한다는 것과 그 규제 내용의 개요에 의견이 일치했으며 공동위원회 설치와 운영, 어업협력의 내용에도 합의함.

43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제7차 한·일회담,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V.4 1965.4.3 가서명 이후의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1965.4-6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1 / 3 / 1~454(454p)

1. 한일농업장관회담의 합의에 따라 협정 조문을 작성하기 위한 교섭에서 양측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한 끝에 어렵게 타결함.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농업장관간 합의에 대해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하여 한국 정부가 강경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하고 버텨 교섭이 난항을 겪음.

※ 한국은 전관수역에서의 단속과 재판관할권에 연안국주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일본은 이것이 합의위반이라면서 기국주의를 양보하지 않음. 결국 양측은 한국이 제의한 공동승선과 합동순시를 도입키로 하고 타협함.

※ 한국이 연안국은 전관수역을 직선기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은 일방적인 조치로서 합의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적으로 양측은 직선기선은 합의에 의해 설정키로 함.

※ 한국은 출어 척수 등의 확인을 위해 수역별로 감시선을 운영하고 상호 통보하며 어획량 한도(15만 톤)를 상호 지정된 항구에서 현장 확인키로 규정하자고 했으나 일본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반대하다가 나중에 어획량 확인 방법에만 동의함.

※ 한국이 “연안어업규제”를 포함시키자고 한 데 대해 일본은 영세어민 보호를 이유로 거부함.

※ 한국은 협정의 잠정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유효기간 2년, 일방적 통고 1년 후 폐기”로 사실상 3년의 효력을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은 협정을 잠정적인 성격으로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3년 이상을 주장하여 결국 ‘유효기간 5년, 일방적 통고 1년 후 폐기’로 사실상 유효기간 6년에 합의함.

※ 한국이 어업협력의 조기공여, 규모확대, 조건개선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응하지 않음.

※ 연안조업 규제 문제는 협정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함.

2. 시이나 일본 외상은 회담타결을 촉구하는 서한에서 “최종 타결 시까지 독도문제를 해결할 전망을 세우고 싶다”고 했으나 이동원 외무장관은 답신에서 독도를 언급하지 않음.

| 65-084 |

제7차 한·일회담. 1965.4.3. 가서명 이후의 어업문제교섭(1965.4-6) 경위. 전2권 V.1 교섭경위 및 첨부물, 1-15

생산년도	1965
생산과	동북아주
MF번호	Re-11 / 4 / 1~258(258p)

1. 대통령비서실은 1965.5.13. 대통령에게 제출한 지시사항확인보고서에서 제7차 한일회담의 시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 답보상태에 있었던 어업관계 협정문의 조문 작성 작업은 최종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 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되면 기타 분야에 있어서도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것임.
- ※ 최근 시이나 일본 외상은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친서를 보내고 이 조문화 작업의 촉진을 위하여 이 장관의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였고, 기국주의 수정에 대해서는 4.3. 한일 외상간 합의사항의 원칙을 반복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보완에도 응하겠으나 우선 본조문 작성부터 시작하자고 제의함.
- ※ 6.2. 김동조 대사와 시이나 외상의 회담에서는 어업협정의 조문화 작업을 직접 수석대표회담에서 취급하여 6.5.까지 조문화 작업에 결론을 내기로 합의하였으며, 양측 대표가 6.4.~6.간 동경 시외에서 합숙하면서 작업을 끝마친 후 6.7. 타결에 관한 발표를 하도록 합의됨. 이 예정대로만 진행된다면 6월 내에 정식 조인의 가능성은 상당히 확실해지는 것임.

2. 외무부는 한일회담의 각 현안문제가 1965.6.22. 기본조약 및 협정의 조인으로 타결되었으나 교섭과정 중 특히 조인 직전의 최후 단계에 있어서는 시간의 촉박성과 이에 따른 교섭 내용의 급격한 변화 등 사정에 따라 대표단으로부터의 보고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 주일대사에게 마지막 기간 중의 교섭 경위를 작성, 보고토록 1965.7.19.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 ※ 주일대사는 실제교섭을 담당하였던 대표단원의 귀국으로 정리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본부에 비공식 회보를 해 옴. 이에 따라 외무부 본부는 현안문제 교섭을 담당했던 본부의 김정태 외무부이사관이 아르헨티나에 부임하는 기회에 일본에서 1주일간 주일대표부 관계직원과 어업문제, 문화재문제, 및 분쟁처리문제에 관한 미정리 교섭경위를 작성,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기타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교섭을 담당했던 본부 직원에게 작성을 지시함.

3. 주일대사는 제7차 한일회담과 관련된 양측 간의 1965.4.3. 합의 이후의 어업문제에 관한 교섭 경위에 대한 보고서 및 총 21건의 첨부물을 1965.8.12. 외무부에 제출함.

- ※ 본 문건에는 어업공동위원회에 관한 4.22. 일측 초안에 대한 우리측 초안(4.27.), 한국측 어업협



정안 제안설명 요지(5.4.), 시이나 일본 외상의 이동원 장관 앞 서한(6.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자원의 보존 및 어업협력에 관한 잠정협정안(6.5.), 하코네회담 시 일측이 제시한 희망사항, 한국측의 보완사항, 계속 또는 신규 토의사항(6.7.) 등 15건의 첨부물이 수록되어 있음.



| 65-085 |

제7차 한·일회담. 1965.4.3. 가서명 이후의 어업문제교섭(1965.4-6) 경위. 전2권 V.2 첨부물, 16-21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1 / 5 / 1~393(393p)

1. 외무부는 한일회담의 각 현안문제가 1965.6.22. 기본조약 및 협정의 조인으로 타결되었으나 교섭과정 중 특히 조인 직전의 최후 단계에 있어서는 시간의 촉박성과 이에 따른 교섭 내용의 급격한 변화 등 사정에 따라 대표단으로부터의 보고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 주일대사에게 마지막 기간 중의 교섭 경위를 작성, 보고토록 1965.7.19.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 주일대사는 실제교섭을 담당하였던 대표단원의 귀국으로 정리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본부에 비공식 회보를 해 옴. 이에 따라 외무부 본부는 현안문제 교섭을 담당했던 본부의 김정태 외무부이사관이 아르헨티나에 부임하는 기회에 일본에서 1주일간 주일대표부 관계직원과 어업문제, 문화재문제 및 분쟁처리문제에 관한 미정리 교섭경위를 작성,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기타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교섭을 담당했던 본부 직원에게 작성을 지시함

2. 주일대사는 제7차 한일회담과 관련된 양측간의 1965.4.3. 합의 이후의 어업문제에 관한 교섭 경위에 대한 보고서 및 총 21건의 첨부물을 1965.8.12. 외무부에 제출함.

※ 본 문건에는 한일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2차, 3차, 4차안 및 최종안(6.21.), 하꼬네회담부터 타결시까지 어업협정의 각 문제점에 관한 교섭경위(6.5.~22.) 등 6건의 첨부물이 수록되어 있음.

43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아·아회담. 외상회의 회의록, 제2차. Algiers(알제리) 1965.10.30-11.2

| 65-086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C1-16 / 7 / 1~205(205p)

알제리에서 1965.10.20.~11.2.간 개최된 아·아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외상회의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튀니지 외상은 아·아지역 국가 전부를 초청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란 대표는 튀니지 제의를 지지함.
2. 소말리아 외상은 회의 초청문제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체제의 차이에 관계 없이 아·아지역 국가에 대하여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함.
3. 일본 대표는 한국 초청을 정식 제의하였으며, 필리핀 대표도 한국 초청을 지지함.
4. 터키 대표는 전 아·아지역 국가의 참석을 지지함.
5. 레바논 대표는 정치적·경제적 자유 및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아·아국가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아·아국가가 참석하여야 한다고 발언함.
6. 준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한국 불초청을 결정함. 준비위원회는 알제리 정부가 한국을 불초청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함.

아·아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 V.1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2.7-64.5

| 65-087 |

생산년도	1962-65
생산과	동남아1/아중동
MF번호	C1-16 / 1 / 1~254(254p)

인도네시아 스카르노 대통령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되었던 아프리카-아시아회의(Afro-Asian Conference, 일명 “반둥회의”)에 이어 제2차 반둥회의를 1962.12월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할 준비를 하여 왔다는 정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 회의의 초청 대상국과 토의 의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는바, 그 과정은 아래와 같음.

1. 1955.4.18.~24.간 29개국 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던 반둥회의는 1955.4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아시아 제국회의”에 이어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했던 회의이며 동 회의에는 북한 대표가 참석함.

※ 동 회의에서 반둥10원칙이 채택되어 소위 “반둥 정신”으로 표방되는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 평화공존의 원칙이 강조됨으로써 공산주의, 중립주의 주장에 동조하였으며 그 후 이집트, 가나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도 영향을 끼침.

2.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서 한국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회의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입수하였는바, 동 정보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1962.6월 인도네시아 주재 각국 대사들에게 반둥회의 개최를 위한 각료급 준비회의를 1965.10월~12월 사이에 유엔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이 준비회의에 다수국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교섭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수단, 중국(구 중공) 등은 제 2차 반둥회의 개최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UAR, 인도, 일본, 필리핀, 이란 등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터키,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은 회의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함.

3.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준비회의는 결국 1964.4.11.~1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2개국(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캄보디아, 카메룬, 스리랑카, 중국(구 중공), 이디오피아, 가나, 기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이베리아, 모로코,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탕가니카, 터키, 시리아, UAR)이 참가하여 개최되었으며, 버마 및 일본은 초청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음.

※ 동 준비회의에서 본회의를 1965.3월 아프리카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말레이시아와 소련을 초청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인도가 소련을 초청하자고 한 데 대하여 중국(구 중공)이 강력히 반대하였다 함.

※ 또한, 1965.3.10.부터 개최될 본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13개국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회의에 한국과 북한을 모두 초청하기로 결정함.

아·아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 V.2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4.4-65.3

| 65-088 |

생산년도	1962-65
생산과	동남아1/아중동
MF번호	C1-16 / 2 / 1~356(356p)

438

1. 제2차 아·아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예비회담이 1964.4.10.~15.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2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제2차 아·아회의를 1965.3월 아프리카지역에서 개최하되 구체적 장소는 아프리카 통합기구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경제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 통상회담이 종료하는 대로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65.6.15.~17.간 제네바에서 유엔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국가들과 중국(구 중공) 등 55개국이 참가한 경제장관급 회의가 개최됨.
2. 우리나라는 제네바에서 개최된 아·아 경제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유엔통상장관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며 필요사항을 아·아 회원국 정부에 권고하도록 함.
3. 제2차 아·아회담 개최지는 알제리의 알지어로 선정되었으며 회담 일자는 4.22.로 연기됨.
4. 우리 정부는 1964.4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아회의 예비회담에서 제2차 아·아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4.10월, 12월 및 알제리에서 개최된 알제리 회담 준비회의에서 제2차 아·아회의 피초청국에 한국이 누락되었다는 정부를 입수하고 주카이로총영사관 등을 통하여 동 정보의 사실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말레이 수상에게 한국 초청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등 우리나라 초청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함.

| 65-089 |

아·아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 V.3 회의개최준비 및 참석교섭 상황보고, 1965.4-5

생산년도	1962-65
생산과	동남아1/아중동
MF번호	C1-16 / 3 / 1~340(340p)

1. 알제리의 알지에에서 1965.4월 개최하기로 결정된 제2차 아·아회의(Afro-Asian Conference) 개최를 준비하기 위하여 15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사급 상임준비위원회는 1965.2.8. 회합을 가지고 주최국 정부의 회의준비 일정상 본회의를 6.29.부터 5일간 개최하고 외상회의를 6.24.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함.
2. 1964.4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외상급 예비회담에서 우리나라도 피초청국에 포함되었으나 15개국 (알제리, 캄보디아, 중국(구 중공), 이디오피아, 가나, 기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말라위, 모로코, 파키스탄, 탕가니아, UAR)의 대사로 구성되는 준비위원회가 발송하는 회의 참가 초청장을 우리나라에는 송부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준비위원국 중에 친서방적인 성향을 가진 이란, 인도, 모로코, 터키 주재 대사 및 일본, 미국 등 우방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참가를 위한 초청장을 보내도록 외교교섭을 행함.
3.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던 예비회담에서 제2차 아·아회의 시 토의할 가의제로서 국제정세 검토 및 반동원칙평가, 식민지해방 및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에 대한 투쟁, 인권문제, 세계평화 및 균축문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행사포기, 국제연합강화, 문화협력, 평화공존, 상설사무국 설치 문제 등이었음.
4. 우리나라는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동에서 개최된 제1차 아·아회의가 미소냉전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신생독립국가들이 아·아지역의 단결과 중립적인 평화공존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동 회의 결과가 그 후의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할 때, 제2차 아·아회의에서도 참석국들이 반식민, 반제국주의를 강조하고 한국의 월남파병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이 참석하여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 회의의 참석을 위한 적극적 외교를 전개함.
5. 외무부는 1965.5.30. “제2차 아.아회의의 가의제 분석과 우리의 입장”이라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아·아회의의 경위와 토의될 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등을 제시함.

43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1965

1964

아·아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 6권 V.4 알제리 정변 발발 및 회의개최 연기, 1965.6-7

생산년도	1962-65
생 산 과	동남아1/아중동
MF번호	C1-16 / 4 / 1~511(511p)

1. 제2차 아·아회의의 초청국의 최종 선정은 1965.6.24.부터 개최되는 외상회의에서 합의제 형식 (consensus)으로 결정하기로 함. 한국의 초청문제와 함께 월남, 말레이시아와 소련의 초청문제도 동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음. 소련의 초청에 대하여는 인도가 적극 지지하고 중국(구 중공)이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초청에 대하여는 중국(구 중공), 인도네시아, 북한, 월맹 등이 반대하였음.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 초청될 수 있도록 외교교섭을 함.
2. 1965.6.19. 알제리에서 Boun Védiene 육군장교가 주동이 된 쿠데타가 발생하여 베베라 대통령이 실각되었으나 벤베디 지지세력들은 반혁명운동을 전개하는 상황이 발생함. 중국(구 중공), 인도네시아, 시리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가 혁명정부를 승인하였으나 알제리 내의 국내 소요사태가 지속되어 혁명정부가 제2차 아·아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화되었으며 외상회의에 참석하기로 예정하였던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등은 외상들이 참석하지 않을 뜻을 표명함.
3. 당초 1965.6.24.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외상회의는 혁명과 소요사태로 인하여 6.26. 개최하기로 연기하였다가 외상회의 개최 직전 다수국 대표들이 외상회의를 연기하고 상임준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여 동 회의에서 아·아정상회담을 1965.11.5. 알지에에서 개최하고 외상회의를 동년 10.28. 알지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아·아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 V.5 회의개최연기 및 한국초청문제, 1965.8-11

| 65-091 |

생산년도	1962-65
생산과	동남아1/아중동
MF번호	C1-16 / 5 / 1~309(309p)

1. 당초 1965.6.29.부터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제2차 아·아회의의 참가초청장이 1965.5월부터 발송되기 시작하였으나 한국에는 초청장이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방국을 통하여 알제리 측에 사정을 문의한바 알제리 측은 주영대사관을 통하여 발송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혼선이 야기됨.

※ 우리나라는 초청장을 유도한다는 의미로 참가의사와 대표단 구성을 상임준비위원회 의장에게 송부하였으나 알제리 대표는 한국에 대한 초청장 발송은 월남파병이라는 “새로운 중대사태 발생”으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사실이 알려짐.

2. 프랑스 언론은 아프리카의 16개국 아·아정상회의의 개최일자가 1965.10.21.로 예정되어 있는 OAU 정상회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정상회담을 11월 중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보도함.

3. 중국(구 중공), 인도네시아 등 강경파 국가들은 알제리 정부와 함께 제2차 아·아회의를 예정대로 강행하고자 하였으나 다수 외상들이 연기를 주장하고 특히 통일아랍공화국이 연기하는 쪽으로 태도를 변경하여 외상회의에서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과격파들이 외상회의에서의 열세를 의식하여 6.26. 과격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15개국 상임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아·아회의를 1965.11.5. 알지에서 개최하고 그에 앞서 외상회의를 10.28.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함.

4. 회의 개최 일자가 연기됨으로써 알제리 정부는 60여 개국에 초청장을 새로 발송함.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가 주일한국대사관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알제리 외상이 한국초청 문제와 관련하여 “알제리는 지난 6월의 입장과 동일하며 알제리는 한국이 월남에 파병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아·아회의 참가국의 대다수가 한국참가를 지지할 경우 알제리로서는 이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고 함.

5. 외상회의는 1965.10.28.부터 개최되었으며 10.30. 개최된 외상회의에는 39개국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중국(구 중공)은 외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알제리 정부에 보낸 메시지에서 “소련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3개월 후 아·아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을 수락한다”고 하였다 함. 30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인도는 소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외상회의 참석을 지지하였으며 일본은 한국의 참석을 지지하였다 함. 11.5. 개최된 외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함.

아·아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 V.6 신문기사철

| 65-092 |

생산년도	1962-65
생산과	동남아1/아중동
MF번호	C1-16 / 6 / 1~167(167p)

제2차 아·아회의와 관련한 국내신문과 해외신문 보도내용을 수록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1964.4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차 아·아회의 예비회담에서 1965년 개최될 예정인 아·아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은 데서부터 1965.10월 알제리에서 개최된 외상회의에서 제2차 아·아정상회의 개최를 무기 연기하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음.

박정희 대통령 미국 방문, 1965.5.16-26. 전2권 V.1 기본문서집

| 65-093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구미
MF번호	C-11 / 47 / 1~538(538p)

박정희 대통령은 1965.5.16.~26.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였는바, 동 방문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존슨 대통령 간의 회담 시 토의될 의제를 정하고 방문 후 발표할 공동코뮈니케의 초안을 상호 협의하며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문서들과 방문결과 양측의 코뮈니케와 한일회담 경위와 한일 국교 수립 후 한미관계 발전전망에 관한 각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동 방문 기회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미국 기자클럽에서 행한 연설 내용이 포함된 방문 일정이 수록되어 있음.

1.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한미 양국간 토의의제 교섭

- ✪ 한국은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첫째, 한일간 관계정상화 후 한미관계 발전을 재확인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의 지속성을 확인하고 한국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극동안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며 한국이 북한에 대하여 '힘의 우위'를 확보하며 한국의 안보보장과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재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장기 원조를 공약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둘째, 한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유엔결의에 의거한 통한정책을 재확인하였고, 셋째,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할 것을 희망하였으며 넷째, 미국 농장노무자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다섯째,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책에 관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요망함.

2. 한미 공동성명 문안

- ✪ 미측은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한다"는 문안을 제시하였으나 한국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한국 측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하여 제공되는 자금이 한국에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안을 삽입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1억5천만 불 개발자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라는 문안과 관련하여 한국측은 동 문안의 삭제를 희망하는 내용 등이었는바, 결국 공동성명 5항, 7항, 9항, 11항, 12항 등이 최종 수정되어 전체 14개 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됨.

44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박정희 대통령 미국 방문, 1965.5.16-26. 전2권 V.2 자료집

| 65-094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구미
MF번호	C-11 / 8 / 1~136(136p)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수록한 내용임.

444

1. 김포공항 출발성명
2. 미국 도착성명
3. 워싱턴 시의 열쇠증정식 연설
4. 미 국무장관 주최 오찬연설
5. 미국 존슨 대통령 주최 만찬연설
6. 미국 신문기자 클럽에서의 연설
7. 워싱턴 출발연설
8. 뉴욕 주지사 환영만찬 답사연설
9. 뉴욕 시 열쇠 증정식 연설
10. 극동 상공회의소장 주최 오찬연설
11. 뉴욕 시장 주최 리셉션에서의 연설
12. 한미재단 주최 오찬에서의 연설
13. 체이스맨해튼 은행 총재 주최 만찬에서의 연설
14.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의 연설
15. 피츠버그 시장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
16. 걸프 오일 회사 주최 만찬에서의 연설
17. 케이프 케네디에서의 연설
18.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
19.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최 오찬에서의 연설
20. 로스앤젤레스 시장 주최 만찬에서의 연설

Tsiranana, Philibert 말라가시 대통령 방한초청 추진

| 65-095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C-12 / 9 / 1-67(67p)

1. 정부는 주프랑스대사로부터 마다가스카르(말라가시) 대통령(Tsiranana Philibert) 부처 일행이 1965.11.15.부터 약 1주일간 일본과 중국(구 자유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 대통령의 극동지역 순방 기회에 한국도 방문하게 하여 마다가스카르가 한국에 공관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동 인의 한국 방문 가능성을 탐문하도록 지시함.
2. 마다가스카르는 1962년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주불한국대사가 동 국을 검입 관할하여 왔으며 유엔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등 한국에 우호적인 국가이고 중국(구 중공)이나 북한 등 공산국가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친서방적인 국가인데 주프랑스대사가 동 국을 방문하였을 때나 우리나라 친선사절단의 아프리카 순방 시 동 국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한 사실이 있음.
3. 우리 정부는 주프랑스대사를 통하여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의 극동 지역 순방기회에 한국도 방문하여 줄 것을 초청하였는바, 주프랑스대사는 일본 및 유엔을 검입 관할하고 있는 워싱턴 주재 마다가스카르대사와 면담하고 동 국 대통령의 방한문제를 협의함.
 - ※ 동 대사에 의하면 자국 대통령이 방한 초청에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금번 해외 순방은 일본 방문 후 이탈리아, 그리스을 방문하기로 오래전에 일정이 마련된 것이며 대북 방문도 야간에 일본에 도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비공식 방문으로 1박 체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순방 기회에 한국 방문을 추가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한국 방문은 1966년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함.

44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정일권 국무총리 말레이시아 및 월남 방문 1965.9.27-10.2. 전2권 V.1 말레이시아 방문 및 종합보고

| 65-096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의전/동남아주
MF번호	C-11 / 9 / 1~343(343p)

정일권 국무총리는 1965.9.27.~10.2.간 말레이시아 및 월남을 방문하였는바, 동 방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말레이시아 공식방문: 9.29.~10.2.

※ 공식수행단 일행: 박충훈 상공부장관, 유주영 무임소장관, 강서룡 국방부차관 등 9명

446

※ 주요 일정: 말레이시아 국왕 알현, Rahman 수상과의 회담, 국왕 주최 만찬 참석, 한·말레이시아 문화협정 조인식 입회, 말레이시아 수상 주최 리셉션 및 만찬 참석, 상원 및 하원 의장 예방 등

※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주요 협의 내용

(한·말레이시아 총리 회담)

- 정일권 총리는 Rahman 수상과 1966년 초로 예상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대해 협의 하였으며, 라만 수상은 박 대통령의 방문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할.

- 정 총리는 한국의 월남 파병은 월남뿐 아니라 자유 아시아의 안전을 위하여도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Rahman 수상도 이에 동조함. 또한 정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유엔에서 한국을 지지 하여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Rahman 수상은 이론적으로는 자유중국이 정통적인 중국임을 시인하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중국(구 중공)을 무시할 수 없고 대만(구 자유중국)이 중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언급함.

(한·말레이시아 상공장관 회담)

- 양국간 통상회담의 1966년도 개최, 말레이시아 통상사절단의 방한, 한국 상사의 지점 설치에 대한 편의 제공, 한국 건설업자의 말레이시아 진출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함.

2. 월남 비공식 방문: 9.27.~29.

※ 주요 일정: Thieu 월남 국가 원수 및 Ky 수상 예방, Ky 수상 주최 만찬 참석 등

※ 정 총리는 키 수상에게 양국간의 정치, 외교, 군사 및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자고 제의하였으며, 키 수상은 한국군 파월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면서, 특히 한국의 경제기술 면에서의 지원을 요청함.

※ 박 상공부장관은 월남경제성 장관과 양국간 무역증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



3. 정 총리는 상기 순방 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 하원의장 방한 초청 등 동남아 각국에 대한 초청 외교를 더욱 강화할 것과, 월남 정부를 적극 지원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건의함.

44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정일권 국무총리 말레이시아 및 월남 방문 1965.9.27-10.2. 전2권 V.2 월남방문

| 65-097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의전/동남아주
MF번호	C-11 / 10 / 1~118(118p)

정일권 국무총리는 1965.9.29.~10.21.간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하기 전 9.27.~29.간 월남을 비공식 방문하였는바, 본 문건에는 정 총리 일행의 월남 방문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외무부와 주월대사관 간의 실무협의 전문(방문단 일행 명단 통보, 방문단의 일정 조정, 월남측 주요 인사에 대한 훈장 수여 등 의전 관련), 정 총리의 사이공 도착 성명 등 각종 연설문, 월남측 주요인사의 약력 및 한·월남간 경제관계 등 방문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Tunku Abdul Rahman 말레이시아 수상 방한, 1965.4.28-5.1

| 65-098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의전/동남아주
MF번호	C-12 / 10 / 1~243(243p)

- Rahman 말레이시아 수상은 1965.4.28.~5.1.간 방한하였는바,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4.28. 오전 김포국제공항 도착,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및 국회의장 예방, 서울시장 주최 오찬, 국무총리 주최 만찬
 - 4.29. 국군묘지 참배, 시내 고궁 관광, 말레이시아대사관 방문,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말레이시아 수상 주최 만찬
 - 4.30.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서울대학교), 한·말협회 주최 카테일, 대통령 주최 만찬
 - 5.1. 판문점 시찰, 국무총리 주최 오찬, 기자회견, 일본 향발
- 대만(구 자유중국)의 심 외교부장은 1965.4.14. 대만 주재 우리대사를 초치,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내의 화교문제, A·A회의 문제, 영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유중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주저하고 있을지 모르나, 월남 및 라오스 사태 등에 직면한 말레이시아로서는 반공태세 확립이 시급한 문제이므로 Rahman 수상 방한 시 한국 정부가 동 수상에게 아시아 반공국가의 반공태세 강화와 단결을 강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대만 정부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한국 정부가 대만과 말레이시아와의 정식외교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말레이시아 수상의 방한 시 우리측이 언급할 사항에 대한 면담 건의 자료를 1965.4.28. 작성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Rahman 수상이 대통령 및 총리에게 말레이시아 방문 초청 의사를 표할 경우 우리측도 말레이시아 국왕에 대한 방한 초청 용의를 시사함이 좋을 것임.
 - 한·말 양국은 과거의 대공투쟁 경험에도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한국에 대한 친선정책은 각별한 바 있으므로 양국간 친선유대관계를 적극화할 필요가 있음.
 - 북한 및 인도네시아에 관한 정보를 양국 공관을 통하여 종래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우리의 월남 파병 경위 및 제2차 A·A 회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여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 말레이시아는 1965년 1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인 점을 감안, 그간 유엔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계속 지지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말레이시아는 인종문제가 국내정치문제 중 가장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 대만의 외교관계 수립 희망은 전달하되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말레이시아는 화교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으로 판단하고 있음).

450

4. 본 문건에는 말레이시아 수상 방한 기간 중 양측의 연설문 및 보도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음.

Ky, Nguyen Cao 월남 수상 방한, 1965.11.8-11

| 65-099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의전/동남아주
MF번호	C-12 / 11 / 1~241(241p)

1. 우리 정부는 월남 정부의 제의에 따라 정일권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Ky 수상을 1965.9.16.~20.간의 일정으로 방한 초청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Ky 수상 및 Thieu 국가원수의 외유일정 조정 등으로 인하여 방한이 연기되어 1965.11.8.~11.간 방한함. 동 수상의 일행은 외무, 국방, 내무, 경제 장관 4명 등 공식 수행원과 비공식 수행원 등을 포함하여 총 30명에 달함.

2. Ky 수상의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 11.8. 총리 예방, 서울시 행운의 열쇠 증정, 총리부처 주최 리셉션 및 만찬
- ✿ 11.9. 국립묘지 참배, 국회의장 예방,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주최 오찬, 총리와 회담, 월남 수상 부처 주최 만찬
- ✿ 11.10. 수원 공군기지 시찰, 6군단 시찰, 경제인협회 주최 만찬
- ✿ 11.11. 경인지구 산업시설 시찰, 총리 예방, 기자회견, 이한

3. Ky 수상은 11.9. 청와대 예방 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월남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월남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월남 국민의 깊은 사의를 전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국군의 월남 파병은 같은 아시아 자유우방의 하나로서 도의적 의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은 미국 방문 시 미국지도자들에게 월남에서는 한국전쟁처럼 그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손 안 뗐다는 다짐을 하라고 말했고 그 다짐을 받고 월남 파병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4. 외무부는 정 총리와 Ky 수상 간 회담에 따른 정치경제회담 자료를 작성하였는바, 동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정치관련 자료
월남을 중심으로 한 일반정세, 쿠데타 이후의 인도네시아사태, 양국간 외상회담 개최, 국군파월에 따르는 claim 해결을 위한 협정체결 문제, 주한 월남대사의 조속한 임명 요청 등
- ✿ 경제관련 자료

45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일반 경제정세, 한미월 경제협력, 한월기술 및 경제협력 등

5.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도 외무부와 상공부가 작성한 한월경제회담자료, 국방부가 작성한 한월국방 장관회담자료, 행사별 연설문, 공동성명서, 의전행사평가 등이 수록되어 있음.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 65-100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동북아주
MF번호	Re-12 / 3 / 1~467(467p)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1965년 4차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고 한일외상회담을 함. 제1차 방문은 이 장관이 1965.3.10.~11.간 미국 방문길에 일본을 방문한 비공식 방문이었으며 2차 방문은 미국 방문 후 귀로에 3.23.~4.3.(당초 3.27.까지 방문기간으로 예정되었으나 체일 일정이 연기됨) 공식 방문이었고 3차 방문은 6.20.~24.간 한일간 협정에 서명하기 위한 방문이었으며 4차 방문은 12.12.~15.간 한일간 제협정의 비준을 위한 준비목적이었음.

1. 제1차 방문기간 중 외무부장관은 일본에서 한일무역회담을 주재함.

2. 제2차 방문기간 중 일본의 사토 총리대신 및 일본 천황을 예방하였으며 당초 4차례에 걸쳐 시이나 일본 외상과 한일 외상회담을 하기로 예정하였으나 회담기간이 연장되어 수차례 비공식 외상회담과 9차례 공식 외상회담을 가짐.

※ 당초 한일 양측이 합의한 제2차 외상회담 내용은 1차 외상회담에서 이 장관의 방미 결과 등 일반 국제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 특히 영주권의 부여 범위 문제를 토의하고 대일 청구권문제를 토의하며 2차 외상회담에서는 무역관계를 중심으로 회담을 하고 무역에 관한 공동성명 문안에 합의하고 3차 회담에서는 영주권부여 범위와 대일 청구권문제를 재토의하고 4차 회담에서는 한일회담 전반의 운영방식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1965.3.26. 개최된 3차 외상회담에서 재일한국인의 영주권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은 협정상의 영주권이 부여된 자의 자손에 대한 영주권 및 법적처우는 일본 정부가 법의 정신에 따라 호의적 대우를 할 수 있으나 법적 의무를 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우리측은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수락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권문제는 선박청구권문제와 상업차관에 대한 각각 이견이 있어 양측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됨.

※ 26일 오후 10시부터 27일 오전 5시까지 계속된 양국 외상간의 비공식 회담에서 청구권문제는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일본 외상이 수상 및 관계각료와 협의 후 장관에게 알려주기로 함.

※ 3.27.에도 비공식회담이 진행되어 양측이 합의한 문안이 작성되고 이 문안을 기초로 양측의 수석대표를 포함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문 초안 작성 작업이 시작됨.

4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 청구권의 요지는 일본이 한국에 제공할 무상공여는 총액 3억불 10년간 균등 상환한다는 것과 장기저리차관은 2억불로 하고 10년간 균등공여하며 금리는 3.5%, 상환기간은 7년으로 한다는 내용임.
- 그러나 법적지위문제는 일본 측이 “대한민국의 요청인 (...) 협의한다”의 “협의한다”를 “협의할 수 있다”로 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대립함.

※ 3.28.~29. 비공식 외상회담이 개최된 후 다시 3.30.~31. 공식 외상회담을 거쳐 1965.4.3. 한일 외상회담 공동성명서가 발표됨.

이동원 외무부장관 멕시코 방문, 1965.11.12-17

| 65-101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중미
MF번호	C-11 / 12 / 1~11(11p)

1. 멕시코를 방문한 이동원 외무장관은 멕시코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을 예방하였고, 미주지역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상정과 관련한 전망과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귀로에 일본에 들러 수교비준서 교환문제를 교섭함.
2.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한 외무장관은 방한을 초청하고 원칙적인 수락의사를 들었으며 주한 멕시코 상주공관 설치를 요청하고 검토약속을 받음. 양인은 통상증진 원칙에도 합의함. 외무장관은 그 밖에 국무총리 서리, 상원의장, 외무장관 대리 등의 멕시코 요인과 면담함.
3. 미주지역 공관장회의에서 외무장관은 수출확대 등 경제활동과 문화외교 강화, 북한침투 저지 노력을 당부함.
4. 대통령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외무장관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상정추이를 보고하면서 상정 시에는 공산권이 주한미군, 베트남 참전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펼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함.
5. 방일결과에 관해 외무장관은 한일수교비준서 교환을 위해 일본외상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면서 후속 조치로 대통령담화를 발표할 것을 건의함.

45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이동원 외무부장관 미국 방문, 1965.3.11-17

| 65-102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북미
MF번호	C-12 / 1 / 1~306(306p)

1.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장관은 존슨 대통령, 험프리 부통령, 러스크 국무장관, 맥나마라 국방장관, 번디 국무차관보와 면담하고 양측 관심사항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방미기간 중에 교민행사, 언론접촉, 공관장회의 주재 등의 일정을 가짐.
2.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러스크 국무장관은 한일수교를 평가하고 한국의 베트남 지원에 감사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외무장관이 행정협정체결을 희망한 데 대해서는 성의를 약속함. 또한 국무장관은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 강화계획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에 기대를 표명함. 외무장관이 별도 면담한 번디 국무차관보도 국무장관과 비슷한 언급을 함.
3. 외무장관이 예방한 존슨 대통령은 한미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박 대통령의 방미에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외무장관이 별도 예방한 험프리 부통령은 아프리카외교 강화계획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심창환 대만(구 자유중국) 외교부장 방한계획, 1965

| 65-103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의전
MF번호	C-12 / 12 / 1~19(19p)

1. 대만(구 자유중국) 심창환 외교부장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극동에서의 반공태세강화 및 자유진영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초석으로 환영하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3개국간 협조관계를 논의하고 유엔에서의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대만한국대사를 통하여 방한하기를 희망하여 왔음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심 외교부장이 1965.7.12. 호주를 방문하고 8.5.부터 일본을 방문할 계획임에 감안하여 동인의 일본 방문 직후 또는 8.17.을 전후하여 방한을 초청하기로 결정함.
2.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주대만대사는 심 부장에게 방한 초청의 뜻을 전하였던바 심 부장은 금번 해외순방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피하고 다음 기회에 별도로 한국만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함.

45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일본 외상 방한, 1965.2.17-20

| 65-104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Re-13 / 5 / 1~368(368p)

458

1. 한국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회담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이나 일본 외상의 방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일대사를 통하여 1964.10월 시이나 외상의 방한문제를 거론하고 일측의 의사를 타진함.

※ 그러나 시이나 일본 외상은 일정상 1964년 내의 방한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는바, 우리측은 1964.11.23.자 외무부장관 명의의 시이나 외상 앞 서한을 통하여 “한일 양국이 빠른 시일 내에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의 고위직 관리가 방한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요지를 전달하였으며 동 서한에 대하여 시이나 외상은 1964.12.1.자 답신을 통하여 1965년 2월 중순경 방한할 수 있음을 시사함.

2. 시이나 일본 외상은 1965.2.17.~20.간 방한하여 한일 외무장관회담이 2.18.~19. 양일간 개최되었으며 일본 외상은 방한 기회에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등을 예방하고 1965.2.20. 양국 외무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함.

※ 양측 외무장관의 제1차 회담에서는 일본 외상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간 장관관계 마련을 위한 발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일본 외상은 일본이 대중국(구 중공) 정책의 기본원칙, 월남문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 등을 설명함.
- 우리측은 일본의 대 중국(구 중공)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등을 설명함.
-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양측이 강력한 의견대립을 나타내고 기본관계문제에서의 핵심 사항인 한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확인조항 및 구조약 무효확인 조항에 관하여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일본이 호의적인 양보를 요청하였으며 기본관계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양국 국장급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견해를 단축시키는 노력을 하고 결론을 얻지 못하는 부분은 외상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2차 한일회담에서는 선박 문제, 문화재 문제, 어업협력 문제, 무역제한조치 해제문제, 재한일본상사 과세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일본 외무부 소관사항 이외의 문제에 대하여는 일본 외상이 귀국 후 관계 장관과 협의하기로 함.

3. 양국 외무장관 공동성명에 나타난 내용 요지는 양국 외무장관이 한국과 일본과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안이 가조인된 것에 만족 표시, 어업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양국 농상장관회담 개최 희망,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 유지 필요성, 일본 측의 이동원 장관 방일 초청 등임.

Murumbi, Joseph 케냐 외무장관 방한초청계획

| 65-105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C-13 / 2 / 1-16(16p)

1. 주케냐대사대리는 1965.7.15. Joseph Murumbi 케냐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 참석을 전후하여 일본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며, 경제개발장관과 상공장관도 일본의 차관 또는 투자유치 교섭을 위하여 일본 방문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3부 장관을 동 기회에 한·케냐간 우호 및 교역관계 증진을 위하여 동경·서울 왕복여비 및 4, 5일간의 체류비용 부담으로 방한 초청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65.7.29. 주케냐대사대리가 건의한 케냐 외무장관 일행의 방한 초청을 결정하였으므로 초청 교섭을 추진할 것을 훈령함.
3. 케냐 언론은 1965.8.27. 케냐 외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발표하였다는 서울발 통신을 보도함. 이와 관련, 주케냐대사대리는 아직 교섭 단계에 있는 방한 초청 문제가 보도되어 주재국 외무 당국도 당황하고 있으므로 동 보도 경위를 알려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케냐 외무장관 방한에 관하여 공식발표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주재국 외무당국에 해명할 것을 지시함.
4. 주케냐대사대리는 Murumbi 외무장관에게 금번 보도가 한국 정부로서는 케냐 외무장관의 방한을 희망한다는 입장 표명이 잘못 전달되어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하고, 1965년 중 방한 가능 여부를 타진함. 동 외무장관은 동아프리카 3개국 정상회담, OAU 정상회담, 유엔총회 참석 등 일정으로 65년도 중 방한은 어려우나 1966년 극동 여행 기회에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5. 주케냐대사대리는 케냐 외무장관이 1966.4월 캐나다 방문을 예정하고 있어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한국 정부 여비 부담 조건으로 초청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동 장관의 방한 초청을 선처해 줄 것을 1965.11.24. 외무부에 건의하였는바,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66년도 본부 예산 사정상 동 외상 방한 초청 문제는 금후 동 장관의 형편과 예산사정을 감안하면서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965.12.21. 회시함.

4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Stewart, Michael 영국 외무장관 방한, 1965.10.17-18

| 65-106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구주/의전
MF번호	C-13 / 3 / 1~231(231p)

1. 스튜어트 영국 외무장관이 방한하여 열린 한영 외무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양자간의 통상을 확대하고 경협을 증진한다는 데 합의함. 스튜어트 장관은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와 한-인도 수교를 위한 지원을 약속함. 또한 양측은 베트남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영국이 중국(구 중공)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것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양국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함.
2. 스튜어트 장관의 예방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전쟁 개입을 들어 중국의 유엔가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스튜어트 장관은 현실론을 펴면서 중국의 유엔가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또한 박 대통령은 베트남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스튜어트 장관은 이해를 표명함.
3. 스튜어트 장관이 돌아간 다음 일시귀국에서 돌아온 주한영국대사관 직원은 외무부 관계자에게 스튜어트 장관이 박 대통령이 중국의 유엔가입 문제를 제기한 것을 뜻밖으로 받아들였다고 언급한 것으로 소개함.

친선사절단 수단 및 동부아프리카 순방, 1965.2.26-4.21

| 65-107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의전
MF번호	C-12 / 2 / 1-609(609p)

1. 외무부는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 대한 북한의 침투공작이 1964년 말부터 격화됨에 따라 북한의 동 지역에 대한 진출을 저지하고 제2차 아·아회의 및 제19차 유엔 총회에서의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획득을 기하기 위하여 대아프리카 및 중동 친선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965.2.3. 재가를 받음.
2. 아프리카친선사절단은 동부와 서부의 두 개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부아프리카반은 이수영 대통령특사(전 공보부장관)와 한태영 의원 등 총 6명을 우간다 등 7개국에, 서부아프리카반은 최두선 대통령특사(전 국무총리)와 백선엽 주프랑스대사 및 최영근 의원 등 총 7명을 세네갈 등 9개국에 1965.2.9.~4.21.간 파견함.
3. 동부아프리카 친선사절단은 1965.2.26.~4.21.간 우간다, 말라위, 케냐, 소말리아,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및 수단을 각각 방문, 활동한 후 동 결과에 대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친선사절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각국별 훈령
 - 케냐, 우간다: 수상의 방한 초청 및 수교훈장 수여, 의사 및 농업기술자 파견 등 기술협력 제의, 통상진흥 방안 협의
 - 말라위, 잠비아, 탄자니아, 소말리아: 국교수립 제의, 기술협력 제의
 - 이디오피아: 상주대사관 설치 통보, 기술협력 제의
 - 통일아랍공화국: 우리 정부의 대아랍우호정책 설명, 통상증진 방안 협의
 - 레바논: 국교수립 제의 또는 총영사관 설치 동의 요청
 - ※ 동부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 및 건의
 - 우간다, 케냐 및 이디오피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도 대부분 기권 내지 결석하는 등 철저한 비동맹정책을 단적으로 나타냄.
 -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침투 저지 및 우리의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원조제공, 정치지도자 초청, 상주대사 임명, 아프리카 담당 조직 확대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함.
4. 한태영 의원은 동부아프리카 방문 후 1965.5.5.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귀국 보고 강연회 석상에서



아프리카의 일반정세를 소개함. 이와 관련, 북한은 6.11.자 평양방송을 통하여 한 의원이 아프리카를 암흑세계라고 혹평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국민들을 무식하고 미개한 민족이라고 비난하였다고 중상하였고, 우간다 외무성은 한 의원 발언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해 옴. 김주영 외무차관은 1965.12.9. 우간다외무차관에게 해명서한을 송부, 한 의원이 아프리카 비하발언을 한 바 없으며, 이는 북한의 왜곡 및 날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함.

친선사절단 중동 순방, 1965.2.19-3.8

| 65-108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의전
MF번호	C-12 / 3 / 1-65(65p)

1. 외무부는 중동지역 국가들에 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 북한의 침투 저지 및 제19차 유엔 총회에서의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교섭의 일환으로 최영희 주터키대사를 단장(단원 신정섭 주터키대사관 2등서기관 수행)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을 1965.2.19.~3.8.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요르단에 파견함.

※ 최 대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및 쿠웨이트 원수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함.

2. 외무부는 친선사절단에 시달한 훈령을 통해 방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식시키고 유엔에서의 지지를 교섭할 것을 공통사항으로 훈령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국별 임무를 부여함.

※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잘 국왕의 즉위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축의 전달

※ 쿠웨이트: 외교관계 수립 타진, 차관교섭 및 경제관련 조사

※ 요르단: 항구적인 친선유대강화 도모

3. 친선사절단은 상기 3국 방문 후 동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1965.3.17. 외무부에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엔문제에 대한 지지 및 대한민국의 한반도 내 유일합법정부 인식 문제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은 상당한 지지와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나 쿠웨이트는 깊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임.

※ 요르단 정부는 1965.2.16.~19.간 북한 외무차관 일행이 요르단을 방문한 바 있으나 이는 단순관광객의 자격으로 방문한 것으로 왕과 수상 예방 등 일체의 공식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요르단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북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쿠웨이트 외상은 1965.1월 북한 외상이 카이로에서 개최된 아·아제국 비동맹외상회의 시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어 한국의 국교수립 제의도 수락하기 곤란한 입장이라고 설명함.

46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 ※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잘 국왕은 자국 내에서는 종교관계상 공산주의가 용납되지 않으며 국교가 없는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 친선사절단은 3.5.~8.간 레바논을 비공식 방문하였는바, 레바논 외무성 측은 북한의 압력과 레바논 신정부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이수영 대통령특사 일행의 1965.3월 레바논 방문 희망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그 경위를 설명함.
- 464 ※ (건의사항) 아랍제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과 이로 인한 제반 분규에 비추어 친아랍정책과 친이스라엘 정책을 양립시킬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정책의 확립과 지침이 시급함.

친선사절단 서부아프리카 순방, 1965.2.9-4.5

| 65-109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C-12 / 4 / 1~437(437p)

1. 외무부는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 대한 북한의 침투공작이 1964년 말부터 격화됨에 따라 북한의 동 지역에 대한 진출을 저지하고 제2차 아·아회의 및 제19차 유엔 총회에서의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획득을 기하기 위하여 대아프리카 및 중동 친선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965.2.3. 재가를 받음.
2. 아프리카친선사절단은 동부와 서부의 두 개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부아프리카반은 이수영 대통령특사(전 공보부장관)와 한태영 의원 등 총 6명을 우간다 등 7개국에, 서부아프리카반은 최두선 대통령특사(전 국무총리)와 백선엽 주프랑스대사 및 최영근 의원 등 총 7명을 세네갈 등 9개국에 1965.2.9.~4.21.간 파견함.
3. 서부아프리카 친선사절단은 1965.2.9.~4.5.간 세네갈, 코트디보아, 니제르,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봉, 차드를 각각 방문, 활동한 후 동 결과에 대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아프리카 제국의 일반적 특징) 아프리카 신생제국은 형식상 3권 분립의 민주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일인지배체제 유지, 경제개발을 위한 선진국의 원조획득에 적극적인 노력 경주, 1964년초 프랑스의 중국(구 중공) 승인 및 주은래 수상인 아프리카 친공국가 방문 등으로 인한 중국(구 중공) 및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이 관찰됨.
 - ※ 서부아프리카에 관한 한 현재는 우리나라의 지위가 북한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중국(구 중공) 및 북한의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 침투 기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명분보다는 실익을 추구하려는 경향, 아프리카 내 친공 사상 확대 등으로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우위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 ※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친선사절단이 방문한 9개국 중 세네갈,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은 과거 모두 유엔에서 우리를 지지해 왔으나 최근 우리의 통일문제에 관한 입장이 점차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는바, 앞으로 대아프리카 외교는 단순한 유엔지지 획득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각도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함.

46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 서중부 아프리카에 우리의 외교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코트디보아, 나이지리아 및 콩고 등 최소 3개 국가에 공관 증설
- 아프리카제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거물급 정치지도자에 대한 활발한 초청외교 전개
- 현재까지 대아프리카 외교가 소극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산상의 제약인바, 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



이효상 국회의장 서구 순방, 1965.5.15-

| 65-110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구주
MF번호	C-12 / 6 / 1~7(7p)

1. 이효상 국회의장의 오스트리아, 바티칸 방문에 즈음하여 외무부 본부는 주스위스 대리대사에게 수행을 지시하고 결과보고 등의 임무를 부여함.
2. 대리대사는 국회의장의 오스트리아, 교황청 방문 수행결과와 함께 오스트리아 정세 개요와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약력을 보고함.

46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치바 사부로(千葉三郎) 일본 참의원일행 방한, 1965.2.5-6

| 65-111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
MF번호	C-13 / 4 / 1~28(28p)

1. 일본 자민당 소속의 치바 사부로 참의원 의원은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의 국회의원을 규합하여 가칭 “아시아 자유의원연맹”을 결성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방한함.
2. 베트남전쟁 확대에 즈음하여 반공 성향의 각국 정치인을 결속시키려는 목적의 치바 의원은 국회의장 단, 각 정당 총무,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외무장관 등을 만나고, 집권 공화당으로부터 연맹에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케냐 국회의원 방한

| 65-112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C-13 / 5 / 1~154(154p)

1. 아래와 같은 세 그룹의 케냐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방한을 희망하고 정부가 비동맹 외교 차원에서 초청형식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들은 각기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외무장관에 대한 예방과 언론회견, 산업시찰 등의 일정을 가짐.

✿ 존 오관요 하원의원 등 2명

✿ 로날드 웅갈라 하원의원

✿ 무잉가 초케 상원의장 등 3명

2. 정부는 주케냐 한국대사관의 건의에 따라 이들에게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함.

46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미국 국회의원 방한

| 65-113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C-13 / 6 / 1~88(88p)

1. 클레멘트 자볼로키 민주당 소속 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9명이 극동 순방계획의 일환으로 방한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외무장관과 면담함. 정부는 미국이 제공한 원조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상황을 보기를 원한다는 이들 의원이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점에 착안하여 아래 사항을 알리고 요청하는 기회로 활용코자 함.

- ※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계속
- ※ 베트남 파병과 관련한 한국군 현대화 지원
- ※ 베트남전쟁 수행을 위한 군납기회 확대
- ※ 서방주요국을 중심으로 한국을 위한 경제협력기구 설치 지원

470

2. 미연방 하원에서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리처드 하나 의원이 NGO 초청으로 방한함에 즈음하여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측면지원을 요청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3. 제임스 밴플리트 전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에의 투자를 원하는 미국 실업단을 동행하여 방한함.

| 65-114 |

Ku Cheng-Kang(谷正剛) 대만(구 자유중국)
아시아반공연맹이사장 겸 국민대회비서장
방한, 1965.11.[14-18]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의전
MF번호	C-13 / 7 / 1~9(9p)

1954년 이래 대만(구 중화민국) 총통 비서장이며 아시아 반공연맹이사장인 곡정강(중국어명: 谷正剛 쿠칭강) 씨가 우리나라 국무총리 초청으로 1965.11월 방한할 계획임에 따라 동 인이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을 지원한 공로 등을 감안, 동 인의 방한기간 중 건국공로 훈장을 수여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임.

47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 65-115 |

Issoufou Saidou Djermakoye 니제르 법무장관
방한, 1965.3.17-20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아중동
MF번호	C-13 / 8 / 1~31(31p)

1. 정부는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하던 제르마코예 사이두 니제르 법무장관이 친한 인사임을 고려하여 방한 초청하였으며, 동 인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외무, 법무장관과 면담함.
2. 정부는 유엔외교의 일환으로 전직 유엔주재 니제르 대사였던 사이두 장관을 초청함.

우간다 친선사절단 방한(취소) 1965.4.23-28

| 65-116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C-13 / 9 / 1-85(85p)

1. 우간다의 노동·체신장관(M. Kaleme)을 수석으로 하는 5명의 친선사절단이 유고슬라비아-소련-중국(구 중공)-일본-인도 등을 방문할 계획임이 알려져 주우간다대사는 이들 친선사절단의 아시아 방문기회에 한국도 방문하도록 초청하여 이들이 일본 방문 후 1965.4.23.~28. 방한하도록 합의됨.
2. 방한기간 중 국무총리, 대통령, 서울특별시장, 경제기획원장관, 보사부장관, 국회의장, 상공부장관 등을 예방하고 교육기관, 산업시설 등을 시찰하는 일정을 마련하고 우간다와 한국 간의 유대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계획을 수립함.
3. 우간다는 1963.3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북한과는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으나 우리의 외교노력으로 좌절된 바 있음.
4. 우간다 친선사절단은 소련 방문시 소련과의 공동성명서에서 “소련과 우간다는 월남국민에 대한 미 제국주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1964.12월 조인된 소련과 560만 파운드 차관의 사 용안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5. 이들 사절단이 중국(구 중공)을 방문하고 일본 방문길에 홍콩 기착하면서 사절단장 명의로 우리측에 전문을 보내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4.23. 한국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알려옴.
6. 사절단은 예정보다 늦은 일정인 4.25. 일본에 도착하였으며 주일한국대사는 이들 사절단을 접촉하고 방한 취소의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사절단장은 소련 체재 중 소련으로부터 한국 방문을 단념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러한 압력을 거절하였으며 자신이 방한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여행 일정이 수일간 지연되고 긴급히 귀국하여야 할 사정이 있어 항발하였다고 함.

47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오천석 주멕시코대사 Lopez Arellano Oswaldo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65.6.4-7

| 65-117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구미
MF번호	C-12 / 7 / 1~18(18p)

1. 정부는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에 온두라스를 검임하는 오천석 주멕시코대사를 경축특사로 파견하여 관련행사에 참석케 함.
2. 오 특사는 귀임 후 보내온 보고서에서 대통령을 직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고 군부의 위상도 두드러지게 높은 현실 등 온두라스의 불안한 정국을 소개함.

유재홍 특사 Elisabeth, D. 벨기에 대왕비 장례식 참석, 1965.11.29-12.1

| 65-118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서구1
MF번호	C-12 / 8 / 1~20(20p)

벨기에 왕의 조모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1965.11.23. 서거하여 11.30. 벨기에 국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재홍 주스웨덴대사로 하여금 조문특사로 장례식에 참석(1965.11.29.~12.1.)하도록 함.

47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북한의 대오스트리아 제철·제강 플랜트 (Plant) 차관문제

| 65-119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구주
MF번호	D-3 / 1 / 1~22(22p)

1. 외무부 구미국장은 1965.1.12. Dr. Fritz Hartlemayr 주한오스트리아 겸임대사(동경 상주)가 오스트리아 정부의 명예총영사 임명을 위한 협의 차 내방한 기회에, 동 대사에게 오스트리아 정부가 1960년 북한과의 민간무역협정 체결 및 비엔나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의 설치 합의, 1964년부터 북한에 대한 제강플랜트 수출을 위한 차관교섭 추진 등 대북교류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오스트리아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 그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함.

476

2. 이에 대해 동 대사는 오스트리아 이외에도 미, 영, 불, 서독 등 자유진영의 주요 지도국들도 공산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가 공산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및 산업육성을 위한 돌파구로서 대공산권 무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함.

3. 구미국장은 오스트리아의 중립정책 및 정경분리정책은 이해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과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대오스트리아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주한오스트리아대사로서는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라도 북한의 오스트리아 접근을 저지하는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함.

4. 동 대사는 대북한 제강 plant 수출에 있어서 실제로 finance 면을 담당하는 것은 프랑스로서 오스트리아는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단지 지불보증만을 해왔으나 앞으로 10년 정도의 장기정부지불보증을 할 수 있는 credit system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북한의 콩고 침투

| 65-120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D-3 / 2 / 1~32(32p)

1. 우리 정부는 콩고가 북한의 상주 대사를 접수할 경우 콩고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주콩고대사관을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콩고대사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상주대표 파견 여부와 콩고 정부가 북한 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일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함.
2. 주콩고대사관측은 1965.5.3. 콩고 외무부 사무총장을 방문하고 콩고 정부가 북한대사를 정식으로 접수하게 되면 우리 대사관을 폐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함.
3. 북한의 윤희주 주콩고대사는 1965.5.6. 콩고 수도 브라자빌에 가족을 동행하여 도착하였으며 5.13. 신임장을 제정함.
4. 주콩고대사관은 1965.5. 11. 콩고 외무장관을 대리한 외무성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 정부가 콩고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통보하는 공한을 전달함.

47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북한의 칠레 침투

| 65-121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3 / 3 / 1~14(14p)

주아르헨티나대사가 북한의 문화사절단이 1965.5.5. 칠레를 방문하여 칠레 국회의원 알선으로 칠레 대통령 Frei를 예방한 사실이 있음을 본부에 보고하고 미국에서 청취된 1965.7.3.자 평양방송에서 칠레 정부가 북한의 통상사절단을 접수하여 북한-칠레간 통상을 위한 실무반이 구성될 것이라고 방송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주아르헨티나대사로 하여금 칠레를 방문하여 칠레 정부의 대 북한 접근에 대한 우리의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도록 지시함.

478

1. 칠레 대통령이 북한 문화사절단을 공식적으로 접견하고 북한 통상대표단을 접수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발전 시도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칠레가 UNCURK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만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해 온 사실을 지적함.
2. 우리나라와 칠레 간 문화협정, 친선협회 설립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저의가 정치성을 띤 선전적인 것임을 강조함.
3. 우리나라와의 통상협정 체결은 교역 실적상 현 단계로는 기대하기 어려움.
4.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나 칠레에 상주공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하고 칠레의 주한대사 임명과 UNCURK 대표임명을 독촉함.

중(구 중공) · 소 이념분쟁과 북한의 입장 (정세판단서)

| 65-122 |

생산년도	1962-6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3 / 4 / 1~15(15p)

1. 외무부는 1962.5.5. 전 재외공관에 대하여 '북한외교의 실태'에 대한 집무자료를 발간하기 위하여 북한의 정권 형성과정, 대외기본정책, 외교기구, 중주국관계(대중 · 소와의 제관계), 대동남아 · 구주 등 각 지역과의 외교관계, 대남군사 · 정치관계, 통일방안과 그 진의(제안 및 대책), 기타 참고 사항(북한 정권 조직도표, 조총련 조직도표, 김일성 주요연설문, 조 · 소, 조 · 중 군사동맹조약문 등에 관하여 공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조사 가능한 자료를 6.15.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65.12.20. '중(구 중공) · 소이념분쟁과 북한의 입장' 제하의 정세판단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 (편향된 중립주의) 중소이념분쟁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 태도는 중립적이었으나 1962년 가을 유고, 인도, 쿠바 등 문제를 중심으로 친중적 경향을 띠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 유고문제: 흐루시초프가 유고를 다시 공산권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티토를 회유하고 있던 1962년말, 북한은 중국입장에 영합하여 티토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반역자,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함.
 - 인도문제: 1961.11월 중소국경분쟁이 발발하자 북한은 인도의 지도자를 미제국주의자와 결탁하여 중인국경분쟁을 악의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반동이라고 지칭하는 등 완전히 중국에 편향됨.
 - 쿠바문제: 북한은 쿠바위기에서 완전히 중국입장을 지지하면서, 모든 사회주의국가와 평화에 호국은 미 제국주의자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 (북한의 중국 편향 배경) 흐루시초프적 스탈린 격하운동이 북한에서 일어난다면 김일성 독재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많으나 모택동주의는 김일성체제 강화에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련의 평화공존정책은 대외긴장을 부각하여 정권유지의 이득을 보고 있는 김일성의 이해관계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됨.

- ※ (최근 상황) 중국 편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념분쟁에 관해 양자간의 화해를 위한 국제적 압력을 가하면서 가능한 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는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바, 이와 관련하여 코시킨 소련수상의 1965.2월 평양방문 등 소련에 의한 북한회유정책도 주목됨.

- ※ (전망) 중소이념분쟁과 관련, 북한은 중국 및 소련과의 군사동맹을 북한을 위한 국제적 보호 장치로 이용하면서 중립을 유지하되, 중국의 기본적 입장을 지지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임.

북한의 프랑스 침투

| 65-123 |

생산년도	1958-6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D-3 / 5 / 1~37(37p)

480

1. 이승만 대통령은 1958.7.3. 김용식 주프랑스공사에게 북한·프랑스우호협회 창립 회합이 6.20. 평양에서 개최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홍콩 언론의 기사를 송부하면서, 이와 유사한 협회가 프랑스 내에서 결성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훈령함.

※ 평양발 보도 기사에 의하면, 평양에서 6.20. 개최된 북한·프랑스우호협회 창립회합 시 1,600명이 참석하여 북한기자연합의 현필훈 의장을 동 협회의 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동 회합에는 프랑스 L'Humanite지의 Raymond Lavign 편집부국장이 인솔하는 프랑스 기자단 일행도 참석했다고 함.

2. 외무부 구미국 구주과는 1965.10월 '북한의 대구주 제국에 대한 외교 및 경제적 침투 현황 분석 및 건의' 제하의 자료를 작성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종합판단) 북한은 아프리카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EEC의 핵심국가이며 중국(구 중공)을 승인한 프랑스에 대하여 정치적인 진출을 기도하면서, 중립국인 오스트리아 및 핀란드에 대하여 무역대표부 설치를 통한 정치적 진출을 획책하는 한편, 자유진영 제국에 대해서는 민간 무역을 촉진하고 있음.

- 북한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대시되는 것은 프랑스에 대한 정치적인 침투임. 만일 프랑스가 작년 중국을 승인하던 때와 같이 갑자기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게 되면, 그 반응은 곧 구주 중립국은 물론 EEC제국(서독 제외) 및 A·A제국에 미쳐 우리의 안전보장과 외교정책에 지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임.

※ (건의) 상기와 같은 정세판단에 의거하여 대프랑스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초청외교, 민간경제교류 촉진, 한·프랑스문화협정체결 촉진 등 문화교류 추진과 핀란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현상 유지 외교의 전개를 건의함.

3. 상기 구주과의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정보문화국 정보과는 프랑스·북한간의 민간무역협정 체결설, 주프랑스 북한무역대표부 설치문제, 북한 무역개발위원회 부위원장 방불(1964.12월) 동향, 북한 예술단의 파리 공연(1965.4월 예정), 프랑스 정부의 북한 승인정책 관련 주프랑스대사 보고 등 참고 자료를 구주과에 송부함.

북한의 인도네시아 침투

| 65-124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남아주
MF번호	D-3 / 6 / 1~7(7p)

1. 주일대표부 방희 공사가 외무부의 훈령에 따라 1965.5.30. 주일 인도네시아대사관 Ubani 공사를 방문,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입장을 문의하였는바, 동 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서울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총영사관 설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비공식으로 타진해 옴. 한편, Ubani 공사는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이미 자카르타 및 평양에 각각 총영사관을 두고 있으나 양측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으므로 대사 교환도 시행될 것이라고 부언함.

※ 주일대표부는 인도네시아측의 이와 같은 입장으로 보아 북한과는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는 총영사관을 교환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2. 주필리핀대사는 주재국 외무성의 Lopez 대사가 자카르타를 방문, 인도네시아 외상과 면담하고 귀국한 직후인 6.1. 동 인을 방문, 인도네시아와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복 요청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정부측 반응을 문의함. 이에 대해 Lopez 대사는 스반드리오 인도네시아 외상에게 한국측 요청대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반복토록 요청하였으나, 동 외상은 말레이시아 분쇄정책 채택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던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중국(구 중공)과 북한이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표명하기에 그것을 받아들일게 된 것으로 북한과의 대사관 교환 결정은 본의는 아니지만 반복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한국과의 영사관 교환은 좋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함.

※ Lopez 대사는 주필리핀대사에게 우선 총영사관을 개설하여 발판을 만들고 통상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인도네시아와 북한 간의 외교관계 단절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48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북한의 일본 침투

| 65-125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D-3 / 7 / 1~6(p)

1. 조총련은 조총련계 교포들에게 자유로운 북한 왕래를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에 그러한 취지로 진정함.
2. 그러나 일본 정부(법무성)는 자유왕래 불가라는 기존방침을 고수함.

북한의 우루과이 침투

| 65-126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D-3 / 8 / 1~68(68p)

1. 배의환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65.4.27. 주재국 외무성의 라모스 차관보를 방문, 문화협정 체결, 아르헨티나 민간통상사절단 방한 문제 등 양국간의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북한이나 중국(구 중공)이 통상 또는 문화교류의 미명 하에 남미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특히 우루과이에는 현재 북한의 소위 통상사절 5명이 체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상거래 없이 북한의 선전과 공산주의 침투공작을 하고 있으므로 우루과이에 대해 경제적 영향력이 큰 아르헨티나가 북한 축출에 대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상기 북한 통상사절단은 1964.9월 몬테비데오에 파견되어 매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면서 체류함.

2. 라모스 차관보는 남미 국가들도 공산주의자들로 인하여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이 직접 중대한 치안문제로 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루과이는 연립정부에서 오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반공에 관한 일관된 정책의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한국측의 요청을 참작하여 북한 통상사절단의 축출의 필요성을 아르헨티나정부의 견해로서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함.

3. 배의환 대사는 1965.12.17. 외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루과이 집정위원회의가 노동파업 대책으로 소련과의 단교와 공산당계 노조 간부의 국외추방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되는 등 우루과이의 정치 및 경제정세가 유동적이어서 북한축출 노력을 위한 기회로 판단되므로 우루과이 출장을 허가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바, 외무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시기에 우루과이 출장을 행하도록 1965.12.23. 지시함.

4. 배의환 대사는 1966.1.10.~15.간 우루과이에 출장, 집정위원회 야의원 6명, 외무장관, 내무장관 등 주요 지도자들을 면담, 본부의 훈령에 따라 제20차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입장 지지에 대한 사의를 표하는 한편, 소위 북한통상사절단의 축출과 현안 중인 문화 및 통상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하여 교섭함.

※ 우루과이 내무장관은 북한통상사절단이 관광사증의 기한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지위 또는 외교특권 및 면제를 보유하고 있는지 외무성에 문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외무장관은 합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북한에 대한 국외퇴거를 명령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함.

48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1965

1964

한국의 대월남 군사원조

| 65-127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동남아주
MF번호	Re-18 / 11 / 1~407(407p)

484

1. 미국과 베트남은 비전투부대(공병, 수송, 의무 등) → 비전투부대 경비병력 → 전투부대 순으로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여 실현됨.
2. 정부는 국제여론과 베트남전쟁의 확산 추이를 우려하면서도 파병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요청에 따라 전투사단까지 파견하되 아래와 같은 실리를 추구기로 함.
 - ※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의 이관 중지
 - ※ 베트남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 용역 조달기회 확대
(특히 정부는 베트남전쟁에 기여하지 않는 일본이 누리는 대규모 조달기회를 의식)
 - ※ 한국군의 현대화 지원
 - ※ 베트남에 대한 경제 진출 확대 뒷받침
3. 미국은 한국이 전투사단 파견을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대가를 공여기로 함.
 - ※ 기존 군사원조의 지속
 - ※ 3개 예비사단 창설을 위한 추가지원
 - ※ 전투부대(17개 육군사단, 1개 해병사단)의 현대화
 - ※ 파견병력을 위한 급여와 후생 제공
 - ※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용역 조달기회 확대
4. 전투사단 파견을 결정한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주요 국가에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유엔외교에서 초래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동맹·중립 국가들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기로 함.
5. 주요 우방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프랑스가 한국의 전투병력 파견에 비판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유엔에서의 한국지지 결의안 공동제안에서 빠지기로 함. 프랑스는 “베트남 문제는 제네바협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드골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한국의 파병이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며 문제를 삼음.

주한미군 감축관계 발언

| 65-128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북미2
MF번호	G-3 / 2 / 1~7(7p)

국방부 장우주 소장이 1965.1월 미국을 방문하여 미 국방부 및 의회인사, 주미월남대사 등을 면담하고 주한미군 감축저지 및 미국의 대한 군원 증액 문제 등을 협의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Peter Sobert 미 국방성 부차관보 면담내용(1.11.)

- ☛ 부차관보는 주한미군 문제는 유동적인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까운 장래에는 주한미군 감축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65년도 회계연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원이 과도하게 삭감되었으나 66회계연도에는 증액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한 군원의 기본방향은 부대유지에 중점을 두고 항공기 증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하였으며 군원 이관 총액 3,730만불은 변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함. 우리나라 국방장관의 미국 맥나마라 국방장관 방한 초청의사는 본인에게 전달되었으며 국방장관이 방한초청을 기뻐할 것이라고 함.

2. Hugh Scott 상원의원 면담내용(1.9.)

- ☛ Scott 의원 자신이 존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하고 주한미군 해병사령관을 지낸 바 있는 미 해군성 Alford 제독을 방문하여 한국해군 증강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태평양지역 지상군 사령관에게 대한 군원 증가에 대하여 강력히 요청하였다 함.

3. Bray 미 국방위원 면담내용(1.12.)

- ☛ Bray 국방위원은 주한미군 감소는 부당하다고 하고 대한 군사원조의 증가에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함.

4. John M. Murphy 미 의원 예방내용(1.13.)

- ☛ 주한미군 감소의 부당성을 존슨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고 함.

5. 미 국방성 극동국장 Bioun 제독과 오찬 시 언급내용(1.13.)

- ☛ 동석하였던 Hamilton 극동국장 보좌관은 한국에 있는 잉여물자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 하고 군원 이관 중단은 불가능할 것이나 한국의 경제실정을 참작하여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언질을 줌.

주한터키군 철수문제

| 65-129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구주
MF번호	G-3 / 3 / 1~23(23p)

1. 터키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재정상황의 악화와 함께 키프로스 문제를 둘러싸고 터키와 그리스가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문제 삼아 한국주둔 터키군 철수를 주장하였으며 터키정부 내에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2. 정부는 유엔군 구성이 미군 외에는 터키군과 태국군 각 1개 중대밖에 없어 터키군이 철수하는 경우 그 상징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속 주둔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함.
3. 일부 터키 언론은 한국이 전투 병력을 베트남에 파견한 사실을 들어 이는 한국이 자위능력에 자신이 있음을 뜻한다면 터키군의 한국주둔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유엔총회, 제19차. New York, 1964.12.21-65.2.18. 전4권 V.1 기본대책, 1963.12-64.7

| 65-130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 / 1 / 1~291(291p)

1. 외무부가 1964.7.8. 개최된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한 '제19차 유엔 총회 대책과 그 현황' 제하의 브리핑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9차 총회 개최 연기

- 유엔 사무총장은 6.10. 제19차 총회의 개최를 11.10.로 연기할 것을 각 회원국에 정식 통고하였는바, 표면상 연기 이유는 10월 카이로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비동맹국 정상회담 참석 20개국의 요청을 들고 있으나 프랑스의 중국(구 중공) 승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대만(구 자유중국) 대표권 문제, 소련을 위시한 일부 국가의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경비분담 거부 및 분담금 체납국에 대한 투표권 박탈 문제 등으로 예상되는 격론을 11.3.의 미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데 그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제19차 총회에서 한국문제와 관련한 정세 판단

- 총회 개최 시기 연기로 12월 초에 토의되던 한국문제는 1965년 2월 중 토의될 것으로 관망됨.
 - 프랑스의 중국 승인을 계기로 촉진된 대만 대표권문제의 결단은 한국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한 동시 초청의 기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전 불령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 중 일부 국가가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농후함.
 - 북한은 사절단 파견을 통하여 아·아블록에 대한 침투공작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두 개의 한국'을 기정사실로 인정케 하는 등 기만적 주장에 대한 지지를 규합하여 그 여세를 제19차 총회까지 밀고 나가려는 책동을 보임.
 - 현재까지의 정세로 보아 최소한 제19차 총회에서 득표수의 상대적 감소는 예상되나 기본적인 득표 안정선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는 않을 것으로 관측됨.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동과 유엔 세력구조의 변화로 한국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노선의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요망됨.

☛ 제19차 총회에 대한 기본방침

- 제19차 유엔 총회에서도 종전과 같이 한국문제를 상정 토의토록 함.
 - 제18차 총회까지 재확인되어 온 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토착인구에 비례하는 자유선거 실시 등의 기본원칙을 관철시키며, 대표 초청 문제는 북한의 참석을 계속 방지하고 한국대표 참가 방식을 유지함.

2.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도 주유엔대표부가 본부에 보고한 한국문제 자동적 연례토의에 대한 영연방 제국의 동향(1964.1.10.) 및 제19차 유엔총회 시 한국문제 대책 수립에 관한 건의(1964.1.13. / 4.1.), 외



무부가 주유엔대표부에 시달한 제19차 유엔총회를 위한 예비적 정세판단과 제1차 대책(안)(1964.3.9)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유엔총회, 제19차. New York, 1964.12.21-65.2.18. 전4권 V.2 기본대책 및 훈령, 1964.8-65.3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 / 2 / 1-418(418p)

1. 외무부 방교국이 대통령 연두순시를 위한 주요사업계획 브리핑 보고 자료로서 1965.1.20. 작성한 제19차 유엔 총회 및 제20차 유엔 총회 대책과 건의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엔 총회 대책

- 1964.12.1. 개최된 제19차 유엔 총회는 유엔평화유지군 경비 체납과 현장 제19조(총회에서의 투표권 박탈) 적용문제에 관한 미소간의 대립으로 정상적인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
- 1965.1.18. 속개된 총회에서 미소간의 타협이 이루어져 총회 운영이 정상화되느냐에 따라 한국 문제의 상정 토의 시기와 그 전망의 윤곽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나, 현 상태는 극히 유동적임.
- 외무부는 한국문제가 상정 토의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누차 천명된 정부의 기본 통일정책과 유엔대책에 따라 우방제국의 협조를 얻어 광범한 외교활동을 전개 중임.
- 한편 제19차 유엔 총회와 아울러 1965.9.21. 개최 예정인 제20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일반국제정세와 유엔 내의 세력구조 변동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임.

✿ 건의사항

- 1947년 제2차 유엔총회에 한국문제가 제기된 이후 1963년의 제18차 총회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온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의 기본노선은 이제 국제정세와 유엔 내의 세력구조 변동에 따라 종래의 노선대로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시점에 처함.
- 정부로서는 누차 천명된 기본 통일정책을 견지하면서도 이를 수행하는 유엔 대책에 있어서는 변동하는 유엔 내외의 정세에 대응하여 신축성 있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1965.2.16. 담화를 발표, 제19차 유엔 총회가 소련 등 일부 회원국의 유엔평화유지비 분담금 지불 거부로 야기된 재정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한국문제 등 중요안건들을 토의하지 못한 채 휴회케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나 제18차 총회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채택되어 온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확고한 입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 주한유엔군은 유엔 결의에 의하여 수입된 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명함.

3.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도 외무부 방교국이 작성한 제19차 유엔 총회의 한국문제 상정 토의와 특히 한국문제의 자동상정방식 재검토안에 대한 기본방침과 예비교섭 지침(1964.8.4.), 제19차 유엔총회 기본대책에 관한 주요참전국과의 교섭현황(10.30.), 중앙정보부의 제19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토의에 관한 전망과 대책(9.19.), 국제문제연구소의 유엔회원국의 한국문제에 대한 태도(12.7.) 등 자료와 외무부 본부와 주유엔대표부 등 주요 공관간의 유엔 총회 대책과 관련된 전문 및 공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유엔총회, 제19차, New York, 1964.12.21-65.2.18. 전4권 V.3 국가별 지지교섭, 1964.7-65.2

| 65-132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국제연합
MF번호	H-6 / 3 / 1~495(495p)

490

1. 외무부는 1964.9.4. 주유엔대사에게 제19차 유엔 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임할 정부의 기본 방침 (Principal Guidance Line on the Korean Question at the 19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을 시달하면서, 동 방침은 전차 총회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며 특히 통한 방안으로는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의 계속을 주장하는 것과 북한의 제1위원회 한국문제 토의 참석을 적극 지지하는 것인바, 동 지침에 따라 지지 교섭을 하고 동 결과를 본부에 수시 제출할 것을 지시함.

✻ 교섭대상국 30개국을 계속 지지 확보 교섭을 하는 제1군 국가, 제18차 총회에서 태도가 변경된 국가, 지지하였으나 그 이후 지지가 유동적인 국가, 혹은 앞으로의 태도가 주목되거나 우리에게 불리한 책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중립국가 등의 제2군 및 제3군으로 분류하여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제1군 국가: 캐나다, 남아프리카, 키프로스,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등 18개국
- 제2군 국가(유엔대표부 주관하의 특수교섭대상국): 튀니지, 기니 등 5개국
- 제3군 국가(타공관 주관하의 특수교섭대상국):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등 7개국

2. 외무부는 1964.9월 제19차 유엔 총회에 대비하여 상기 유엔 이외에도 미국, 영국, 일본, 케냐, 스위스,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구 자유중국), 필리핀, 아르헨티나,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모로코, 호주, 우간다, 브라질, 터키, 프랑스, 콩고 주재 19개 대사관과 카이로, 프놈펜, 랑군, 뉴델리 주재 4개 총영사관에 주재국 및 검임국(총 91개국)에 대해 국가별 분류에 상응하는 지지 교섭을 할 것을 훈령함.

3. 1964.12.14. 현재 제19차 유엔 총회에 대비하여 각 재외공관이 교섭한 결과 한국문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 획득이 곤란 또는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된 국가는 콩고, 중앙아프리카, 모리타니, 카메룬, 니제르, 토고, 캄보디아, 세네갈, 우간다, 베냉, 버마 등 11개국임.

4. 본 문건에는 외무부 본부가 제19차 유엔 총회 대책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에 시달한 정부의 기본 방침 및 교섭 지시 문서, 각 재외공관이 주재국 또는 검임국과 교섭한 결과를 보고한 전문 및 공문, 외무부가 교섭 현황을 종합한 각국별 입장 분석표 등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유엔총회, 제19차, New York, 1964.12.21-65.2.18. 전4권 V.4 대표단 구성 및 보고서, 1964.9-65.5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6 / 4 / 1~267(267p)

1. 우리 정부는 1964.12.1. 개최된 제19차 유엔 총회에 이동원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 김용식 주유엔대사를 교체수석대표, 김현철 주미대사, 김동환 국회 외무위원장, 정일형 국회의원 등을 단원으로 하는 총 26명의 한국대표단을 파견하였는바, 주유엔대표부가 1965.4.28. 외무부에 제출한 동 대표단의 활동에 대한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9차 총회의 일반적 정세

- 정부는 제19차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를 계속 상정, 토의한다는 방침 하에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지위와 유엔을 통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재천명하는 한편, 종전과 같이 총회가 압도적인 다수 지지로 유엔의 통한 방침을 확인하고 언커크 및 유엔군의 계속 존치를 승인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함.
- 그러나 급차 총회는 소위 재정문제를 둘러싼 미소간의 분규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된 채 휴회를 거듭하던 끝에 대부분의 중요 안건을 제20차 총회 시까지 연기키로 하고 1965.2.28. 장기휴회에 들어가 한국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토의를 하지 못함.

※ 한국대표단의 활동상황

- 대표단은 외무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한국문제 토의에 대비한 현지 교섭 결과에 기초하여 서구, 미주, 중남미제국 기타 아시아지역의 고정 지지표를 확보하는 한편, 아·아시아 지역 중립국의 유동표를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함.
- 총회 기간을 통하여 미국 대표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했으며 한국문제 토의에 관한 전략적 합의와 정보교환을 함.

※ 한국문제에 대한 각국의 태도

- 1964.10.5.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2차 비동맹중립국 정상회담 이래 한국문제는 동독문제나 월남 통일문제와 더불어 분단국가의 문제로서 고려되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총회 개막시 케손사키 총회의장이 동독문제를 유엔의 테두리에서 토의하지는 비공식 제안을 계기로 한국문제도 적지 않은 회원국의 관심을 끌.

※ 건의

-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및 북한의 진출 저지를 위한 대아프리카 외교강화와 특사 파견, 아랍제국과의 접근, 중남미제국과의 유대강화, 아·아회의에의 참여, 외교활동을 위한 예산의 적기 영달을 건의함.



2. 본 문건에는 상기 보고서 이외에도 우리 대표단 파견에 따르는 실무적인 준비를 하기 위한 각종 자료 및 문서, 제19차 유엔 총회와 관련된 국내 언론의 보도기사 등이 수록되어 있음.

유엔총회, 제20차, New York, 1965.9.21-12.21. 전3권 V.1 예비교섭 및 활동보고 I, 1965.6-11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7 / 1 / 2~329(328p)

1. 제20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외무부는 한국문제 상정, 한국대표만의 단독초청, 한국입장을 담은 통일문제 관련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정하고 공산권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키로 함.

✪ 통일문제 관련 결의안에는 종래와 같이 민주체제하의 통일, 인구비례 자유선거 실시, 본래의 목적 달성 시까지의 유엔군 계속 주둔, “외국군 철수론”에의 반론(“유엔결의에 의한 파견”이라는 사실 부각) 등을 포함시키기로 함.

2. 외무부는 이를 위한 외교교섭을 총회에 앞선 예비단계와 총회단계로 이원화하여 시행하였으며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의 공조에 있어서는 기본대책협의와 지지교섭을 동시에 진행시킴. 또한 각국과의 교섭을 위한 훈령은 지역별(아시아 그룹, 아프리카 그룹 등), 그룹별(예: 비동맹 그룹 등)로 나누어 그 특성을 반영하고 각국의 여건과 입장도 고려한 차별화를 시도함.

3. 공조를 추구한 주요 우방국 가운데 어려움이 초래된 것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에 비판적인 프랑스였으며, 특히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대책을 위해 프랑스의 지원을 얻기 위해 고심함.

4. 총회에 참석한 이동원 외무장관은 각국 대표를 유럽, 중남미 등 지역별로 묶어 접촉하고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한국전쟁참전 16개국 대표들과도 별도로 회동함. 이 장관은 공산권이 제기할지 모를 남북한 동시초청의 방지에 힘을 기울임.

유엔총회, 제20차, New York, 1965.9.21-12.21. 전3권 V.2 활동보고 II, 1965.12

| 65-135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H-7 / 2 / 1~302(302p)

494

1. 한국문제를 총회에 상정하는 첫 단계인 제1운영위원회는 의장을 공산국가인 헝가리 대표가 맡은 사실도 작용하여 한국으로서 불리한 “내정불간섭”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12개 제안 사항 가운데 한국문제를 10번째로 미루며 토의를 지연시켜 곤란이 초래됨.
 - ※ 한국으로서는 참전 16개국이 참가한 공동 제안국 가운데 프랑스에 이어 그리스도 이탈하여 어려움이 더했음. 그리스는 키프로스 문제로 침례하게 대립하는 터키와 함께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수 없으면서 빠졌음.
2. 미국은 이처럼 상황이 어려워진 사실과 시간적인 제약을 들면서 한국대표 단독 초청안은 포기하고 한국입장을 반영한 통일문제관련 결의안의 채택만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부는 양 사안을 동시에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3. 결국 정부의 노력과 우방국들의 지원으로 한국의 당초 목표가 아래와 같이 달성됨.
 - ※ 한국대표 단독 초청안은 찬성 55, 반대 21, 기권 14로 가결
 - ※ 남북한대표 동시 초청안은 찬성 28, 반대 39, 기권 22로 부결
 - ※ 한국입장을 반영한 통일문제관련 결의안은 찬성 61, 반대 13, 기권 34로 가결
4. 총회에 참석한 양달승 대통령 정무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위의 결과를 얻기까지 한국 문제 처리에서 초래된 어려움은 총회에 앞서 이동원 외무장관이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한국문제 자동 상정 재고”를 말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함.
 - ※ 양 비서관은 외무부가 한일수교에만 매달려 유엔외교에 소홀했다는 주장도 함.

유엔총회, 제20차. New York, 1965.9.21-12.21. 전3권 V.3 총회대책 및 결과보고

| 65-136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국제연합
MF번호	H-7 / 3 / 1-423(423p)

1. 유엔총회를 앞두고 외무부는 유엔동향, 국제정세, 북한입장 등을 고려하여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다음, 표결 전망을 기초로 거점공관을 정하고 국별 지지교섭에 나섰으며, 최종단계로 총회 개최에 즈음하여 외무장관이 현지에서 활동함.

※ 거점공관은 지역단위, 식민지시대의 종주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가군을 분류하고 유엔,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터키, 아르헨티나, 스웨덴 등 주재 공관 9개를 지정함.

※ 외무부의 종합대책 수립에 즈음하여 중앙정보부는 북한당국의 성명, 김일성의 연설과 발언 등을 분석하여 적화통일과 주한미군철수 목표가 불변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함.

2. 한국문제 처리 결과에 대해 국내언론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단독 초청 찬성국가가 전체의 과반에 미달하는 등 지지국가가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제정세를 고려한 정책의 유연성을 주문함.

3. 기타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대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와 움직임이 있었음.

※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유엔대책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함(법제화).

※ 유엔대책 공조를 위한 방안으로 한미실무위원회 설치를 검토함.

※ 대통령비서실은 한국 외교관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없다면 유엔대표단을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49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유엔에서의 중국(구 중공)대표권 문제와 한국문제

| 65-137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국제연합
MF번호	H-7 / 4 / 1~181(181p)

1. 1965년 프랑스가 중국(구 중공)을 승인함에 따라 외무부는 이것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처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아래와 같이 각국 입장을 파악하고 대책을 검토함.

※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등 비동맹 중립국과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유엔정책 추이, 중국의 대표권에 대한 입장을 조사함.

496

※ 유엔에서의 중국문제 처리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것이 한국문제 처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각국 평가를 확인함.

※ 그 결과에 기초하여 외무부는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자라는 위치도 있어 북한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이며, 이 경우 한국문제를 종래와 같이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2. 그러나 중국을 위한 유엔가입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외무부는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함.

3. 이에 즈음하여 국내언론은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 가입문제를 2/3 찬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규정한 사실을 들며 국제정세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프랑스의 승인과 중국의 핵실험 성공이 있다고 분석함.

납북인사 송환 백만인 서명진정서 유엔 제출

| 65-138 |

생산년도 | 1964-65

생 산 과 | 국제연합

MF번호 | H-7 / 5 / 1~95(95p)

1. 조선일보사는 납북인사 7천여 명의 송환을 요구하는 “백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유엔에의 진정을 추진함. 이 문제는 아래와 같이 다루어짐.

✪ 조선일보사의 의뢰에 따라 외무부가 처리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주유엔대사는 한국 문제 처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들면서 국제적십자사 등 “유엔의 틀 바깥”에서 다룰 것을 건의함.

✪ 외무부가 유엔진정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미국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 이에 따라 방우영 조선일보사장이 직접 유엔본부를 방문하고 진정서를 전달함.

✪ 그러나 제1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이것을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음.

2. 북한은 조선일보사의 캠페인과 관련하여 “납북인사”의 존재를 부인하고 남북 자유왕래를 주장함.

3. 박정희 대통령은 “백만명 서명” 완료에 즈음하여 조선일보사장에게 감사서한을 보냄.

49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ECAFE 공업화에 관한 아시아회의. Manila, 1965.12.6-20

| 65-139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I-13 / 1 / 1~147(147p)

1. 유엔의 하부조직인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위원회(ECAFE)가 주관하는 “아시아의 공업화를 위한 회의”가 1964.12.6.~20.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에카페 사무국이 요청한 전문가단 회의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고 동 회의에 참석할 우리나라 대표단을 구성함.
2. 우리 대표단은 상공부 공업제일국장인 오윤철을 대표로 하고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경제조사과장 손원일을 교체대표로 함.
3. 회의 참여시 준수할 훈령은 아래 요지임.

498

- ※ 기본 방침으로서 에카페 지역내 각국의 장기개발계획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업화의 기본전략이 우리나라 개발방향에 부응하여 수립되도록 하며 동 회의 결과가 1965년 설립 예정인 아시아개발은행의 융자기준으로 원용될 것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가 동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도록 할 것.
- ※ 세부방침으로서 지역내 각국의 공업화의 현황을 분석, 보고하는 한편, 각국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것, 우리나라가 곧 필요로 하는 산업의 개발을 강조하고 자원조달 관련하여 전문가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국의 협력을 촉구할 것, 개발계획수립 및 집행기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구에 대한 원조와 활용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것,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하여 미개발 상태에 있는 분야에서의 국제금융기구의 원조 증가 필요성 강조 등임. 또한 세계 심포지엄 의제와 관련하여 저개발국이 공동보조를 취하여 선진국에 대항하도록 함.

WFP-IGC(세계식량계획 정부간위원회) 제7-8차, Rome

| 65-140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2 / 1~68(68p)

세계식량계획(WFP)의 정부간 회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제6차 WFP정부간 회의(1964.12.7.~14.)기간 중 우리나라 대표는 우리나라의 미면 간척사업과 창포 간척사업의 승인을 WFP에 요청하였는바, WFP측은 우리나라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유엔전문기구에 회부 중에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1964.11.25.일자로 WFP서울 상주대표에게 통보한 바 있다고 알려줌.
2. 우리나라는 세계식량기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7차 WFP정부간 회의가 1965.3.31.~4.14.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는 1965.2.19.일자 공한을 접수하고 동 회의에 참석할 우리나라 대표단을 주이탈리아대사관 및 주미대사관 직원으로 구성함.
 - ※ 동 기간 중 우리나라 창포 간척사업에 대한 WFP의 지원요청과 관련하여 주이탈리아대사관이 WFP와 접촉한 결과 WFP측은 동 계획의 재정적 기술적 면에 의문을 나타내고 사업시행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미면 간척사업에 대하여는 WFP가 승인하였으므로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함.
3. 우리나라는 세계식량기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8차 WFP정부간 회의가 1965.10.11.~15.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는 1965.8.26.일자 공한을 접수함. 정부는 주한 유엔기술원조처로부터 세계식량계획 사무국장 A.H.Boerma 씨가 동 인의 비서를 대동하고 방한하기를 희망한다는 공한을 접수하였으며 주이탈리아대사관은 동 인의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함.
4. FAO 사무총장은 1965.10월 공한을 통하여 각국에서의 식량관리 방법을 일층 개선함으로써 식량누손을 억제하도록 하자고 제의함.

49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WFP에 대한 사업지원요청

| 65-141 |

생산년도	1963-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6 / 7 / 1~95(95p)

500

1. 긴급식량구호물자

- ※ 농림부는 태풍 세리에 따른 피해와 수해로 인한 하곡 흉작으로 국내의 식량 절대수요량에 비하여 공급 가능량이 충족되지 못하여 식량사정이 긴박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WFP(세계식량계획)에 긴급 구호 식량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1963.6.28. 외무부에 요청해 옴.
- ※ 외무부는 1963.6.29. 주이탈리아대사에게 태풍 세리, 거제도 산사태, 홍수 등에 의하여 전남, 경상 일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계속되는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WFP에 대하여 FAO를 통해 미곡, 보리, 밀가루, 우유 등의 구호물을 요청하였으므로 WFP 당국에 적극 교섭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급 지시함.
-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 186명, 부상 및 실종자 107명, 이재민 62,175명, 주택 파괴 16,449채, 농작지 피해 218,326 에이커, 어선 손상 및 유실 1,406척, 가축 유실 2,860두 등임.
- ※ 주이탈리아대사관의 김진하 서기관은 1963.7.2. WFP의 A.H.Boerma 사무총장 및 실무담당자들과의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구호물자를 요청하였는바, WFP측은 우리 정부가 한국 주재 UNTAB(유엔기술원조처) 대표를 통해 세부적인 피해액과 원조요청액을 재작성, 제출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WFP는 워싱턴 및 기타 국제기구의 원조 상황을 참작하여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함.
- ※ 주이탈리아대사관은 WFP 당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수재민을 위하여 원조하게 될 7만5천 톤의 소맥이 8월 중순경 한국에 입항될 것이며, AID/KOREA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은 추가적으로 밀크도 공급케 될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원조의 부족분은 UNTAB을 통해 WFP에 요청할 것을 1963.7.12. 외무부에 건의함.

2. 간척지개발사업

- ※ 외무부는 1962.12.5. WFP의 요청에 따라 경제기획원 및 농림부에 동 기구의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농림부는 서남해안에 산재하는 간척지를 개발하여 식량증산을 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1963.6.8. 외무부에 요청해 옴.
- ※ 외무부는 1963.6.13. 주이탈리아대사에게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은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 개발 가능한 간척지가 약 195,000정보가 있으며, 이 중 우선 개발이 가능한 10,000정보에 대해 상세한 조사와 측량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그 시공에는 약 2,700만 불의 경비가 소요되어 동 소요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한 WFP의 원조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FAO 당국과 원조 교섭을 할 것을 지시함.

- ✪ 외무부는 1965.2.17. 충남 서산군 일대의 간척지 215ha를 개발하기 위한 총 소요액 \$452,970 중 \$227,614에 대해 WFP에 원조 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사업이 승인되도록 WFP에 교섭할 것을 주 이탈리아대사관에 지시함.

50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15차. Montreal, 1965.6.22-7.19

| 65-142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3 / 1~214(214p)

1. 정부는 1965.6.22.~7.19.간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제15차 총회가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정기 총회로서 국제민간항공의 발전, 개선 및 촉진을 기하기 위한 제반 의제를 토의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강호륜 교통부항공국장(수석대표), 함영훈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바, 동 총회에는 109개 회원국 중 85개국 대표, 3개 비회원국 및 3개 국제기구대표 등 365명의 대표가 참석함.

502

2. 정부의 동 대표단에 대한 중요 훈령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일반 사항

- 국위선양 및 국가이익 증진을 위하여 각국 대표단과 긴밀히 접촉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
- 항공에 관한 국제적 표준의 도입, 기술원조의 획득 및 우리나라 민간항공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도록 노력할 것

※ 이사국 선출

- 사전에 이사국으로 출마할 의사를 표시하고 우리나라의 지지를 요청한 오스트리아, 브라질, 스웨덴, 일본, 필리핀 등 12개국에 대하여는 지지할 것
- 기타 국가에 대하여는 항공업무에 중요한 국가,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공헌 등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지지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석대표에게 위임함

※ 기술원조 활동 및 정책

- 각 가맹국 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한 국가에 대하여 균등하고 효과적으로 원조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참작하여 적절한 건의안을 지지할 것

※ 남아프리카의 축출문제

- 최근 개최된 OAU(아프리카 통합기구) 외상회의는 인종차별정책실시국을 ICAO로부터 축출한다는 현장개정안을 결의하였는바, 만약 동 결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아·아중립국, 공산진영 및 남미일부 국가가 찬성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이 반대, 남미제국은 대부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는 유엔에 있어서의 입장 등을 감안하여 WHO 총회에서 투표결석한 점 등을 참조하여 수석대표의 재량대로 임할 것

3. 남아프리카를 ICAO에서 축출하기 위한 현장 제93조 개정결의안은 찬성 42, 반대 30, 기권 15, 결석 15로서 현장 제94조에 의한 3분의 2의 찬성 투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는 ICAO에 잔류하게 됨. 우리 대표단은 기권함.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총회, 제4차. Paris, 1965.9.15-29

| 65-143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4 / 1~70(70p)

1. 정부는 파리에서 개최된 제4차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에 주프랑스대사관 안진생 참사관을 참석시킴. 국제해사안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 임하는 정부는 해운발전을 위한 선박기술과 운항관련정보의 교환, 해운후진국을 위한 기술원조 강화를 목표로 설정함.
2. 회의에서는 해운후진국에 대한 기술 원조를 위해 신용기금을 설치키로 합의함.
3. 회의 초반 소련대표가 한국과 대만(구 자유중국)의 대표권을 문제 삼고 한국대표가 반론을 펼침.

50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해상여행 및 수송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제회의. London, 1965.3.24-4.9

| 65-144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5 / 1~289(289p)

1. 정부는 IMCO(정부간해사협약기구)가 1965.3.24.-4.9.간 런던에서 개최하는 해상여행 및 수송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제회의에 이형근 주영대사를 수석대표, 김인두 주영대사관 2등서기관을 교체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 동 회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폴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 57개 회원국과 칠레, 이라크 등 7개 옵서버 및 유엔, ILO, WHO 등 국제기구가 참가함.

504

2. 여행 및 수송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는 1962.10.25. IMCO 정기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으며, 1964.5.26.-29.간 개최된 제11차 이사회 시 처음으로 여행 및 수송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제협약 초안이 제출된 이래 각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1965.3.24.부터 개최된 런던 회의에서 동 협약이 채택됨.

3. 정부는 대표단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무역 및 수송수단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반 국제협약에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가 국가간의 유대를 더욱 긴밀히 하고 해상에서의 수송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과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등의 제반 수속의 간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훈령함.

※ 정부는 세부 훈령 지침에서 동 협약의 전문은 체약 당사국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인 만큼 협약 전문 초안을 수락할 것 등을 시달함.

4. 외무부는 상기 런던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표가 서명하였으나 협약 제10조 (2)의 (b)항에 의거, 동 내용에 대해 재검토한 후 이의 수락 또는 가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1965.5.3. 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5. 동 협정에 대하여 교통부 및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수락, 재무부는 협약 부속서 2.3.1에 규정된 cargo declaration에 송화주명의 삽입 요청, 농림부는 가축방역 상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금지 조건부 수락 입장을 회보함.

※ 외무부 국제기구과는 재무부의 의견에 대해 협약 수락 후에도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농림부 의견은 동 협약이 우리나라 가축 방역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동물 및 축산물



의 수입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함.

6. 본 문건에는 상기 협약문 및 최종의정서 등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50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IAEA(국제 원자력기구) 총회, 제9차. 동경, 1965.9.21-28

| 65-145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6 / 1~172(172p)

1. 도쿄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윤일선 원자력원장 등이 참석하여 극동지역대표 이 사국 진출, 원전건설계획을 위한 기술원조 확보 등을 목표로 추구하고있으며 외교경로를 통한 사전교섭의 성과로 이사국에 선출됨.
2. 총회에서는 핵시설에 대한 사찰 강화, 핵 확산 방지, 저개발국 원조 등이 결정됨.
3. 총회에서는 카슈미르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정치화”의 조짐도 나타남.

[WMO(세계기상기구) 동남아 및 인접지역의 기상통신에 관한 기초회의. Colombo(실론), 1965.5.3-13]

| 65-146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7 / 1~53(53p)

1. 세계기상기구(WMO)는 1965.3.3.자 공한을 통하여 동남아 및 인접지역의 기상통신에 관한 기술회의를 1965.5.3.~13.간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 회의에 참석할 한국 대표단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관상대 측후소장 박용대 기상기정을 동 회의에 참석시키기로 결정하고 동 내용을 국제기상기구에 통보함. (동 인의 참가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함)
3. 정부는 상기 회의에 참석하는 훈령으로서 동 회의에 참석하는 기회에 스리랑카의 일반 정세에 관하여 관찰보고 하도록 하였는바, 동 인은 회의참석 후 회의 경과내용과 함께 스리랑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50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WMO 아시아지역협회총회, 제4차. Teheran, 1965.10.4-16

| 65-147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8 / 1~111(111p)

508

1. 교통부는 1965년도 WMO(세계기상기구) 주관 하에 약 42개에 달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나 회의의 중요성 및 예산사정에 비추어 제4차 아시아지역협회 총회(테헤란, 10.4~16.), 제4차 측기 및 관측법 전문위원회 총회(동경, 9월중 약 15일간) 등 5개 회의에의 참여가 긴요하므로 이를 위한 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1965.2.10. 외무부에 요청함. 그러나 외무부는 1965년도 국제회의 참가 여비 중 세계기상기구 제4차 아시아지역협회 총회의 참가 경비만이 책정이 되어 있음을 2.11. 회보함.
2. 교통부는 1965.9.14. 국제표 기상대장을 제4차 아시아지역협회 총회에 파견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이에 외무부는 동인에 대한 공무해외여행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주제네바대사에게 세계기상기구 사무처 당국에 테헤란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협회(The Regional Association for Asia of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제4차 총회에 국제표 관상대장의 파견을 통보하도록 지시함.
3. 정부의 동 회의 참가 대표에 대한 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이번 회의는 지역특성에 알맞은 기술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지역회의이므로 참가대표는 우리나라 기상업무 개선에 필요한 의의 토의에 적극 참여하고, 자유우방 및 중립국과의 접촉을 긴밀히 하여 국위선양과 국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능률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할 것.
 - ※ 이 회의에는 소련 등 공산국가와 우리나라에 비우호적인 국가가 대표를 파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언동을 주시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이들의 정치적인 선동이나 흥계를 봉쇄 또는 좌절시킬 것.
4. 제4차 총회에는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이라크, 이란, 일본, 라오스, 태국, 소련, 월남 등 14개 회원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등 5개국의 옵서버와 국제기구 등 대표 등이 참석함.
5. 총회 참석을 위한 신임장 심사위원회에서 대만과 월남에 대하여 소련이 이의를 제출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한국대표에 대하여는 합법적임을 인정받음. 다만 소련 심사위원은 북한을 초청하지 않은 것



은 유감된 일이라고 발언함.

6. 제4차 총회에서 결정된 한국과 관련이 있는 중요 사항은 한국해역의 해상예보구역의 책임을 한국이 맡기로 한 것(종전에는 일본과 대만이 분담해 옴), 한국해역의 선박으로부터 수집되는 자료의 수집 센터를 서울로 결의한 것(종전에는 동경과 하바로프스크로 양분되어 있었음) 등임.

WMO-CIMO(기상측기 및 관측법위원회) 총회, 제4차. 동경, 1965.10.4-20

| 65-148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9 / 1~78(78p)

1. 정부는 1965.10.4.~16.간 동경에서 개최되는 WMO-CIMO(기상측기 및 관측법위원회) 제4차 회의에 김진면 중앙관상대 관측과장을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9.18. 주일대사에게 통보함.

※ 등 인은 UNKRA(유엔한국재건단)의 잉여자금으로 기상교육을 받기 위해 체일 중에 있으므로 별도 소요경비 지출이 없음.

2. 동 회의의 참석대표에 대한 정부의 주요 훈령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이 회의는 우리나라가 WMO 회원국이 된 이래 처음으로 참가하는 회의인 만큼 참가대표는 국위선양 및 국익진전을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능률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할 것

※ 이 회의에서는 기상측기의 표준화문제, 관측기의 비교문제 등이 논의되는바, 우리나라의 기상관측 시설 및 관측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정보 및 자료 수집에 유의할 것

※ 신임장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참가대표의 신임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북한의 초청문제 및 대만(구 자유중국)의 대표권문제 등 정치적 문제가 논의될 때는 이를 즉시 본국에 보고, 청훈 또 주일대표부와 긴밀한 접촉과 도움을 얻어 처리할 것

3. WMO-CIMO 제4차 회의에는 한국, 일본, 미국, 소련, 벨기에, 브라질, 콩고, 프랑스, 서독, 인도, 이탈리아, 모로코, 베네수엘라, 필리핀 등 27개 회원국과 IAEA 등 국제기구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함.

4. 제4차 회의 시는 우리나라의 신임장 검사와 관련하여 공산진영으로부터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주일대표부와 일본 당국 및 주일미대사관 등 자유진영의 협조를 구하고 도전이 있을 때 이를 반박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나 아무런 일 없이 무사통과됨.

5. 동 회의 시 결의 사항은 향후 4년간 증발량관측에 관한 연구와 측기를 비교검토하기 위한 working group 설치, 극지방의 기상관측을 위한 측기 및 관측법 연구 working group 설치 등임.

인도네시아의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 탈퇴, 1965.2.12

| 65-149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22 / 8 / 1~9(9p)

1. 외무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1965.2.12.자로 UNESCO를 탈퇴한다는 뜻을 표명한 공한을 보내왔음을 통보하는 UNESCO 사무총장의 공한을 3.5. 접수함.
2. Dr. Subandrio 인도네시아 제1부수상 겸 외상은 UNESCO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공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 UNICEF, UNESCO와 FAO로부터 탈퇴한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인도네시아가 강요된 상황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탈퇴를 하게 되지만 유엔현장에서 천명된 국제협력의 제반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언명함.
3. UNESCO 사무총장의 공한에는, Sukar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신식민주의국인 말레이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 유엔을 탈퇴할 것이라는 1964.12.31.자 성명에 따라 유엔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통고한다는 인도네시아 외상의 유엔 사무총장 앞 공한이 첨부되어 있음.

51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UNESCO-IBE 주최 국제공공교육회의, 제28차. Geneva, 1965.7.12-23

| 65-150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10 / 1~166(166p)

1. 정부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국제교육국(IBE)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8차 국제공교육회의가 1965.7.12.~23.간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과 한국이 동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유네스코의 1965.4.23.자 공한을 접수하고, 동 회의에 정일영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 오성식 문교부 대학교육국장을 대표, 조광제 주제네바대사관 2등서기관을 교체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토록 함.

512

2. 동 회의에서 토의될 주요 의제는 문맹퇴치와 성인교육 문제, 중등학교에서의 현대 외국어 교육문제 등임.
3. 우리나라는 동 회의의 주최측에서 요청한 1964~1965년간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하고 우리나라 대표단이 동 회의기간 중인 7.17. 개최되는 제30차 국제교육국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교육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함과 아울러 동 회의에서 포르투갈 축출결의안 제출 시 우리 입장을 지시하고 북한의 IBE가입 신청문제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도록 함.
4. 동 회의 결과 아일랜드의 IBE 가입신청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공산국가에서 중국(구 중공)의 대표권문제를 제기함. 동 회의에서 성인교육 및 중등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됨. 우리나라 대표단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관하여 일본대표가 질문한 교육제도 개편 문제, 대만(구 자유중국)대표가 질문한 교실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문제, 나이지리아 대표가 질문한 중등학교의 학생 수와 교사 수의 대비문제, 벨기에 대표가 질문한 특수교육문제, 우간다 대표가 질문한 아동 급식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함.
5. 동 회의에서 북한은 IBE 참가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참석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국가도 없었음.

IBE(국제교육국) 집행위원회, 제42차. Geneva,
1965.2.9-10

| 65-151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11 / 1-66(66p)

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1차 유네스코 국제교육국 집행위원회에 정일영 주제네바대사 등이 참석하여 학생과 교사의 비율 등 공공교육과 관련한 국제규약 개정문제를 논의함.
2. 회의에서는 소련 대표가 쿠바 가입을 제안하여 그렇게 결정되었으며 한국은 우방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투표에 불참함. 이와 함께 공산권국가 대표들이 기도한 북한 가입문제의 상정은 사전에 저지됨.
3. 정부는 국제교육국의 요청으로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국내서비스 등에 관해 실시한 앙케트 조사결과를 제공함.

51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IBE 이사회, 제30차, Geneva, 1965.7.17

| 65-152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12 / 1~14(14p)

1. 국제교육국(IBE)은 제30차 국제교육국 이사회가 1965.7.17.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한 국대표를 동 회의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1965.6.16.자 공한을 우리 정부에 송부함.
2. 이에 따라 정부는 동 기간 내에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8차 국제공교육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표단이 동 회의에도 참석하도록 하고 동 회의에서 국제공교육회의의 규약 제1부(법적 지위) 및 제2부(참가국 범위)가 이미 확정적이라는 사무국의 견해에 대하여 아랍·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 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 사무국 견해를 따를 것과 북한이 국제공교육국에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 대비, 사무국, 미국, 대만(구 자유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훈령을 하달함.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총회, 제13차. Rome, 1965.11.20-12.9

| 65-153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13 / 1~267(267p)

1. 로마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에 이종찬 주이탈리아대사 등이 참석하여 한국농업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각종사업 참여기회 확대, 각국과의 농업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함.
2. 회의에서 한국은 수산위원회와 정부간 위원회에의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정부간 위원 피선은 실패하고 수산위원으로만 선출됨. 집행위원회 이사국 후보로는 태국, 인도, 이란, 코스타리카 등을 지지함.
3. 박정희 대통령은 FAO 창립 20주년에 즈음하여 사무총장 앞으로 축전을 보냄.

51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FAO 미곡경제자문분과위원회, 제8-9차. Rome

| 65-154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14 / 1~130(130p)

1. 장덕희 농림부 양정국장이 정부대표로 제8~9차 유엔식량농업기구 미곡경제자문위원회에 참석함.
2. 회의에서는 식량 증산을 위한 정책과 식량교역 증진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정부대표는 외국의 양정정책에 관한 정보도 수집함.

FAO 상품문제위원회, 제38-39차, Rome

| 65-155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15 / 1~61(61p)

1.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1965.3.26.자 공한을 통하여 제38차 FAO 상품문제위원회가 1965.6.7~18.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동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할 경우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따라 정부는 동 회의에 주제네바대표부의 강석재 2등서기관이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동 회의의 자료를 본부에 송부함.
2.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1965.9.24 자 공한을 통하여 제39차 FAO 상품문제위원회가 1965.11.3.~5.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동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할 경우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따라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 직원 1명이 동 회의에 참석하고 동 회의의 주요 토의사항을 파악하여 FAO 제45차 및 46차 이사회와 제13차 총회에 대비하도록 지시함.

51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IPFC(FAO 인도태평양수산물위원회) 집행위원회, 제38차, Bangkok, 1965.8.21-9.9

| 65-156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16 / 1~14(14p)

1. 농림부는 1965.8.21.~9.9.간 방콕에서 개최되는 IPFC(FAO 인도태평양수산물위원회) 제38차 집행위원회 및 마라카열대어 시험장 특별위원회에 이봉태 중앙수산물검사소 소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1965.8.5. 외무부에 요청함.

※ 동 인은 IPFC의 의장으로서 회의 참가 경비는 IPFC에서 부담함.

2. 외무부는 1965.8.10. 국무총리 공무해외여행심사위원회에 이봉태 소장에 대한 공무해외여행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동 인에 대한 여권을 발급하는 등 회의 참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공무해외여행심사위원회는 8.18. 동 인의 공무여행에 대해 적격 판정을 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18차. Geneva, 1965.5.4-21

| 65-157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3 / 17 / 1~321(321p)

1.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965.3.1. 공한을 통하여 제18차 WHO 총회가 1965.5.4.부터 제네바 소재 유엔사무소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통보하고 한국이 참석할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옴.

2. WHO 사무총장은 또한 WHO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WHO 회원국이 제출한 WHO헌장 제7조 개정 제의에 대하여 WHO 집행이사회가 검토한 결과 WHO헌장 제정당시 회원국을 축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헌장 개정을 통하여 회원국을 축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음을 알리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헌장 제7조 개정안은 부르키나 파소 등 아프리카 9개국 이 제출한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는 회원국을 WHO에서도 축출한다”는 요지의 내용과 네덜란드와 영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유엔에서 투표권이 박탈되는 국가는 WHO에서도 그 국가를 축출한다”는 요지임.

※ 제18차 WHO 총회는 위의 쟁점 이외에 WHO 집행이사국 24개국 중 임기가 만료되는 8개국을 새로이 선출하는 문제와 중국 대표권문제가 있으며 우리나라로서는 1965.9.16.부터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제16차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할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얻는 문제 등이 있음.

3. 우리나라는 제18차 WHO 회의에 정일영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보건사회부 차윤근 보건국장을 교체수석대표, 한기 외무서기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고 아래 요지의 훈령을 하달함.

- ※ 헌장 개정 문제는 원칙적으로 네덜란드, 영국 공동제안을 지지하되 상황에 따라 수석대표가 재량으로 판단함.
- ※ 분담금 비율은 유엔에서 정한 분담금 비율이 채택되도록 노력함.
- ※ 중국 대표권 문제나 북한의 WHO 가입문제에 각별히 유념함.
- ※ 1965.9.16.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WHO 제16차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참가할 각국 대표와 협조관계를 유지함.
- ※ 총회 의장에는 호주 대표를 지지하고 부의장은 자유우방국에서 선출되도록 노력함.
- ※ 이사국 선출에는 자유우방국가가 선출되도록 하며 독일, 아르헨티나, 멕시코 국가에 찬성투표를 함.

4. 회의 결과 한국의 분담금 비율은 0.12%로 되었으며 이사국은 모로코, 페루, 체코, 멕시코, 예멘, 미국, 인도, 기네 등 8개국이 되었고 헌장 개정문제는 아프리카국가들이 제출한 안이 통과됨.

WHO 서태평양지역위원회, 제16차. 서울, 1965.9.16-21

| 65-158 |

생산년도	1960-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1 / 1~307(307p)

520

1. 정부는 보건사회부가 주도하여 1960.7월부터 1962년 개최되는 제13차 WHO 서태평양지역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바, 동 회의는 1954년부터 매 2년마다 서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있는 마닐라에서 개최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제14차 총회가 호주에서 개최되도록 결정되었음에 비추어 1965년에 개최되는 제16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도록 외교교섭함.
2. 우리나라는 1961년도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12차 WHO서태평양지역회의의 서울 개최를 제안하여 동 회의에서 이를 결정하였으며 제4차 지역회의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Feninton 대만주재 WHO 지역대표가 1964.1.11. 우리나라 보건사업을 시찰하기 위하여 방한하는 기회에 제16차 지역회의의 서울 개최문제를 거론하고 서울 개최 시 우리나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 문제, 한국의 WHO 분담금 문제, 참가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문제 등 회의 준비사항을 협의하였으며 1965.1월 WHO 서태평양지역 행정재정과장이 서울 개최 회의를 사전협의하기 위하여 방한함.
3. WHO 본부는 서울에서 개최될 제16차 서태평양지역회의에서 지역 사무국장이 선출될 예정임을 알리고 동 사무국장 후보자를 한국이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보건사회부는 동 후보자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차석인 필리핀인 F.J. Dy 박사를 추천하였으며 주월남대사는 월남정부가 요청하는 Le-Guu-Trong 박사를 추천할 것을 희망하였는바 정부는 결국 Dy 씨 를 추천하기로 함.
4. 제16차 WHO 서태평양지역회의는 1965.9.16.~21.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차윤근 보사부 보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보건사회부 직원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 등을 대표, 국립보건원장, 외무부 방교국장 등 외무부직원을 고문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함.
5. 동 회의는 유엔전문기구회의로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회의인바, WHO서태평양지역국가 15개국 회원국가, 5개 비상임국가 및 지역대표 41명이 참가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됨.
6. 동 회의 결의사항은 각국의 인구통계와 건강관리 연구 독려, 천연두 박멸사업 전개, 소아마비 예방사업 실시국가에 대한 지원 등이며 지역 사무국장 후보로서 필리핀인 Dy 박사와 호주인 Greville 양인을 추천하여 WHO 집행이사국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함.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제30차. Montreux(스위스) 1965.9.14-11.12

| 65-159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2 / 1~295(295p)

1. 주프랑스 스위스대사관은 1964.9.1.자 주프랑스대사관 앞 공한으로 제30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위원회가 1965.9.14.부터 스위스 몽트로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동 회의에 참석할 한국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ITU 전권위원회는 통상 5년마다 개최되나 1965년이 ITU 10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하기 위하여 6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ITU의 최고기관의 회의로서 ITU의 현장을 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바, 1965년 회의에서 현장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최고책임자의 개선, 관리이사국 개선 등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구 중공)과 북한의 ITU 가입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음. 동 회의는 총회와 함께 10개의 분과위원회별 회의가 병행될 예정임.
3. 정부는 동 회의에 정일영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 체신부 전파관리국장을 교체수석대표, 김길식 체신부 사무관, 이종업 외교부 사무관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동 회의에 참석활동을 위한 아래 조치의 훈령을 하달함.
 - ※ 한국대표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고 중국(구 중공)의 대표권 주장이 있을 경우나 동구권 국가가 ITU를 모든 국가가 단순한 가입의사 표시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자유진영국가와 협조하여 이러한 주장의 논거를 반박함. 인종차별문제 등 정치적 이슈가 표결에 부처지면 기권하도록 함.
 - ※ 관리이사국 선출에 있어서는 독일, 이탈리아, 콩고(레오폴드빌), 일본, 필리핀, 호주를 지지하고 아일랜드 및 사우디아라비아 지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 ※ 사무총국장 선출은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입후보자 중에서 현지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 ※ 현장 개정문제 중 관리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반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상설기구를 정무총국이 통할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함.
 - ※ 이사국의 3선 연임을 피하고 전권위원회 총회에서 과반수 이사국 제안으로 선출되도록 하는 한국의 제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함.



✿ 모든 국가에 ITU 회원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반대하며 미국이 제안한 준연합원을 삭제하자는 안에 찬성함.

4. 회의 결과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하여 알바니아와 소련이 발언하였으며 공산국가가 동독의 참석문제를 언급하였고 일부 공산국가가 북한 참석문제를 거론함.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남아공을 회의에서 축출하고 포르투갈에 인종차별을 경고하는 결의안을 제출함. 서구제국은 ITU 총회가 회원국 축출 문제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여 총회 권한문제에 관한 표결이 행하여졌으나 결국 남아공 축출결의안이 통과됨.



IOE(국제수역국) 총회, 제33차. Paris, 1965.5.24-29

| 65-160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3 / 1~36(36p)

1.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제33차 국제수역국 총회에 우문기 주프랑스대사관 3등서기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함. 회의에서는 가축방역 강화, 특히 축산업 보호를 위한 돼지 콜레라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가축 및 축산물 교역과 관련한 국제규정 개정문제가 논의됨.
2. 우문기 대표는 결과보고서에서 회의 성격에 비추어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를 대표로 파견할 필요성을 지적함(처음에는 농림부 관계자 파견을 검토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현지 공관원을 대신 참석시킨 경위가 있었음).

5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IUOTO(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 총회, 제19차. Mexico City, 1965.10.20-27

| 65-161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4 / 1~96(96p)

1. 우리나라가 1957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IUOTO: 국제관광기구 WTO의 전신)의 제19차 정기총회가 1965.10.20.~27.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김태동 교통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파견하고자 하였으나 동 인에 대한 해외여행을 총리가 부결함으로써 소상영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을 수석대표, 주멕시코대사관 구총회 서기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동 회의에 파견함.

524

2. IUOTO 총회는 매 2년마다 개최되며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국의 관광선전 및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절차 간소화와 상호 정보교환 등을 주 의제로 토의함.

3. 정부는 상기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에게 아래 요지의 훈령을 하달함.

- ✳ 우리나라 관광사업 현황을 소개 선전하며 세계관광객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위한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제간 관광정보 수집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함.
- ✳ 중국 대표권문제와 북한 초청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우방국과 협조함.
- ✳ 남아공 축출문제, 포르투갈의 식민지정책문제가 제기되면 토의에 참가하지 않음.
- ✳ 유엔의 후진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광요원의 해외파견훈련 및 유엔 관광전문가의 한국 관광사업 실태조사를 추진함.
- ✳ 국제관광기구 발간 월간지에 한국을 보다 광범위하게 소개하도록 함.

4. 회의 주요 토의사항

- ✳ 집행위원회 이사국으로 홍콩, 필리핀, 뉴질랜드, 태국, 일본 등이 선출됨.
- ✳ 1967년을 “세계관광의 해”로 정함.
- ✳ 우리나라 관광요원의 해외파견과 유엔 관광전문가의 한국 관광실태조사를 위한 파견 요청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본부 한국유치에 관한 의견

| 65-162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5 / 1~9(9p)

1. 아시아·아프리카 농촌재건기구 사무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구본부를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유치할 경우 시설제공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외무부가 농림부의 입장을 타진함.
2. 농림부는 선진농업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 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이었으나 여타 국제기구와의 업무중복에 따른 추가부담 등을 이유로 예산은 전액 회원국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음.

52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AARRO 집행위원회, 제4차. Cairo, 1965.4.27-29

| 65-163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6 / 1~14(14p)

1. 아시아 아프리카 농촌 재건기구(AARRO) 사무국장은 1965.3.20.자 공한을 통하여 제4차 AARRO 집행 위원회가 1965.3.25.~29.간 아랍공화국 카이로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동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단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동 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1966년까지 AARRO의 집행위원이었으나 정부의 재정 형편상 위원회 참가자의 여비 마련도 불가능하며 동 회의 의제가 작년도 회의 의제와 유사하여 현지 공관에서 회의를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예산 사정상 동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주카이로총영사관 김용집 부영사가 동 회의에 참석함.
3. 동 회의는 말레이시아 대표가 의장이 되었으며 우리측 참석자는 회의 결과 채택된 내용이 수록된 자료를 본부에 송부함.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6차. New Delhi, 1965.12.7-11

| 65-164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7 / 1~60(60p)

1. 외무부는 1965.11.16. 상공부의 요청에 따라 1965.12.7.~11.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제6차 이사회에 김정엽 상공부차관(수석대표), 이은복 한국생산성본부 이사장, 외무부 실무담당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의 파견을 결정함.

※ APO 이사회는 동 기구의 최고기관으로 1966년 및 1967년도 동 기구의 사업계획, 예산 등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함.

※ 동 이사회 시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필리핀, 인도, 태국 등 11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및 옵서버가 참석함.

2. 우리 정부의 APO 대표단에 대한 주요 훈령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사회 토의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 (신회원 가입) 이란과 월남의 신회원 가입은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승인에 의거하여 1965.10.29.자로 APO 가입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찬성할 것

※ (의장단 선출) 현재 APO 제1부의장직에 있는 박충훈 상공부장관이 이번 이사회에 불참하는 관계상 제7이사회가 개최되는 1966.4월까지 현 의장단의 유임을 주장하되 현 의장단의 유임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1부의장직만 유임되도록 할 것

※ (자국화폐에 의한 대 APO 찬조) APO는 각 회원국 내에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소요경비를 자국 화폐로 일정 액수를 지정하여 찬조할 것을 요망(예: 1966년도 한국 2,000불, 네팔 1,000불, 인도 40,000불 등)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일정액수를 정하여 사전 지불 혹은 미리 저축하는 것은 반대할 것

- 일본은 매년 약 15만 불의 거액을 찬조하고 있으므로 찬조액 지정이 없음

※ (차기 회의 개최) 차기 APO 이사회를 1966.4월 일본에서 개최하는 데 대해 찬성할 것

3. APO 제6차 이사회에서의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APO 사무총장 업무 보좌를 위한 사무총장대리 임명 및 공보활동 담당관의 1계급 승격

52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 ✿ 자국화폐의 대 APO 참조는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당사국과 APO 간에 case by case로 협의하여 참조기로 함
- ✿ 차기 이사회는 1966.4월 또는 5월에 동경에서 개최
- ✿ 중소기업 진단사 및 중소기업 행정관 훈련 사업 승인
- 528 ✿ 기타 경영 훈련, 무역증진 훈련, 회원국 순회 세미나, 기술전문가 사업, 농협활동 연구시찰 등의 사업을 실시기로 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54차, Ottawa (캐나다) 1965.9.8-17

| 65-165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8 / 1~175(175p)

1.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54차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최희송 의원 등이 참석함에 즈음하여 외무부는 북한의 가입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21개 거점공관을 정하고 회원국을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함.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 임무도 함께 부여받은 거점공관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프랑스, 영국, 멕시코, 브라질, 터키, 카이로 주재 공관으로 지정함.
2. 외무부는 총회 현장에서의 대책도 중요하나 대표가 국회 관계자로만 구성되어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IPU사무국 소재지 제네바 주재 정일영 대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지원케 함. 북한 가입 동의안은 찬성 22, 반대 46, 기권 29로 부결됨.
3. 한국대표단은 1968년 추계총회의 서울 유치 활동을 벌였으며 집행위원회 이사국 후보로 벨기에 등을 지지함.

52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IPU 이사회, 제96차, Dublin(아일랜드) 1965.4.24-25

| 65-166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9 / 1~160(160p)

1. IPU 가입경위

※ 우리나라는 제네바에서 1961.4.3.~9.간 개최된 IPU 제21차 집행위원회 및 제88차 이사회에 박준규 의원 및 김성용 주제네바공사를 교섭대표로 파견하여 IPU 가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가입을 이사회에 건의토록 결의하였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남한만을 대표한다'는 단서를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함. 그러나 동 조건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5·16 군사혁명으로 국회가 해산되어 IPU 가입문제는 정돈 상태에 놓임.

530

※ 1963.12.7. 국회 구성 후 한국의원협회가 조직되면서 가입신청서의 인구수 란에 국세조사에 의한 남한 인구만을 기입한 가입신청서를 1964.3.20. IPU에 제출하였으며, 1964.8.19.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IPU 집행위원회에서 쿠웨이트 및 모로코와 함께 한국의 가입 건의가 결의됨.

2. 1965.4.24.~25.간 Dublin에서 개최되는 IPU 춘계회의(제96차 이사회 포함)에 이할 의원, 최희송 의원 등 3명의 대표단 파견이 결정됨.

3. 외무부는 1964.4.8. 국회외무위원회 및 한국의원협회에 북한이 집행위원회에 IPU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부결될 것이 분명하다는 주제네바미국대표부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통보하면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각국 대표들과 교섭에 임할 때는 한국이 1948.12월 유엔 총회 결의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되고 있음에 반하여 북한은 소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수립된 괴뢰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정일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1965.4.17.~26.간 Dublin에 출장하여 IPU 회의를 관찰한 결과를 5.3. 외무부에 제출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회원국 총 75개국 중 우방 내지 친서방중립국 27개국, 엄정중립 내지 친공계열 15개국, 공산진영 9개국 도합 51개국 400명이 참석함.

※ 회의 주요 의제는 군축 문제, 핵폭발 오염처리 문제, 선후진국 간의 경제교류 문제, 인종·종교적 차별문제, 전쟁범죄 처벌에 관한 국내법상의 형사소멸시효 등임.

※ 북한이 집행위원회에 가입신청을 제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도네시아는 북한 등 분



단국가의 미대표지역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격론 끝에 25 대 33으로 부결됨.

- ✿ 회의 운영이 극히 무질서하였으며 각국 대표의 투표결정 과정도 각양각색이어서 동일 대표단 중에도 대표에 따라 그 향배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음.
- ✿ 차기 오타와 회의시 북한이 다시 가입 공작을 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철저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함.

WPTLC(법을 통한 세계평화본부) 회의, 제2차. Washington D.C., 1965.9.12-18

| 65-167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10 / 1~101(101p)

1.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차 “법을 통한 세계평화본부”회의에 홍순엽 대법관이 한국대표로 참석함(당초 주최 측은 대법원장을 초청).
2. 미국의 워런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100여 국가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법과 법 집행기구의 발전을 통해 세계평화 증진에 유효한 메커니즘을 성립시킬 방안이 논의됨.
3. WPTLC는 “국제사회에서의 법치주의정착을 통한 세계평화추구”를 목표로 미국 변호사 협회가 주도하여 1958년에 창설되었음.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전문가회의

| 65-168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11 / 1~239(239p)

1. 동부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 사무국장은 이석제 총무처장관 앞 1964.12.11.자 서한을 통하여 EROPA의 기술원조활용에 관한 회의가 1965.1.14.~24.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알리고 동 회의에 이석제 총무처장관이 참석하여 줄 것을 희망함. 이에 따라 정부는 이석제 총무처장관, 조효원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경제기획원 기획과장을 동 회의에 참석시키고 회의 후 지역 내 회원국을 시찰 하도록 함.
2. 정부는 EROPA의 연구기관으로 “개발행정센터”를 한국에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는바, 이는 1964.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EROPA 총회에서 지역외교관훈련센터 설치를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외교관훈련센터”에 비교하여 각 국가의 국시, 정책, 기타 외교상의 미묘한 차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더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발”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특색이 없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동 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1966.9월 이란 개최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3. 필리핀 외무부는 1965.7.1.자 서한을 통하여 필리핀 정부가 EROPA와의 협조하에 “외교업무 향상에 관한 자문회의”를 1965.9.27.~10.1.간 마닐라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동 회의에 참석할 우리나라 대표단의 명단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동 회의에서 검토될 내용에 관련되는 질문서에 대하여 우리나라 견해를 질의하는 자료를 보내음.
4. EROPA 사무국장은 EROPA 집행이사회 의장인 이석제 총무처장관 앞 1965.7.13.자 서한을 통하여 파키스탄이 EROPA 회원국 가입신청을 하였으며 제4차 EROPA 총회 개최국인 이란이 총회 의제 일부를 변경하고자 희망하여 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EROPA 임시총회를 1965.10.4.~10.간 타이페이에서 개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문의함.
5. “외교업무 향상에 관한 자문회의”는 1965.9.27.~10.1.간 마닐라에서 개최되어 한국, 일본, 중국(구 자유중국), 호주, 월남, 필리핀, 태국, 이란, 라오스,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은 이석제 총무처장관, 김득황 내무부차관, 조효원 내각 기획조정실장, 신응균 외교연구원장 등으로 대표단을

53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구성함.

- ※ 회의 결과 외교관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방법이 토의되었으며 외교관 요원 훈련을 위한 훈련소의 설치를 제안한 국가인 한국, 이란, 필리핀 등 3개국에서 각기 자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답사반을 구성하여 답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 보고서를 기초로 EROPA의 자문위원회가 검토하여 최종안을 EROPA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30차. 동경, 1965.10.11-23

| 65-169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12 / 1~164(164p)

1.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제30차 총회가 1965.10.11.~23.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인바, 동 기구는 1958년 발족되어 국제전기 표준에 관한 결정을 하여 국가표준 규격의 국제적 교류 및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 38개국에 가입하고 있는 과학기술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임. 한국은 1963.5월 북한과 함께 동 기구에 가입함.
2. IEC 제30차 총회에서 인도네시아와 이란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표결하는 문제와 북한이 동 회의에 참석하려고 할 경우 일본 정부가 북한대표에게 입국비자를 발급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대두됨.
3. 정부는 동 기구에 가입한 이래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제30차 IEC 총회는 각 전문분야별로 41개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대표가 동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표준화 기구와 유대를 강화하고 근대적 공업기술을 도입하며 우리나라 표준산업을 세계에 홍보할 필요성과 북한 대표단이 참석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IEC 제30차 총회에 윤태연 상공부 표준과장, 임일식 한국표준규격협회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되는 대표단을 동 회의에 참석하도록 함.
4. 북한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하고자 일본에 입국비자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우방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북한대표가 참석한 사실이 없음을 상기시키고 북한대표의 입국을 거부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일본은 북한 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함.
 - ※ 그러나 10.13. 개최된 IEC 임시총회에서 소련, 중국(구 중공) 등이 주동이 되어 “일본 정부가 계속 북한대표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22. 개최되는 정례총회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타국에서 개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미국, 영국 대표 등 자유우방 대표들도 지지한 가운데 20 : 1 : 7로 채택됨. 또한 IEC의 라둘레(Radulet) 회장은 10.15. 일본의 시모다 외무차관에게 일본이 북한대표에게 입국사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인 것 같다는 언급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 외무차관은 한국의 희망을 무시하고 북한대표를 입국시키는 것은 한일국교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여 줄 것을 요망함.



- ✿ 한국은 주한 각국공관을 통하여 북한의 IEC 총회 참석문제에 대하여 IEC가 기술적인 민간기구 임에 비추어 주최국 정부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IEC가 알가알부하는 것은 부당함을 설명함.
- ✿ 아울러 한국은 주미대사를 통하여 미국이 북한대표의 IEC회의 참석 결의안에 찬성한 경위의 설명을 요구한바, 미 국무성은 미국 대표단의 결의안 찬성이 미국 정부의 견해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10.22. 총회에서 북한대표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함. 결국 10.22. IEC 정례총회는 생략되었으며 동 일자 오후 각 회원국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IEC 예산문제 등을 토의함.

IQSY(국제태양관측년회의) 총회, 제3차. Madrid, 1965.3.29-4.3

| 65-170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37 / 9 / 1~19(19p)

1. 문교부 산하 학술원은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국제태양관측년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외무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문교부도 민간국제기구 활동지원 예산이 외무부에 편성되어 있다면서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음.
2. 그러나 외무부는 민간국제기구의 활동과 관련한 지원은 가입기구를 직접 관장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무부에는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함.

53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CISM(국제군인체육위원회) 총회, 제20차. Wiesbaden, 1965.11.5-20

| 65-171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국제기구/공보문화
MF번호	I-14 / 13 / 1~61(61p)

1. 국방부는 CISM(국제군인체육위원회) 제20차 총회가 서독 Wiesbaden에서 1965.11.5.~20.간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윤택중 국방부 인사국장(육군소장)과 정동준 국제체육담당관(육군소령)을 동 총회에 참석시켜 1966년도 CISM 제21차 총회의 한국개최를 위한 준비와 국군체육부대 설치를 위한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등 우방국의 군체육시설 시찰을 할 수 있도록 출국에 필요한 공무여행 심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1965.10.6. 외무부에 요청함.

538

2. CISM은 1948.2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군 체육을 장려하고 각국 군 간에 친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호 의견 교환 및 체육 수련과 스포츠에 관한 연구, 각 회원국의 각종 군체육행사 개최 등을 목적으로 창설되어 1965년 현재 회원국이 40개국에 달함.

3. 국방부는 한국이 CISM 가입 9주년을 맞이하는 1966년도 제21차 총회를 국군의 날을 택하여 개최함으로써 한국군의 위용을 회원국 대표들에게 과시할 기회를 마련하고, 현재 극동의 CISM 회원국은 한국뿐이나 앞으로 필리핀, 대만(구 자유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을 가입시켜 극동 분회를 한국에 설치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을 수립함.

ICRC(국제적십자사) 총회, 제20차, Vienna, 1965.10.2-9

| 65-172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16 / 1~335(335p)

1. 정부는 1965.10.2.~9. 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20차 ICRC(국제적십자사) 회의에 다음과 같이 정부대표단 및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결정함.

- ✱ 정부대표단: 정일영 주제네바대사(수석대표), 임명진 외무부 국제연합과장
- ✱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김학묵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수석대표), 이일우 대한적십자사 섭외부장 외 1명

2. 정부가 제20차 ICRC 회의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단에 대하여 시달한 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일반 사항
 - 국제적십자사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각국 대표들에게 인식시킬 것.
 - 금번 회의 시 적십자사업의 소관 범위 이외의 각종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훼손하려고 책동할 북한의 일체의 기도를 단호히 분쇄하도록 각별 노력할 것.
- ✱ 회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
 - 전체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의 임원 선출 시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대표들과 긴밀히 협조한 후 우리에게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인망이 높은 인사를 지지할 것.
 - 각국 적십자에 대한 기금의 증여조건을 명시하고 동 기금이 후진제국 적십자에게 유리하게 배당 되도록 동 기금 운영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ICRC의 제안에 찬성할 것.
- ✱ 주요 현안
 - (재일교포의 북한 자유왕래) 북한은 1963년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북한 간의 교포가족의 자유왕래를 실현하기 위한 호소문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바, 여사한 북한 책동에 대하여는 그것이 적십자 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전한 정치적 문제로서 다수의 정치공작원을 일본에 투입하려는 기도임을 폭로하고 회의에서 논의될 성질이 아님을 강조할 것.
 - (남북인사 송환) 남북인사의 송환 또는 적어도 그 행방을 성실히 조사하여 주도록 각국 대표에게 협조를 구하기 바람.
 - (화태잔류교포 송환문제) 소련 당국의 화태잔류 교포 소제 파악에 대한 협조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각국의 협조가 요망됨.

3. 본 문건에는 제20차 ICRC 회의에서 채택된 일반위원회보고서, 국제인도법위원회보고서, 보건, 복지 및 청소년위원회보고서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채택이 거부된 북한적십자사보고서 등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총회, 제13-14차

| 65-173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공보문화
MF번호	I-15 / 1 / 1~444(444p)

540

1. 태평양지구관광협회(PATA)는 1952년 하와이에서 결성된 기관이며 태평양지역과 그 연안의 제국 및 도서에의 관광여행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비영리기관으로서 정부대행 관광위원회, 민영선박회사, 항공회사, 여행대리점, 호텔업자, 신문잡지 발행인, 선전 대행사, 각종 협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회원의 구성은 태평양지역의 국가 도서 또는 독립된 정치적 지역의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관광 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관광기구인 정부회원, 태평양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국가, 도서 혹은 독립된 정치적 지역의 정부가 지정한 관광사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관광기구인 준 정부회원, 정부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공인된 운수회사 등의 정회원과 여행사 또는 여행 알선업자, 호텔 업자, 수송업자 등 준회원과 출판사, 광고업자 등의 찬조회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 PATA는 28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로 운영되는데 이사 중 21명은 정회원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가 3년이고, 준회원 6명과 찬조회원 1명의 임기는 모두 2년임.
2. PATA가 연 1회 개최하는 연차 총회에서 회원간 사업에 대한 의견교환, 사업계약 체결, 관광알선을 위한 관광지 조사 등 개별사업에 대한 활동과 PATA의 공식 연례사업으로서 차년도 사업계획 검토, 사업 보고 승인과 협회임원 선출을 하고 있으며 태평양지역 내에서의 관광사업을 발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행에 관한 협동적인 조사사업과 지역별 관광 자원을 공동선전하기 위한 광고 및 판매증진사업, 관계 정부에 여행의 자유를 구속하는 장애를 제거하고 여행객들에게 출입국절차의 간소화를 건의하는 업무 등을 집행함.
3. 우리나라는 1954년 마닐라 개최 제3차 PATA회의에서 당시 재단법인 대한여행사가 정부회원으로 가입 승인되었고 1962년 세방여행사가 준회원이 되었는데 1962년 대한여행사와 국제관광공사에 병합됨으로써 국제관광공사가 정부회원이 됨.
4. 한국은 1960년 뉴질란드에서 개최된 제9차 PATA총회에서 한국이 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며 1963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총회에서 1965년 제14차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1964.3.2.-6.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3차 총회에서 동 결의안이 재확인됨.



5. 제14차 PATA총회는 1965.3.26.~27. 조선폰텔에서 실무자 강습회가 개최되고 3.27.~4.2. 워커히에서 본회의가 개최됨. 실무회의에는 301명(한국인 61명 포함)이 참가하였고 본회의에는 459명(한국인 86명 포함)이 참가함. 동 회의에서 한국은 오재경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수석대표가 되어 우리나라 관광 자원을 각국 관광전문가들에게 소개 선전하고 다른 나라 관광업자와 여행운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함.

54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PIANC(국제상설항해협회) 총회, 제21차. Stockholm, 1965.6.27-7.3

| 65-174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I-14 / 2 / 1~52(52p)

1. 주한스웨덴대사관이 국제상설항해협회(PIANC)의 제21차 총회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 주관으로 1965.6.27.~7.3.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알리고 한국의 동 회의 참석을 초청하는 서한을 보내오며 따라 정부는 동 회의 참석을 준비함.

※ PIANC는 1885년에 창설되었으나 1905년 이후 상설적인 국제기구가 되었으며 그 본부를 브뤼셀에 두고 있음.

542

※ 동 기구는 비정부간 기구이나 정부도 회원이 될 수 있는바, 가입회원은 정부가 약 50개, 민간단체가 약 600개, 개인이 약 2,100명에 달하고 있음.

※ 동 기구는 항해 및 항만기술의 상호교환이라는 기술적인 면을 중시하며 정치성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음.

※ PIANC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1961년 미국에서 개최된 제20차 총회에서 정부회원자격이 승인되어 1961.11.28.자로 PIANC의 우리나라 대표로 조성근 국토건설청장을 통보하였으나 국토건설청이 해체됨에 따라 새로운 정부대표를 지정 통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겨 전예용 건설부장관을 새로운 한국대표로 통보함.

2. 제21차 총회의 주요 의제는 수로의 개발 유지와 전반적인 국토 개발과의 관계, 제방의 보호방법, 파고 측정, 어항 및 그시설에 관한 것 등임.

3. 한국은 동 회의에 건설부 관계자 참석을 검토하였으나 동 회의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주스웨덴대사관 김재성 3등서기관이 동 회의에 참석함.

4. 동 회의에 66개 회원국으로부터 1,100명이 참석하였으며 각국 정부 및 회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협회사무국이 작성한 6개 항목의 종합보고서에 따라 각 대표의 연구발표와 토의를 진행함.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V.1 교섭 및 서명

| 65-175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조약/동북아주
MF번호	Re-13 / 9 / 1~362(362p)

1. 한일 양국 외상은 국교정상화를 위해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여기에 주권, 영토, 관할권, 청구권,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처우, 어업 등 각종 권익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을 포함시키기로 함.
2. 기본조약을 둘러싼 쟁점 중 형식에 관해 한국은 처음부터 “기본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데 비해 일본은 “공동성명”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한국주장을 수용함. 그 밖의 쟁점을 둘러싸고 나타난 양측 입장 차이와 최종 합의는 다음과 같음.
 - ※ 한일합방 이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의 효력에 관해 한국은 “당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은 이는 조약과 협정이 불법이었다는 의미라며 반대하여 결국 “이미 무효”라는 표현으로 결정함.
 - ※ 한국의 관할권에 대해 한국은 북한지역을 배제하는 인상을 줄 수 없으며 한반도 전체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본은 북한지역의 포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 라는 표현으로 합의함.
 - ※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은 “현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끝에 결국 한국입장이 반영됨.
3. 처음 일본이 기본관계 규정 형식으로 공동성명을 제안했을 때 대통령비서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본의 의도는 선 국교정상화, 후 현안처리이며 한국으로서 이는 원칙의 문제인 동시에 국민감정의 문제라서 불가하며 교섭전략으로서도 당연히 동시타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음.

54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V.2 국회비준 심의

| 65-176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조약/동북아주
MF번호	Re-13 / 10 / 1~515(515p)

1.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전권대표가 서명한 아래 분야의 조약, 협정, 합의의사록, 합의의정서, 교환공문 등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

※ 기본관계, 재산 및 청구권, 어업,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대우, 문화재 및 문화협력, 분쟁해결

2. 국회는 심의를 위해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주요 쟁점에 관해 질문하고 정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함.

544

※ 한일합방조약 등의 구 조약을 “이미 무효”라고 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초부터 무효라는 뜻”이라고 함.

※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대상에 독도가 포함되는지를 묻은 데 대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

※ 한국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관할권을 뜻한다.”고 함.

3. 일본에서는 야당과 진보좌파 단체가 비준에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심의회에서는 쟁점사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답변이 있었음.

※ 구 조약의 효력에 관한 질문에 “당시로서는 유효”라고 함.

※ 한국의 관할권에 대한 질문에 “휴전선 이남”이라고 함.

※ 분쟁처리에 관한 교환공문의 대상에 독도가 포함되는지를 묻은 데 대해 “적용될 수 있다.”고 함.

※ 평화선의 존폐 여부에 관한 질문에 “어업협정 체결로 유명무실해졌다.”고 함.

※ 한일수교가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가능성을 부인함.

※ 야당 의원이 이동원 외무장관이 한국 국회에서 “독도의 한국영유권을 일본이 양해했다.”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한 데 대해 이를 부인함.

4. 협정 공개를 둘러싸고 일본은 당초의 합의대로 청구권 합의의사록, 문화재 교환공문의 비공개를 주장한 반면, 한국은 국회제출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결국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에 제출기로 절충함.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V.3 비준서 교환

| 65-177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조약/동북아주
MF번호	Re-14 / 1 / 1~401(401p)

1. 각종 조약과 협정을 비준하고 발효시키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함.

- ※ 한일 양국 외상이 비준서 교환을 위한 서울에서의 외상회담 개최에 합의함.
- ※ 양국 정부가 비준서 교환 행사일정을 동시에 발표함.
- ※ 한국 정부는 비준서 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함.
(일본 정부도 같은 절차를 취하였음.)
- ※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 등 일본대표단이 방한함.
- ※ 양국 외상이 비준서를 교환하고 서명함.
- ※ 양국 정부가 관보에 게재함.

2. 비준서 교환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 연설, 담화문이 발표됨.

- ※ 양국 외상 공동성명
 -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할 의지를 확인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결의를 다짐함.
- ※ 이동원 외무장관 연설
 - 불행한 과거에서 비롯된 모든 현안을 해결하고 우호를 위한 제일보를 내딛게 되었음.
 -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 연설
 - 경건한 마음으로 과거를 회고함.
 - 성의를 다해 조약을 실천하겠음.
 -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음.
- ※ 박정희 대통령 담화
 - 국가간의 관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은 역사의 철칙임.
 - 북한과 중국(구 중공)의 위협 속에 근대화도 통일 역량을 기르는 것은 역사적 당위임.
 - 일본 정부와 국민의 협력으로 자유세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3. 초대 주한일본대사 임명을 둘러싸고 일본이 이세키 주네덜란드대사를 고려한 데 대해 한국은 동 인의 부친이 총독부 고관(대전시장)이었다는 점과 거물정치인 기용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여 난항을 겪음.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V.4 국내조치

| 65-178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조약/동북아주
MF번호	Re-14 / 2 / 1~486(486p)

546

1. 정부는 비준서 교환이 끝남에 따라 국무회의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제 협정 공포”에 관한 상정 보고 절차를 거쳐 아래의 조약, 협정 등의 공포를 공보부에 의뢰하여 1965.12.18.자로 관보에 게재됨.

- ✻ 기본조약(국문, 일문, 영문),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등 4개 협정(국문, 일문: 이하 동일),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합의의사록 등 6개 합의의사록, 직선기선 사용의 합의에 관한 교환공문 등 9개 교환공문, 재산 및 청구권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의정서 등 2개 의정서

2. 외무부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공포, 공고의 대상이 아닌 어업관련 외무장관 성명과 농림장관 성명, 어업협정 서명에 즈음한 양국 아주국장 교환서한, 어업협정 토의기록,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토의기록 등을 “외무부 공보”로 1966.1.21.자 관보에 게재함.

3. 또한 외무부는 비준서 교환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은 국내법·제도적 조치를 무임소장관실에 의뢰함.

- ✻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대우
 - 호적 사무 등의 주일공관 위임
 - 교육 등 재일한국인 지원
 - 재일한국인 재산반입 대책 마련
- ✻ 어업
 - 어업공동위원회 설치와 운영
 - 연안기선, 영해, 인접수역 선포
 - 어업협력자금 도입 촉진과 사용계획 작성
- ✻ 청구권
 - 한일합동위원회 대표 선정
 - 연도별 도입 한도액, 사용계획 수립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V.5 일반사항

| 65-179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조약/동북아주
MF번호	Re-14 / 3 / 1~78(78p)

1. 외무부는 비준서교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래 사안을 관계부처 협의대상으로 선정함.

- ✧ 공관 상호 설치
- ✧ 경제관련 협정 체결교섭
- ✧ 청구권, 경제협력 자금 도입을 위한 절차와 제도 강구
- ✧ 재외국민 등록 추진
- ✧ 반환문화재 인수, 전시, 보존
- ✧ 어업관련 수역설정, 규제와 단속

2. 이에 앞서 외무부는 일본국회의 비준이 지연됨에 따라 과거 일본이 제3국과 체결한 배상 조약의 비준 이 양 당사국 사이에서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고받음.

- ✧ 일본과 필리핀
- 일본: 1956. 6. 26. 필리핀: 1956. 7. 16. 교환: 1956. 7. 23.
- ✧ 일본과 인도네시아
- 일본: 1958. 4. 9. 인도네시아: 1958. 4. 11. 교환: 1958. 4. 15.
- ✧ 일본과 베트남
- 일본: 1960. 1. 8. 베트남: 1959. 12. 30. 교환: 1960. 1. 12.
- ✧ 일본과 버마(미얀마)
- 일본: 1955. 4. 12. 버마: 1955. 4. 16. 교환: 1955. 4. 16.
- ✧ 일본과 한국
- 일본: 1965. 12. 11. 한국: 1965. 8. 14. 교환: 1965. 12. 21.

3.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와 뉴욕타임스는 각각 아래 요지의 사실을 게재함.

- ✧ CSM
- 중국(구 중공)의 야욕이 현저한 극동에서 한일의 갈등요소가 제거되어 안정에 기여할 것임.
-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정치적 용기와 외교적 해안을 평가함.
- ✧ NYT
- 한국에서 반대시위가 있으나 국가대사를 감정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임.
- 일본의 유·무상 지원이 허약한 한국경제의 발전을 도울 것임.

54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주월군사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한·월남, 한·미간의 군사 실무자약정

| 65-180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4 / 4 / 1~119(119p)

548

1. 주한미국대사는 1964.12.18.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고 한국군의 월남 증파를 요청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월남 지원을 위한 군대 증파를 연구하도록 지시함. 우리 합참의장이 1964.12.22.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1965.12.25.자 국방부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이 월남에 군대를 파견하여 주월 미 원조사령관의 작전통제에 두는 문제를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을 제안함. 월남 판담랑 외상은 1965.1.2.자 정일권 국무총리 앞 서한을 통하여 우리의 비전투부대의 월남 파견을 요청함.
2.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한국군을 월남에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김성은 국방부장관의 하우스 주한미군사령관 앞 1965.1.8.자 서한으로 한국군 약 2,000명 규모의 월남 파병 계획을 밝히고 파견에 따른 구체적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함.
3. 한국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군사지원단(ROK MAG-V)”이라는 명칭하에 1개 육군 공병대대, 1개 해병대중대, 1개 육군 수송자동차 중대, 1개 육군 자체 경비대대, 해군 LST 1척 등을 파견하되 이들의 임무는 비작전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한국군 월남 파견문제는 1965.1.15. 임시국회에서 거론됨.
4. 한국군의 월남 파병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한·월 군사실무자협정이 1965.2.7. 이훈섭 한국군사지원단 선발대장과 부이 휴 니온 월남군 대표 간에 체결되었고 월남에 파견되는 한국군과 주월미군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한미간 군사실무자 협정서가 1965.2.8. Stillwell 주월 미군사령관과 이훈섭 한국군 선발대장 사이에 체결됨.
5. 한미간의 군사실무 협정서의 비준을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외무부와 주한미대사관측이 상의한 결과 본 협정이 CINCPAC의 기본적인 군사약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서명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한국 측은 동 협정의 성격상 “약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해석함.



6. 한국군의 월남 파병과 관련하여 작전지휘권의 문제와 민사청구권이 중요한 법적 문제로 대두되었는 바 한국과 월남 간에 있어서 작전지휘권은 현지 한국군 사령관에게 있으나 미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군 사령관이 가질 수 없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주월한국군이 공무 또는 사무 월남정부에 끼친 손해는 월남의 민사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거나 민간인에 대한 손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함.

한·대만(구 자유중국)간의 우호조약, 전2권 V.1 교섭

| 65-181 |

생산년도	1952-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4 / 1 / 1~320(320p)

550

1. 외무부장관은 대만(구 자유중국)측이 한·대만우호조약 체결과 태평양지역제국의 안전보장협약 체결을 우리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동 제안에 대한 미국 태도를 타진, 회보할 것을 1952.5.26.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2. 외무부장관은 1952.8.26. 대통령에게 한·대만우호조약안을 상신한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 본토를 상실하고 대만에서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대만 정부로서는 어떠한 국가와도 우호통상조약의 체결확장을 환영하고 특히 우리나라와는 조속히 기본조약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측이 이에 큰 이해가 없다고 하여 그 희망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성의의 표시가 되므로 우선 추상적으로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통상항해조약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내용으로 조약안을 작성하였다고 설명함.
3. 외무부 조약과장은 1957.7.18. 우리 정부의 우호조약안에 대해 대만측이 제안해 온 내용을 검토한 후, 대만측 제안은 명칭은 우호조약이나 실질적으로는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의 기본적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아주과장에게 회보함.
4. 외무부장관은 1960.10.12. 주대만대사에게 지난 수년간에 걸쳐 대만 정부로부터 제의된 한·대만우호조약은 대만 정부에서 아직도 그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금후 신중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대만 정부에 정중하게 알려줄 것을 훈령함.
5.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장은 1964.3.26. 주한대만대사관 ‘후’ 참사관을 초치하여 1962년 이래 계속된 한·대만 문화협정체결 교섭이 쌍방 합의로 서명단계까지 갔으나 대만측이 우호조약 체결 선행을 주장하여 문화협정 체결이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바, 동 참사관은 대만 정부는 문화협정 체결에 앞서 간단한 우호조약을 체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6. 주한대만대사관은 1964.7.23. 우호조약과 문화협정에 규정될 내용을 합친 단일 협정안을 외무부에 제시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64.9.25. 우호조약과 문화협정을 따로 체결하는 방안을 대만측과 교섭



토록 지시함.

7. 정일권 국무총리의 대만 방문 중인 1964.10.12. 한·대만우호조약의 협정의 가조인을 위해 김신 주 대만대사와 심창환 대만 외교부장이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함.
8. 본 문건에는 한·대만우호조약 교섭을 위해 양측간에 제시된 조약안과 이와 관련된 교섭 쟁점 등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55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대만(구 자유중국)간의 우호조약, 전2권 V.2 체결

| 65-182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4 / 2 / 1~338(338p)

552

1. 외무부는 1964.10.30. 개최된 제106회 국무회의에 타이페이에서 1964.10.12. 가조인된 '대한민국과 대만(구 자유중국)간의 우호조약'을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친 후 동 조약을 원안대로 체결할 것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재가를 받음.
 - ✪ 외무부는 국무회의에서의 조약 제안 상정 시, 대만측은 당초 조약안에 타방 당사국 국민의 출입국 및 상업상의 활동 등 대우를 권리로써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였으나, 우리 측은 약 500명에 불과한 대만 거주 교포에 비해 그 60배나 되는 약 3만명의 재한 화교에게 현재 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현상유지원칙을 관철하여 타방 당사국 국민은 당사국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5조를 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2. 우리 정부는 타방당사국 국민의 대우를 규정한 한·대만우호조약 제5조의 부속문서로서 합의 서명된 합의의사록은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조약이 정식 서명될 때 같이 서명되고 본문이 비준될 때 동일하게 비준되는 것이라는 입장인 데 반해, 대만 정부는 합의의사록은 조약 본문과 달리 가조인만으로 별도로 발효한다는 것을 구두로 합의하자는 제안을 상기 1964.10.12. 가조인 이래 우리 정부에 요구해 옴으로써 양측의 조약 서명이 계속 지연됨.
 - ✪ 동 합의의사록은 '제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어느 일방 당사국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중의 건강, 도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손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3. 주한대만대사관측은 1964.11.26. 대만대사가 합의의사록에 대해 oral statement를 행하고 이를 문서화할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외무부에 이를 수락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량쉬조 대만대사는 11.27. 서울에서 동 조약에 정식 서명함.
4. 한·대만우호조약은 1965.11.10.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동 조약의 비준서 교환은 12.3. Taipei Guest House에서 김신 주대만대사와 심창환 대만 외교부장 간에 행해짐.
5. 외무부는 1965.12.3. 비준서 교환과 관련하여 한·대만우호조약은 전통적으로 존속해 오던 우호적 유대를 확인하고 외교, 영사관계를 규율하며 또한 각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타방 당사국 국민은 그들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어느 제3 국민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하도록 보장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함.

한 · 월남간의 우호조약 체결의의

| 65-183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4 / 3 / 1~7(7p)

외무부 조약과는 1965.11.22. 한 · 월남간의 우호조약 체결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리나라의 우호조약 체결 연혁

- ※ 우리나라는 미국과 1882년 평화,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 1957년 우호통상항해조약, 대만(구 자유중국)과 1964.11월 한 · 대만우호조약을 체결함.
- ※ 독일과는 거주 및 통상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을 개시함.

2. 우호조약의 개념

- ※ 우호조약은 대체로 통상조약의 일부분으로서 통상조약에 포함되어 체결되어 온 것이 많음.
- ※ 대만과는 전통적으로 단순히 Amity Treaty로 하여, 체약국간의 우호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국민의 출입국, 집회, 신체 및 재산보호, 사업활동, 차별대우 금지 등을 규정함.

3. 한 · 월남간의 우호조약 체결 고려사항

- ※ 한국은 전후 수차례에 걸쳐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전투병력, 의료단, 기술원조단을 월남에 파견하였고, 이어서 민간기술자의 대량 파견을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음.
- ※ 또한 월남 전쟁에 참여한 한국군 소속원들의 현지에서의 체대 가능성과 이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논의함이 국익에 합치됨.
- ※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월남에 있어서의 모든 활동 보장과 아울러 이러한 보장에 있어 월남정부의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민 대우를 보장받아야 할 것임.

5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 65-184 |

생산년도	1958-65
생 산 과	조약/북미2
MF번호	Re-32 / 13 / 1~116(116p)

554

1. 외무부는 1958년 한·미방위조약의 수정, 보강문제를 검토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한미방위조약상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방위조치는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국내절차(미헌법상 선전포고권은 미의회가 지님)상의 난점으로 한국에 대한 방위지원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나토 조약 제5조와 같이 헌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즉각 방위의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제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실현가능성과 필요성이 희박함.
 - 소위 나토식 규정은 리오조약(3조)을 제외하고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음.
 - 한·미방위조약 체결에 이어 발표된 '리·덜레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휴전기간 중 공산측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한국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공격을 가할 시는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사령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at once and immediately' 반격을 가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방위조약 자체가 공산침략에 대한 경고로서 공동방위를 규정한 이상 현실로서 공산침략에 대한 즉각적인 방위를 미국이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봄.
 - 미의회는 선전포고권을 갖고 있으나 긴급사태시는 군사행동을 취한 후 추인을 얻은 관계가 있으므로 미국이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결의가 있으면 헌법상의 절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 ※ 따라서 한미방위조약은 조약의 체제로서는 영토보전이나 간접침략에 대한 사항이 없고 공동방위 소극성 등 미비한 점이 있으나 현 정세 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근본적인 수정 또는 보강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외무부는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에서 작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안(조약 전문 및 제2조의 '무력공격'을 '모든 형태의 침략'으로, 제3조의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를 '즉각'으로 수정)에 대해 1961.7.31. 다음과 같은 검토보고서를 제출함.

- ※ '모든 형태의 침략'이란 용어의 수정은 개념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쟁의 선언, 강화 등 사항은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헌법 규정이므로 헌법상의 수속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실익이 없으며, '즉각'이라는 구절의 첨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지체 없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임.

3. 외무부 조약과는 1965.1.26. 한·미방위조약상의 '미국의 한국 방위의무에 관한 논점'이라는 검토 보고서에서, 방위조약의 문제점으로 논란이 있는 미국의 '헌법상의 절차'는 미국이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결의가 있는 한 현행규정이나 나토식 규정이나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방위조약 규정만으로도 한국 방위의무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956.7.2] 장비 및 물자의 처분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의 개정추진

| 65-185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Re-32 / 14 / 1~81(81p)

1.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의 원조를 제공받아 사용한 군수물자와 장비가 폐품이 되면 미국이 처리권한을 갖게 되어 있는 한미협정을 개정해 주도록 외무부에 요청함. 이를 기초로 양 부처가 협의한 결과 미국이 제3국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물자와 장비를 제외하고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가공하거나 보완된 물자와 장비는 한국에 넘기도록 요청키로 하여 외무부가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러한 뜻을 전달함.
2. 주한미국대사관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도록 본국 정부에 건의하였다고 외무부에 전해음.
3. 그동안에는 물자와 장비의 폐품을 한국에서 처리하고 그 대금을 미군이 사용하였음.

55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독간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교섭

| 65-186 |

생산년도	1961~65
생 산 과	경제협력/구주
MF번호	J-24 / 8 / 1~184(184p)

556

1. 주독대사관은 1961.7.21. 주재국 외무성측이 한독우호통상항해조약은 관계부처와 광범한 범위에 걸쳐 상의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약 9개월 후이나 독일측 초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 조약의 체결 준비를 하면서 비교적 체결이 용이한 '투자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을 먼저 체결할 의향을 표명해 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투자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조약(Treaty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에 관한 교섭은 1962.3월~11월간 21차에 걸친 실무자 교섭회의를 거쳐 1962.11.13. 독일 경제성에서 양측 대표간에 가조인됨.

※ 동 조약은 1964.2.4. 서울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동 협정 부속 protocol 제1합의 규정에 의거, 본 협정 체결 후 1년 이내에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Establishment Treaty)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기로 규정되어 있음.

2. 외무부는 1965.1.19. 주영대사 및 주프랑스대사에게 우리 정부는 독일과 우호, 통상, 항해에 관한 조약(F.C.N Treaty)을 체결할 의도였으나, 독일측 입장과 기타 사정으로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영국 및 프랑스가 타국과 체결한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이 있다면 동 조약문을 입수, 송부할 것을 지시함.

3. 외무부는 1965.10.7. 독일측과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 교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경석 구주과장을 독일에 파견을 결정하였으며, 서 과장은 10.29. 우리측 초안을 토대로 독일 외무성측과 협의함.

※ 우리측의 조약 초안은 전문(평화우호관계 강화, 내국민 및 최혜국민 대우 원칙 선언)과 19개의 조문(입국 및 기본적인 인권, 노동자의 보상, 재산권, 공업소유권 등) 및 7개의 의정서(외국자본 도입, 제한 허용 등)가 첨부되어 있음.

4. 본 문건에는 독일측과의 조약 교섭 일지 및 조약 문안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한·일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약정

| 65-187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4 / 9 / 1~56(56p)

1. 1950.6.2. 한국과 일본이 무역을 하기 위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무역거래에 따른 지불금 청산을 위하여 동 일자로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일간의 무역결과 1961.4월 현재 한국의 대일부채가 5,729,398.08미불에 달하였는바, 1961.4.22. 양국은 각서교환으로 동 부채를 조속한 시일 내 청산하기로 함.
2. 1965년 한일간 기본조약 및 제 협정에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에서 상기 금액을 청산하는 규정에 따라 상기 금액은 청산하게 되었으나 상기 금액 확정일자 이후에 발생한 미불금을 청산하는 기술적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생겼으며 한일간 무역거래는 1961.4.22.자 각서교환 이후 사실상 현금결제 방식으로 변환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이 사실상 존재의의가 없어짐에 따라 동 협정을 종결하는 협정이 필요하게 된 것임.
3. 1965.3.11.~27.간 개최되었던 제1차 한일 무역회담에서 양측은 한일간의 재정협정을 종결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일본은 또한 IMF 8조국으로 이행할 때 한국과의 청산계정을 특인 사항으로 승인된 것 이므로 동 계정을 조속히 종결하여야 할 입장에 있음.
4. 동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재정협정은 1966.3.19. 종료함.
 - ※ 재정 협정 종료 후 청산계정을 통한 거래는 인정하지 않으나 청산계정은 1966.9.15.까지 개설하여 1966.3.19. 이전에 청산계정을 통하는 결제가 인정된 것은 1966.9.15.까지 청산계정을 통하여 결제할 수 있음.
 - ※ 1966.9.15. 직후 청산계정의 최종 잔고를 확인하고 청구권 협정 합의에 따라 청산하고 초과된 금액은 1966.11.14.까지 청산함.
5. 상기 약정은 1965.12.1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 일자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일본 외상명의 의 각서가 교환되어 30일 후에 발효됨.

55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일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자료집)

| 65-188 |

생산년도	1963-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Re-14 / 5 / 1~427(427p)

수록된 자료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1. 청구권 세목에 관한 교섭방침(1963.3.18.)

- ※ 대일청구권 세목 협정 교섭에 관한 기본 방침
- ※ 한일간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방침
 - * 일반 청구권 문제 중 원칙적 문제
- ※ 한국과 일본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의 비교
- ※ 이북지역의 청구권 문제
- ※ 청산계정상 채무의 상환기간 문제
- ※ 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의 상환기간 문제
- ※ 수출입은행의 차관의 성격
 - * 청구권 관계협정 초안에 관한 실무자 회의
 - * 한일간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방침(외무부 정무국 시안)

558

2. 대일재산 청구권 관계 협정안

-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항과의 관련하여 한일간 청산계정 잔고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교환공문
-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3항에 관한 교환공문
-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
 - * 대일청구권 교섭의 문제점
 - * 대일청구권 교섭 훈령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1(다)의 (1)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안)



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 제1의정서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7. 상업상의 민간 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공문

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1(b)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안)

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교환공문(안)

[1959.10.1] 재한미국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의 개정추진

| 65-189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조약1/경제협력/통상2
MF번호	J-24 / 11 / 1~44(44p)

1. 상공부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차량을 한국인 업자에게 불하하는 경우 절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차량이 그대로 유출되어 국내산업보호에 지장을 준다면서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협정”개정을 외무부에 요청함.

※ 상공부는 이에 앞서 먼저 주한미군 측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음.

560

2. 외무부는 내부검토 결과에 따라 현행 협정상으로도 잉여물자가 한국인 업자에게 인도된 후 처분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상공부에 회신함.

3. 외무부는 재무부가 미군이 물자를 한국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확인절차를 인정하도록 협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하여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협정 개정 없이 국내 조치만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회신함.

한·미간의 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차관협정, 제2차

| 65-190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조약1
MF번호	J-24 / 13 / 1~47(47p)

1.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국제개발처(AID)로부터 차관을 통하여 100대의 디젤기관차를 도입하려는 계획하에 1961.2.3. 1,700만 불 차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차로 1962.8.29. AID로부터 830만 불의 차관을 제공받아 30대를 도입한 바 있음.

✻ 정부는 1963.1.7. 주미대사로 하여금 디젤기관차 추가 도입을 위한 AID차관 획득 교섭을 지시하였으며 AID는 한국 교통부의 디젤기관차 소요량에 대한 기술조사를 하여 기술용역단이 한국의 디젤기관차 추가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본 차관협정이 이루어짐.

2. 본 차관협정은 디젤기관차 65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AID로부터 1,100만 불의 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인바, 차관의 상환조건은 10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음. 이자율은 거치기간은 0.75%, 상환기간 중은 2%임. 본 협정에는 또한 협정 발효 후 3개월~7개월 내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선행조건으로 철도청의 회계제도와 통계제도를 확립하고 철도청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한다는 것과 철도청이 본 협정에 의한 대정부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한 AID의 사전승인 없이 1년 이상 다른 장기 채무를 질 수 없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3. 본 협정은 1965.3.12.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과 Joel Bernstein 주한 USOM처장 간에 서명되었으며 1965.3.26.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은 후 1965.4.14. 대통령의 재가를 득한 후 동 일자로 공포됨.

56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미간의 제3(영남) 및 4(진해) 비료공장 1964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 65-191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4 / 14 / 1~355(355p)

정부는 제3(영남) 비료공장과 제4(진해) 비료공장을 미국 AID차관을 도입하여 건설하고 한국의 기존 비료공장인 충주 비료공장과 미국 투자단으로 하여금 동 비료회사에 출자하게 하여 비료 생산 공장을 운영한다는 계획 하에 우리 정부와 미국 대외개발처(AID) 간에 아래와 같은 협정을 체결함.

1. 제3(영남)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562

- ※ AID가 24,200,000불의 차관을 제공하여 영남화학주식회사와 미국 Floor사와의 건설계약에 의하여 요소비료 84,000톤과 복합비료 180,000톤 규모의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
- ※ 차관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0년간은 1%, 그 이후는 연 2.5%로 하고 원금은 6회 균등 분할하여 AID에 지급하되 최초 분할금은 최초 이자 지불 만료일로부터 9년 6개월 후에 상환하여야 함. 단 차주는 이자 지불 만료일 이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지나 상환금은 최초로 지불만기가 된 이자 지불에 우선 충당함.
- ※ 한국주주인 영남화학주식회사와 충주비료회사는 10,000,000불에 해당하는 원화를 영남에 주식 투자하고 미국주주인 Swift와 Skelly사는 영남에 10,000,000불을 주식투자함.

2. 제4(진해)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 ※ AID가 24,600,000불의 차관을 제공하여 영남화학주식회사와 AID가 만족할 수 있는 미국건설회사와의 건설계약에 의하여 요소비료 84,000톤과 복합비료 180,000톤 규모의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
- ※ 차관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에는 1%, 그 이후 30년의 상환기간에는 연 2.5%로 하고 원리금 상환은 이자와 원금의 지불 순서로 상환함. 단 차주는 기한 전 상환을 할 수 있으나 기한 전 상환은 먼저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 상환의 역순으로 충당되도록 함.
- ※ 한국주주인 진해화학주식회사와 충주비료회사는 10,500,000불에 해당하는 원화를 영남에 주식 투자하고 미국주주인 Gulf사는 진해에 10,500,000불을 주식투자함.

3.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1965.6.2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24. 경제기획원 장관과 AID처장 간에 서명되고 1965.7.3.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동 일자로 공포됨.

한·미간의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 수정협정

| 65-192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5 / 1 / 1~313(313p)

1. 본건은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ID와 특수상환절차에 관한 협정 체결내용임. 특수상환절차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위는 한국이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하여 미국의 개발차관 기금(DLF)과 5,600,000불의 차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사업의 입지변경(삼척에서 인천으로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기 인출된 289,150불을 제외한 전액의 차관금 인출이 동결되어 왔으나 1965.5.24. 미측이 차관재개를 위한 협정 초안을 보내와서 아래 요지의 협정 문안이 합의된 것임.

- ※ 차주인 동양화학의 본 차관금에 대한 불화채무를 한국 정부가 인수함.
- ※ 사업주는 자본금을 2.5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자함.
- ※ 차관금액은 당초 차관금액 5,600,000불에서 기인출된 289,150미불을 제외한 5,310,850미불이며 내자 1,150,000,000원을 별도 조달함.
- ※ 건설소요 자금 중 외자가 차관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외자에 대한 정부 외환배정 조정
- ※ 차관조건은 10년 거치(이자 연 1%), 30년 상환(이자 연 2.5%)
- ※ 한국 정부는 차관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차주의 미화 상환액수와 동일한 액을 미불화로 AID에 지불함. 이러한 원리금 지불은 수정협정 체결 이후 최초 차관 인출일부부터 40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연 2회 6회에 걸쳐 분할 상환함. 최초 분할 상환금은 본 수정협정 체결 후 최초 인출일부부터 10년 후에 상환하여야 함. 이자는 최초 인출일부부터 발생하며 연 2회 지불하되 제1차 지불은 수정차관협정 체결 이후 최초 인출일부부터 6개월에 함.
- ※ 동양화학은 기자재 구매조 제1차 차관금(289,150불)을 대출일부부터 15년간(2년 거치) 원화로 정부에 상환함.
- ※ 수정 차관협정은 정부, 동양화학 및 AID 간에 이행됨.

2. 본 수정 차관협정은 1965.5.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65.6.3. 경제기획원 장관과 AID 처장 간에 서명되었으며 6.11.자로 대통령의 비준을 얻어 동 일자로 공포됨.

563

대한민국의 외교사료해제

한·미간의 AID 원자재 차관협정, 제1차

| 65-193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5 / 2 / 1~35(35p)

1. 1965.12.14. 개최된 제106회 국무회의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제출한 AID원자재차관협정체결안을 의결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결 주문

- 일반원자재와 기계류 및 동 부속품의 도입을 위한 소요외화 10,000,000불의 AID 차관협정을 체결할 것을 승인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동 협정서에 서명할 것을 의결함.

564

※ 제안 이유

- 미국 정부로부터 차관협정 초안이 송부되어 왔으므로 이를 검토한 결과 수락하여도 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 헌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차관협정서의 주요 내용

(차관규모 및 도입품목)

- 차관규모 10,000,000불
- 도입품목
 - 1차분 5백만불: 산화지당, 카본블랙, 소다회, 석, 아연, 생고무 등 일반 원자재
 - 2차분 5백만불: 산화지당, 카본블랙 등 일반 원자재 2.5백만불, 발전기, 전기기구 등 기계류 2.5백만불
- 차관조건: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이자율 연 2.5%(거치기간 중 연 1%), 상환방식 연 2회 균등분할 상환
- 선행조건
 - 1차분 방출전 1965.1월~9월말까지 정부세입 450억원 초과달성, 금리현실화정책 실현 등
 - 2차분 방출전 1965.1~12월말까지 정부세입 650억원 초과달성, 순외환보유고 15백만불 유지 등
- AID의 구제조치
 - 차주가 원리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제출자료 내용의 부정확한 경우 등에 AID는 미상 환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약사태의 발생, 차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등은 AID는 L/com 발급의 거부, 취소, 보류, 물자의 귀속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동 차관협정은 1965.12.24. 공포되어 관보에 게재됨.

한·미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AID 차관 협정

| 65-194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5 / 3 / 1~103(103p)

1. 정부는 미국(AID)으로부터의 1억5천만 달러 차관과 일본에서 도입할 차관으로 추진할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경비를 별도 AID차관으로 충당키로 하고 미국과의 교섭을 거쳐 아래의 조건으로 합의함.

- ✿ 금액: 2백만 달러
- ✿ 금리: 거치기간 1%. 상환기간 2.5%
- ✿ 거치기간: 9.5년
- ✿ 상환기간: 30.5년
- ✿ 상환방식: 연 2회 균등
- ✿ 구매조건: 기본적으로 By American
 - 물자, 용역, 운송, 보험 등 포함

2. 정부는 경제기획원장관과 AID 처장의 서명,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65.9.8.자 관보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AID차관 협정”을 게재함.

56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 · 미간의 보충실무약정 체결교섭

| 65-195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조약
MF번호	Re-32 / 23 / 1~14(14p)

1965.9.6. 이세호 주월한국군 사령관과 Rosson 주월미군 원조사령관이 서명한 주월미군과 주월한국군 간의 군사실무약정 제15항은 주월한국군과 주월미군 간의 군대 구성원 또는 고용인에 대하여 상대방에 가한 재산상의 손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상호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주월한국군이 전투 및 비전투 행위로 인하여 월남정부 또는 그 국민에 가한 재산상의 손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청구는 별도 약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함.

566

(상기 조항에 따라 1966.6.20. 이훈섭 주월한국군 사령관과 Rosson 주월미군 원조사령관 간에 군사실무 약정의 보충 약정을 체결하는 교섭이 진행되나 동 내용은 1966년도 문서철에 기록되어 있음.)

한·독(KFW)간의 MRO 자재도입을 위한 재정 차관협정

| 65-196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5 / 6 / 1~134(134p)

한국 정부와 서독의 재건은행(KFW) 간에 기존시설의 유지, 수선, 운영(MRO)을 위한 1,500만 독일 마르크의 자재도입 재정차관협정이 1965.9.17. 주독일(구 서독)대사와 서독재건은행 간에 서명되고 1965.11.10. 비준되어 동 일자로 공포되었는바, 동 차관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본 차관협정이 체결된 동기는 한국이 민간부문 경상 수요를 충당하여 물자와 용역을 수입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서독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추진됨.
- ✿ 본 협정상의 차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서독 재건은행에 차관협정의 차관액수 범위내에서 대금지불절차에 따라 분할지출을 청구함.
- ✿ 본 차관의 이자율은 3%로 하며 이자의 계산은 지출일로부터 별도로 정하는 서독 재건은행에 입금되는 상환일까지로 하고 만기 상환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기간 중 연 2%의 이자율을 추징함.
- ✿ 본 차관협정 제1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차주와 재건은행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협정을 별도로 체결함.
- ✿ 본 협정에 따른 차관으로 구입할 상품내역서는 주독한국대사관이 독일 외무성에 1964.11.10.자 각서형식으로 제출하였는데 동 각서 내용은 1964.2월 및 1964.4월 한국 정부가 주한서독대사관을 통하여 전달한 바 있는 21개 사업계획을 대체하는 것임.
- ✿ 본 협정에 따른 대금 지불절차에 관하여 서독의 재건은행은 별도의 서한을 통하여 세부절차의 시행을 요청함.

567

대한민국의외교사료해제집

한·독(KFW)간의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 65-197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5 / 7 / 1~71(71p)

1964.12.7. 체결된 한·독 정부간의 재정차관협정에 의하여 통신망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은 1965.3.26. 국회의 동의와 1965.10.19. 제92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11.4. 최덕신 주독대사와 독일 재건은행 중역인 Herr Bachem와 Dr. Gutt 간에 서명되어 11.26. 공포되었는바,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서문

568

- ※ 1964.12.7.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서에서 독일연방정부는 장기계획 자본원조액 5,400만 DM을 공여할 의향이 있음을 선명한 바 있음.
- ※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전신, 전화, 통신망을 확장함으로써 한국경제를 가일층 발전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독일연방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재건은행으로부터 정부협정서에 기책정된 바 있는 자본원조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은 차관을 공여함.

2. 차관의 금액 및 목적과 운송조항

- ※ 재건은행은 차주(대한민국)에게 총액 1,900DM을 초과하지 않는 차관을 제공함.
- ※ 본 차관금은 약 74,000회선의 EMD-M형 자동전화교환기의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에 소요되는 외화대금지출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함.

3. 차관금 지불, 약정 수수료 및 이자 등

- ※ 본 차관금은 사업계획의 진척에 따라 차주의 요청을 받고 지불함. 본 차관금이 1969.6.30.까지 전액 지불되지 않을 경우 재건은행은 차관금 지불을 거부하는 권한을 보유함.
- ※ 차주는 미지불 차관금액에 대하여 연 1/4%의 약정수수료를 지불함. 차관금의 이자율은 연 4%로 함.

4. 차관금 지불중지

- ※ 재건은행은 지불기일에 약정수수료 또는 이자불입액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액 수령치 않았을 때, 합의된 목적 외에 차관금액이 사용되었을 때 등의 경우 차관금 지불을 중지할 권한을 가짐.

한·일간의 해운협정 체결추진

| 65-198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통상진흥/조약
MF번호	J-25 / 11 / 1~145(145p)

1. 외무부 통상국은 1965.7.2. 아주국 및 방교국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현행 한일 잠정해운협정을 대체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시한 협정안을 송부, 검토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

2. 방교국은 일본측 잠정해운협정안이 1965.6.22. 서명된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5조에 규정된 해운조약 또는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1950.10.4. 이래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잠정협정을 대치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1) 현행 잠정협정이 과거 15년간 양국의 해운업에 적용되어 왔고, 또 정식 해운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으리라 예견되며, (2) 일본측 협정안이 현행 협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잠정 해운협정은 필요 없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함.

※ 통상국은 일측이 '잠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장차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다는 저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나, 통상국의 입장은 포괄적인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를 분리하여 필요에 따라 독립된 해운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방교국이 계속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3. 일본측 잠정 해운협정안의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회의가 외무부, 상공부, 교통부 및 농림부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1965.11.22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 바,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문: 일본측이 제시한 '잠정'을 빼고 정식 해운협정을 체결함.

※ 제1조(선박 출입항): 제3국과 동등 대우라고 규정한 것을 제3국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로 함이 협정 운용상 우리측에 유리함.

※ 제2조(국적 증명): 제2항의 화물선의 개념 중 어선으로서 어개류를 운송하는 선박은 화물선으로 취급함을 양해시킬 것.

※ 제3조(선박출입항 절차): '출발항이나 목적항에 관계 없이'라는 규정은 일본선박이 공산지역에서 출발한 경우 공산지역 출발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한 입항할 수 없다는 내규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동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합의의사록이나 혹은 각서교환으로 이를 규정함.

4. 본 문건에는 일본측이 제시한 한일 잠정해운협정안과 1965.2월 방콕에서 개최된 ECAFE(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의 해운 및 해상운임관계 전문가 특별회의 보고서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56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대만(구 자유중국)간의 잠정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개정

| 65-199 |

생산년도	1962-65
생 산 과	조약/통상1
MF번호	J-26 / 1 / 1~174(174p)

1. 교통부는 국책항공회사 지정이 대한국민항공사에서 대한항공공사(KAL)로 바뀜에 따라 권리승계를 위해 대만(구 자유중국) 등과의 항공협정을 개정토록 외무부에 요청했으며 외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대한항공공사가 서울-타이페이 노선을 승계하는 문제에 관해 협의할 것을 제안함.
2.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오사카를 경유하는 기존의 서울-타이페이 간접노선에 추가하여 서울-타이페이 직항노선의 개설을 제의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함.
3. 양국 정부는 각서교환 형식으로 항공협정을 개정함.

한(교통부·국방부)·미(주한미군사령부)간의 대한민국 공역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

| 65-200 |

생산년도	1963-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6 / 2 / 1~28(28p)

1. 교통부는 한미 양국 정부와 군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국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관리문제를 다루는 “한국공역조정위원회”를 교통부 산하에 두고 관리업무를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국과의 협의를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주한미국대사관에 공한을 보내 이러한 방향으로의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제의하였으며 미국대사관은 워싱턴과의 협의결과라며 교통부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주한미군 당국과 교통부가 직접 협의하는 방식을 제안함.
3. 교통부는 주한미군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의 공역관리를 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산하기관으로 한국 육군과 공군, 유엔사, 주한 미공군과 육군 관계자가 참가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기로 함.

57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 · 브라질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 65-201 |

생산년도	1962-65
생 산 과	중남미
MF번호	J-26 / 3 / 1~32(32p)

1.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의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것을 1965.5.12.자 박동진 주 브라질대사가 건의하여 옴에 따라 외무부는 브라질이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사증 면제 협정을 참고 하고 1965.6.11. 주브라질대사로 하여금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는 교섭을 할 것 을 지시함.
2. 상기 지시에 따라 주브라질대사관은 브라질 외무부와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의 사증 면제 협정 체결을 교섭하여 1965.8.5. 양측 간에 영문과 포르투갈어 및 영문과 한국어로 된 각서 교환 형식으로 상호 사 증을 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증면제협정 문안에 합의함.

한·파라과이간의 이민협정 체결교섭

| 65-202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미주
MF번호	J-26 / 4 / 1~32(32p)

1. 파라과이 외무성은 1964.4.7. 주브라질대사관(파라과이 겸임)에 한·파라과이 이민협정안을 공한으로 통보하였는바, 동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 정부는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파라과이 이민이 상호간의 이익을 촉진할 것으로 믿어 다음과 같이 합의함. (전문)
- ✪ 본 협정에 의한 이민자 수는 본 협정 시행 후 10년간 5천 세대로 함. 한국 이민자는 연 500세대 이내로 하되, 연 500세대의 이민 쿼터가 송출되지 못할 경우 잔여 세대는 익년도의 쿼터에 합산함. (제1조)
- ✪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순시온에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한·파라과이 이민합동위원회의 주사무소를 동·동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에 따라 이민 및 개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한국 이민자들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함. (제2조)

2. 주브라질대사관은 1964.7.27. 파라과이 외무성에 한국이주공사가 선정한 파라과이 농업이민 희망 150세대의 명단을 송부하면서, 동 150세대는 파라과이정부의 이민허가를 받은 100세대 중 개인사정으로 한국을 출발하지 못하는 세대를 대체하기 위하여 50세대가 추가되었다고 설명함. 또한 주브라질대사관은 일본 주재 파라과이총영사관이 150세대에 대하여 파라과이 영주비자를 발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3. 주브라질대사관은 1964.9.24.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파라과이 정부에 제안함.

- ✪ 파라과이측 협정안 제5조 '한국 정부는 한국 이민자들에 대해 초기 개간 기간 중 파라과이 수송 및 정착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를 '한국 정부는 이주자의 초기 개간 기간마다 파라과이 수송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로 수정함.
- ✪ 파라과이정부는 협정의 비준서를 아순시온에서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서명이 아순시온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제관례에 따라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할 것을 희망함.

57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4. 주아르헨티나 상주대사관이 1964.11월 개설되어 파라과이를 겸임하게 된 이후에도 파라과이와의 이 민협정 문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주브라질대사관이 계속하여 담당하였으나, 주아르헨티나대사가 1965.5.24. 겸임 신임장을 파라과이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담당하게 됨.

한·불간의 선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 65-203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조약/구주
MF번호	J-26 / 5 / 1~77(77p)

1. 주한프랑스대사관은 어업차관 공여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한국인 선원이 프랑스에 입국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여권 없이 선원수첩만으로 15일 이내 단기체류 목적의 입출국이 가능토록 공한을 교환하자고 제의함.
2. 외무부는 부내협의를 거쳐 법무부, 농림부, 수산개발공사 등 유관부처와 기관에 의견을 문의함. 이에 대해 선원송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와 기관은 송출확대를 위해 찬성하였고 총리실도 선원송출 수속의 간소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무부는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여권 휴대를 주장함.
3. 또한 외무부가 선원수첩만을 지닌 한국선원의 제3국 경유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데 대해 주일본대사관은 일본은 불가능한 것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은 가능한 것으로 회신함.

57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 · 스웨덴간의 사증수수료 면제협정

| 65-204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6 / 6 / 1~77(77p)

1. 일본에 주재하는 스웨덴대사관의 1등서기관이 1965.1.18. 한국 외무부를 방문하여 양국간 사증 수수료 면제협정을 체결할 것을 구두로 제의하고 일본주재 스웨덴대사가 1965.2.10.자 우리나라 외무장관 앞 공한을 통하여 정식으로 제의한 데 대하여 우리나라는 동 제의를 수락하기로 함.
2. 스웨덴대사는 사증수수료면제협정을 양측의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1965.5.4. 자 신명의의 각서를 송부하여 왔으며 1965.6.8. 우리 외무장관과 각서를 교환하고 각서 교환일로부터 2 개월 후에 발효시키기로 함.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자료집)

| 65-205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6 / 7 / 1~69(69p)

1. 주일대표부는 1965.6.15. 일본 외무성에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안을 전달함.

- ☛ 동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가능한 협력을 하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는 것으로 전문 및 4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2. 외무부 방교국 조약과는 1965.11월 한일간의 문화재 인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을 검토하였는 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문화재 인도를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누어 하지 않고 일본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행할 것을 일본측이 원하고 있음.
- ☛ 일본측은 문화재를 항공편(JAL전세)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우리측이 희망하는 바임).
- ☛ 문화재 인도 시 수속의 간소화를 위하여 세관 직원도 입회시키고, 인도를 확인하는 문서를 상호 교환하는 간단한 의식을 거행할 것을 일본측이 희망하고 있음.
- ☛ 문화재 수송시 일본측은 실무자를 동행시켜 문화재의 도착을 확인하고자 함.
- ☛ 동경에서 인도할 경우 그것으로서 법률적인 인도 책임이 끝나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일본측은 취하고 있음.
- ☛ 보험료 산출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일본측이 인도할 문화재의 가치 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 국립박물관 소장: 24,527,170 일본원
 - 도서: 4,170,000 일본원
 - 체신문화재: 1,000,000 일본원

3. 일본측이 우리측에 제시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부속된 합의의사록안은 다음과 같음.

- ☛ 한국측 대표는 한국에 유래하는 일본 국민의 사유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되기를 희망한다는 뜻

57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을 언급하였으며 일본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하고 있음을 언급함.

4. 본 문건에는 일본측이 제시한 협정안 등의 자료도 수록되어 있음.

한 · 말레이시아간의 문화협정

| 65-206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조약/공보문화
MF번호	J-26 / 8 / 1~219(219p)

1.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문화교류의 증진을 통하여 양국간의 이해 및 우호관계를 보다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문화협정을 체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외무부장관의 1964.12월 말레이시아 방문 시 문화협정 체결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이래 양국간에 교섭이 진행되어 협정안에 합의하였으며, 라만 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1965.4.28. 서울에서 동 협정의 가조인이 행해짐.
2. 한 · 말레이시아 문화협정은 전문과 6조로 구성되어 있는바,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각 체약국 정부는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 출판물, 방송 종목 및 예술작품의 교환, 2) 교수, 과학자, 의사, 학생의 교환, 3) 신문인, 예술인 및 운동경기 단체의 방문, 4) 기타 방식을 진행하기로 함. (제1조)
 - ※ 양국은 자국 내에 타방 국가의 문화 기관을 설치할 가능성을 연구함. (제2조)
 - ※ 추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서 1) 출판물, 방송종목 및 예술작품 교환 시 면세사항, 2) 양국에서 획득한 학위 및 학력증명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함. (제3조)
3. 정부는 1965.6.12. 제50회 국무회의에서 한 · 말레이시아 문화협정체결안이 의결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공포 시행하기 위하여 최규하 주말레이시아대사로 하여금 정부를 대표하여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정에 서명토록 조치함.
4. 한 · 말레이시아 문화협정이 1965.9.30.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정일권 국무총리와 말레이시아의 라만 수상의 입회하에 최규하 대사와 조하리 문교장관 간에 서명됨.
5. 한 · 말레이시아 문화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양국간의 통고가 1965.12.1. 쿠알라룸푸르에서 행해졌으며, 동 협정은 양 체약국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타방국에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기로 한 동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2.31. 발효, 공포됨.

57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미간의 정보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의 환율관계 규정 개정문제

| 65-207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6 / 10 / 1~8(8p)

1. 주한미국대사관은 재무부에 한국 정부가 1965년에 도입한 단일변동환율제가 한미 양국이 1962년 체결한 관련협정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한 미국산 정보매개물의 수입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함.
2. 재무부는 외무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미국과의 교섭을 의뢰함.
3. 외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내용의 반영은 협정 개정 없이 국내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면서 주무부서인 문교부가 처리할 사안이라고 회신함.

한·파나마간의 상표 및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 65-208 |

생산년도	1962-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6 / 11 / 1~18(18p)

1. 상공부는 1962.1.30. 외무부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국제공업소유권보호동맹 회원국의 일원은 아니나 공업소유권에 대하여 정식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특허 및 상표권은 미국, 상표권은 서독,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5개국이나, 우리 정부와 정식 협정의 체결 없이 특허법 제 39조와 상표법 제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스위스, 영국, 파나마 등 15개국 국민에게 외국 관현의 증명서만 접수하여 일방적으로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인정하여 왔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이들 외국에서 호혜적 대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해 옴.
2. 외무부는 우리나라가 외국 국민에 대하여 특정의 권리를 부여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도 호혜원칙 하에서 동일한 대우를 허여 받도록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국제관계에 관한 합의는 명문의 협정의 형식에 의하여 행함이 적절하므로, 과거 우리나라가 프랑스, 덴마크 등과 체결한 협정의 예에 따라 해당국에 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그 교섭결과를 보고하도록 재외공관에 시달할 것을 1962.2.7. 결정함.
3. 외무부는 1962.2.14. 주미대사에게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파나마 국민에 대하여 특허권 및 상표권을, 또한 캐나다 국민에 대하여 상표권을 일방적으로 허여하고 있으므로 파나마 및 캐나다 양 정부에 대하여 동 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업소유권을 향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민이 상대방 국가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4. 외무부는 1965.7.30. 주멕시코대사에게 우리 정부가 1962년 파나마 정부에 제의한 특허권 및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필요성의 입장에 변함이 없으므로 동 협정 체결을 다시 제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58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독간의 독일측 상표사용에 관한 문제

| 65-209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J-26 / 12 / 1~9(9p)

1. 1964.12월 박충훈 상공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독 경제사절단의 독일(구 서독) 방문시 서명된 “경제관계 협의에 관한 의정서” 제2장 3항은 독일 상표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한국 대표단이 귀국 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주한서독대사는 1965.5.26.자 외무부 앞 서한을 통하여 동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검토내용을 문의함.
2. 외무부는 동 문제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의 의견을 문의한 결과 경제기획원은 1965.6.11.자 공한을 통하여 “외국상표사용이 외자도입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특허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주무부의 동의를 얻어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표사용계약의 허가여부는 동 계약자체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의견을 회시하여 외무부는 동 내용을 주한서독대사관에 1965.6.15.자 공한으로 통보함.

한·리히텐슈타인간의 공업소유권 등의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추진

| 65-210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6 / 13 / 1~13(13p)

1. 상공부는 1964.10.12 외무부에 리히텐슈타인의 요청에 따라 동 국과 공업소유권 등의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상공부의 요청에 따라 1965.11.2. 주스위스대사에게 공업소유권 등의 보호에 관한 각서안을 송부하면서 리히텐슈타인과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동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착수하고 동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함.

58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노르웨이간의 특허·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65-211 |

생산년도	1962-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6 / 14 / 1~109(109p)

1. 정부는 특허법 제39조와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공부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16개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 공업소유권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러한 허용은 우리나라 국민이 이들 국가로부터 호혜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1962.2월부터 이들 국가 중 공업소유권 협정이 없는 15개국(이탈리아와는 공업소유권 협정을 가지므로 제외)과 공업소유권 협정을 체결하는 교섭을 하도록 지시함.

584

2. 주재국 대사관을 통한 이러한 공업소유권 협정체결 교섭에 대하여 노르웨이 외무부는 1962.1.30.자 공한을 통하여 당시 노르웨이를 관할하고 있던 주영대사관에 한국과 협정체결 의사를 표명하는 서한을 송부한 바 있으며 그 후 주스웨덴대사가 노르웨이를 관할하게 되어 주스웨덴대사가 협정체결 교섭에 임하게 됨에 따라 노르웨이 외무부는 1964.5.27.자 주스웨덴대사 앞 서한을 통하여 노르웨이가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보함.

3. 양측의 교섭으로 한국과 노르웨이는 “특허, 의장 및 상표 보호에 관한 협정”을 상호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체결하기로 하여 1965.4.13.자 주스웨덴대사 명의 서한을 통하여 우리 정부 각서를 노르웨이 외무성에 발송하였으며 노르웨이 외무성은 1965.5.24.자 서한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회답각서를 주스웨덴대사에게 전달함으로써 동 협정이 체결되고 동 일자로 발효되었으며 동 협정은 1965.6.9.자 관보를 통하여 공포됨.

한·호간의 무역협정. 전3권 V.1 체결교섭, 1961-63

| 65-212 |

생산년도	1961-65
생산과	통상1/조약
MF번호	J-26 / 15 / 1~233(233p)

1. 정부는 수출증진을 목표로 호주 정부에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상공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농림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협정 초안을 작성하고 호주에 제시함.

2. 이에 대해 호주측이 전해온 수정안 가운데 아래 내용이 한국의 입장과 상충하여 교섭이 지연됨.

- ※ 호주는 가입하고 한국은 가입하지 않은 GATT 회원국과 한국을 차별하는 규정
- ※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국영기업)에 대한 특혜 배제”, “민간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한국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규정
- ※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1차산품의 수출을 보장한다.”는 규정

3. 한국은 호주의 수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정하고 동 내용을 전달함.

- ※ 호주가 회원국으로서 GATT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한국이 호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GATT 미가입국으로서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려는 것인 만큼, 차별대우는 수용 불가
- ※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 배제의 경우, 이미 한국 정부가 그러한 방침을 취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나 명문화는 곤란
- ※ “1차 산품 수출 보장”의 의미가 불명확

58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호간의 무역협정. 전3권 V.2 체결교섭, 1964-65

| 65-213 |

생산년도	1961-65
생 산 과	통상1/조약
MF번호	J-26 / 16 / 1~267(267p)

1. 한국 정부의 반론과 확인요청에 대해 호주 정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해옴.

- ※ GATT 회원국인 호주로서 최혜국 대우 규정의 예외로서 한국을 여타 GATT 회원국과 차별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로서 불가피함.
- ※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국영기업)에 관한 규정은 민간기업과의 차별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 “1차 상품 수출보장”은 상품거래의 안전성을 위한 선언적 의미임.

586

2. 한국과 호주는 196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실무협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과 양해로 합의함.

- ※ 최혜국 대우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어도 호주는 실질적으로 한국을 GATT 회원국들과 동등하게 대우함.
- ※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무차별 규정은 “특혜방지”원칙으로 포함시킴.

한·호간의 무역협정. 전3권 V.3 체결 및 공포, 1965.9.21

| 65-214 |

생산년도	1961-65
생 산 과	통상1/조약
MF번호	J-26 / 17 / 1~129(129p)

1.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 호주와의 무역협정을 발효시킴.

- ✿ 외무차관-주한호주대사의 가서명
- ✿ 국무회의 상정, 심의, 의결
- ✿ 외무장관-주한호주대사의 정식서명
- ✿ 협정 공포
* 법제처는 국회동의를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위와 같이 처리됨.

2. 교섭에 있어 핵심쟁점이었던 GATT 회원국과의 차별,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 배제 문제는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타결됨.

- ✿ “본 협정의 제 규정은 어느 일방이 GATT 혹은 다른 다자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지니고 있거나 앞으로 지니게 될 권리나 의무에서 이탈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 “국영기업체(국가가 관리하는 기업)가 수출입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판매함에 있어 민간무역업자의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조치는 본 협정이 규정한 무차별 대우의 원칙과 합치되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58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말레이시아(구 말라야)연방간의 무역협정 수정에 관한 문제

| 65-215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6 / 18 / 1~19(19p)

1.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연방”이 형성되기 전에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북부 보르네오의 사라와크 주와 사바 주를 포함하는 “연방”이 탄생함으로써 협정을 이 지역에도 적용시킬 필요성이 나타남.
2.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양국 상공장관회담에서 말레이시아측은 협정을 이 지역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요식행위로서 각서를 교환할 것을 제의함.
3. 이에 대해 외무부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법제처는 국명이 바뀐 이상 협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알려줌.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국명 변경을 위해서는 협정 체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면서 제3국들과도 같은 형식을 취하는 만큼 처음 제의한 대로 교환각서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함.

한·미간의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 65-216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6 / 19 / 1~210(210p)

1. 한미간 면직물 협정은 면직물 수입국인 미국이 면직물 수출국인 한국과의 면직물 교역량을 제한함으로써 한국 면직물의 과도한 수입에 따른 자국 면직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는데 면직물 교역과 관련하여 GATT관계 19개국인 1962.1.29.부터 2.9.까지 장기면직물 협정초안을 통과시켜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등이 가입하였는바, 동 협정에는 국제면직물 교역의 합리적인 발전과 증대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도 1964.12.10.자로 동 협약에 가입하여 미국과의 면직물 협정 체결의무가 발생함.
2. 미국은 자국의 국내사정상 1965.1.1.까지 한국과 면직물 교역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동 협정을 1964년 말까지 완료시키려고 노력함.
3.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시작된 한미간 면직물 교역협정의 교섭은 미국 측이 1963.10월 64개 전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협정체결을 제의하여 왔으나 한국 측은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 쿼터량을 늘리기 위하여 수출 실적 확보 때까지 협정 체결을 미루고자 함.
 - ※ 미국 측은 한국이 조기 협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기 면직물 협정에 따른 연도별 쿼터 증가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측간에 제시하는 총 제한량에 차이가 커 협상이 결렬되었다가 미국이 최종 교섭량으로 2,600만 평방 야드를 제의하여 한국 측이 동 제의를 수락함.
 - 총 제한량의 범위 내에서 면직물 품목별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특정 품목이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총 제한량의 경우 한국 측의 견해는 미국의 1964년 총 수입 제한량이 1,400만 평방야드이고 장기 면직물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1965년도에 1,680만 평방야드만을 허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혜택을 준 것이라고 해석함. 동 협정의 유효기간은 1967.12.31.까지이며 어느 정부 이든 신년도 개시 후 90일 이전에 서면 통고로써 동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함.
4. 동 협정은 각서교환 형식을 체결하여 1965.1.26. 워싱턴에서 우리 대사관과 미 국무성 간에 각서가 교환되고 1965.1.1.부터 소급발효하기로 하였으며 동 협정은 1965.2.1. 공포됨.

58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 · 아르헨티나간의 무역협정 체결추진

| 65-217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통상진흥
MF번호	J-26 / 20 / 1~61(61p)

1.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 한국공관을 통해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고 외무부가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데 대해 상공부 등 관계부처는 중남미의 거점국가인 아르헨티나와의 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
2. 외무부는 사전준비단계로서 관계부처 및 현지공관과 연락하여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동향을 참고하면서 아르헨티나에 수출 가능한 품목을 농산물과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파악함.

한 · 독간의 무역협정

| 65-218 |

생산년도	1958-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6 / 23 / 1~301(301p)

1. 독일(구 서독)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구상이 1958.7월부터 제기되어 무역협정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주독공사관에 지시하여 서독 정부와 동 협정 체결을 교섭하도록 하였는 바, 1959.12.1. 주독 공사관직원이 독일 정부와 동 문제를 협의한 결과 서독 정부는 당시 한독간의 무역 규모 및 정세로 보아 한국과 서독 간에 무역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2. 1964.11.23. 박충훈 상공부장관 일행이 경제사절단으로 서독을 방문하여 독일경제성 회의실에서 한독 경제회담을 할 때 우리측이 토의 의제의 하나로 한 · 독 무역협정을 제안함. 그 다음날 양측간 실무 회담에서 독일 측이 한독 무역협정 체결에 응할 뜻을 표시함에 따라 우리 측은 한 · 독 무역협정 초안을 제시하였는바, 독일 측은 지불 규정, 관세문제 등에 관한 문안에 수정을 제의하였으며 한국 대통령의 독일방문 기간 내 동 협정 체결 가능성을 시사함.
3. 양측 실무자간 회담은 12.3.까지 계속되어 독일이 한국에 대한 자본원조 액수를 재정차관 54백만 마르크, 장기상업차관 75백만 마르크, 상용차관 30백만 마르크 등 합계 159백만 마르크로 하며 한국의 1965년도 서독 수출 면직물의 쿼터를 100만 마르크, 기타 직물 쿼터를 100만 마르크로 정하고 서독에 한국 광부를 파견하며 서독 민간 기업이 한국의 숙련공을 채용, 훈련한다는 것과 한국인 기술훈련, 농업분야 기술협력, 은행차관 등에 관한 규정에 합의함. 양국간의 해운문제는 별도로 해운에 관한 의정서 형식으로 체결함.
4. 1965.4.9. 외무부 회의실에서 외무부장관과 주한서독대사 간에 한독무역협정 및 해운관계의정서가 서명되었으며 동 일자로 공포 발효됨.

59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V.1 체결교섭, 1961-62

| 65-219 |

생산년도	1961-65
생 산 과	조약/통상2
MF번호	J-27 / 1 / 1-404(404p)

592

1.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은 1961.4.25. 외무부에 한·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안을 제안하여 왔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양 체결국은 양국 정부의 협조정신을 이해하여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양국간의 무역을 최대한도로 증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 (제1조)
- ※ 본 협정에 첨부된 목록, 즉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이탈리아 상품의 목록인 Annex A와 이탈리아로의 수출을 위한 대한민국 상품의 목록인 Annex B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 (제2조 1항)
- ※ 상업적 교역의 증진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조건을 보장할 목적 하에 양국 정부는 수출업자에 의하여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저장된 물품을 상호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함. (제2조 4항)
- ※ 본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의 지불을 미합중국의 달러, 스텔링 파운드 혹은 태환 가능한 통화로 행함. (제3조 1항)

2. 외무부는 상기 이탈리아측 제안에 대하여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탈리아측 협정안 제2조 4항의 삭제 및 협정 실시에 따른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우리측 수정안을 1961.8.24.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 제안함.

3. 이탈리아측은 1962.5.30. 우리측의 협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여 왔는바, 외무부는 동 협정 대안에 대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결정한 우리의 입장을 6.26.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 비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으며, 그 후 10.22. 동일한 취지를 공한으로 정식 통보함.

- ※ 우리나라가 AID 자금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일반 관세율보다 50% 낮음)을 이탈리아 수입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락할 수 없음.
-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이탈리아 상품은 미리 L/C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 보세창고에 동 상품이 무기한 보관될 수 없음.



- ✿ 양국간 무역거래 청산 수단은 이탈리아 리라 대신 미국 불화나 스텔링 파운드로 함.
- ✿ AID 자금에 의해서만 수입될 수 있는 품목 중 이탈리아가 일반 은행불로서 수입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품목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무역계획 및 물자수급 계획상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재 검토 조정함.
(이탈리아측 대안에는 당초 협정안 제2조 1항을 ‘이탈리아에 수출하는 대한민국 상품목록 Annex A,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이탈리아 상품목록 Annex B 및 은행불로서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이탈리아 품목 Annex C는 본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한다’로 수정함.)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V.2 체결교섭, 1963

| 65-220 |

생산년도	1961-65
생 산 과	조약/통상2
MF번호	J-27 / 2 / 1~275(275p)

1. 외무부는 1963.5.1. 주이탈리아대사에게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체결문제는 주한이탈리아대사관과 우리 정부의 관계부서 간에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1963.4.26. 주한이탈리아대사와의 회담에서 양국간 실무자회의 개최에 합의를 보아 앞으로는 동 회의에서 협정 체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토의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보함.

594

2.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교섭하는 양국 실무자회의가 1963.5.9.~6.13.간 4차에 걸쳐 개최되었는바, 실무자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관세율 적용문제, 부표C 품목의 은행불에 의한 수입문제, Economic Aid 조항 삽입, 보세창고 사용문제, 이탈리아측 특혜조치,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 여부 등임.

※ 우리측은 Annex C 품목은 협정문에서는 빼고 별도 양국간의 비공식 사항으로 협정문에 품목별 대이탈리아 수입 실링을 섬유, 기계류 등 총 350만불로 하되, 우리측의 대이탈리아 수출고를 연간 1,300만불로 한다는 안을 제시함.

3.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은 1963.10.24. 새로운 협정안을 외무부에 제시하였는바, 동 실험정안의 구협정안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제3조(결제통화)에는 Pound Sterling과 other Convertible Currencies 다음의 as may be agreed upon by Contracting Parties를 삭제함.

※ 제4조에 양국간의 항해에 관한 무차별대우 규정을 신설하고, 무역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신설은 최혜국대우조 항을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의정서를 두어 무역정책이나 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전통고와 쿼터 배정에 있어서의 과거 수입 실적을 토대로 한 비례할당제를 주장함.

※ 한국측이 장차 지역적인 경제공동체나 또는 관세동맹 등에 가입하였을 때 체약국간에 허용되는 특혜는 예외로 규정함.

※ Annex Letter를 교환하여 한국측의 연간 일정 한도액의 이탈리아특정상품의 수입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지리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이탈리아측의 한국보세창고의 무기사용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63.10.31. 이탈리아측 신탁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문의하면서, 외무부의 의견은 신탁정안이 비례할당 제의, Annex C 품목표와 관련하여 은행불로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이탈리아측이 별도로 정한 것, 연간 일정한도의 수입보장을 요구하는 부속서한, 보세창고의 무기사용 규정 등 우리측이 수락하기 곤란한 binding force의 성격을 많이 가진 것으로 우리의 대이탈리아수출품에 대해 일정한도액의 수입보장을 이탈리아에 요구하는 등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첨부함.

595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V.3 체결교섭, 1964.2-10

| 65-221 |

생산년도	1961-65
생 산 과	조약/통상2
MF번호	J-27 / 3 / 1-297(297p)

1.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이 1961.4.25. 외무부에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안을 제안한 이래 1964.2.10. 현재까지 계속된 양국간의 협정안 교섭 현황에 대해 외무부 통상국이 작성한 주요 쟁점 및 대응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국간 주요 쟁점

- 이탈리아측은 무역협정문에 한국이 이탈리아로부터 은행불로 수입하는 품목표(C)를 첨부하고 동 품목들에 대하여 한국의 일정한도의 수입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 이탈리아측은 보세창고의 무기한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관세법의 장치기간(1년) 이상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 이탈리아측은 무역법규 변경 시 사전통고를 요구하나 우리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 이탈리아측은 무역거래 시 계약국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심대한 피해를 줄 경우 국내법규 준수 규정의 예외로 하자는 입장이나 우리측은 품목별까지 약속은 불가하다는 입장

✿ 대응 방향

- 이탈리아측은 우리측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측도 품목을 선정하여 수입보장을 모색할 수밖에 없음.

2. 외무부는 1964.5.5.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 이탈리아 상품의 일정정도 수입 보장문제는 우리측이 외환배정에서 최대한도의 노력을 한다, (2) 경제원조에 의한 한국측의 수입물품 및 용역은 최혜국민대우 예외조항으로 반영토록 한다, (3) 국내법규 변경 사전통보는 사후통보로 추진한다, 는 등의 교섭지침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우리측 초안을 작성함.

3. 외무부는 1964.5.6. 및 5.29. 주한이탈리아대사관측과 우리측 협정초안과 이탈리아측 협정문안을 축조심의하여 이탈리아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불 배정은 가능한 한 최대 고려를 하며, 이탈리아 상품에 대한 보세창고 허가 신청 시 현 관세법규 내에서 보세창고 사용만 허가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동 합의안에 대해 이탈리아 본국 정부도 동의한다면 가서명하기로 함. 양측간에 합의된 협정문은 이탈리아측이 정리, 작성하여 우리측에 제시하기로 함.

4. 외무부는 1964.10.26.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이 제안한 협정 대안을 수락하였으며, 양측은 서명절차를 논의함.

한·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V.4 체결 및 공포, 1964.11-65

| 65-222 |

생산년도	1961-65
생 산 과	조약/통상2
MF번호	J-27 / 4 / 1~105(105p)

1. 이종찬 주이탈리아대사는 1964.11.10. 로마에서 개최된 한·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가서명식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으며, 이탈리아측은 Mario Mondello 외무성 경제국장이 서명함. 동 서명식에는 경제사절단을 인솔하고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충훈 상공장관이 입회하였으며, 이탈리아측은 외무성 및 대외통상성 고위실무자들이 입회함.

2. 외무부는 가조인된 한·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의 체결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65.2.23.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는바, 국무회의에 보고된 동 협정 체결의 의의 및 협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협정 체결의 의의

- 구주제국과의 경제적 유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과거 6년간 이탈리아로부터 수입 총계가 미화 5,400만불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실적이 크지 못하여 야기되었던 일방적 무역관계를 개선하여 우리의 무역증진을 위한 전환점을 이룩함.
- 특히 동 협정문 부속서에 우리의 수출품목을 열거하여 무역의 적극화를 의도하였고 양국간에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절차와 규칙에 있어서 비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어 양국간의 무역 증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협정의 주요 골자

- 동 협정은 전문 및 제8조와 수출입 품목을 정한 부표 A, B 및 4개 부속 공한으로 구성됨.
- 양국간 경제관계 증진 및 무역거래 증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며 이를 위한 외환할당 및 수출입 품목을 적절히 조정하며 그 청산은 태환성 통화로 함. (제1, 2, 3조)
- 양국간 교역 상품에 대한 수출입세 부과와 입항, 항만시설 이용 등에 제3국에 허여하고 있는 조건과 차별하지 않으며 수출입허가와 절차와 규칙에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함. (제4조)
- 협정 시행에 따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위원회를 구성함. (제6, 7조)
-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1년간 계속 연장됨.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 90일 전 서면 요청으로 종결시킬 수 있음. (제3조)
- 한국측은 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특별히 KFX불과 수출불의 할당을 약속하였고 상품의 안전 도모를 위해 보세창고의 사용에 대해 양해함. (부속공한 4)

3. 외무부는 한·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안에 대한 서명 및 서명 후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포할 것을 건의하여 1965.3.9.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또한 동 일자로 서울에서 외무부장관과 주한이탈리아대사 간에 양국간의 문화협정 및 무역협정이 서명됨.

한·스페인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추진

| 65-223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경제협력/남구담당관
MF번호	J-27 / 5 / 1~9(9p)

정부는 스페인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로 하여금 스페인에 출장하여 교섭에 임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주프랑스대사는 1965.7.17.~19.간 스페인을 방문하고 스페인 Maria Castiella y Maiz와 회담하는 기회에 양국간 무역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고 늦어도 9월 말까지 구체적인 교섭개시를 하도록 하고 그 전에 실무자간에 자료교환을 할 것을 제안하여 스페인 측이 이를 수락함.

59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 · 이집트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 65-224 |

생산년도	1962-65
생 산 과	통상정책
MF번호	J-27 / 6 / 1~210(210p)

600

1. 정부는 윤석헌 주카이로총영사로부터 1963.2월 북한과 이집트(정식국명: 통일아랍공화국)가 새로운 통상 및 지불협정과 상호 무역량을 규정하는 통상의정서(1957년 통상의정서를 대체하는 것)를 체결하였다는 보고와 1962.11월 아프리카 통상조사단의 아랍공화국 경제상과의 면담 후 우리나라와 이집트와의 통상 및 지불 협정 체결을 할 것을 건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1963.3월 아랍공화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고 주카이로총영사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본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
2. 1963.6월 신임 강춘희 주카이로총영사는 이집트 경제상을 예방하는 기회에 양국간 통상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양국의 대외무역 결제수단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3. 정부는 이집트와의 무역협정 체결이 정책상 필요하나 이집트가 북한과 문화협정, 무역협정을 체결(1958.12.)하였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사실(1963.8.23.)을 고려하여 이집트와 정식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통상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1964.9월 이집트 무역공사와 대한무역진흥공사 간의 약정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4. 한국은 이집트 국영회사인 “El Nasr Export & Import Co.”와 “대한무역진흥공사”간의 무역 약정 체결을 이집트 측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집트는 이들 공사를 양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동 제의를 수락함.
5. 정부는 1965.4.13. 주카이로총영사관에 지시하여 이집트와의 무역협정 체결 교섭을 지시하였으며 동 협정의 한국 측 서명권자는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될 것임과 이집트와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결제방식은 태환 가능한 통화로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밝혔음. 이러한 본부 입장에 대하여 주카이로총영사관은 이집트가 경제개발 계획의 실시에 따른 자본재 수입을 위하여 대외무역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재 수입에만 경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 무역 결제는 구상무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우리측도 이집트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면 구상무역원칙을 수락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집트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무역협정에서 협정체결 후 매년 통상의정서를 새로이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본부에 통



보하고 이집트와의 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이집트인을 방한 초청할 것 등을 건의함.

6. 정부는 주카이로총영사의 건의에 따라 “El Nasr Export & Import Co.”의 생산부문 책임자인 Abdul Azim Hosney가 1965.8월 일본 방문기회에 방한하도록 초청하였으나 동 인은 당초 일정과 달리 유럽 및 아프리카를 순방하여 방한이 이루어지지 못함.

601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체신부) · 일(전신전화주식회사)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 65-225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7 / 7 / 1~12(12p)

1. 체신부와 일본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KDD)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가 1964.7.14. 제71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5.2.1.부터 발효됨.

✿ 동 각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1964.7.12. 차관회의에서 우리 체신부와 일본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를 사업당사자로 한 계약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

2. 동 각서에서는 전기통신기술의 공동연구, 기술문제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간행물의 교환, 직원의 상호 교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 2년간 그 효력을 존속하되 일방이 각서 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타방에 대하여 동 각서의 효력이 종결됨을 통고하지 않는 한 동 각서는 계속 12개월간 효력을 가짐.

[1961.2.28] 한·미간의 경제기술원조 협정의 해석

| 65-226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7 / 9 / 1~11(11p)

1. 재무부는 1965.4.16. 외무부에 대하여 주한미대사관 및 USAID에서 동 기관 소속 직원이 공무수행상 탑승하는 KAL의 항공기 운임에 대한 통행세의 납부를 거부 또는 면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행 통행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운임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기관이 통행세 운영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2. 상기 관련, 외무부 의전실은 방교국에 검토 의견을 문의하였는바, 방교국은 1965.7.21.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 USOM(후일 USAID로 명칭변경) 직원의 특권과 면제의 특징

 - USOM 직원의 법적 지위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하여는 ‘한·미 정부간의 경제기술원조에 관한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바, 동 협정에 의하면 USOM 직원은 일반적으로 그 직위나 계급에 따라 주한 미국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한국의 조세, 관세 및 기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를 받음.
- ※ 국제법상의 외교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면세

 - 외교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조세 면제는 조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인정되나 이러한 조약상의 의무가 없어도 국제관습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행 국제법상의 현상임.
 - 그러나 조세면제의 경우라도 모든 조세를 일체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세법상 조세의 성격에 따라 면제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종류는 국가에 따라 각각 상이하며, 특히 조세 중 간접세에 해당하는 것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 (비엔나에서 채택되어 1964.4월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 제34조 a항에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로 ‘상품의 가격 및 용역에 통상 포함되는 간접세’를 들고 있음.)
 - 다만, 현지 고용원인 한국직원의 경우는 1951년 체결한 ‘한국 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공적 자격으로 행한 서면, 진술 등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인정되나 그 이외의 면제는 일체 인정치 않음.
- ※ 결론

 - 통행세는 운임, 급행 요금 또는 침대 요금에 대하여 부과(통행세법 제2조)하는 것으로 가격에 포함된 간접세라 볼 수 있으므로 USOM의 한국 직원은 모든 특권과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통행세는 간접세이므로 한국 직원은 물론 외교사절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관행임.

[1961.3.18] 한·독간의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기술원조협정)의 연장

| 65-227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7 / 10 / 1~20(20p)

1. 한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인천직업훈련센터 부설로 숙련공 직업학교를 세우고 운영해 온 독일은 협정 만료에 즈음하여 사업계속 의향을 밝히면서 새 협정 체결 시까지 기존협정을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제의함.
2. 정부는 그 전제로 “인하공대 산하의 숙련공 직업학교를 인하공대에서 완전히 분리하자.” 는 독일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각서교환 형식으로 협정을 잠정 연장함.

[1963.2.14] 한·독간의 독일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의 해석 및 개정

| 65-228 |

생산년도	1963-65
생 산 과	조약/경제협력
MF번호	J-27 / 11 / 1~85(85p)

1. 한국과 독일(구 서독)간의 1963.2.14. 체결된 “독일경제고문단 설치 협정”에 따라 독일인 경제 및 광산 전문가 4명이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개발분야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경제기획원은 이들에게 차량 3대를 업무용으로 제공하고 동 차량들의 감찰(번호판)에 국내특수지역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 5- 번호를 부여하였으나 1963.10.31. 각료회의에서 5- 감찰을 폐지하고 자가용 감찰로 바꾸도록 결정함에 따라서 이들 차량에 대한 특권이 소멸될 상황이 발생함. 또한 고문단 설치 협정은 동 고문단의 체한기간인 2년이 도래하는 1965.2.13. 이들의 근무기간도 종료되기로 되어 있으나 경제기획원은 이들의 체한기간을 2년 연장하기를 희망하여 주독대사관을 통하여 독일 경제성과 협의한 결과 독일 측도 이들의 체한기간 2년 연장에 동의함.
2.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독일 측은 “독일경제고문단 설치 협정”을 개정하여 독일인 고문단의 체한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주한독일대사는 독일 측은 1965.2.18. 자 서한을 통하여 한국과 독일이 각서를 통하여 독일인 고문단의 체한기간을 1966년 말까지로 정하고 당초 협정에서 규정된 “고문단들 세대에 제공된 면세물품들은 체한기간 종료 후 재수출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자고 제안함.
3. 정부는 독일 측이 제안한 면세물품의 반출의무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한 결과,
 - ※ 독일 고문단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한국인에게 매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들 고문단이 자동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의 해석문제이나 한미간 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하여 USAID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정도의 대우를 독일인 고문단에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 ※ 이들 차량에 대하여 외교감찰 발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 정부가 호의로서 이미 “준외교” 감찰을 발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기로 함.
4. 이에 따라 1963년 2월 14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체결된 “독일 경제고문단 설치 협정”을 1966년 말까지 연장하고 고문단원 및 그들 가족의 개인 용품 재수출 조항을 삭제하자는 독일측 수정 요청 각서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이를 수락하는 각서가 1965.6.3. 외무부장관과 주한독일대사 간에 교환되고 동일자로 공포되어 같은 날자에 발효됨.

ILO 한국가입 추진

| 65-229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J-54 / 2 / 1~345(345p)

606

1. 노동청은 1964.1.14. ILO(국제노동기구) 가입은 국제적인 유대를 돈독히 하고 노동문제의 발전 개선을 위하여 절실히 요청되므로 동 기구 가입에 대한 정부 방침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64.1.17. ILO 가입문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현재의 여러 가지 국내정세와 정부가 당면한 심각한 외환사정 및 동 기구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동 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리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이 좀 더 향상된 시기에 가입함이 좋겠다는 입장을 노동청에 회보함.
3. 노동청은 대통령의 서독 방문 시 서독 파견 한국인 광부로부터 ILO 가입을 건의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언명한 것과 관련하여 가입을 위한 제반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1965.1.12. 외무부에 재차 요청함.
4. 외무부는 ILO 가입에 따르는 문제점과 외무부의 견해를 1965.2.15. 경제 각의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함.
 - ※ 정부는 1955.8.5.자로 동 기구 가입을 위한 국무회의의 의결을 보았으나 분담금 문제로 대통령의 재가를 얻지 못하였으며 1961.5.10. 재차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나 5·16혁명으로 가입신청을 제기할 수 없었음.
 - ※ ILO 가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노동사회분야의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후진성, 차별대우 금지 및 단결의 자유 등 실시에 따른 문제점, 매년 3만불 이상의 분담금 및 대표단 파견에 따르는 경비, 가입신청에 대한 공산진영의 강력한 방해 예상, 분담금가의 가입문제 대두로 복한 가입신청 가능성 등을 감안, 국내외 여건이 향상된 시기에 추진함이 좋을 것임.
5. 보건사회부는 1965.10.26. 제94회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ILO 가입을 재상정하였으나, 의결주문을 ILO에 가입하는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한다로 변경하여 의결함.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65.11.23. 주제네바대표부로 하여금 ILO측과 접촉하여 가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 및 자료를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함.



6. 외무부는 1965.12.21. 보건사회부에 대하여 ILO 가입 신청서 제출 시 심사위원 석상에서 노동관계 결정의 자유, 단체교섭권, 노동관련 입법 내용 등에 대한 치열한 질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측의 답변자료 작성 등 준비를 할 것을 요청함.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 65-230 |

생산년도	1962-65
생산과	국제기구/조약
MF번호	J-86 / 4 / 1~102(102p)

1. 상공부는 한국생산성본부가 APO(아시아생산성기구)의 요청에 따라 동 기구 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교관으로서 면세 및 편의제공 등의 특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동의를 1962.11.28. 요청해 온 것과 관련하여 외무부의 견해를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 APO헌장 제40조에는 APO 직원에 대한 국제기구 및 외교관으로서의 특권 및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608

2. 상기 관련, 외무부는 1962.12.7. 주일대표부, 주필리핀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에 주재국정부의 관례 및 입장을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각 공관이 보고한 각국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대만: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 필리핀: APO회의 관계로 대비하는 경우에만 port courtesy를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일반여행자와 동일하게 취급

※ 태국: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courtesy와 직무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우대는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

※ 일본: 비거주자(외국인으로 일본에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자는 거주자로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함)로서 취급하여 소득세 면세, 외화 사용 허락, 출입국 수속의 편의를 제공

3. 1963.1월 동경에서 개최된 APO 이사회는 'APO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안을 채택함.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동경 소재 APO 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일본 정부와 APO 간에 동 사무소의 설치 및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 여부 등을 조사 보고할 것을 1964.8.25. 주일대표부에 지시하였는바, 주일대표부가 9.2.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PO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 협정이 체결된 바는 없으나, 동 기구 이사회에서 그 본부를 동경에 둔다는 결의를 하여 이를 일본 정부가 양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동 사무소 비용 연간 약 6만불은 일본 정부가 부담).

※ APO의 특권 및 면제협정은 각 회원국이 가입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기탁국이 없음. 다만 일본 정부는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봉급에 대한 과세 면



제, 출입국 편의 제공 등 부분적인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하고 있음.

4. 외무부는 APO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에 대해 법제처, 재무부, 법무부 등과 협의하였으나 동 협정 가입 시 아프가니스탄, 버마, 캄보디아 등 좌경적 국가의 사무국 직원이 출입국 등 특권을 향유하게 된다는 우려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는 동 협정 가입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1965.7.7. 상공부에 통보함.

[1954.6.4] 국제관광여행에 관한 협정 가입검토

| 65-231 |

생산년도	1957-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7 / 12 / 1~107(107p)

1. 유엔은 사무총장 명의로 공한을 보내 국제관광 진흥을 위해 무세통관 또는 면세목적으로 유엔이 주도하여 체결한 아래 3개 협정에 한국이 가입할 것을 권유함.

- ✿ 여행을 위한 관세편의에 관한 협정
- ✿ 여행선전용 서류, 자료 수입 관련 추가의정서
- ✿ 도로차량 임시수입 관련 관세협정

610

2. 외무부의 검토의뢰를 받은 재무부는 3개 협정에 대한 비용 대 효과 비교검토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결과를 알려줌.

- ✿ 여행을 위한 관세편의에 관한 협정은 실익이 높아 가입이 바람직함.
- ✿ 여행선전용 서류, 자료 수입 관련 추가의정서 가입에는 상용목적 방문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필요함.
- ✿ 도로차량 임시수입 관련 관세협정의 경우는 국내산업 정책과 상충되어 불가함.

외국항공기가 지상의 제3자에 대하여 끼치는 손해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개정검토 (Mexico안)

| 65-232 |

생산년도	1957-65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J-27 / 13 / 1~90(90p)

1. “외국항공기가 지상의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관한 협약” (일명: 1952년 로마 협약)은 1952년 “항공사법에 관한 국제회의” 결과 채택되었던 협약이나 국제항공노선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요 항공국들이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동 협약의 실효성이 문제되어 있음.
2. 이러한 사정을 감안, 멕시코는 동 협약의 존재의의의 상실을 구제하기 위하여 동 협약의 관장 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1963.10.6.자 공한으로 동 협약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ICAO 사무국장은 1964.1.15.일자 공한을 통하여 동 멕시코 수정안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을 조회하는 공한을 ICAO 회원국에게 발송함.
3. 멕시코 수정안의 주요 요지는 1952년 협약의 외국항공기가 지상의 제3자에게 입힌 손해와 관련된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다원적인 재판기준법을 규정한 데서 오는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국에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소송 이전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을 장려하는 중재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운항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등임.
4. 우리 정부는 멕시코 수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1964.3.31.자 공한으로 ICAO 사무국장에게 통보함.
5. ICAO 법률위원회는 1964.9월 동 문제를 검토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분과위원회는 1965.3.22.~30.간 8회에 걸쳐 ICAO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 회의결과 보고서를 1965.4.12.자 공한으로 ICAO 회원국에 통보함.

61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일부 수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의 건

| 65-233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J-27 / 14 / 1~18(18p)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1962.8.21.~9.15.간 개최된 제14차 총회에서 동 협약 제48조에서 규정된 “10개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총 회원국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어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의정서를 채택함. 동 의정서 채택의 주된 이유는 동 협약 제정 시 회원국이 54개국에 불과하여 10개국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으나 1962년에 회원국이 104개국으로 증가됨에 따라 10개국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 규정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612

2. ICAO 협약의 수정안이 발효되려면 66개국의 비준서를 기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정부는 1965.6.3. 동 수정의정서의 비준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함.

항공교통 관제기관의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협약 제정 검토

| 65-234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국제기구
MF번호	J-28 / 1 / 1~149(149p)

1.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지상이나 운항중인 기상에서 승객 또는 화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항공교통 통제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ICAO법률위원회가 본 문제를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는 1964.4월 본 건을 토의한 결과보고서를 법률위원회에 제출함. ICAO법률위원회는 1964.9.1.~19.간 동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동 내용이 더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각국의 실정을 문의하는 설문서를 1964.11.16.자 공한을 통하여 ICAO회원국에 발송함.
2. ICAO법률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ICAO회원국이 발송한 설문서 회답을 참고하여 항공교통 통제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요청하는 1965.5.21.자 서한을 ICAO회원국에 발송함.
3. 우리 정부는 동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는 교통관제업무시설이 미비하며 한미 공군 및 교통부가 항공관제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교통관제 업무시설의 완비 및 업무의 일원화가 될 때까지 동 협약의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과 항공관제기관의 책임에 관한 소위원회 보고 및 결론에 대하여 정부태도를 보류하기로 결정함.

613

대한민국외교자료해제집

[1948]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 1960.6.17 및 가입, 1965.5.26

| 65-235 |

생산년도	1960-65
생산과	조약
MF번호	J-28 / 2 / 1~502(502p)

1.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48년 국제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960.5.17.~6.17. 간 런던에서 국제해사자문기구(IMCO) 주관 하에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48년 협약의 수락서를 1960.3.10. 기탁하여 동 회의기간 중 동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로 되어 우리나라도 1948년 협약의 당사국 자격으로 대표가 동 회의에 참석함.

※ 동 협약이 1948년 협약에 비하여 달라진 주된 내용은 선박과 구조 장비, 통신시설 등의 발달로 인하여 1948년도 협약 내용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임.

614

2.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새로운 협약안이 1960.6.17. 채택되었으며 동 협약안은 1960.7.8.부터 1개월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서명기간 중 동 협약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갖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락을 조건으로 서명한 바 있으며 추후 동 협약 제10조 3항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취하기로 함.

3. 정부는 1965.4.20.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1965.5.6. 국회에서 가입동의안을 얻어 1965.5.20. 수락서를 IMCO에 기탁하였으며 1965.5.26.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가입, 1965.12.8

| 65-236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7 / 3 / 1~155(155p)

1. 1948.4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3차 해상인명안전회의에서 해상충돌예방규칙이 채택되었으나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서 채택된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48년 협약'만을 1960.3.17. 가입하고 동 규칙에는 가입하지 않음.

※ 다만 동 국제규칙을 법률 제920호로 하여 1961.12.30. 국내법화의 조치를 취하여 시행함.

2. 또한, 1960년 런던에서 개최된 해상인명안전 국제회의에서는 '1960년 해상충돌예방규칙'을 채택하였는바, 동 회의에 참석한 주영대사관의 박동진 참사관은 동 규칙의 최종의정서에 서명함. 동 규칙은 실질적인 만장일치가 되는 때로부터 1년 이후에 발효하게 됨에 따라 1965.9.1.이 발효일이 됨.

※ 우리나라는 1965.5.21.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1960년 협약'에 가입함.

3. 우리나라는 1948년에 채택된 해상충돌예방규칙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미 동 규칙의 시행기관인 IMCO(정부간해사협약기구)의 당사국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규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1960년 협약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어, 1960년 해상충돌예방규칙의 발효일인 1965.9.1. 이전에 동 규칙에 가입하기 위하여 외무부는 1965.7.20. 개최된 제65회 국무회의에 '1960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수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됨.

4. 1960년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1965.11.10.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65.12.8. 공포됨.

61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36.9.23] 평화적 목적을 위한 방송의 사용에 관한 국제협약(Geneva협약) 가입 검토

| 65-237 |

생산년도	1960-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8 / 4 / 1~21(21p)

1. Constantin A. Starvropoulos 유엔 사무차장은 1965.12.16. 외무부장관에게 공한을 송부, 1965.11.5.자 유엔 총회 채택 결의 2021호에 의해 국제연맹 당시 체결된 다자조약 가운데 국제연합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19개 조약 중 하나로서, 1936.9.23. 제네바에서 채택된 평화적 목적을 위한 방송의 사용에 관한 국제협약에의 가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2. 동 협약은 각국이 공동의 합의로 설정한 규칙에 따라 방송을 선량한 국제적 이해와 각국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를 더욱 촉진시키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총 15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알바니아, 영국, 프랑스, 소련 등 28개 국제연맹 회원국이 동 협약을 체결함.
3. 본 문건에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방송의 사용에 관한 국제협약이 수록되어 있음.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연장에 관한 의정서 가입, 1965.7.16 및 8.1

| 65-238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J-28 / 5 / 1~129(129p)

1. 우리나라는 소맥생산국과 소비국 간의 소맥의 유통을 조절, 확보함으로써 양측의 이익을 조화, 증진할 것을 중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소맥협정에 1953.12.31. 가입한 이래 동 협정의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수정 갱신된 1956년도, 1959년도 및 1962년도 협정을 수락하여 계속하여 동 협정의 당사국이 됨.
2. 1962년도 협정은 국제소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1년 연장에 관한 의정서를 1965.3.22. 채택하였는바, 동 의정서에 대하여 주미대사가 1965.4.19. 전권을 위임받아 서명함.
3. 외무부는 동 의정서 제2조 규정에 따라 동 의정서에 대한 수락서를 1965.7.15.까지 미국 정부에 기탁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1년 연장에 관한 의정서 수락의 안건을 1965.6.12. 개최된 제50회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됨.
4. 동 의정서는 1965.7.8. 공포되었으며, 주미대사는 동 일자로 동 의정서 수락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

61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경제외교 교섭 및 지휘계통에 대한 행정연구서

| 65-239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5 / 1 / 1~42(42p)

1.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이 직접 외국정부와 교섭을 시도하고 재외공관을 지휘한 사례를 지적하며 관계 법령, 대통령 지시, 국제관례를 들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경제외교의 창구를 외무부로 일원화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2. 외무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경제외교교섭 및 지휘계통에 관한 행정연구서”를 작성하고 공문에 첨부함. 요지는 아래와 같음.

618

※ 관계법령

- 타부처 장관이 재외공관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 정부조직법, 재외공관설치법, 외무부 직제령 등을 인용

※ 대통령 지시

- 대외교섭은 외무부가 전담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와 같은 취지의 국무총리 지시를 인용

※ 국제관례

- 주권국가가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창구를 외교경로로 일원화한다고 주장

※ 기타

- (연구서에 경제기획원 장관이 직접 재외공관에 발송한 공문사본과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직접 공문이나 공한을 받은 외국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기록 첨부)

국교정상화 이전의 한·일 경제협력정책

| 65-240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Re-34 / 11 / 1~34(34p)

한·일간 국교정상화 이전의 한·일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이 검토됨.

1. 대일민간차관 청구를 사업별로 하나씩 교섭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전에 대한 차관 대상사업을 광범위하게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교섭하는 방안이 강구됨. 이러한 방식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대외원조 정책 수립에 융통성을 갖게 하고 사무처리를 간소화한다는 점에서 일본 측이 요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무부는 동 문제를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였으나 경제기획원 측은 동 방안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한일관계, 청구권 및 전체 외자도입체제 등과 관련하여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일본 정부 관계관은 한국 정부가 연도별로 확실한 계획을 작성하여 그 우선순위를 사전에 통고하여 주면 일본 정부로서도 대한 상업차관 공여입몰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겠다고 함.

2. 한일 양국 정부의 승인하에 추진 중인 시멘트, PVC 냉간압연, 폴리아크릴 섬유공장 건설을 위한 대일 자본재 도입의 실수요자인 총복시멘트, 대한프라스틱, 연합철강, 동양합섬 등의 4개 회사가 연명으로 정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이들 업체들이 한국은행에서 개설한 L/C를 일본의 통산성 및 수출입은행이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동 문제를 주일대사관 직원이 일본 통산성 중공업국장에게 제기함. 일본 측은 진상을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함.

3. 제일교포가 외자도입 촉진법 및 장기 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본국에 현금 또는 자본재로 직접 투자 또는 차관을 제하고자 할 경우 일본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일본 정부관계관은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현금이나 현물을 막론하고 자본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허가된 예도 없다고 함.

61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1965

1964

한·월남 경제각료회담, 제1차. 서울,
1965.11.10

| 65-241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통상
MF번호	M-5 / 3 / 1~28(28p)

1.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과 트란 타이 톤 베트남 경제재무장관이 참석한 제1차 한-베트남 경제각료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고 공동성명을 채택함.

2. 양측은 아래와 같이 합의함.

- ✻ 경제관계 일반
 - 경제각료회담의 정례화
 - 민간합동위원회 구성 등 인적교류와 합작투자 확대
- ✻ 무역
 - 교역 확대를 위해 호혜적으로 우선대우 부여
 - “베트남산 고철, 한국산 초자” 식으로 구체품목 열거
- ✻ 기술협력
 - 미국이 지원하는 베트남 내 사업에 대한 한국기술자 파견 확대
- ✻ 후방지원사업
 - 베트남 내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 확대
- ✻ 기타
 - 한국은행 지점 설치

한·독 경제실무자회담. 서울, 1965.12.27-29

| 65-242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M-7 / 7 / 1~196(196p)

1. 박정희 대통령의 1964년 방독 후속조치를 위한 한·독 경제실무자회담이 경제기획원 등 한국 정부부처 관계자와 주한독일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고 여기에서 합의한 내용 등을 공동발표문에 담았음.

2. 양측이 합의한 내용 등은 아래와 같음.

※ 원조사업

- 중소기업 지원, 부산 상수도 시설 등의 진행사업을 조기에 집행키로 합의
- 한국이 공공차관 및 장기 상업차관 제공을 요청하고 독일은 검토를 약속
 - 공공차관사업으로 기계공업육성,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한 7천4백만 달러 요청

※ 무역

- 한국섬유제품의 독일에 대한 수출 쿼터를 전년의 2백만DM에서 3.8백만DM으로 확대키로 합의

※ 한국기술자 30명을 독일에 연수 파견키로 합의

※ 한국노동자 독일 파견

- 한국은 광부, 간호사의 추가파견을 요청하고 독일은 검토를 약속

※ 다자협력

- 한국은 한국에 대한 경험문제를 다룰 다자기구에 독일이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독일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 양자협정

-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기에 체결키로 합의

62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Michanek 스웨덴 대외원조처장 방한, 1965.5.26-28

| 65-243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5 / 6 / 1~12(12p)

1. 주스웨덴대사관은 에른스트 미카네크 스웨덴 대외원조처장이 가족계획에 관한 국제회의(IPPF)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기회에 의료시설 확충 등의 원조제공 가능성을 타진할 것을 건의하여 외무부가 경제기획원에 검토를 의뢰함.

2.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 간부가 사교행사에 참석하여 접촉하였으나 미카네크 처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소극적인 반응을 얻어 공식회담 개최에 이르지 못함.

622

- ※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대외원조를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
- ※ 무상원조 규모가 작아 한국에 대한 제공은 곤란

Ton 월남 경제 · 재무장관 방한초청 추진

| 65-244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M-5 / 7 / 1~5(5p)

정일권 국무총리와 상공부장관은 IMF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Ton 월남 경제재무장관이 1965.10.5. 귀국하여 10.16.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인지하고 동 인이 자유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할 의사를 월남 Ky 수상에게 전달하여 동 수상이 이에 동의하고 체미 중인 Ton 장관에게 타전하겠다고 대답하였음을 국무총리가 청와대에 보고 하면서 동 장관의 방한초청을 상공부장관 명의로 할 것을 건의함.

62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독일 차관도입

| 65-245 |

생산년도	1962-6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11 / 15 / 1~232(232p)

1. 정부는 독일(구 서독)로부터 FY 62년도 서독정부차관 7,500만 마르크, 정부보증 상업차관액 7,500만 마르크, 포함 1억5,000만 마르크(3,750만불 상당)를 도입하기로 서독 측과 합의하였으며 동 차관을 도입하려면 우리측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독일 개발은행이 타당성을 조사하여 독일 정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획득하는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동 절차를 추진하게 됨.
2. 정부는 서독 정부의 재정차관으로 전신·전화사업, 탄전개발사업, 탄차수입, 조선공사 확장사업에 총당하고 상업차관으로 비료공장건설, 양회공장 건설사업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함.
3. 독일이 제공하는 차관은 일반상업차관의 경우 5년만기, 연이자 6%, 최소한 15% 선불금 지급조건이며 Hermes 독일 신용보험회사 제공의 장기상업차관의 경우 상환기간 10~15년, 연이자 6%이며 재정차관 중 일반영리사업은 상환기간 15년, 연이자 3 내지 4%, 인프라 구축 사업은 5년 거치, 상환기간 20년, 연이자 3%의 조건임.
4. 한국 정부의 차관신청에 대하여 서독 측은 8,750,000불의 Telex구매를 위한 재정차관 도입안에 대하여 독일재정원조분과위원회(IMA)가 “독일제품을 구입한다”라는 조건으로 1963.6.14. 동의하였으며 5,180,000미불 차관의 탄전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독일은 한국 측이 당초 장성 탄광의 shaft equipment를 재정차관으로 구매할 의도를 밝혔다가 실제로 서독 재정차관으로 구매하지 않고 AID 차관(950만불)으로 구입하려고 한 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냈으나 결국 shaft equipment를 세계지역구매로 하되 820,000미불 상당을 3년 6개월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연 3%로 하기로 1963. 8. 최종 결정함.
5. 조선공사사업을 위한 4,820,000미불 차관은 독일 측의 보고서를 참작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나 국내의 경제기획원은 동 자금을 사용하지는 의견임에 비하여 상공부는 동자금 사용에 반대하므로 동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함.
6. FY 1952 Hermes Extended Loan의 잔액 50백만 마르크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정부와



독일고문단 간의 협의로 결정하기로 함.

7. 정부는 FY 63년도 서독으로부터 전신전화사업 600만불, 중소기업 육성사업 500만불, MRO자재 200만불 등 도합 13백만불의 재정차관을 신청할 것을 검토하였으며 FY65에는 부산상수도 사업, 인천 중공업 확장사업(7,500만 마르크) 등을 위한 재정차관 신청을 검토함.
8. FY62 기술훈련생 60명, FY63 기술훈련생 41명을 서독에 파견하기로 함.

62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일 어업협력차관 도입교섭

| 65-246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경제협력
MF번호	Re-15 / 8 / 1~24(24p)

1. 고려원양어업주식회사는 1963.9.20. 미국 무역회사와 참치어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국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용자를 통하여 원양어선 10척을 도입하여 동 어선으로 참치를 어획하여 일본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차관지불보증을 요청함.
2.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 일본에 한일협정상외 어업협력자금 9,000만불(그 중 4,000만불은 영세어민용)의 차관을 집행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을 검토함.
3. 우리측은 동 차관으로 어선과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이를 국내 업자에게 매각하여 수산시설확보를 위한 내자를 확보하며 원리금 상환은 현물로 하고 차관의 10~20%에 해당하는 착수금을 선불하는 것을 면제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 측과 교섭하도록 함.
4. 주일대사관 공사는 1965.11.11.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을 면담하고 우리측 희망사항을 전달한 데 대하여 동 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으나 자신의 견해로는 일본이 우리측이 요구하는 3개 항을 수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1963.12월 일본이 대만(구 자유중국)과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할 계획임에 비추어 추후 한국과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대스웨덴 차관도입 교섭

| 65-247 |

생산년도	1961-65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M-5 / 9 / 1~218(218p)

1. 1961~62년 송대순 주한스웨덴 명예영사가 스웨덴 기업들과의 협의결과라며 민간차관으로 한국에 수출할 용의가 있는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검토한 결과 금리(6% 전후)와 상환기간(5-8년) 등의 조건이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외무부에 춘천수력발전소 건설에 한정하여 공공차관 수준(3%, 15~20년)으로의 제공이 가능한지 교섭해 줄 것을 의뢰함.

✽ 춘천수력발전소 시설

✽ 연초제조공장 시설

✽ 선박 도입

✽ 경인선 전철화

✽ 전화교환국 시설

✽ 등대 시설

2. 1964~65년 정부는 스웨덴이 인도에 유리한 조건의 공공차관(전력, 낙농, 교과서용 종이 생산 등을 위한 7백만 달러, 금리 2%, 상환기간 20년)을 제공한 것을 계기로 방한한 주한스웨덴대사(일본 상주)에게 타진하고 주스웨덴대사관을 통해 아래 사업을 위한 무상원조와 공공차관의 지원을 요청함.

✽ 무상

- 펄프, 의약품 제공 등 290만 달러

✽ 공공차관

- 원양어선, 교과서용지 생산시설 등 5백만 달러

3. 이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무상원조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공공차관은 한국 정부의 지불보증을 요구하며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금리, 상환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며 정부보증도 어렵다고 보아 포기함.

62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대일 비료공장 건설차관 도입

| 65-248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M-5 / 10 / 1~91(91p)

1. 정부는 1965년 일본으로부터 도입할 민간연불차관의 우선순위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비료자급자 측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일본 정부와 교섭함.

- ※ 1순위: 요소비료 공장시설
- ※ 2순위: 조선소 기자재
- ※ 3순위: 수력발전 시설

628

2. 일본은 요소비료공장 건설에 긍정적이었으나 이미 한국에의 비료공장 건설을 지원한 미국과의 사전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양측은 아래의 조건에 합의함.

- ※ 공여조건
 - 착수금 10%, 나머지 90%는 최종선적완료 후 매 6개월마다 16차에 걸쳐 제공
- ※ 지급보증
 - 한국국회의 지불보증 결의

대일 윤활유공장 건설차관 도입

| 65-249 |

생산년도	1964-65
생산과	경제협력
MF번호	Re-15 / 9 / 1~66(66p)

1. 효성물산은 윤활유의 국산화를 목표로 금리 5.75%, 1년 6개월 거치 후 8년 균등상환 조건의 장기결 제방식으로 일본의 토요멘카(東洋綿花)로부터 130만 달러 상당의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정부에 신청 함(처음 효성은 미국으로부터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금리 6%, 1년 거치 후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일본보다 불리하여 바꾸었음).
2. 양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 일본 정부는 위의 조건대로 승인함.

62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대일 2,000만불 연지불 도입에 관한 한·일간의 각서교환

| 65-250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Re-16 / 1-2 / 1-818(818p)

630

1. 1964.6.11. 개최된 한일회담 수석대표간 비공식회담에서 일측은 대한긴급원조로서 미국 15만톤(무상)과 2,000만불(5년 기한, 연리 5.7%)의 공여와 한국학생 500명에 대한 장학금 제공을 제안함.
2. 정일권 총리 겸 외무부장관은 1964.6.17. 청와대에서 일본의 상기 제안을 보고하였는바, 동 석상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의 제안은 선의의 민간경제협력으로서 한일회담과는 무관하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양국간 무역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역협정의 체결을 제기할 것을 지시함.
3. 외무부는 1964.6.22. 주일대표부에 한일간 무역불균형 상태의 시정 및 무역량 증대가 우리 경제발전의 급선무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생산품의 수입 및 일본 원자재 수출에 대한 제한 및 금지 조치의 철폐 내지 완화를 일측에 계속 촉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일측이 제의한 대한긴급원조는 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나 물품대금 지불은 우리 생산품의 수출로 획득되는 외화로 충당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일측과 접촉할 것을 훈령함.
4. 일본 각의는 1964.8.18. 2,000만불을 연 5.75%, 각 계약별 선적 후 1년 거치 2년 상환, 품목은 한국의 견 존중 조건으로 공여할 것을 결정하고 동 내용을 주일대표부에 통보하였는바, 배의환 주일대사는 1964.8.26. 오오따 일본 외무차관을 방문, 일측이 제시한 조건이 인도네시아의 경우(1년 거치 4년 상환)에 비하여도 불리한 것으로 이제까지 일측이 시사하였던 정신과 조건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 수락하기 곤란하다는 정부의 훈령을 전달함.
5. 외무부는 1964.9.17. 연지불 조건 완화 문제에 대해 일 언론이 평화선 문제와 결부시켜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점증하는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행위에 대해 일측에 항의하고 2,000만불 문제는 우리 정부의 어선나포와는 관련 없이 대처할 것을 주일대표부에 지시함.
6. 일본 외무성은 1964.9.25. 주일대표부에 연리 5.75%, 선적 후 1년 거치 포함한 5년 분할 상환 조건의 2,000만불 연지불 차관에 대한 일 정부의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구체적인 시행세목 교섭을 위해 한국 대표단의 파견을 요청함.



7. 대일 2,000만불 연지불에 관한 각서 교환 및 서명이 1964.12.11. 일본 외무성 대신접견실에서 상공부의 이철승 상역차관보와 일외무성의 니시야마 경제협력국장 간에 서명, 교환됨.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 자본재 도입

| 65-251 |

생산년도	1963-65
생산과	경제협력/동북아
MF번호	Re-15 / 11 / 1~219(219p)

1. 냉간압연공장 건설(연합철강)

- ※ 주일대표부는 1963.5.4. 냉간압연공장 건설을 위한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와 일본 도요다통상주식회사 간의 4,198,915불 연지불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원리상환은 7년 분할, 거치기간 1년, 이자 연 6%임.
- ※ 경제기획원은 냉간압연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재 도입계약 및 동 자본재 도입에 따른 지불보증 이 제44차 외자도입촉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64.6.26. 제64회 국무회의에서 국내 공급량을 충당 후 잔여 생산량은 전부 수출한다는 등의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므로 동 건에 대한 일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교섭할 것을 1964.8.12. 외무부에 요청함.
- ※ 주일대표부는 일본 통산성이 냉간압연공장 건설을 위한 시설재 도입에 관한 수출허가를 1965.5.8.자로 승인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폴리아크릴 섬유공장 건설(동양합섬)

- ※ 일본 외무성은 1964.7.28.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 현물거래로서 우리나라가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PVC, 시멘트, 폴리아크릴 3건 중 우선 PVC와 시멘트 2건에 한하여 착수금 지불 등 조건부로 승인할 용의가 있다는 구상서를 주일대표부에 수교하여 왔는데, 주일대표부는 폴리아크릴 건이 제외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동 사업이 한국의 경제재건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함.
- ※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의 요청에 따라 PVC, 시멘트, 폴리아크릴 3건과 폴리아크릴 및 냉간압연공장의 수출허가를 연내에 얻을 수 있도록 일측과 교섭할 것을 1964.12.24. 주일대표부에 지시함.
- ※ 주일대표부는 동양합섬회사가 일본 아다카회사와 추진하는 폴리아크릴 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재수출허가서가 1965.5.25. 자로 일본 통산성으로부터 발급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폴리아크릴 섬유공장 건설(한일합섬)

- ※ 경제기획원은 폴리아크릴 섬유공장 건설을 위해 한일합섬과 일본 마루베니 이다 간에 체결된 자본재도입계약에 따른 지불보증계약이 1965.3.29. 제4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하여, 본 계약을 위한 일 정부의 수출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1965.5.10. 외무부에 요청함.



- 폴리아크릴 플랜트 도입을 위한 계약은 1965.7월 이또추상사 및 아사히가세이회사로 변경 계약됨.

- ✿ 일본 통산성은 1965.8.17. 공장시설 수출 허가를 위하여 폴리아크릴 섬유의 1967년 한국국내 수요예상량 16.9톤의 산출기초를 설명해 줄 것을 주일대표부에 요청함.

63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일 농상회담. 서울, 1965.12.18-19

| 65-252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동북아주
MF번호	Re-15 / 5 / 1~64(64p)

1. 농림부는 사카다 에이지 일본 농상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간 기본관계조약 및 제협정에 관한 비준서 교환식 참석 차 1965.12.18.~19.간 방한하는 계기에 개최되는 차균희 농림부장관과의 한·일간 농상회담 시 논의 예정인 다음 안건에 대하여 일측에 사전 통보하여 줄 것을 1965.12.14. 외무부에 요청함.

※ 어업기술협력: 한국기술자 일본 파견, 일본전문가 한국 초청, 한국어민 훈련센터 설치, 한국 수산교육 시설제공

※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개최

※ 농산물 교역증진

2. 한일 농상회담이 1965.12.18. 16:00~18:00간 농림부장관실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회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어업기술협력

- 우리측은 어업협정에 관련된 문서 중 어업에 관한 기술협력이 12.18.부터 발효하게 됨에 비추어 연차적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 일측은 한국측 제안이 유상협력자금의 범위 내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으므로 1966년 초 동경이나 서울에서 구체적 사항을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일측으로서는 수산을 포함한 농림축산부문의 기술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음을 표명함.

- 우리측은 기술협력은 무상청구권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장기 또는 3개년 계획으로 해줄 것을 요망함.

※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개최

- 우리측은 1966년 초 동경 개최와 초대 사무국장의 한국측 선출을 희망하였으며, 일측은 첫 회합이 단순한 구성과 절차 규정을 채택하는 것이라면 1966.1월 중 개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농림축산업 기술협력

- 양측은 실무자 협의를 동경에서 개최기로 합의함.

※ 제1차산품의 교역증진



-우리측은 해대를 비롯한 제1차 상품에 대한 수입자유화 내지 수량의 증대, 관세의 인하 등을 강력히 요청하였는바, 일측은 1차 상품의 교역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연례농상회담 개최

-양측은 매년 1회 개최에 합의함.

63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차균희 농림부장관 이스라엘 및 동북아 순방, 1965.9.7-23

| 65-253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M-5 / 16 / 1~36(36p)

1. 차균희 농림부장관은 1965.9.7.~23.간 이스라엘, 대만(구 자유중국) 및 일본을 방문함.
2. 차균희 장관은 9.9.~12.간 이스라엘 방문 시 이스라엘측과 한국의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대동한 농림부 기술자 2명은 출장을 연장하여 현지의 관련 시설을 시찰함. 차균희 장관은 9.17.~20.간 대만 방문 시에도 지하수 개발사업 현황을 시찰함.
3. 차균희 장관은 9.20.~23.간 일본 방문 시 자민당 아까기 정조회장, 사까다 농상, 시이나 외상, 후꾸다 대장상 등 일측 인사를 방문하여 수산관계 기술협력, 해태 및 쌀 수출, 어업협력 자금 등에 관해 비공식적인 의견을 교환함.

IDA(국제개발협회) 교통조사사업단 방한, 1965.4.25

| 65-254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경제협력
MF번호	M-6 / 1 / 1~54(54p)

1. 경제기획원장관은 1965.1.4.자 세계은행(IBRD) 총재 앞 서한을 통하여 교통조사팀을 파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동 요청에 대하여 George Woods 세계은행 총재는 경제기획원장관 앞 1965.3.24. 답신을 통하여 동 조사팀 파견을 위한 사전 협의차 IBRD의 극동지역과장 Hans Adler를 방한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동 조사팀 파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특별기금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2. Hans Adler는 1965.4.25. 방한한 후 IBRD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IBRD는 한국의 교통조사를 위한 사업기본계획안에 동의하였음을 한국 측에 회시하였으며 동 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에 Booz Allen Hamilton INC를 포함할 것을 제의하여 우리 정부는 이에 동의함.
3. 동 사업을 위하여 IBRD의 주선으로 프랑스의 교통관계전문 자문회사인 BCEOM(Bureau Central d' Etudes pour les Equipments d' Outre-mer)의 국장인 P. Sireyjol 씨가 1965.7.22. 서울을 방문함.
4. 교통조사사업을 담당할 컨설팅회사로 BCEOM and NEDECE로 정하여져 한국 정부와 이들 회사 간에 계약서를 1965.9월 중순에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동 년 10월부터 작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기술진을 위한 숙소 마련 등 필요한 준비를 함.

63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64.11.17-26 및 1965.2.8

| 65-255 |

생산년도	1964-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M-6 / 2 / 1~17(17p)

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은 1964.11.17.~26.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체약국단 특별총회에 한국이 옵서버로 참가할 것을 초청하여 왔으나, 외무부는 1964.11.13. 주제네바대표부의 전순규 3등서기관이 회의에 참석하고 동 결과를 보고할 것을 훈령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GATT 체약국단 특별총회에 관한 보고서를 1965.1.15. 외무부에 제출하였으나,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638

※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의제는 후진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일반협정 수정문제, 특혜문제, 아르헨티나, 스위스 및 통일아랍공화국의 체약국단 작업 참가문제, 사무국 운영문제 등임.

※ 주요 회의 경과

(후진국에 대한 특혜 제공문제)

- 후진국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관세, 비관세,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수출상품에 특혜대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1963.5월 장관급회의에서 통일아랍공화국에 의하여 정식 제외되어 작업부에서 논의, 검토되어 왔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함.
- 통일아랍공화국은 금번 회의 시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특혜 제공문제 및 후진국간의 상호특혜 제공문제의 중요성을 재강조하였으나, 이 문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반대가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논의가 진전되어 앞으로 설치될 통상개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여 1965년의 연차 총회에 제안을 제출토록 할 것에 합의함.

(후진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일반협정 개정문제)

- 일반협정 개정문제가 토의된 이래 후진국과 선진국 간 또는 선진국 상호간에도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여 왔으나, 예를 들면 후진국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신규정을 희망하는 데 반하여 선진국은 보다 일반적인 내용의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1차산품) 문제에 관하여 후진국은 선진국이 행하고 있는 보조정책을 토의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계속 검토기로 한 바 있음.
- 금번 회의 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신규정에 관한 개정 초안이 총회에 제출되었으나, 동 개정에 관한 의정서는 1965년 말까지 개방되어 체약국 3분의 2의 수락에 의하여 발효하게 됨.
- 자메이카와 쿠바는 신규정의 초안에 대해 유보를 제기하였으며,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은 세계 경제를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간단히 양분한 데 반발하고 그들은 선진국에 속하나 특수한 경제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제3의 카테고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초안을 수락할 수 없다고 유보를 제기함.

GATT 총회, 제22차. Geneva, 1965.3.2-6

| 65-256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M-6 / 3 / 1~26(26p)

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은 1965.3.2.~26.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 제22차 체약국단 총회에 한국의 읍서버 파견을 요청하였는바, 외무부는 정일영 주제네바대사 및 전순규 주제네바대표부 3등서기관에게 동 회의 참관을 훈령함.

2. 주제네바대표부가 1965.6.28. 외무부에 제출한 GATT 제22차 체약국단 총회 관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의 중요 의제

- 후진국 통상 증진문제, 국제수지 역조로 인한 수입제한, 면직물 교역문제, 농업문제, 잉여상품 처분문제, 구주공동시장의 Association Convention, 미국·캐나다 자동차제품협정, GATT 가입절차 등

※ 회의 개관

- 의제 중 특히 후진국의 통상증진문제가 후진국들의 적극적인 주도로 여러 면에서 검토 논의됨.
- 1965.1.16. 체결된 미국·캐나다 자동차제품협정과 구주공동시장과 터키 간의 association 문제가 장시간 논의의 대상이 되어 계속 검토를 위한 작업부회의 설치에 합의함. 미국·캐나다 자동차제품협정은 자동차제품에 관한 양국간 특혜를 설정하는 것으로 GATT 제1조에 배치되어 많은 후진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구주공동시장과 터키 간의 association agreement는 영국이 GATT 제24조와의 부합 여부를 부정하여 논의의 초점이 됨.
- GATT 사무총장은 케네디 라운드의 진전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는바, 그는 특히 농업문제를 취급하는 절차가 결정 채택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케네디 라운드 무역협상이 국제무역의 전 분야를 포함하게 되었음을 강조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65.8.16. GATT 제22차 체약국단 총회의 주요 의제 관련 추가 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수지 역조로 인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브라질, 스리랑카, 핀란드, 인도, 파키스탄 등 각 체약국과 행한 협의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가 채택됨. 미국대표는 수입제한이 이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개선된 국가의 경우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할 것을 강조함.

※ 1965.11.29.~12.10.간 개최되는 면직물위원회의 회의는 면직물의 생산, 소비, 교역 상황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키로 하였으며, GATT사무총장은 케네디 라운드 협상에서 면직물의 관세 인

63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하 가능성을 지적함.

- ✿ 농업문제 검토를 위해 설치된 제2위원회는 각국의 농업정책의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캐나다, 영국, 미국은 잉여농산물 및 전략저장물자의 처분에 관한 보고를 제출함.



ADB(아시아개발은행) 설립 전권대표회의. Manila, 1965.12.2-4

| 65-257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경제기구
MF번호	M-6 / 5 / 1~14(14p)

1. ADB 설립을 위해 마닐라에서 개최된 전권대표회의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세련 한국은행 총재는 ADB 설립에 찬성하고 이사국 진출을 위해 분담금을 당초 예정액의 3배인 3천만 달러로 제시하였으며 한국은 14개국으로 이루어진 준비위원회 멤버로 선출됨.
2. ADB 본부 소재지를 두고 일본과 필리핀이 마지막까지 백중세로 경합한 가운데 한국은 일본을 지지하였으나 결국 필리핀 유치가 결정됨.

64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대만(구 자유중국) 무역회담, 제4차. 서울, 1965.11.2-10

| 65-258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N-4 / 1 / 1~119(119p)

1. 한국과 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1961년에 체결된 무역협정 제6조와 제3차 한·중 무역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양국간 무역협정 체결 후 교역증진 상에 야기된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제3차 한·중 무역 합의사항에 대한 품목별 실적 및 전망의 검토와 1966년도 양국간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토의하기 위하여 제4차 한·중 무역회담이 1965.11.2.-11.간 서울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됨.
2. 동 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우근 상공부 상역국장이며 대만 측 수석대표는 胡駿 참사임. 동회담은 전체회의와 3개의 분과위원회별 회의로 나누어 전체회의에서는 한·중 무역의 실적을 검토하고 제1, 2 분과위원회에서는 한·중 무역증진과 점차적 무역균형 달성을 위한 조치 및 방안의 연구, 제3 분과위원회는 합의록 작성을 위하여 토의함.
3. 회담 결과 1965.11.10. 양국간의 교역 품목과 조건을 정하는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이 작성되었으며 공동성명서가 발표됨.
 - ※ 합의의사록에는 대만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액수를 정하고 한국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품목을 가능한 한 최대량을 수입하도록 하고 대만이 한국으로부터 사과 및 배를 수입하는 대신 한국은 대만으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하도록 함.

독일 쿼터교섭회의

| 65-259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통상2
MF번호	N-4 / 2 / 1~49(49p)

1. 유재흥 주스웨덴대사가 인솔하는 구주통상사절단 일행은 1965.9.28.~29.간 Bonn을 방문하여 독일 정부측(외무성, 경제성, 농림성 당국자 11명이 참석)과 면직물 쿼터 증대 및 염연초 수출 증대를 위한 협의를 가짐.

※ 우리측은 재정차관 및 기술원조 제공 등 독일의 경제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한 후, 금번 통상사절단의 방문 목적은 양국간의 극심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직물 쿼터를 현 200만DM에서 1,400만 DM으로 증대시켜 줄 것 등을 요청함. 이에 대해 서독측은 일시에 대폭적인 증대는 곤란하나 호의를 가지고 쿼터 증대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2. 대독 직물수입할당을 협의하는 실무회의가 최덕신 주독대사, 우리 정부 대표단 및 주독대사관 관계관 등과 독일측의 Dr.Toepfer 경제성 부국장 및 동아과장, 외무성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65.11.30. 및 12.2. 독일 경제성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측은 독일의 전 직물수입고에 비하여 우리에게 대한 쿼터가 0.2%에 불과함을 강조하고 쿼터의 대폭적인 증가(구주통상사절단이 제시한 1,400만 DM), 한국과의 직물수입을 직접 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거래단위를 인상할 것을 제의함.

※ 독일측은 쿼터 증대는 제3국과도 관계가 있으니 장기면직물협정 규정에 의거하여 연간 10% 내외를 증가시킬 것을 시사하면서, 현 쿼터의 미사용 문제와 쿼터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 증진 및 제3국에의 수출 증가를 권유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직물 수출고가 전 수출고의 약 35%에 해당되므로 쿼터 증가가 불가피함을 강조함.

※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되어 우리측은 제네바회의를 통하여 후진국 전체의 선진국에의 수출 증대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대해 독일측은 10% 증가는 어디까지나 기본 라인이며 이를 한국측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독일측 입장을 제의하겠다고 함.

※ 주독대사는 현재까지의 교섭 결과를 감안할 때 독일측에 대하여 1965년도 수준의 60% 내지 100% 이상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외무부에 보고함.

64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한 · 일 무역회담, 제1차. 동경, 1965.3.11-27

| 65-260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
MF번호	Re-16 / 6 / 1~142(142p)

1. 외무부는 1965.2.18.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지속해 온 한일간의 수출입관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경제 각료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 국장급 이상을 교체대표로 하는 무역회담을 1965.3월 동경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일측 공식의향을 타진토록 주일대표부에 훈령을 시달함.
2. 주일대표부는 1965.2.27. 일 외무성 등 관계기관과 무역회담 개최에 대해 접촉한 결과, 일측은 무역 회담을 각료급에서 개최할 경우 외무, 대장, 통산, 농림 등 관계대신이 전부 참석치 않을 수 없으므로 내부적인 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한일 양국의 외상이 수석대표가 되고 그 밑에 관계 각성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보고하는 형식의 실질적인 토의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한 · 일무역회담 개최식이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1965.3.11. 일본 외무 성에서 개최됨. 양측은 실질적인 토의는 3.18부터 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수시 준비토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의제로서 양국간 무역의 검토, 한국 1차 상품 수입증대문제, 보세가공 무역문제, 한국 상품 개발 수출문제, 무역협정 · 재정협정 · 해운협정 개폐문제, 기타 양국 무역확대문제 등을 채택함.
4. 한 · 일무역회담 본회의가 1965.3.18. 김동조 주일대사 및 우시바 일외무성 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외무성에서 개최됨. 우리측은 3.17.까지 3차에 걸친 예비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음은 유감된 일로서 국교정상화 기운이 무르익어 가는 이때에 경제협력이 국교정상화와 병행 못함은 국교정상화가 무의미함을 강조하고 일측의 조속한 협력을 요청함. 이에 일측은 불균형의 시정은 단시일 내에는 곤란하나 국교정상화와 병행하여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5. 한 · 일무역회담 폐회식이 이동원 외무부장관 및 시이나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1965.3.27. 일본 외무 성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석상에서 무역회담 합의의사록에 김동조 주일대사와 우시바 일외무성 심의관이 이니셜 하였는바, 동 합의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한일무역의 균형은 한국의 1차산품의 대일수출 증대와 더불어 보세가공수출 및 개발수출에 관한 협력 등에 의하여 한국의 수출력을 증강하도록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검토하고 장기적인 무역규모 확대의 과정에서 균형을 도모함.
- ※ 현행 무역협정을 폐지하고 화물의 수출입 및 간편한 과세, 과중금 제한 등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의 체결 교섭, 재정협정의 종결과 필요한 협정의 조속 체결, 잠정해운협정 체결의 조속 토의 등에 합의함.

64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일 무역회담, 제2차. 서울, 1965.12.15-18

| 65-261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동북아
MF번호	Re-16 / 7 / 1~145(145p)

1. 일본측은 한·일간의 제 협정의 비준이 끝날 것으로 예정되는 1965.12.15.경에 제2차 무역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왔으며, 추후 일본측이 12.20.에 일본 정기국회가 소집되고 25일 내지 26일까지 추경예산을 처리하여야 할 사정임을 감안하여 한일협정 비준서 교환을 12.20.에 하고 12.15.~18.간 제2차 한·일 무역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우리측은 동 일자를 수락하여 제2차 한·일 무역회담이 서울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됨.

646

2. 동 무역회담의 우리측 대표는 이동원 외무장관이며 교체대표는 상공부 이철승 상역차관보이고 외무부, 농림부, 상공부 국장 등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일본 측은 시이나 외상이 수석대표이고 외무성 심의관이 교체대표이며 통산성, 외무성, 농림성, 대장성 직원들이 대표로 참석함.

3. 동 회담 개최 시 양국 대표들은 각기 한일무역협정의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측은 한국이 제안한 무역협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한일 양측은 또한 해운협정에 대한 각각의 초안도 제시함.

4. 제2차 한·일 무역회담 결과 합의의사록이 작성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양국간 무역 동향을 리뷰하여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검토하였으며 한국 대표측은 오징어 수출증대, 어개류의 수입담보율의 인하, 한국의 일차 상품 수입을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조사단 파견, 어선 수출에 대한 종전의 제한 철폐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일본측 대표는 양국간 무역이 증대되어가고 있으며 한국미 1만톤의 수입, 한국해태 2억500만매의 대일 수출 달성 등의 실적을 언급함.

※ 한국 1차 상품으로서 일본으로 수출을 증대하는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은 농수산물의 경우 해태, 어개류, 미곡, 엽연초 등 품목에 대하여 대일수출 증가 방안을 거론하였으며 기타 무연탄의 대일수출 증가방안을 협의하기를 희망하고 기타 상품에 대하여 관세율의 인하를 요망함. 한국 측은 보세가공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일본의 협조를 요청함.

5. 양측 대표들은 1950.6.2. 체결된 양국간 “무역을 위한 재정 협정”을 종료하는 각서를 교환하고 1965.12.18. 제2차 한·일 무역회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또한 제3차 한·일간 무역회담은 1966.3월부터 4월 사이 동경에서 갖기로 합의함.

대월남 군수물자 수출교섭

| 65-262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미주/구미/통상
MF번호	N-4 / 5 / 1~115(115p)

1. 정부는 한국-베트남-미국 3자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베트남에 대한 수출을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미국 정부 및 주베트남 미군사령부와 협의함.
2. 특히 한국은 일본이 섬유 등의 물자조달에서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식하여 균등한 기회 부여 내지 우대를 요청하였으며 베트남 내 건설공사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와 베트남 진출 미국기업의 한국기술 인력 고용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3. 한국의 언론도 3자 협력에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이 일본에서의 조달을 확대할 것이라는 외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부가 미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견제함.

64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Köln(서독) 국제내의류전시회 참가, 1965.10.14-17

| 65-263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구주통상
MF번호	N-4 / 7 / 1~84(84p)

648

1. 상공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1964.12.6.~15.간 방독시 서독 수상이 제의한 바 있는 친선 전시회 개최가 우리나라의 단독 개최인지 또는 한·독 합동인지 여부 및 독일측 협조가 비용의 일부 부담인지 또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의미하는지 상세를 알려줄 것을 1965.2.23. 외무부에 요청함.
2. 주독대사관은 1965.4.15. 및 6.1. 외무부에 타전한 전문에서, 독일 정부측은 단독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관람자의 수, 전시품의 양과 비용에 관하여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Köln 또는 Frankfurt에서 개최되는 일반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전시효과 면이나 관람자의 수로 보나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우리측이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면 Köln 전시회에 참가할 것을 건의함.
3. 상공부는 주독대사관의 건의를 감안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예산으로 1965.9.22.~10.3.간 서백림 박람회에 참가하였다가 이어서 10.14.~10.17.간 Köln 시에서 개최되는 일반전시회에 참가하는 방침을 결정함.
4. Köln 시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원칙적으로 내의만의 전시회이나 독일측과 교섭하여 예외적으로 타 품목도 전시하도록 하였으며, Köln 전시회 참가 예산은 파리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비용 대체와 서백림전시회 참가 예산의 잔액 범위 내에서의 전용집행으로 충당하며, 그 밖에 예산 일부는 1964.11월 경제사절단의 방독시 작성된 한독의정서 1의 2항에 의거한 독일측 재정지원으로 충당기로 함.

알제리 정변

| 65-264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아중동
MF번호	O-22 / 1 / 1~19(19p)

1965.6.19. 알제리의 부총리 겸 국방장관, 육군 총사령관인 Houari Boumedienne 대령이 Ahmed Ben Bella 대통령을 축출하는 쿠데타가 발생하였는바, 동 쿠데타 발생에 대하여 각국 언론 보도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 알제리 발 로이터 통신은 알제리가 1962.7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래 Ben Bella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세력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는 요지로 보도함.

64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바티칸공의회(Vatican Ecumenical Council) 제2차, Vatican, 1962.10.11 및 1965.12.7-8

| 65-265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구주
MF번호	O-22 / 2 / 1~34(34p)

1. 주한 로마 교황청 대사대리는 1962.8.18.자 서한을 통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10월 바티칸 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개회식에 참석할 한국대표의 명단을 송부해 주기를 요청함.
2. 동 서한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은 1962.8.20.자 답신을 통하여 바티칸 공의회 개막식에 한국을 대표하여 주로마교황청대사와 수행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알리고, 이종찬 주이탈리아대사는 바티칸 공의회 개막식에 직원 1명과 함께 참석함.
3. 주한 로마 교황청대사는 1965.11.2.자 서한을 통하여 1965.12.7.~8.에 거행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회식에 한국대표의 참석을 요청하였는바, 동 서한에 대하여 외무부 구아국장 명의의 1965.11.11.자 서한을 통하여 주이탈리아대사 및 수행원 2명이 동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임을 통보함. 동 폐회식에는 주이탈리아대사가 서기관 1명을 대동하여 참석하고 참석 결과를 본부에 보고함.

이란 정세

| 65-266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중동
MF번호	O-22 / 3 / 1~6(6p)

1. 주터키대사(이란 겸임)는 하산 알리 만수르 이란 총리가 저격을 받아 사망하고 아메르 아바스 호베이 다가 후임 총리가 되었다며 정부에 조전발송을 건의함.
2. 조선일보는 만수르 총리에 대한 저격이 석유개발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을 인용 보도함.

651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한국군 월남파병 및 이에 대한 각국 반응

| 65-267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남아주/미주
MF번호	O-22 / 4 / 1~108(108p)

본 문서철은 한국 정부의 월남 파병 결정과 관련된 아래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1. 한국 정부가 2,000명의 비전투 지원군을 월남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각국의 반응

※ 동 반응에는 미 국무성 대변인 논평, 일본 언론 반응을 주일대사가 종합 보고, 월남, 대만 정부 반응, 중국(구 중공)의 반응 등 아시아 각국,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반응이 포함됨.

652

2. 신상철 주월남대사의 1965.3.10.~23. 주간 정세보고서

3. 김현철 주미대사의 월남사태에 관한 미국의 반향 보고

4. 주카이로총영사, 주홍콩총영사, 주독대사 등 공관장의 주재국 언론 보도 내용 보고

5. 외무부장관의 방미 관련 월남정세를 포함한 동남아정세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주미대사관 정무보고

| 65-268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O-22 / 5 / 1~55(55p)

1. 김현철 주미대사는 국내외 현안문제에 관해 미국 인사에게 청취하였거나 자신이 말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대리는 한일국교정상화가 늦어지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방미 전에 한국에 대한 원조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함.
- 2) 베트남 주재 USOM 처장은 한국에서의 물자조달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 3) 존슨 대통령이 초청한 7개국 대사와의 오찬에서 존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국내정세가 안정적이라고 소개함.
- 4) 한국문화행사에서 연설한 국무부의 번디 극동담당 차관보는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이 공고함을 강조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장래를 밝게 전망함.
- 5) 한국 학생들의 한일수교 반대 시위와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에 미국이 동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
- 6) (주미대사는 베트남 전쟁이 1954년 제네바 협정의 연장선상에서 휴전협정으로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근거라며 아래의 내용을 언급함.)
 - 미국이 북부 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6~7일간 중단한 점
 - 베트남 소탕이 성공적인 점
 - 소련과 중국(PRC)이 협상조건을 완화시킨 점
 - 미국의 언론이 "모든 베트남이 공산주의자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한 점

2. 박정희 대통령은 비서실이 상기 '1)~6)의 내용을 요약하여 올린 보고서 여백에 "베트남 사태에 대한 속단은 금물"이라면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메모를 남김.

65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전

재일교민 지원

| 65-269 |

생산년도	196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P-3 / 1 / 1~16(16p)

1. 재일한국인 신용조합 지원

※ 재일한국인신용조합은 재일교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961년 한국은행의 특별조치로 200만불을 융자한 데 추가하여 새로이 300만불을 특별융자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진정함.

- 신용조합 설치 당시 협회 산하 조합수는 9개로 총 예금액은 약 42억엔이었으나 1965년 현재 조합수는 18개로 총 예금액수도 162억엔으로 증가되었으며, 대출총액은 약 150억엔에 달하여 정부가 지원한 200만불의 기금으로는 도저히 자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함.

654

※ 대통령비서실은 재일교포가 일본의 차별대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막심한 곤경에 처해 있으며 이대로 방치하면 도산 속출을 면할 수 없으며, 조총련계는 과거 8년 동안 총 약 1,000만불의 거액을 투입하여 재일교포의 적화공작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300만불의 추가 융자는 적화공작 봉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재일교포의 지난 3년간 본국송금이 300만불 이상에 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재일교포의 모국의식 확보와 대공전략상 요구액을 지원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965.3.17. 재가를 받음.

※ 재무부는 1965.5.25. 재일한국인신용조합에 대하여 추가 융자 요청액 300만불 중 우선 100만불을 증액하여 한은 재일지점에 자금조치하였음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함.

2. 유공 재일교포 표창

※ 일본 아이찌현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은 그간의 숙원이던 한국학원(교육문화센터: 나고야 소재 부지 356평, 2층건물로 건평 268평)을 정부의 보조 없이 자력으로 건립하여 1965.9월 공사의 완공을 보아 11.3. 낙성식을 거행함.

※ 대통령비서실은 동 학원의 낙성식과 관련하여 500만엔 이상의 다액을 희사한 정환기 등 3인에게 대통령 명의로 표창하여 재일교포들에 대한 사기양양과 자력자조정신에 대한 격려를 할 것을 건의하여 1965.10.11.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일본·북한간의 재일한인 북한송환협정 연장 및 재일한인 북한송환

| 65-270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동북아주
MF번호	P-3 / 2 / 1~30(30p)

1. 주일대표부는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가 7.30. 일본 적십자사에 재일한인의 송환에 관한 협정을 1년 연장하자고 제의하였다고 1965.7.31.자 평양발 공동통신이 보도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일대표부는 북한이 제의한 재일한인 북송 연장에 대하여 일본 적십자사가 7.31. 이를 수락하는 전문을 발송하여 북송협정이 1년간 연장되었음을 일본 외무성이 1965.8.2. 확인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한일간의 제협정이 서명되고 비준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일측이 행한 전격적인 북송협정의 연장에 대하여 가장 강경한 표현의 각서로서 일측에 항의토록 주일대표부에 지시하였음을 1965.8.4. 대통령에게 보고함.
4. 주일대표부의 북송연장에 대한 강력한 항의에 대해, 일외무성 한국관계 당국자는 일본으로서는 북송되는 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북송되는 것이며, 북송을 중단하는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문제가 크며, 일본 정부는 사람의 왕래에 있어서 중국(구 중공)과 북한을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1965.8.4. 해명함.
5. 주일대표부의 방희 공사가 8.13. 일외무성 우시로구 아주국장에게 재일교포 북송협정 연장 조치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시하고 일 정부의 본건에 관한 재검토를 촉구함. 이에 대해 동 국장은 한일 양국간의 조약 비준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번의 연장 조치는 종전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일조약 비준이 실현되면 본건에 관한 일 정부의 입장에 재검토가 가하여질 것이라고 시사함.

655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 65-271 |

생산년도	1956-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P-3 / 3 / 1~156(156p)

656

1. 주일 참사관은 외무부 본부 정무국장 앞 1956.1.18.자 공한을 통하여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과 회견 시 동 국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 유골 2천 주를 한국 측에 인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음을 보고함.
2.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한국인 유골을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자 동 유골의 봉환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정부는 태평양전쟁으로 전사한 한국인 명부를 확인하여 송부할 것을 주일공사에게 지시하였으며 1957.4월 주일공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2,414명의 한국인 전사자 명부를 접수하여 이를 외무부에 송부함.
3. 1964.3.24.자 국내 일간지를 통하여 재일교포 강위종 씨가 2,000여 주의 전몰 한국인 유골이 동경 일본 후생성 창고에 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동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으며 “범 태평양 동지회”는 1964.3 월말 국회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국인 전사자 보상지불과 피징용자 미수 노임의 지불 등을 촉구하고 일본 후생성 당국에 보관된 83,000여 주의 유골을 인수하여 유가족에게 송환할 것을 청원함.
4. 정부가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입수한 유골 명부는 2,411주이며 이 중 약 100주는 유품만이 있고 2,000여 주가 일본 후생성 창고에 일괄 보관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음.
5. “순국선열유족회”대표는 1964.12.10. 법무부장관 앞 진정서를 통하여 일본이 을사보호조약 이후 우리 선열을 학살하여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한일회담의 재산 청구권과는 별도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법무부는 동 진정서를 외무부에 이송함.
6. 순국선열 유족회 회장 구성서 명의로 1965.2.17.자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바, 동 성명서 요지는 시이나 일본 외상의 방한에 즈음하여 “우리 정부와 전 국민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하여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정중히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음.
7. 외무부는 상기 진정서에 대하여 1965.2.27.자 회신을 진정인에게 송부함.

재월남교민 비상철수계획

| 65-272 |

생산년도	1961-65
생산과	동남아주
MF번호	P-3 / 4 / 1~59(59p)

1. 정부는 월남에서 긴급 철수가 필요할 상황에 대비한 미국의 철수계획에 한국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은 1961.1.13.자 구상서를 통하여 미국인의 철수계획에 공간이 허용될 경우 추후 비용정산을 전제로 월남 거주 한국인 30명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는 보증이 아니라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요지를 통보함.
2. 정부는 1961.1.14.자 구상서를 통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의 상기 구상서의 내용을 수락하였으며 동 사실을 주월남대사에게도 통보하였는바, 주월남대사는 월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약 30세대로서 실제 한국인 수는 105명이라고 하고 구상서상의 30명을 105명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61.6.29.자 구상서를 통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철수대상이 되어야 할 재월남한국인의 명단을 통보하였는바, 주한미국대사관은 1961.8.7.자 구상서를 통하여 한국 측이 제시한 숫자의 증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외무부는 1961.8.14.자 구상서를 통하여 미국의 구상서 내용을 확인함.
4. 월남사태 위급 시 철수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1962.11월 사이공 소재 유송 청사에서 미국긴급철수위원회 주최로 미국, 영국, 독일 및 한국의 관계관이 비밀회합을 가지고 철수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함.
5. 주월남대사관 참사관은 주월남 미국대사관 부대사를 면담하고 미국이 월남에 거주하는 미국인 가족 1,800명을 철수시키는 계획이 있음을 확인함.

657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 65-273 |

생산년도	1957-65
생 산 과	동북아주
MF번호	P-3 / 5 / 1~35(35p)

1. 주일대사는 사할린 교포로부터 청취하였다면서 아래의 내용을 보고함.

- ※ 사할린에는 한인 4만 명이 거주한다고 함.
- ※ 배우자가 일본인인 교포는 일본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며 소련 정부도 이를 허가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교포들은 한국 또는 일본으로의 귀환을 희망하지만 소련이 허가하지 않을 전망이다고 함.

658

2. 사할린 교포 출신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박노학 사할린한국인회 회장은 아래 내용의 진정서를 외무장관에게 보내음.

- ※ 사할린 거주 교포로부터 신분증명서의 최종국적이 일본으로 되어 있는 교포는 일본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면 귀환이 가능하다고 들어 외무성, 법무성에 진정하고 도움을 청했으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음.
- ※ 예정된 시이나 일본외상의 방한 기회에 일본 정부의 성의를 촉구해 주기 바람.

조총련교민 북한 방문, 1965.12.27

| 65-274 |

생산년도	1965
생산과	동북아주
MF번호	P-3 / 7 / 1~7(7p)

재일한국인 2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일본에 재입국한 사실에 대하여 주일대사관은 일본 외무성에 1965.12.30.자 구상서를 보내어 동 사실 발생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을 방문한 재일교포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1965.12.28. 발부한 재입국허가의 효력을 정지하여 줄 것과 추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659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

1965

1964

해외이주 교섭

| 65-275 |

생산년도	1963-65
생 산 과	교민
MF번호	P-3 / 8 / 1~48(48p)

1. 외무부의 해외이주 관련 보고서(1963.11.22. 작성)의 주요 내용

- ※ 우리 정부가 이민을 추진하는 목적은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 이민에 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혁명정부는 이민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이민단을 파견하여 상당한 진전을 봄.
- ※ 한국이민은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초기 이민이므로 건실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규모의 계약이민 또는 초청이민의 형태로 시도를 한 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집단이민으로 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 ※ 제1차 브라질 이민은 준비 불충분으로 인하여 브라질정부 당국에 좋지 못한 인상을 주어 이민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은 사실임. 1962.12월에 송출된 제1차 브라질 이민 17세대 92명은 이주지에 정착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주립수용소에 수용되는 등 어려움을 당함.
- ※ 제1차 브라질 이민은 계약이민으로 현지 대사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었는바, 민간이민 사업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이민단이나 이민공사만이 현지대사관의 협조에 이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660

2. 1964년도 이민사업계획

- ※ 이민대상국
 - 브라질: 에스빠리토 산토주정부 추진 68세대, 공관 추진 300세대, CAUSA 추진 50세대
 - 파라과이: 파라과이 정부에서 100세대를 사전허가하고 대상자 명단 송부 요청함.
- ※ 실시방침
 - 그간 한국이민협회로 하여금 이민사업을 취급케 하였으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향후 이민계약은 현지 대사가 직접 체결하게 하고, 현지 대사가 체결한 계약에 의거 직접 이주자를 선정케 함.

3. 1964.4.1. 현재 브라질(300세대), 과테말라(100세대), 온두라스(40세대), 파라과이(100세대), 에콰도르(10세대)의 이민을 추진 중임.



4. 1965.10.18. 현재 이민현황 참고 자료

- ✿ 볼리비아에 약 60세대 거주 중, 파라과이 정부는 한국과의 이민협정 체결에 동의, 주일본우루과이대사관과의 우루과이 이민문제 협의 진행 중, 아르헨티나 이민을 위해 25세대 출국, 브라질 가톨릭이민협회 추진 150세대 중 제1차로 60세대 선발 중에 있는 등 총 310세대 브라질 이민 추진 중임.

주독 Remagen 총영사관 임차문제

| 65-276 |

생산년도	1956-65
생산과	구주
MF번호	P-3 / 11 / 1~440(440p)

1. 사건의 발단

- ※ 1954년 한독간의 국교 개설에 따라 대한민국 총영사관용 건물로서 Remagen 소재 Kollbach 소유 가옥을 이한호 총영사가 10년 기한부로 임차함.
- ※ 2년 후인 1956. 10월 외무부 본부의 지시에 의하여 총영사관은 Köln으로 이전할 때 건물임대차 계약 해약교섭에 있어 당시 박대영 부영사는 동 임대차계약이 이한호 총영사 개인문제이며 대한민국정부는 관계없다는 주장을 하고, Kollbach는 후계임차인을 알선하거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하여 해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단됨.

662

2. 사건의 경위

- ※ Kollbach는 주독대사관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Rhein주 지방법원에 이한호 부부를 상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15만 마르크(37,500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2.4.25. 동 소송사건의 피고가 이한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기각됨.
- ※ 독일 외무성은 1962.9.14. 및 1963.2.5. 주독대사관에 공한을 보내 동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여 왔으며 주독대사는 해결방안을 외무부에 청훈함.
- ※ 외무부는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타협할 의사가 있음을 주독대사관에 훈령하고 Kollbach가 우리 총영사관이 이전한 뒤 1957.1.1.~12.31.간 노르웨이대사관에 재임대하기 전까지의 3개월간 임차료 4,900마르크(약 1,225불)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함.
- ※ 독일 외무성은 1963.3.21. Kollbach가 주장하는 연체 임차료 및 이자의 지불요구가 타당하다는 것과 1956년 박대영 부영사의 해약통고는 무효라는 공한을 주독대사관에 송부함.
- ※ 외무부는 1963.10.10. 임대인이 노르웨이대사관에 임대하기 전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3,000불 선에서 타협할 의사를 표시함. 독일 외무성은 1963.10.27. 임대인의 15만 마르크 주장은 무리이므로 약 7만 마르크(약 17,500불) 선을 시사함. 문제의 건물이 10.29. 경매 처분 절차에 들어가 해결이 시급하게 되면서 주독대사는 7만 마르크와 그 절반인 3만5천 마르크 사이에서 교섭할 것을 청훈하였으며, Kollbach는 독일 외무성을 통하여 99,080마르크(약 22,300불)로서 타협할 의사를 제시함.



- ✿ 독일 외무성은 문제의 복잡성에 비추어 독일인 변호사에 위촉하도록 권고하여 외무부는 1964.1.21. 독일인 변호사를 선정, 사건을 위촉함.
- ✿ 1963.6.1. 독일연방국회 하원에서 동 건물 임차문제로 외상에 대한 질의응답이 행해짐. 독일의 대중잡지 Stern지 6.21.자 판은 독일외무성의 태도를 비난함.
- ✿ 주독대사관은 1964.12.17. 외무부 지시에 따라 7만 마르크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독일 외무성에 통지하였고, Kollbach는 이를 무조건 수리할 것이라는 회한을 보냄.

663

대한민국외교사료해제집